

DL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DL CP T/F

목차

0. Instruction

▪ 대표이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의지 선언문	(9p)
▪ 자율준수관리자 발간사	(10p)
▪ DL 준법경영방침	(11p)
▪ DL 공정거래자율준수 실천 지침	(12p)
▪ DL 준법경영 체계	(13p)
▪ 편람 제·개정 이력	(14p)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17p)
1.1 의의	1.2 목적
1.3 이해당사자	1.4 CP(Compliance Program)란?
1.5 CP의 필요성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19p)
2.1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2.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3. CP의 8대 구성요소	(19p)
4. CP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 제도	(21p)
5. 공정거래위원회 소개	(22p)
5.1 정의	5.2 주요 기능
5.3 조직 구성	5.4 소관 법령

II. 불공정거래 행위

1. 불공정거래 행위의 이해	(25p)
2.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26p)
2.1 부당한 거래거절	2.2 차별적 취급
2.3 경쟁사업자 배제	2.4 부당한 고객유인
2.5 거래강제	2.6 거래상 지위의 남용
2.7 구속조건부 거래	2.8 사업활동 방해

III. 계열사 관련 공정거래

1. 계열사 관련 공정거래 개요	(67p)
1.1 내부거래의 정의	1.2 내부거래 규제 관련 법규

목차

2. <u>부당한 지원행위</u>		(70p)
2.1 부당한 지원행위의 개념	2.2 부당한 지원행위의 유형	
2.3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사례	2.4 내부거래 시 주의사항	
3. <u>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u>		(101p)
3.1 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제공금지의 개념	3.2 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제공금지의 유형	
3.3 사익편취 제재 사례		
IV. 경쟁사 관련 공정거래		
1. <u>부당한 공동행위의 이해</u>		(118p)
1.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1.3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및 위반사례	1.4 입찰담합 유형과 법 위반행위 및 사례	
1.5 정보교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1.6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	
1.7 위반 시 제재	1.8 면책 및 보상제도	
2. <u>담합 금지 가이드라인</u>		(151p)
2.1 담합 금지 가이드라인		
V. 소비자 관련 공정거래		
1. <u>표시·광고법의 이해</u>		(162p)
1.1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개념	1.2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1.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주요 고시·지침	1.4 표시·광고법 위반 시 제재	
2. <u>약관법의 이해</u>		(208p)
2.1 약관법의 개관	2.2 약관의 명시·설명	
2.3 불공정 약관의 유형	2.4 약관 조항 및 위반 사례	
2.5 약관법 위반시 제재 및 심사 청구		
VI. 협력사 관련 공정거래		
1. <u>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관</u>		(227p)
1.1 하도급법 체계	1.2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2. <u>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하도급법</u>		(235p)
2.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	2.2 부당한 특약의 금지	
2.3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목차

3. 계약 이행단계에서의 하도급법		(249p)
3.1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3.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3.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3.4 부당 반품의 금지	
3.5 감액의 금지	3.6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3.7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금지	3.8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	
3.9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3.10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	
4. 하도급대금 지급단계에서의 하도급법		(264p)
4.1 선급금의 지급 의무	4.2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4.3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4.4 현금결제비율 등의 유지 의무	
4.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4.6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4.7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4.8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5.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장을 위한 하도급법상 제도		(277p)
5.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5.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6.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285p)
6.1 사건처리 절차 개요	6.2 사건의 단서	
6.3 사건의 조사	6.4 분쟁 조정	
6.5 위원회 상정	6.6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7 처분 불복	6.8 벌칙	
6.9 행정처분		
Ⅶ. 기업집단 규제정책 및 지주회사 제도, 공시		
1.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요		(300p)
1.1 기업집단 지정제도	1.2 기업집단 지정 등 자료 제출	
1.3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 신고	1.4 기업결합 규제 및 신고	
2.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307p)
2.1 상호출자의 개념	2.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3 상호출자의 금지	2.4 순환출자의 금지	
2.5 위반시 제재	2.6 상호/순환출자 유의사례	

목차

3.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의 금지		(310p)
3.1 채무보증의 개념	3.2 채무보증의 금지	
3.3 위반시 제재	3.4 채무보증 유의사례	
4. 기업결합		(314p)
4.1 기업결합의 제한	4.2 기업결합 신고의무	
4.3 위반시 제재	4.4 임원 겸임에 따른 유의사항	
5. 지주회사 제도		(322p)
5.1 요건 및 정의	5.2 지주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의무	
5.3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5.4 위반시 제재	
6. 공시 제도		(330p)
6.1 공시제도 개관	6.2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6.3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6.4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6.5 하도급 결제조건 공시		
Ⅷ. 공정거래법 위반 시 사건처리 절차		
1. 개요		(357p)
1.1 심판 기능으로서의 공정위	1.2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1.3 공정한 심결을 위한 주요 제도	1.4 불복절차	
1.5 사전심사 청구제도	1.6 동의의결 제도	
2. 공정위 조사 절차		(365p)
3. 공정위 심판 절차		(367p)
4.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대응 절차		(368p)
4.1 사전예방을 위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운영		
4.2 조사개시 전 단계 대응		
4.3 조사개시 후 대책_사건의 파악 및 적절한 대응조치		
5.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 행동 요령 (적법 대응)		(371p)
5.1 현장조사/자료제출 시	5.2 출석·진술 요구 시	
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375p)
6.1 조정절차 안내	5.2 분쟁조정협의회	

목차

7.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도		(377p)
7.1 개요	7.2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7.3 고발대상		
8. 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378p)
8.1 소비자원 피해구제	8.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IX. 제보 시스템		
1. 제보 시스템 안내		(383p)
1.1 제보방법	1.2 제보대상	
1.3 제보자 보호		
2. 제보 관리 프로세스		(384p)
3. 제보 조사 기준		(385p)
4. 주요 계열사 제보처 안내		(386p)

참고. 부서별 주요 활용항목

목차	주요내용	관련부서
Instruction	· 대표이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의지 선언문 · 준법경영방침, 공정거래자율준수 실천지침	전사 공통
I.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이해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이해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전사 공통
II.불공정거래 행위	· 불공정거래 행위의 이해 ·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전사 공통
III.계열사 관련 공정거래	· 부당 지원행위 금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전사 공통
IV.경쟁사 관련 공정거래	· 부당한 공동행위의 이해 · 담합 금지 가이드라인	자산관리담당
V.소비자 관련 공정거래	· 표시·광고법의 이해 · 약관법의 이해	관리담당 자산관리담당
VI.협력사 관련 공정거래	· 하도급법 의무 및 금지사항 · 계약 단계별 하도급법 적용	관리담당 자산관리담당
VII.기업집단 규제정책 및 지주회사 제도, 공시	· 기업집단 규제정책 및 지주회사 제도 · 공정위 공시제도 등	자산관리담당 재무담당 준법경영담당
VIII.공정거래법 위반 시 사건처리 절차	·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 공정위 조사 행동요령	전사 공통
IX.제보시스템	· 제보시스템 및 제보 관리 프로세스 · 주요 계열사 제보처 안내	전사 공통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

Instruction

대표이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의지 선언문



임직원 여러분

우리 DL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정도경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도경영의 수준이 바로 그 회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가치 척도가 되는 시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회사 경영에 접목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불공정한 관행이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은 물론 우리 스스로 경쟁 규범을 지키는 문화와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자율준수 편람, 교육, 내부 감시체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이나 배상금 등의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시장에서는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며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등 회사에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기업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의 지속적 관심과 철저한 실천을 당부합니다.

DL(주) 대표이사 김종현

김종현

자율준수관리자 발간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임직원 여러분.
DL(주) 자율준수관리자입니다.

DL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고자 2000년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2003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 Compliance Program)' 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CP운영은 CP도입기(2000년~2003년), 확장/성숙기(2004년~2010년), 변화기(2011년~2018년)를 거쳐 현재는 CP고도화기(2019년~)에 접어들었습니다.

2021년 지주사 전환 이후 그 변화와 특성을 반영하여 DL CP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중점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업집단 정책의 준수, 지주회사 정책의 준수,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등, 총 3가지의 큰 줄기로 체계화된 CP활동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DL의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은 위와 같은 당사의 CP운영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공정거래 법규 관련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여 임직원들이 쉽게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 체크리스트, 지침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 있으며 그룹웨어나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게시되어 있습니다. 계열사/고객/경쟁사/협력사 등과 거래하거나 투자, 공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특히 주의 깊게 편람의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대외 환경, 정책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반영하여 편람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CP의 운영을 통해 우리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와 풍토를 정착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며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은 경영진의 확고한 실천의지와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하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첨부해 드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며 자가 점검을 통해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성숙한 공정거래 문화가 DL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L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DL 준법경영방침

DL 준법경영 방침

DL은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디벨로퍼를 추구합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일을 창조하고,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모두의 발전과 상생을 추구합니다.

더 큰 가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더하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 불필요한 것은 덜어내는 DL의 핵심가치 실현은 정도경영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DL은 정직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에 책임 있는 행동기준이 될 준법경영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합니다.

회사의 의무와 책임

- 하나 임직원이 준법경영 방침을 이행할 수 있는 문화와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 하나 준법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준법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한다.
- 하나 준법경영 책임자에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하며, 준법경영 관련 활동 및 이슈를 지배 기구에 보고한다.
- 하나 준법경영 위반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한 임직원을 보호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임직원의 의무와 책임

- 하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법규 및 사내 규정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며, 위반시 회사의 징계규정을 따른다.
- 하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및 거래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천하여, 상호신뢰와 동반성장을 통한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 하나 거래 관계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접대/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하나 준법경영 위반 또는 의심되는 경우 묵인하지 않고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린다.

DL 공정거래자율준수 실천지침

DL 공정거래자율준수 실천지침

DL(주)의 임직원은 회사의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와 경쟁의 추구를 통한 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아래와 같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준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 어떠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하지 않는다.

하나 **고객 및 외부 거래처 등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노력**

고객에게는 정직하고,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발전을 추구하며, 경쟁사와 정정당당히 경쟁하여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여한 CP관련 교육 목표 달성**

회사가 계획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교육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드시 교육목표를 달성하며, 관련 역량 향상에 노력한다.

하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제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 행위를 인지하거나 발견 시 즉시 회사의 준법경영담당부서로 신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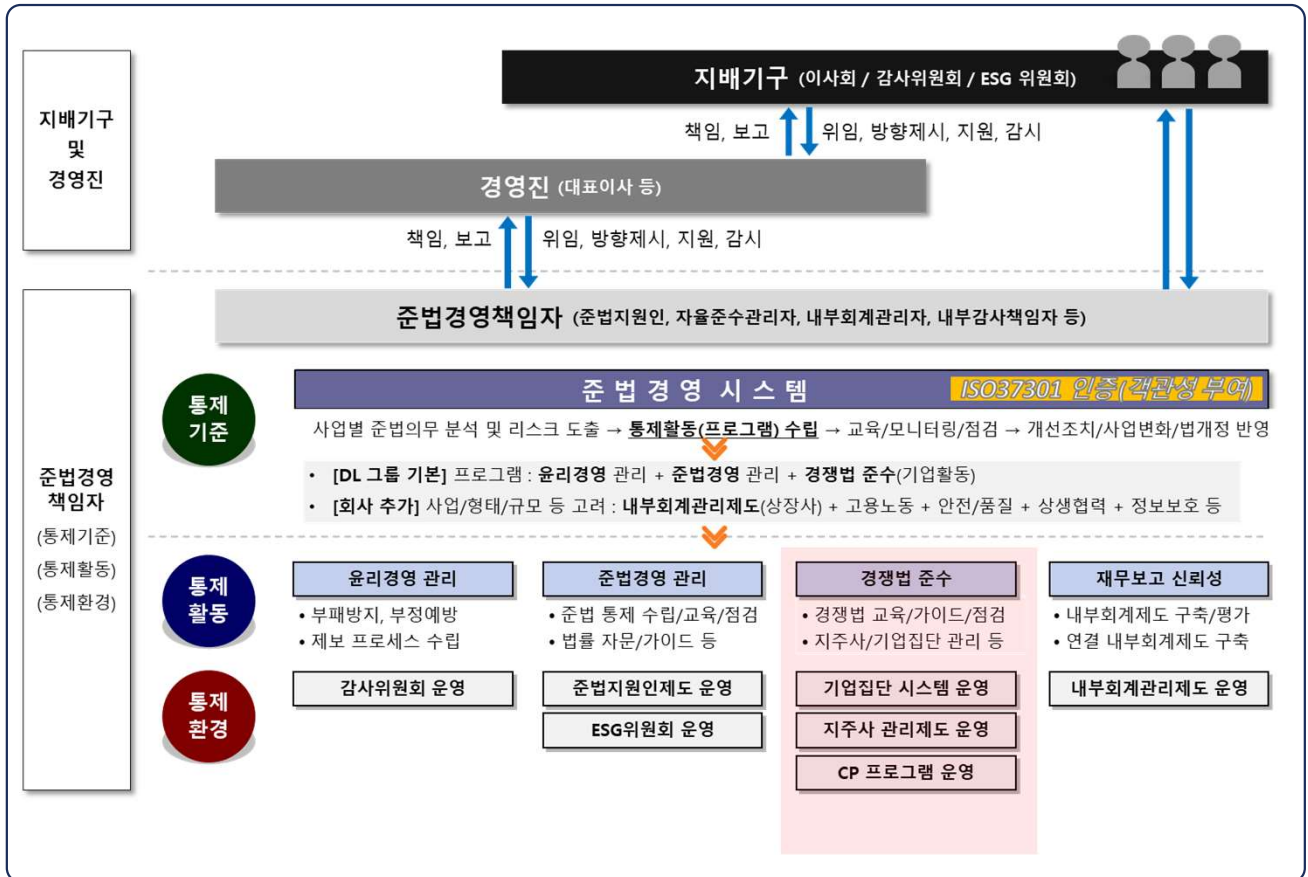
하나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태 점검·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기 및 수시 모니터링이 진행될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 등 모니터링 업무에 모든 협조를 한다.

하나 **공정거래 법규 관련 업무 시 준법경영담당부서와 사전 업무협의**

동종업계 관계자의 접촉, 계약·구매·입찰 업무, 타 계열사와의 거래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의 수행 시 반드시 준법경영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DL 준법경영 체계



제.개정 이력

0	2004.08.01	• 최초 제정
1	2005.12.08	• 첨부자료 제작 - ‘한숲 윤리이야기’ 책자 발간
2	2006.09.01	• 법 개정 사항 반영
3	2007.09.01	• 법 개정 사항 반영
4	2008.06.01	• 법 개정 사항 반영
5	2009.11.19	• 첨부자료 제작 - 경쟁법 국제적 준수 위한 행동준칙
6	2012.07.01	• 회사 CI 변경 및 보안등급 표시
7	2012.11.29	• 첨부자료 제작 -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 안내 - 공정거래 질의/자문 프로세스 안내 - 내부거래 공정성 검토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8	2013.07.09	• 첨부자료 제작 - 내부거래 규제 강화
9	2014.06.10	• 첨부자료 제작 - 내부거래 적정성 심사절차 - 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 - CP운영 체계
10	2015.01.29	• 첨부자료 제작 - CP자율준수 체크리스트
11	2016.02.03	• 첨부자료 제작 및 업데이트 - 공정거래 제도 및 기업집단 규제 담당자 업무 제작 - CP운영 체계 업데이트
12	2017.03.20	• 첨부자료 제작 - CP가이드 및 CP 커뮤니케이션 체계
13	2018.07.12	• 법 개정 사항 반영 • 첨부자료 제작 및 업데이트 - CP Report 발간 - CP가이드 업데이트

제.개정 이력

14	2018.07.17	- 첨부자료 제작 - CP운영 강화 방안 (문서, IT보안 등)
15	2019.03.25	- 첨부자료 제작 및 업데이트 - 하도급법 준수 위한 동반성장 To-do-list 제작 - CP가이드 업데이트
16	2020.01.09	- 첨부자료 제작 및 업데이트 - 하도급법 자율점검 세부시행 지침 제작 - 하도급법 준수 위한 동반성장 To-do-list 업데이트
17	2020.03.13	- 첨부자료 업데이트 - 내부거래 적정성 심사 강화 방안
18	2020.05.30	법 개정 사항 반영 (공정거래/하도급법 등)
19	2021년	- 회사 ci변경 및 법 개정사항 반영 (1월) - 지주회사 관련 규정 추가 (3월) - 지주회사 체계 업무가이드 제작 (3월) - 기업집단규제정책의 이해 및 업무가이드 제작 (3월) - 내부거래 적정성 심사 프로세스 제작 (3월)
20	2022년	- 지주회사 행위제한 체크리스트 개정 (1월) - 기업집단규제정책 업무가이드 개정 (3월) - 공정위 정기자료 제출 체크리스트 개정 (3월~7월) - 편람 본문 개정 (5월) - 긴급사태 응대 가이드 개정 (5월) - 지주회사 체계 업무 가이드 개정 (10월) - 내부거래 법준수 가이드 개정 (11월) - DL CP운영평가제도 가이드 제정 (11월) - CP운영 평가 기준표 제정 (11월) - CP운영 절차서 개정 (11월)
21	2023년	- 양식 변경, 법 개정 사항 반영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4월) - DL그룹 공통 편람 양식 적용 (6월) - 법 제.개정사항 및 최근 사례 반영 (12월)
22	2024년	- 법 개정 사항 반영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정) 및 최근 심결례 반영(5월) - 법 개정 사항, 최근 심결례 반영 및 표시광고법 관련 환경 표시광고지침 추가 (11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분	내용
CP란?	◆ CP(Compliance Program)란, 경쟁 주체인 기업이 경제활동 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프로그램
CP도입의 필요성	◆ 기업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 강화 ◆ 법위반에 따른 기업 손실을 사전에 예방 ◆ 대내외 신인도 제고 ◆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CP의 도입 요건	◆ CP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 교육프로그램 ◆ 사전감시체계 ◆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CP운영에 따른 경감제도	◆ CP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1.1 의의

-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당사가 도입, 시행하는 자발적 법규 준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자율준수 편람』이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당사가 작성한 『자발적 법규 준수 프로그램 편람』을 말한다.

1.2 목적

- 당사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안으로는 당사의 모든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밖으로는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1.3 이해당사자

- 『회사』 또는 『당사』란 『DL(당사)』을 말한다.
- 『계열회사』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당사의 계열사를 말한다.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를 말한다.
- 『경쟁업체』란 회사의 상품,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 『거래업체(거래상대방)』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 수급사업자를 말한다. 수탁사업자라는 말로도 사용한다.
- 『직원』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을 말한다.

1.4 CP(Compliance Program)란?

- 경쟁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동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체화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1.5 CP의 필요성

▶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 ① 공정거래자율준수 노력 → 경쟁력 강화 → 지속적인 발전

▶ 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 예방

- 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사는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
- ②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부담

▶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 ①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제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 ①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2.1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하도급법』이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표시광고법』이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약관법』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할부거래법』이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전자상거래법』이란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가맹사업법』이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공정거래관계법령』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한다.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관계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운영규정을 정하고, 규정에서 지침에 위임한 사항 및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위임한 사항 등 세부 운영 지침을 정해야 한다.

3. CP의 8대 구성요소

▶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 기업내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 천명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기업경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전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자율준수 의지는 회사 내 게시판, 전자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시켜야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의 중심으로 CP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 임직원에서 공유하고,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및 사례 중심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의 사업내용 변화, 공정거래 관련 법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 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프로그램

- 전 임직원 대상으로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법위반 리스크를 제거한다.

▶ 사전감시체계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이므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모니터링 제도)을 구축,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공정 행위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시, 감독 체계를 운영해야한다. 또한 자율준수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회사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회사의 제반 활동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최고경영자와 협의하여 개선안을 수립하고 집행 할 수 있다.

▶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기업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경쟁법 준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4. CP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 제도

- CP운영 우수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최근 공정거래법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부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신설 내용은 '24. 06. 21.부터 시행

▶ 과징금 감경 및 직권조사 면제

CP등급	과징금 감경 (유효기간내 1회 적용)	직권조사 면제
AAA	15% 이내 + 추가감경 5% 이내(조사개시 전 CP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 탐지·중단)	2년
AA	10% 이내 + 추가감경 5% 이내(조사개시 전 CP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 탐지·중단)	1년 6개월
A	없음	1년

▶ 시정명령 공표 감경

CP등급	위반사항 공표 (유효기간 내 1회 적용)	적용대상
AAA	간행물 공표 : 공표크기, 매체수 2단계 하향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기간 단축	◆ 공정거래법 제45조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등
AA	간행물 공표 : 공표크기, 매체수 1단계 하향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 기간 단축	
A		

※ 과징금 및 시정명령 관련 인센티브 적용 제외

1. CP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2.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3.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 행위의 경우
4. 이사 등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5. 공정거래 위원회 소개

5.1 정의

-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5.2 주요 기능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억제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표준 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하도급 대금지급, 물품 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 확보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 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 시정

5.3 조직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3인), 비상임위원(4인)
- 조사부서 : 조사관리관, 4개 국/관, 21개 과/팀
- 정책부서 : 사무처장, 4개 국/관, 17개 과/팀

5.4 소관 법령

- 경쟁 정책 : 공정거래법
- 소비자 정책 : 약관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 기업거래 정책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

II

불공정거래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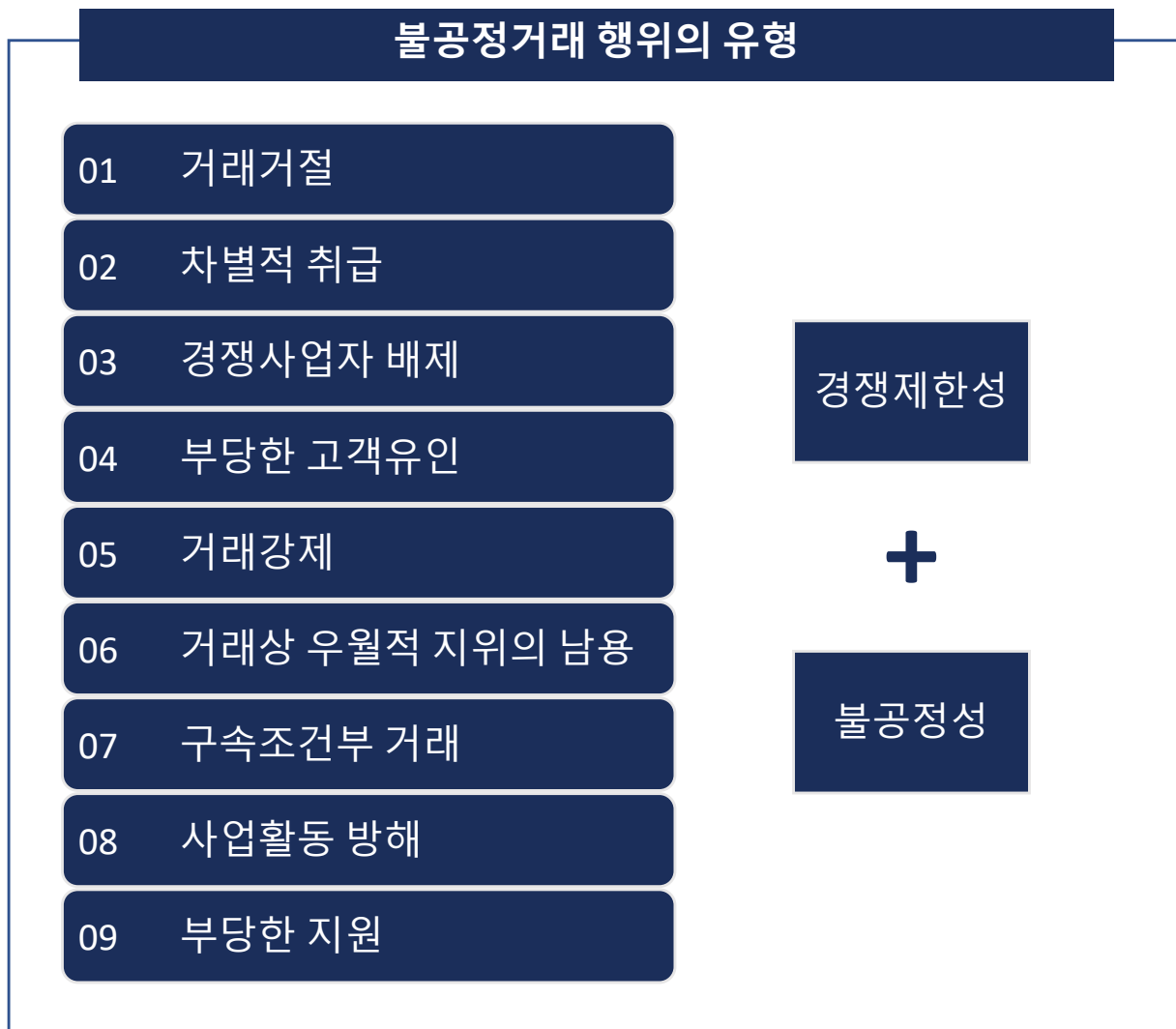
한 페이지로 보는 공정거래 제도

구분	내용
불공정 거래행위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공정거래법 제45조) ①거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경쟁사업자 배제 ④부당한 고객유인 ⑤거래강제 ⑥거래상지위 남용 ⑦구속조건부 거래 ⑧사업활동 방해 ⑨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부당지원행위)
부당 지원행위	◆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부당지원행위는 개념상으로는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동일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 함 ◆ 부당내부거래 유형(법 제45조 제1항 제9호) ①부당한 자금지원 ②부당한 자산 거래 ③부당한 임대차 거래 ④부당한 상품·용역 거래 ⑤부당한 인력제공 ⑥거래 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규정을 별도 운영 (법 제47조) ◆ 규제 내용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1. 불공정거래 행위의 이해

▶ 불공정거래행위란?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45조)



▶ 위법성 판단기준

- 위법성의 핵심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공정거래저해성**에 있다.
- 공정거래저해성은 '부당하게'와 그 의미가 동일하며,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 경쟁제한성 :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
 - ※ 불공정성 :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
- 판례, 학설, 공정위** 모두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행위유형별로 나눠 당해행위의 특성, 거래당사자의 지위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2.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2.1 부당한 거래거절

-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 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①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 거래계속의 거절 등
-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① 재고부족이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③ 사업자들이 사전에 당해 사업영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④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⑤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② 기타의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사업자 단독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 또한, 거래 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거절 물품, 용역이 거래 상대방의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등
-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

▶ 합리적인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 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 ㉡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성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㉞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조달하려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 ㉟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
- ㊱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래한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중단 또는 수량을 현저히 제한하면 안된다.

관련 사례

사실관계

국내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는 사업자인 A는 A를 통해 고주파간암 치료기를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던 B사가 A의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고, A사의 치료기와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B에 대한 거래를 중지함.

법원 판단

대법원은 A와 B사간의 계약에서 B가 고주파간암치료기를 오로지 A로부터 공급받겠다는 취지의 독점적, 전속적 공급계약에 대항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B가 다른 제조사로부터 고주파간암 치료기를 공급받는 것이 위 계약에 위반된다거나 자체 개발한 제품이 A의 고주파간암치료기와 유사제품이라 볼 수 없어 A의 거래거절에 위 치료기의 영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B로서는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시장의 사정상 A의 거래거절 이후 대체 공급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총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던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기에 A의 거래거절은 B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한 공정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4098판결)

Q1. 계약만료에 따라 상대방 업체와 계약을 종료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A1. 계약자유 원칙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재계약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자율적 판단 사항이고, 계약만료 시점에 즈음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전통보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매우 추상적인 해석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먼저, 계약으로 인해 상대방이 투입되는 인력과 설비규모, 대체거래선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거래가 전제 또는 예상된다면 계약종료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우리와의 거래를 믿고 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이 큰 경우, 상대방과 이와 관련된 보상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거래중단은 부당한 거래거절이 될 수 있다.

Q2. 거래종료 당연사유가 아닌 회사 내 정책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정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하는가?

A2.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물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2.2 차별적 취급

-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에는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① 가격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대상

▶ 위법성 판단기준

- 가격 차별이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행위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①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②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가격차별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쟁사업자 배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격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 ④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⑤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①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가격차별로 인해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② 가격차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가격차별 대상인 거래상대방이 거래선을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격차별 정도가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 ④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 일회성의 가격차별은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 이루어 질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커질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용역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해 가격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 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 ㉣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출액 규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쟁업체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는 열위에 서게 하는 행위
-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입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입량과 관계없이 통상 적용하는 최대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들간의 경쟁력 차이를 초래하는 행위

② 거래조건차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중 가격이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예: 수량할인 등)을 제외한 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면에서의 차별을 말한다.
-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자에 대한 차별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차별대상 사업자가 엄격하게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모든 사업자에 대한 차별도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위법성 판단기준

- 가격차별이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 및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가격차별에 준하여 판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의 상품·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리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③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되,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 그러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을 판단하되,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차별 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 단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 ㉡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 ㉢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 ㉣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게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④ 집단적 차별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해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가격,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집단적 차별행위의 위법성은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한다. 다만, 집단적 차별은 여러 사업자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원칙적으로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비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 ㉡ 합리적 이유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온라인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비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서게 하는 행위

관련 사례

사실관계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하였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 처음으로 가공비 6.7% 인상함.

공정위 판단

위와 같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행위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의 상승은 업종에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이나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만 가공비를 인상하여 주는 행위는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부과함.

Q1. 동일한 제품을 경쟁이 낮은 곳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점에게 판매하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가?

A1. 기본적으로 판매가격은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수요가 매우 많은 지역에서 판매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있다.

Q2. 특정 판매점에게만 가격할인, 보조금 등 긴밀한 지원을 할 경우는?

A2. 운송비 차이나 거래량의 다과에 따른 합리적인 거래조건 차별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판매점에게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다른 판매점이 그 판매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Q3. 계열회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회사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우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는가?

A3. 물량 이외의 거래조건이 동일하다면 어느 회사에게 어느 정도 비율의 물량을 배정하는가는 자사의 재량이므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계약기간 중 물량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Q4. 물품을 구입하면서 비계열회사인 A가 계열회사인 B사보다 견적가격을 싸게 제시하였음에도 B사와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법 위반인가?

A4. A사가 공급하는 물품이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불량률이 높은 등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이 될 수 있다.

2.3 경쟁사업자 배제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킨 후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여 독점가격 책정이 가능해 질 경우, 이는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 수준의 저하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또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당해 시장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원재료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할 경우 이는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① 부당염매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부당염매에는 계속적 염매와 일시적 염매가 있다.
- 계속적 염매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공급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일시적 염매란 일회 또는 단기간(1주일 이내)에 걸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 부당염매는 유인염매 또는 할인특매와는 구별된다. 유인염매란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덤핑판매를 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마진율을 종전같이 하거나 상향조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판촉 전략의 하나로 부당염매와는 구별된다. 한편 할인특매는 실시기간이 확정되는 등 기간이 확정적인 점과 경쟁사업자 배제의도 보다는 계절상품의 처리, 불경기 등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점에서 부당염매와 구별되며 금지되지 않는다.

▶ 위법성 판단기준

- 염매행위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란 당해 염매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고 실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계속적 염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계속적 염매를 한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을 판단하되,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 ① 당해 시장에 진입장벽(예: 규모의 경제, 사업영위 인허가, 거래비용 등)이 없어 계속적 염매로 인해 현재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될 수 있는 경우
 - ② 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 ③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염매로 판매하는 경우

- ④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옼매를 하는 경우
- ⑤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옼매를 하는 경우
- ⑥계속적 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⑦계속적 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일시적 옼매의 경우,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이 때,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옼매행위를 하는 동기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는데 있는지 여부
 - ②당해 옼매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유지하기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거나 부도등의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③당해 시장의 경쟁구조. 당해 시장에서의 사업자 수가 적고, 집중도가 높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클 수 있다.
 - ④진입장벽 유무 등. 규모의 경제·사업영위 인허가 등 요소가 없어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현재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되므로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없거나 미미하게 된다.
- 일시적 옼매의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옼매를 하는 경우
 - ②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판매하는 경우
 - ③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옼매를 하는 경우
 - ④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옼매를 하는 경우
 - ⑤일시적 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⑥일시적 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규모의 경제 등 이유로 당해 시장에서의 신규진입이 단기간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기관 물품구매입찰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② 부당고가매입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고가매입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품귀를 가져옴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
- 이 때,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고가매입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②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이 원활한지 여부와 다른 대체재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 대체재가 존재하더라도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있을 수 있다.
 - ③고가매입으로 인해 경쟁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거나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 고가매입의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경쟁제한성)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사업자가 원재료 등의 품귀가능성에 대비하거나 제품의 안정적 생산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②고가매입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③고가매입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합리적 이유없이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함으로써 사실상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관련 사례

사실관계

인천광역시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시스템통합 용역 입찰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용역입찰의 예정가격은 97,244,000원이었고 이 입찰에는 현대정보기술이 2,900,000원, 대우정보시스템이 19,440,000원, 삼성데이타시스템이 33,300,000원에 응찰하였고, 현대정보기술이 낙찰자가 되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이 저가에 입찰한 행위가 부당염매행위인지와 관련하여 낮은 대가인지 여부는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조업체의 경우 고정비와 변동비 모두를 포함한 총원가를 기준으로 저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원은 경쟁사업자들 역시 염가에 입찰하였고, 발주처가 향후 해당 용역과 관련된 장비 및 용역을 추가 구매함에 있어서 낙찰자에게 사실상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용역은 1회성 사업이었으므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없기에 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4 부당한 고객유인

-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그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것으로서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가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금지된다.

①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표시·광고를 포함한다.
 - ①적극적 이익제공이란 리베이트의 제공이나 가격할인 등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면서 덤으로 자사제품의 과다한 제공 등
 - ②소극적 이익제공이란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 위법성 판단기준

- 이익제공 또는 제공제의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제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이익제공(제의)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익제공(제의)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이익제공(제의)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부당한 이익제공(제의)을 함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제의를 하는 행위
- ㉡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소개·의뢰·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 사업자가 다른 특정사업자로부터 수주하거나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 금품 등 음성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②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표시·광고에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또한, 기만 또는 위계는 표시나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이외의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행위가 대상이 된다.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에는 품질, 규격, 제조일자, 원산지, 제조방법,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다. 거래조건에는 가격, 수량, 지급조건 등이 포함된다.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는 국산품 혹은 수입품인지 여부, 신용조건, 업계에서의 지위, 거래은행, 명칭 등이 포함된다.

▶ 위법성 판단기준

- 기만 또는 위계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 기만 또는 위계가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오인 또는 오인의 우려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나 광고의 경우와 달리 거래관계에 놓이게 될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하되, 실제로 당해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그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 ②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 등. 위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오인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 결과 거래처를 전환하여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비방에 불과할 뿐 부당한 고객유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그 속성상 합리성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사업자가 타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거래함에 있어 표시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 성능, AS 조건 등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을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 ㉡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량만을 할인판매 대상으로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미끼 상품)
- ㉢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영업현황,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하는 행위
- ㉣ 경쟁사업자의 부도 임박·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 영업사원들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③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거래 방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를 제외한 모든 수단이 포함된다.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 거래방해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의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해의 동기나 의도, 방해 이후 고객의 거래처 내지 거래량의 변화추이,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와 경쟁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거래방해 그 자체가 거래조건의 이점 등 자기의 효율성에 기초할 경우 고객유인의 효과가 있더라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방해는 거래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족하며, 실제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가 불발로 끝나거나 기존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거래방해에 의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②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 내의 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5 거래강제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자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로서, 불합리한 수단으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도모하며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금지된다.

① 끼워팔기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끼워팔기를 행하는 주체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끼워팔기에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위법성 판단기준

- 끼워팔기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경쟁제한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이 별개의 상품(또는 용역)인지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이 밀접불가분한 구성요소인지 여부, 통상적으로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짝지워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지 여부,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별도로 구매하고자 하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 ② 끼워팔기 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또는 용역)시장에서 시장력(market power)이 있는지 여부
 - ③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등.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또는 용역)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강제성'은 주된 상품(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큰 것으로 보며,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할 경우 주된 상품(또는 용역)의 거래거절이나 공급량감소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거래처를 전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④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끼워팔기에 의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본다.
 - ⑤ 끼워팔기로 인하여 종된 상품(또는 용역)시장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끼워팔기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 끼워팔기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끼워팔기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②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임직원에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의 형태를 묻지 않는다.)
- 임직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의 형태를 묻지 않는다.)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떤 임직원이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영업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매영업 담당하는 임직원: 매장 기타 영업소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자,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판매를 권유하는 자 등)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원판매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하는지 여부
- ②강제성 인정 경우: 목표량 미달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가하거나, 판매목표 미달분을 억지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목표달성 여부를 고용관계의 존속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결부시키는 경우
- ③강제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목표량 달성시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임직원의 판단에 따라 목표량미달과 각종 이익 중에서 선택가능성이 있는 때, 임직원에게 불이익(사실상 불이익 포함)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회사 상품(또는 용역)의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단순촉구한 행위
- 사원판매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원판매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사원판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부도발생 등 사원판매를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씩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또는 영업담당 이사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공식적 계통을 통해 판매독려를 하는 경우
- ㉣ 자신의 계열회사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일정량을 판매하도록 할당하고 당해 계열회사는 임직원에게 협력업체에 대해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③ 기타의 거래강제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명시적인 강요와 묵시적인 강요, 직접적 강요와 간접적 강요를 포함). 기타의 거래강제는 행위자와 상대방간 거래관계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나, 거래상 지위남용(구입강제)의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간 거래관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①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하는지 여부
- ②강제성 인정 경우: 목표량 미달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가하거나, 판매목표 미달분을 억지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목표달성 여부를 고용관계의 존속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결부시키는 경우
- ③강제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목표량 달성시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임직원의 판단에 따라 목표량미달과 각종 이익 중에서 선택가능성이 있는 때, 임직원에게 불이익(사실상 불이익 포함)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회사 상품(또는 용역)의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단순촉구한 행위
- 사원판매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원판매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사원판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부도발생 등 사원판매를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씩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또는 영업담당 이사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공식적 계통을 통해 판매독려를 하는 경우
- ㉣ 자신의 계열회사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일정량을 판매하도록 할당하고 당해 계열회사는 임직원에게 협력업체에 대해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③ 기타의 거래강제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명시적인 강요와 묵시적인 강요, 직접적 강요와 간접적 강요를 포함). 기타의 거래강제는 행위자와 상대방간 거래관계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나, 거래상 지위남용(구입강제)의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간 거래관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강제 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 ② 당해 불이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특별한 사유 없이 주된 거래 관계에서 공급량이나 구입량의 축소, 대금지급의 지연, 거래의 중단 또는 미개시, 판매 장려금 축소 등)
 - ③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 상대방이 행위자의 요구사항을 자유로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강제성 여부를 판단한다. 상대방이 주된 거래관계를 다른 거래처로 전환하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기타의 거래강제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타의 거래강제 속 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기타의 거래강제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기타의 거래강제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 ㉡ 사업자가 자신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신의 상품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임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관련 사례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는 인천마전 등 공동주택지의 판매가 저조하자 상대적으로 분양이 양호한 부천 상동 등 공동주택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 토지의 매입시 인기토지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부여하여 비인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사실상 인기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함.

법원 판단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거래강제'중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

따라서 이와 같은 연계판매행위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면서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택사업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두3014 판결)

2.6 거래상 지위의 남용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민사행위등과의 구별

- 거래개시 단계에서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와 계약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하에 거래를 선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여러 사업자중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판단에 따라 거래를 개시하였고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 특정사업자와 거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 거래계속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불이익을 가한다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각종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또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담보권 설정·해지, 지체상금 등)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거래상 지위 여부

-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①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고착화(lock-in) 현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우월적지위에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상대방은 이미 투입한 투자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 등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 ② 계속적 거래관계 여부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위한 전속적인 설비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한다.
 - ①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관계라 하더라도 거래처 등을 변경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 ② 통상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③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

-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예시)

- ㉠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간 거래관계
- ㉡ 거래상대방인 판매업자가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유명상품을 갖추는 것이 사업운영에 극히 중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와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특정사업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거래관계 유지에 대규모투자가 소요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전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①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위법성 판단기준

-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합리적 이유없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리점에게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없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없이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에게 과다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량을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가 구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② 이익제공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 계열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이익제공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 위법성 판단기준

-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합리적 이유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없이 회원권 시설운영업자가 회원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실비보다 과다한 명의 개서료를 징수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없이 대형소매점사업자가 수수료매장의 입점업자에 대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입점비, POS 사용료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③ 판매목표강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대상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

▶ 위법성 판단기준

-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
-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
-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 시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회원이나 가입자의 수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수수료지급의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추후 대금지급시 공제하는 행위
- ㉣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에서 대리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매 물량을 덤핑 판매한 후 발생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하는 행위
- ㉤ 거래상대방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단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④ 불이익제공

- 위에 언급한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①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①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의해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

-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거래조건 설정·변경>

- ㉠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 계약 유효기간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
- ㉣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 계약기간중에 자기의 점포 장기임차인에게 광고선전비의 부과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한 행위

<불이익제공>

- ㉦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2%로 약정하였으나, 준공검사시 일방적으로 20%로 상향조정하여 청구한 행위

- ㉔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㉕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㉖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을 인한 공사비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불지급하는 행위
- ㉗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성 거래거절)

⑤ 경영간섭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
- 의결권의 행사나 채권회수를 위한 간섭으로서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 또는 채권자로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①대리점 등 판매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현찰판매 또는 직접판매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 및 상담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경영효율성의 제고 또는 상품의 안전성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㉙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광고시 자기와 사전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㉚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의 임원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
- ㉛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이나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 ㉜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관련 사례

사실관계

배달앱의 하나인 요기요는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상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 말고 음식점으로서의 직접 전화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 최저가보상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최저가보상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하여 판매가격 변동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요기요에 대해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 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 사업자로 판단하고,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하였다.

사실관계

한국야구르트는 시장변동 상황, 근무일수 및 전년도 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지점별, 제품별 다음년도 판매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12월 각 지점에 통보하였다. 또한 판매목표 달성률 등이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15개 대리점에 패널티를 부과하여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경고조치를 하면서 벌점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였다.

공정위 판단

위탁대리점이 우유대리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점, 다른 거래처를 선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시 한국야구르트가 위탁대리점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있다. 따라서 한국야구르트가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판매목표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

Q1. 판매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차원에서 판매점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관한 정보, 매출 상세정보, 생산/판매/재고 현황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A1. 판매점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확보하고 동 정보들에 근거하여 판매점의 경영에 간섭을 하는 등 부당한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모니터링 자체만 가지고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 현실적으로 모니터링 과정에서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간섭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Q2. 판매점이 기 거래실적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분기 판매계획을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 초과량에 대하여 가격을 할인해 주면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하는가?

A2. 계획량을 초과하지 못했을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량을 초과했을 경우 일정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판매계획량은 판매점이 전 분기 실적 등을 감안하여 구매하겠다고 요청하는 양을 기준으로 상호 결정한 것이고, 또한 판매점에게 정상적인 마진을 보상해준 상태에서 순수하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라면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Q3. 구입강제 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는 없는 경우 상품을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란 어떤 것인가?

A3.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입증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거래 상대방의 주문이 없는데도 회사의 재고량 해소를 위해 일방적으로 공급하면서 반품을 불허하는 경우
- ✓ 거래상대방의 영업과 무관한 제품을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게 하는 경우
- ✓ 신제품을 거래상대방의 의사를 불문하고 대량 공급하고 반품을 불허하는 경우
- ✓ 거래상대방이 자재의 구입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재를 별도의 운송비까지 지급하면서 구입한 경우

2.7 구속조건부 거래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지역이나 거래처를 제한함으로써 당해 지역 또는 거래처에 대한 독점력을 부여하여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면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금지된다.

① 배타조건부거래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판매업자의 소요물량 전부를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독점공급계약과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을 전부 자기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독점판매계약도 배타조건부거래의 내용에 포함된다. 또한 경쟁사업자와의 기존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규거래 개시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거래 상대방은 소비자가 포함되지 않으며, 배타조건을 정하는 명칭여하를 불문한다.

▶ 위법성 판단기준

- 배타조건부거래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타조건부거래가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①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업자(신규진입자 등 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시장 배제효과가 낮게 된다.
 - ②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 ③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행위자가 선도기업이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커질 수 있다.
 - ④ 배타조건부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 배타조건부거래 상대사업자의 숫자가 많고 그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커질 수 있다.

- ⑤ 배타조건부거래 실시기간. 실시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나 장기인 경우에는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 ⑥ 배타조건부거래의 의도 및 목적. 배타조건부거래가 사업초기에 시장에서의 신규 진입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낮을 수 있다.
- ⑦ 배타조건부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행위자의 시장지위 강화효과가 커질 수 있다.
-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전문성 등으로 인해 A/S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거래가 필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③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유통업체의 무임승차(특정 유통업체가 판매촉진노력을 투입하여 창출한 수요에 대하여 다른 유통업체가 그에 편승하여 별도의 판매촉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판로를 확보하는 행위) 방지, 판매 및 조달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경쟁사업자가 유통망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경쟁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대량구매 등 수요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업무제휴를 하면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중복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경쟁사업자가 타 업무제휴 상대방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 ㉣ 구입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입선과 거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생산(또는 판매)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거래처인 방문판매업자들에 대해 경쟁사업자 제품의 취급증가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판매를 전업으로 하여 줄 것과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시에는 자신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병행수입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총판에게 병행수입업자와 병행수입품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도매 및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위
- ㉦ 석유정제업자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석유제품전량구매를 강제하는 등 석유판매업자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행위 및 거래상대방의 영업대상 또는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와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형량한 후 판단
 - ①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책임지역제 또는 개방 지역제한제와 지역제한을 위반하여도 제재가 없는 등 구속성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제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지역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제재가 가해지는 등 구속성이 엄격한 지역제한제는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므로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거래상대방 제한의 경우도 거래지역 제한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한다.
 - ②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업자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간 브랜드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지역제한 및 거래상대방 제한한 유통업자들의 판촉활동에 대한 무임승차 경향 방지와 판촉서비스 증대 등을 통해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다.
 - ③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행위자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경쟁사업자의 수 및 시장점유율이 낮을수록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가 유발되는 정도가 커질 수 있다..
 - ④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병행하여 사용될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클 수 있다.
 - ⑤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
-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 상기 요인 이외에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지정 또는 할당하고, 그 구역 밖에서의 판촉 내지 판매활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을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 제조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선인 소매업자를 한정하여 지정하고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자에게서만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관련 사례

사실관계

크라운제과는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서 계약서상에 대리점이 관할 영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할 때, 피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대리점이 관할 영업구역을 이탈하여 거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공정위 판단

크라운제과는 자신의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 대리점의 거래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기준, 일정한 판매지역을 할당해 주고 해당 판매지역 내의 소매점등과 거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즉, 대리점이 크라운제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해당 판매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 사전에 크라운제과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판매지역 이외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피심인과 대리점간에 체결한 거래약정에 따라 피심인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주)정식품은 부산지역 전 대리점장들에 대하여 오프라인 대리점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온라인 판매를 지양할 것을 교육 전달하였다.

공정위 판단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위는 거래의 상대방 선택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이 인터넷쇼핑몰업체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정식품의 서면 및 구두 공지, 확인서 작성 강요 등의 행위는 대리점의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판매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또한 이는 사실상 자신이 공급하는 두유의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두유시장에서 약 4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정식품이 소속 대리점들로 하여금 인터넷쇼핑몰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브랜드 내에서 가격인하 유인을 축소시킬 우려가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주)정식품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약식 제 2009-206호)

Q1. 제조업체가 대리점과 계약시 계약서상에 판매 및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 위반이 되는지?

A1.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단, 지역의 판매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 특정지역에 대한 판매책임제, 판매거점제 등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Q2. 대리점에게 판매지역을 일정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되는가?

A2. 지역제한의 경우 구속성의 정도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지역구속성이 약한 단순한 지역책임제나 판매거점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제조업체가 판매점에 대해 일정한 지역을 주된 판매지역으로 설정할 뿐 지역외의 판매도 허용되는 경우) 그러나 지역구속성이 강한 지역제한은 문제가 된다. 예컨대 해당 제품의 시장이 독과점 상태에 있고, 지역제한이 이를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제한을 어겼을 때 공급중단,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Q3. 제조업체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상호를 부착한 대리점에 대하여 자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A3. 자사 상호를 부착한 대리점에 대하여 자사 제품만을 취급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거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2.8 사업활동 방해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할 경우 가격과 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된다.

① 기술의 부당이용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다른 사업자(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의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기술의 부당이용이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 기술이용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기술이용의 목적 및 의도, 당해 기술의 특수성, 특허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통상적인 업계 관행 등이 고려된다.
 - ②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기술의 부당이용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야기시키는 행위

②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다른 사업자(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인력 유인·채용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인력유인 채용의 목적 및 의도, 해당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력유인·채용에 사용된 수단,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된다.
 - ②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 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외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 ㉡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핵심인력을 자기의 사업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③ 거래처 이전방해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거래상대방(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의 거래처이전을 방해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처 이전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거래처 이전방해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처 이전방해의 목적 및 의도, 거래처 이전방해에 사용된 수단,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이전될 거래처가 사업영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된다.
 - ②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거래처 이전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

④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 위의 규정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모든 행위. 방해의 수단을 묻지 않으며, 자기의 능률이나 효율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활동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활동방해의 수단, 당해 수단을 사용한 목적 및 의도,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된다.
 - ②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사업활동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 경쟁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경쟁사업자의 도산이 우려된다든지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업자에게 대리점계약의 해지 및 판매량감소 등을 야기하는 행위
- ㉣ 타 사업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전단을 살포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Q&A

Q1. 경쟁사에서 차세대 사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실력이 매우 뛰어난 직원을 거액의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여 당사로 옮기게 한 경우 사업활동 방해가 될 수 있는가?

A1. 인력의 유인·채용이 사업활동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동 채용으로 인해 당해사업장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어야 하므로 개별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반직원을 유인·채용한 경우에는 사업활동 방해로까지 되기는 어렵다.

Q2. 당사가 경쟁사 특정 부서의 중견 직원 수명을 순차적으로 스카우트 하는 경우 불공정행위인가?

A2. 당해 부서에서 스카우트한 직원들이 차지하는 역할, 이로 인해 경쟁사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한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2 위반시 제재

구분	과징금	벌칙	비고
거래거절 ~ 사업활동 방해	관련 매출액의 4%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동시 적용 가능
부당지원 (특수관계인 포함)	관련매출액의 10%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 이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

III

계열사 관련 공정거래

1. 계열사 관련 공정거래 개요

1.1 내부거래의 정의

- 통상적으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간의 거래, 그 법인과 기업집단의 지배자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의미한다.
- 거래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말한다.
- 내부거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면서 규제를 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

- 거래비용의 절감,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
 - * 거래비용 : 적정한 거래 상대방을 찾고, 협상을 통해 거래를 교섭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이행 모니터링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 안정적인 수요·공급처를 확보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 또는 기존사업의 확장 시 리스크 최소화, 빠른 경쟁력 확보
- 기업집단 차원에서의 통제권 유지, 자원의 효율적인 재분배, 수급상황에서의 안정성 제고

부정적 측면

- 배임 또는 횡령 발생
 - 지배주주가 회사 및 다른 주주의 이익을 빼앗아 자신 or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추구
- 편법적 부의 이전 수단으로 활용
 -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면서 다른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
- 비계열 독립기업의 생존·발전 어려움
 - 확보할 수 있는 수요 및 사업기회가 없어짐
- 기업집단 부실화 위험
 - 부당지원행위의 결과 우량계열사의 핵심역량이 부실계열사로 분산 유출되어 동반 부실화 위험 존재

1.2 내부거래 규제 관련 법규

▶ 공정거래법

구분	부당지원 행위 금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법조항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 공정거래법 제47조
지원주체	• 모든 사업자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지원객체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않음)	•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주식 보유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주식 보유한 계열 회사
규제목적	•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부당 지원행위 금지	• 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제내용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상당한 규모의 거래 • 부당한 거래 단계의 추가 (통행세) ※ 부당지원행위는 안전지대 없음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안전지대 : 거래조건 차이 7% 미만, 연간 거래금액 50억원(상품·용역 거래는 200억원) 미만 • 사업기회의 제공 •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일감 몰아주기) ※안전지대 : 연간 거래총액 200억원 미만, 거래상대방 평균 매출액 12% 미만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법 위반상태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과징금 :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 이내)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양벌가능)	

▶ 상법

관련 규정	규제 내용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제397조의2)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행위 금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8조)	회사가 주요주주, 이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를 공정하게 하여야 함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542조의9)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에게 신용공여 행위 금지 (제1항)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과 ①단일 거래 금액이 자산 또는 매출 총액의 1% 이상 또는 ②연간 거래 금액이 자산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제3항) - 이사회 승인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제4항)
특별 배임죄 (제622조 제1항)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 세법

관련 규정	규제 내용
부당행위 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4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법인세법) 또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을 재계산하여 과세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상증세법 제45조의3)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비율이 법에서 정한 정상거래 비율을 초과할 경우 해당 거래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사업기회 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세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수혜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귀속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거래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2. 부당한 지원행위

2.1 부당한 지원행위의 개념

① '부당지원행위'의 정의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하게』 의미 (대법원 2004.9.24. 2001두6364 판결)

『부당하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제1조)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

☞ 부당지원행위의 입법취지 (대법원 2004.10.14 선고 2001두2881)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한 입법취지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다.

② 부당성 판단기준

-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㉓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㉔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㉕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㉖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㉞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③ 용어의 정의

- 지원주체 : 부당지원행위를 한 사업자
- 지원객체 :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의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다른 회사는 지원주체의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않음)
- 특수관계인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 관련자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 동일인 관련자

- ① 친족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②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③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④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⑤ 동일인 및 동일인과 ②내지 ④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고용인)

- 정상가격 :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자간에 거래되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
- 지원행위 : 경제적 급부를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1. 정상가격 > 실제거래가격 : 매입자(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 귀속
 2. 정상가격 < 실제거래가격 : 판매자(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 귀속
- 지원금액 : 지원행위로 지원객체에게 귀속된 경제상 이익의 크기
 1. 지원금액 = |정상가격 - 실제거래가격| × 거래수량
 2.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
- 지원성거래규모 :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정상가격의 구체적인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지원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당해 거래의 규모

→ 보충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적용 (지원성거래규모의 10%)

2.2 부당한 지원행위의 유형

2.2.1 부당한 자금지원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및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① 자금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정상금리 vs. 실제적용금리)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경우 (자금 低利대여, 자금 低利예치)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자금을 정상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제공받는 경우 (자금 高利차입, 예금 高利수신)

② 정상금리의 산정

- 개별정상금리 (원칙적 적용)
 -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간에 지원주체의 지원 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별정상금리)를 실제적용금리와 비교
 - * 다음 방법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 가능한 방법으로 산정
 -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 객체와 특수 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 객체와 특수 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일반정상금리 (보충적 적용)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를 실제 적용금리와 비교
 - 다만, 일반정상금리는 (가)개별정상금리의 산정이 불가능하고 (나)개별정상 금리가 일반 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개별정상금리 · 일반정상금리)에만 적용

▶ 상당성 판단 기준

1.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의 차이가 정상금리의 7% 미만으로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1.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 공사대금 미회수,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객체의 월별평균 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3. 지원금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1.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 적용금리와 개별 적용금리 또는 일반 정상금리와 차이가 7%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지원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지원객체의 개별정상금리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거래를 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3. 적용금리와 개별 정상금리의 차이가 10%이상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여하는 경우
-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객체에게 저금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
-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객체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도록 하는 경우
-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금리로 예탁하는 경우
-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게을리 하는 경우
- ㉩ 지원객체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하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지원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도록 하는 경우

관련 사례

사실관계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21억원을 차입하는데에 원고 웅진홀딩스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예금 600억원과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무담보 대출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인 5.50~5.87%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 자금 지원이 있었음.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공정위)가 그 지원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거나 개별 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은행이 웅진폴리실리콘 또는 웅진폴리실리콘과 신용등급이 비슷한 회사와 무담보 대출 거래를 한 실제 사례가 없었따는 점을 이유로 실제 적용된 금리와 일반정상금리인 6.83~7.07%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4255)

2.2.2 부당한 자산거래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및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① 자산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정상가격 vs. 실제거래가격)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유가증권(주식, 기업어음, 회사채 등),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무상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산 低價매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경우(자산 高價매입)

② 정상가격 산정

-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거래 당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되었을 시가를 정상가격으로 산정
 - 정상 가격의 순차적 산정 방법
 -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
- * 이 경우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 가격의 산출 방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음

③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는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 발행 주식을 非株主인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 지원행위에 해당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는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 발행 주식을 既存株主인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에는
 -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 지분율에 비해 50% 이상 증가할 때에만 지원행위에 해당 (例 : 10%⇒15%)
 - 또한,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행위로 보지 아니함
-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 지원행위에 해당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1.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의 지원은 가능하다.
2.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객체게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 지원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 지원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매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지원객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지원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주식 또는 기업어음 고가매입]
-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객체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금리로 인수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매입]
-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고가매입]
-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지원주체가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 [주식 고가매입]
- ㉩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우회인수]
-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지원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매입]
- ㉫ 지원객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지원주체가 제3자인 대주단에 지원주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매입]

- ㉔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환사채 저가주식 전환]
- ㉕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지원객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
- ㉖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지원객체가 발행한 저금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회사채 고가매입]
- ㉗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가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경우 [부도 유가증권 고가매입]
- ㉘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㉙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관련 사례

사실관계

현대자동차가 2001.2.23 자신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인 씨앤씨캐피탈 주식회사의 발행 총 주식 121,571,567주의 6.82%에 해당하는 830만주를 경영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전일 증권거래소 종가인 1주당 4,800원보다 6.25% 높은 1주당 5,100원 총 매수대금 42,330,000,000원에 장외에서 매입하고, 여기에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원고 현대제철 발행 총 주식수의 4.7%에 해당하는 5,709,517주와 합쳐 11.52%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제1대 주주가 된 사실이 있음. 원고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지 11일 후(거래일 기준 6일 후)인 2001.3.6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현대제철의 주식 전부인 14,009,517주를 시간외 증가매매를 통하여 1주당 4,830원(총 매도대금 67,666,000,000)에 원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이 있음.

법원 판단

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씨앤씨캐피탈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경영권프리미엄을 주고 장외매입한 후 원고 기아자동차에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시가로 장내 매각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원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원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원고 기아자동차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지원행위이고, 원고 기아자동차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행위는 지원객체인 원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거나 시장에서의 유려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시킬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5963)

2.2.3 부당한 임대차 거래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 및 상당한 규모로 임대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① 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정상임대료 vs. 실제임대료)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低價임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정상임차료보다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경우 (부동산 高價임차)

② 정상임대료의 산정

-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되었을 임대료를 정상임대료로 산정
 -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해 정상임대료를 산정
- $(\text{부동산 정상가격} 50/100) \times \text{임대일수}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 / 365 = \text{당해 기간의 정상임대료}$
 -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이자율은 임대인이 정한 이자율이 없거나 정상이자율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 임대료 산정 시 당해 부동산의 종류,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시장에 형성된 정상적인 임대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①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
 $(\text{부동산 정상가격의 } 50/100) \times \text{임대일수}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 / 365 = \text{해당기간의 정상임대료}$
 - ②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본다.
 $\text{해당기간의 임대보증금} \times \text{임대일수}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 / 365 = \text{임대료}$
- 계열사 간 부동산을 임대차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차료를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 계열사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2.2.4 부당한 상품용역거래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및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① 규제대상 포함여부

- 상품·용역의 거래도 그것이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어 규제대상이 됨

② 정상가격의 산정

- 원칙적으로 당해 상품·용역거래 당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되었을 시가를 정상가격으로 산정
 - 정상 가격의 순차적 산정 방법
 -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
- * 이 경우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 가격의 산출 방법) 및 '상속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음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의 조건은 비특수관계인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야 한다.
- 상품·용역거래시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가격을 산정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계열사 지원시 지원추제에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계열사와 거래할 때에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 시장가격(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되 시장가격(정상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적정가격을 따라야 한다.
 - ① 정상가격이란 당사가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의 가격을 말한다.
 - ② 적정가격 산정시 내부와 외부거래시의 이익률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한다.
 - ③ 상품·용역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점이 계열사에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면 부당내부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 본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비용 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도 계열사의 사업활동에 충분한 거래규모가 확보 되는 등 계열사의 사업 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 계열사에 유동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 계열사에 거래 조건의 특혜가 제공되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 상당한 규모의 거래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되며, 현실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의미하므로,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인쇄비/물품 구매 위탁수수료/ 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 계열사에게 무료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안된다.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률보다 높은 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여서는 안된다.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여서는 안된다. 계열사에게 업무의 대부분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주어서는 안된다.
- 계열사 간의 거래물량의 확보만으로 사업의 위험성이 제거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 계열사 간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어서는 안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償却)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지원주체와의 상품·용역 거래를 통하여 지원객체와 비계열회사 간 거래 또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품·용역의 내용·품질 등 거래조건이 유사함에도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양수도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함

- ①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②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③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당해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

관련 사례

사실관계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티비(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함.(지원금액 약 19,992백만원)

공정위 판단

본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주체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지원객체인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되었으며, 그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 방송 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통해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함. 특히 SK텔레콤은 이 같은 거래형태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SK브로드밴드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됨.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6,396백만원 부과함(SK텔레콤 3,198백만, SK브로드밴드 3,198백만).

사실관계

현대상선은 징수 수수료의 입금에 대한 상호 정산이나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대금의 수령을 지연하여 오다가, 1998.1 위 용역계약에 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현대상선이 현대물류로부터 매출액 전액을 수령하는 대신 현대물류에게 추가약정서에서 특정된 운영인건비 등을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운영권 사용대가의 지급방식을 변경함과 아울러 추가약정의 내용을 최초 계약일에 소급 적용하도록 합의하여, 현대물류의 수수료 지급 지체 책임을 사실상 면책시킴.

법원 판단

대법원은 새로운 자금지원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지연수령행위 전부가 자금 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은 원고 글로비스가 설립(2001년 2월)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01년 3월부터 원고 글로비스가 통합 물류체계를 완성한 2004년 6월까지 원고 글로비스에게 자사 제품의 생산·판매에 부수하는 완성차 배달 탁송, 철강 운송 등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 양수도 또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하여 대부분 몰아줌.

법원 판단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물류업무를 집중시켜준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문제된 거래물량의 비중이 당시 물류시장 1위 사업자의 매출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점, 글로비스 전체 매출액의 35.8~41.7%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정하고, 글로비스가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훨씬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시현한 점, 운송단가를 시장가격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한 점, 대부분 수의계약 후 단기간 내 운임단가를 대폭 인상한 점 등을 비추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본 건 지원행위로 글로비스가 산업 평균에 비하여 높은 자기자본 증가율, 매출증가율, 총자본영업이익율을 보인 점 등을 비추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현대글로비스가 설립 후 2년만에 2위 사업자로, 4년만에 1년 사업자로 급부상한 점에 비추어 본건 ‘물량몰아주기’는 글로비스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하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여 부당성을 인정함. (서울고법 2009.8.19 선고 2007누30903판결)

사실관계

기업집단 KPX소속 진양산업(주)는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베트남 현지 계열사 비나폼에 대한 스폰지원료의 수출 영업권(약 3,677백만원)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함.

법원 판단

(주)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기존 매출의 12~22배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하는 등 사업기반 및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되었음.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35백만원 부과함.(진양산업 1,362백만, 씨케이엔터 273백만)

2.2.5 부당한 인력 제공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및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① 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정상급여 vs. 실제지급급여)

- 지원주체가 제공하는 인력과 관련하여, 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당해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실제지급급여)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당해 인력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정상급여)보다 적은 경우
 - 정상급여보다 실제지급급여가 적을 경우에는 당해 인력이 지급받은 급여의 일부를 지원주체가 부담한 것이 되어 지원행위가 성립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 업무지원을 위해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계열사의 인건비를 무상으로 부담하여서는 안 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경우
- ㉢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자신의 소속 인력을 지원객체에 전적·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사실관계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라OO등 자신의 직원 11명에서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담당하게하고 이들의 급여를 에코그린캠퍼스 대신 지급하였음. 피심인 삼양식품은 자신의 소속 임원들로 하여금 에코그린캠퍼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음. 삼양식품 소속인 이OO는 2007.5.31부터 2011.3.28까지, 그리고 박OO는 2011.3.29부터 2015.3.31까지 에코그린캠퍼스 대표이사를 겸임하였음.

공정위 판단

삼양식품 주식회사는 인력을 파견하여 계열회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를 지원하였고,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인력을 파견받고 차량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피심인 삼양식품 주식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음.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02백만원)을 부과하였음.

사실관계

에치엔지는 2016년 8월 케이비랩 설립 당시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사인력을 연도별로 최소 4명, 최대 15명까지 케이비랩에 파견하면서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 총 904,371,523원*을 대신 지급하였음. * 지원금액 = 정상급여(976,371,523원)-실제지급급여(72,000,000원) 케이비랩이 100% 에치엔지의 자회사였던 기간(1기간)의 경우, 에치엔지업무를 병행하는 인력이 케이비랩에 파견되었는데 케이비랩은 자체채용 인력 전혀 없이 파견인력으로만 회사를 운영하였음. 케이비랩이 동일인 2세 개인회사였던 기간(2기간)의 경우, 파견인력 비중이 케이비랩 전체 인력의 최대 87.5%로 소수 인원만을 자체 채용하였고, 파견직원들은 케이비랩의 업무만 담당하였음.

공정위 판단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경쟁 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음. 케이비랩은 브랜드‘랩노’의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매출액은 2016년 42백만 원에서 2019년 2,547백만 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음.

이 사건 지원행위로 케이비랩은 자본잠식 상황에서 손익이 인위적으로 개선되며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랩노는 런칭 이후 현재까지 약 8년째 판매* 중임.

* 현재 기업집단「한국콜마」소속 계열회사인 콜마생활건강(주)에서 판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1억을 부과하였음.(에치엔지4억, 케이비랩1억)

2.2.6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통행세)

-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거래상 지원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①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행위 (소위, 통행세)

-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거래상 지원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행위에 해당

②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 판단 기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분석·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방식인지 여부
- 지원주체가 역할이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함으로써 지원객체에게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지원객체를 거쳐서 거래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계열사의 구체적 역할)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당사의 거래비용 절감, 당사의 규모의 경제달성 등 구체적 역할 입증.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매개가 있기 전에 비해 매개가 있은 후 불리, 불이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당사의 지급금액은 그대로인데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비계열사에는 그만큼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중간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과 거래관계의 변동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의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단계에 추가시켜 수익을 귀속시키게 하지 않는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2.2.7 우회지원행위 행위(제 3자 매개 간접거래)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지원의 의도하에 제3자를 매개한 거래를 통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① 우회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지원주체⇔제3자⇔지원객체)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지원의 의도하에 제3자를 매개한 거래를 통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원행위에 해당

② 우회지원행위에서의 지원금액 산정

- 지원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킬 수 있는 경제상 이익만을 고려하여 산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지원객체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한 경우
-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저리의 할인율로 매입한 경우

사실관계

2005년말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음.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 시에, 엘에스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하여 통행세를 지급해옴.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장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구)엘에스전선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주)에 지시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주)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함.

사실관계

하이트진로는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남. 당초 삼광글라스(제조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고, 나중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캔의 원재료)과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함. 특히, 서영이앤티가 보유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이면 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된 회사에 거래 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까지 함.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중소기업에 각종 피해를 끼치며 총수1세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구축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주)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주)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주)를 교사하여 장기간(2008년 4월~2017년9월)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주)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함.

사실관계

롯데피에스넷은 기존의 직거래방식과는 달리, 2009.9월부터 2012.7월까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구)롯데기공)을 통하여 구매하였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면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음. 따라서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649백만원)을 부과하였음.

2.3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사례(심화)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 소속 계열회사 간 부당한 지원 행위 제재

범위반내용

(주)코스비전은 2008년 1월 8일 법인으로 전환한 후 본격적으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년 10월 (주)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되었으며, (주)코스비전이 제조하는 화장품은 모두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 내 화장품 판매 계열회사인 (주)아모레퍼시픽, (주)이니스프리 등으로 판매되고 있음.

(주)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 소속 화장품 판매 계열회사인 (주)이니스프리, (주)에뛰드 등의 매출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2013년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하여 신공장의 건설을 추진했으나,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이미 공장 신축 비용 부담 등에 따른 현금 흐름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대규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 능력도 부재하여 자력으로 금융 기관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었음.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주)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원 정기 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고, 그 결과 (주)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동안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1.72 ~ 2.01%의 저리로 총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음.

이때 (주)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1.72 ~ 2.01%)는 (주)코스비전의 개별 정상 금리(2.04 ~ 2.33%)보다 최소 13.7% 이상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주)코스비전은 60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 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었던 것에 추가하여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1.39억원)까지 수령하는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음.

제재내역

1. (시정명령) (주)아모레퍼시픽그룹, (주)코스비전
2. (과징금) (주)아모레퍼시픽그룹(4,800만원), (주)코스비전(4,800만원)

법위반내용

1. 와인 저가 공급을 통한 지원행위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하여 거래함.

롯데칠성의 와인 저가 공급 지원행위로 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MJA의 매출 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 2012년 1,123백만 원에서 2019년 5,097백만 원으로 약 3.5배 증가함.

2. 와인 판촉 사원 비용 부담을 통한 지원행위

롯데칠성은 MJA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 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였고, 그 지원행위가 공정 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음.

롯데칠성은 2009년 9월부터 MJA의 손익 개선을 위해 판촉 사원 비용(용역업체와의 용역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은 2013년 9월까지 판촉 사원 비용을 계속 부담하였으며, 이후 잠시 중단하였다가 2016년 3월 MJA의 손익 개선을 위하여 이 지원행위를 다시 실행함.

롯데칠성의 이 지원행위로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어 3개년(2013~2015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음.

3. 인력 제공을 통한 지원행위

롯데칠성은 자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 활동 등 핵심적이고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MJA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MJA를 부당하게 지원하였으며 MJA는 와인 임대 매장 수의 증가와 관련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명 내외의 직원들만 직접 고용하고 단순 업무(월말 전표 마감 등)를 맡김.

조치사항

1.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 (3개 지원행위), 행위중지명령 (인력 제공 한정)
2. (과징금) 총 1,185백만 원 (롯데칠성: 707백만 원, MJA : 478백만 원)
3. (고발) 롯데칠성음료 (법인)

의의 및 기대효과

1. 100% 모자(母子)회사 관계라 하더라도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자회사를 다양한 지원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존속시킴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에 의의
2.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경쟁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관련 시장 내 잠재적인 경쟁 기반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상적인 수단을 통해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3.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하여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태가 사라지고, 건전한 시장 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함.

법위반내용

삼성전자 등 4개사는 13년 4월부터 심의일(21.6.2.)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거래 상대방 선정에 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임금인상을 자동 반영 등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1. 웰스토리의 이익보전을 위해 동종업계에는 없는 파격적으로 유리한 계약 거래조건 설정함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와 수의계약으로 계속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①식재료비 마진 보장, ②단가제 계약방식에는 없는 위탁수수료(인건비의 15%) 지급, ③소비자물가 및 최저임금에 연동한 식단가 매년 인상 등 세 가지 거래조건을 삼성전자가 웰스토리에게 설정하여 줌으로써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함.

삼성전자가 웰스토리에게 인정하여 준 거래조건은 동종업계 어디에도 없고, 심지어 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없는 파격적인 거래조건임.

2. 미전실, 계약구조 변경안 승인 및 관계사 확산

미전실장 최지성은 전자급식개선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보고받고 확정(13.2월말) 하였으며, 미전실은 웰스토리를 통해 동 계약구조의 골격을 각 지원주체가 가감없이 따르도록 지시 및 계열사에 대해 향후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함.

미전실은 전자 급식개선 T/F에 의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전자군 관계사(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 확산하는 후속조치에 개입함.

3. 미전실 주도로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식수물량 이탈 방지)

미전실 주도로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14년, 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대외 개방(경쟁입찰)을 중단(지시) 시켰고, 이러한 미전실의 영향으로 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사실상 무산됨.

4. 4개사의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

약 9년간의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13~19년 평균)을 실현하였고, 웰스토리는 비경쟁 방식의 내부거래를 통해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함.

수료율을 '09년과 동일한 5.5%로 다시 인상함으로써 지원행위를 종료함.

조치사항

1. 적용 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총 234,927백만 원)

. 삼성전자: 101,217백만 원

. 삼성디스플레이: 22,857백만 원

. 삼성전기: 10,511백만 원

. 삼성SDI: 4,369백만 원

. 삼성웰스토리: 95,973백만 원

- 고발 : 삼성전자(주), 前미전실장

의의 및 기대효과

단체급식 시장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심으로 독과점이 심화되고 계열사 간 높은 내부거래 비중으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왔던 대표적 업종임.

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자, 본격적으로 단체급식 분야 실태조사에 착수하였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단체급식 시장 전체 거래물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 그룹의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였음.

웰스토리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확보한 이익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 -3%에도 수주를 감행함으로써 입찰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다른 급식 입찰에서도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쟁 급식기업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됨으로써 단체급식 시장의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함.

에스케이텔레콤의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법위반내용

[휴대폰 결제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 낮게 적용을 통한 지원행위]

에스케이텔레콤은 '09. 1월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서비스 사업부문인 '멜론'을 당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회사인 로엔에 양도함.

'멜론'의 운영주체가 에스케이텔레콤에서 분리됨에 따라 로엔은 다른 음원사업자와 같이 이통사인 에스케이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함.

에스케이텔레콤은 '09년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다른 음원사업자와 유사하게 5.5%로 적용하였으나, '10~'11년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1.1%로 인하여 줌으로써 로엔에서 지급받아야 할 금액 52억 원 가량을 수취하지 않으므로 엔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

이후, 로엔이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 '12년 에스케이텔레콤은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09년과 동일한 5.5%로 다시 인상함으로써 지원행위를 종료함.

조치사항

1. 적용 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

의의 및 기대효과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 (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 .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함.

법위반내용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은 월 12. 1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섬벤 판매 지분 100%를 증여하였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 下에 다음 3 가지 행위를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

1. (고가 매입)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월부터 12.1월부터 17.2월까지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함.
2. (통행세 거래)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12.2월부터 17. 2 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함.
3. (주식 저가 매각) 제일홀딩스는 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3. 1 舊올품 주식 100%를 한국섬벤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함.

조치사항

1. 적용 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항 제 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2 제1항, 동조 제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88백만원 부과

의의 및 기대효과

1. 동일인 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에 의한 일련의 지원행위를 적발함.
2. 계열사들에 의한 지원금액을 기반으로 지원객체가 자신이 직접적으로 속한 시장을 넘어 자신의 자회사가 속한 시장에까지 지원행위의 효과를 전이시킨 행위를 적발함.

법위반내용

1. 컨테이너 운송 거래를 통한 지원 행위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내륙 운송 물량 전량(830억 원에 해당)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여 총 87억 원을 지원했음.

2. 탱크로리 운송 거래를 통한 지원 행위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탱크로리 운송 거래를함에 있어서 현저한 규모의 물량(1,518억 원에 해당. 물량 면에서 국내 유해 화학 물질 운반 시장의 8.4%에 해당)을 한익스프레스에게 배타적으로 위탁하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여 총 91억 원을 지원했다.

조치사항

1. 적용 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 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

<적용 대상>

거래명	지원기간	적용대상	비고
컨테이너	2008.6.~2019.3.	한화솔루션	지원 주체
	2014.6.~2019.3.	한익스프레스	지원 객체
탱크로리	2010.1.~2018.9.	한화솔루션	지원 주체
	2014.6.~2018.9.	한익스프레스	지원 객체

- 시정명령 : 향후행위 금지 명령

- 과징금 부과(총 229억 7,000만 원)

. 한화솔루션 : 156억 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72억 8,300만 원)

- 고발 : 한화솔루션(주)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비록 해당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 회사는 아니지만, '관계사'라는 명분으로 범(汎) 총수 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물류 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확인하여 엄중 조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집단의 계열(소위 '관계사' 포함) 운송 회사에 집중되던 물량이 건전한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경쟁력 있는 독립·전문 물류 기업에게도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함.

창신그룹(나이키OEM업체) 해외 계열사를 통한 부당지원 행위 제재

법위반내용

1. 지원 교사 행위

창신INC는 2013년 5월 해외 생산 법인들에게 서흥(창신그룹 회장 자녀들을 최대주주로하여 설립된 회사로 창신그룹의 자재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에게 지급하는 신발 자재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해 7.2%의 추가 수수료를 얹어서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음.

- 창신INC가 해외 생산 법인들에게 수수료를 인상을 지시한 목적은 “서흥의 유동성 확보”였음.
- 한편, 해외 생산 법인들은 창신INC의 해외 생산 기지에 불과하여 모회사이자 창신그룹의 본사인 창신INC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으며, 내부 불만이 있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는 없었음.

2. 해외 생산 법인을 통한 지원 행위

창신INC의 지시를 받은 해외 생산 법인들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7%p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서흥에게 총 4,588만 달러(534억 원)의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같은 기간 서흥에게는 구매대행 관련하여 수행하는 역할*의 변화나 추가적인 비용 투입 등 수수료를 인상하여 받을 사유가 되는 어떠한 사정 변경도 존재하지 않았음.

조치사항

1. 적용 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교사자 및 지원 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

<적용 대상>

사업자	지원기간	과징금	비고
(주)창신이앤씨	2013.6~2016.6.	152억	교사자
창신베트남유한회사	2013.6~2016.6.	62억	지원 주체
청도창신혜업유한공사	2013.6~2016.6.	46억	지원 주체
창신인도네시아유한회사	2013.6~2016.6.	28억	지원 주체
(주)서흥	2014.4~2016.6.	94억	지원 객체

- 시정명령 : 향후행위 금지 명령

- 과징금 부과(총 382억 원)

- 고발 : (법인) 창신아이앤씨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이 참여하지 않아 중견 기업 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부당 지원을 통해 공정거래 저해성을 초래하고, 부의 이전효과를 낳은 중견 기업 집단의 위법 행위를 확인·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부당 지원 건만 놓고 볼 때, 그룹 본사의 기획·지시 하에 해외 계열사를 동원하여 회장 자녀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찾아 지원행위에 동원된 해외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서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Q1. 계열회사 간의 제반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1.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와 부당지원행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회사와 차별하여 계열회사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아울러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자금, 자산, 인력 등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Q2. 계열회사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소규모 인원이라 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가?

A2. 특정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원을 파견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다수 계열회사들이 동시에 특정 계열회사에 인원을 파견한다면 인력을 통한 부당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당지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비용 정산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Q3.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거래시 특별한 역할이 없는 해당 계열회사를 거래 중간단계에 포함시켜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

A3.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거래하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중 '통행세 지원행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½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지원행위를 하여 해당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 이내의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업자보다 상당 기간 낮게 설정하여 경쟁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이미지 개선 등 사업능력이 증대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 ㉤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객체가 사업기반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게 되는 경우
-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해당계열회사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경우
-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화하여 설립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 ㉣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부문을 분사화하여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분사 이전의 시설투자자금 상환·연구기술인력 활용 및 분사후 분할된 자산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경우로서 기존 기업의 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완전지주회사가 완전 자회사에게 자신의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 ㉥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 조 제 1 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 2 조 제 8 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 7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2.4 내부거래 시 주의사항

▶ 원칙 : 내부거래 시 비계열사와 거래한다는 가정하에 거래조건 설정

자금거래	- 자금을 대여받는 회사(지원객체)의 신용도에 맞는 금리 산정 - 유사 시식, 유사 규모, 유사 차입기간의 자금을 독립된 금융회사에서 차입하는 경우의 금리 수준
자산거래 (주식,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가능한 외부 전문 기관의 평가를 통해 평가 금액을 산정하여 거래
부동산 임대차 거래	- 동일한 조건의 비계열사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조건 참고 - 동일한 조건의 거래가 없는 경우, 인근 부동산(최대한 유사한 용도의 부동산으로서 위치나 구조 등이 유사한 것)의 비계열사간 거래 조건 참고 (임대료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관리비 등 기타 조건도 고려)
인력파견 거래	- 근로 제공 회사와 급여 지급 회사를 일치하여야 함. 2 이상의 계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에 따른 급여 적정 배분

- 수익계약 거래 - 수익계약 기준 및 사유 적정성 검토 (거래조건 검토)
 - 시장조사등을 통한 시장참여자 정보 수집하고
 - 제안서 제출 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하여
 - 합리적 사유로 선정해야 함
- 중간 마진 거래
 - 거래 중간단계의 계열사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수수료(마진)가 그 역할에 부합하는지 평가
 - 중간 역할의 계열사가 없을 경우 부담해야하는 직접 비용과 계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교하여 거래 여부 결정

3. 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3.1 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제공금지의 개념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① 대상

- 지원주체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동일인이 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의미
-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 특수관계인

동일인(총수) 및 그 친족(동일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에 한정한다.

☑공정거래저해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처벌의 대상이 된다.

- 지분보유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보통주, 우선주, 자사주,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의결권 주식 등 주식의 종류 및 의결권 제한 여부를 불문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여기서의 지분이란 직접 보유한 지분만을 의미하고,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분의 보유 여부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차명주식, 우회보유 등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그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에 해당한다.
-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라 함은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이 함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인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의 친족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동일인의 친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동일인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② 위법성 판단기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 1항 제9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용어의 정의

- 제공주체 : 금지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한자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특수관계인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특수관계인 회사 : 계열회사 중에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상장회사/비상장회사 동일)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 제공객체 :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회사로서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
- 이익제공행위 :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①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사업기회의 제공, ③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④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3.2 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제공금지의 유형

3.2.1 상당한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상품·용역 거래**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는 제공객체가 제공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등(실제지급급여)이 해당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제공주체와 제공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등(정상급여)보다 적은 때에 성립한다.
- **적용제외** :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7%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 억원 (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조건 차이와 거래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즉, i) 거래총액은 적으나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많은 경우 또는 ii)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는 작으나 거래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연도 거래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거래총액이란 제공객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 허용되는 대상 행위 [안전지대] (Do)

-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조건 차이와 거래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① 거래총액은 적으나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많은 경우 또는 ②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는 작으나 거래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1.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나 제공받지 말아야 한다.
2. 고가매입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말아야 한다.
3.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4.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하지 말아야 한다.
5.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가를 치르고 산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매각하지 말아야 한다.
6.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7.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 사례

사실관계

(주)세아창원특수강은 (주)CTC(HPP자회사)에게만 적용되는 물량할인 제도를 통해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총 14회 분기 중 12회에서 정상 할인액(400원/kg)보다 더 높은 할인액(1,000원/kg)을 적용하여 다른 비계열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주)CTC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주)세아창원특수강은 (주)HPP의 자회사인 (주)CTC가 타 경쟁사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별도의 가격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하고, (주)CTC의 주력 제품(반도체 및 코일튜브용 강관)에만 적용되는 물량할인(QD: Quantity Discount) 제도를 신설하여 (주)CTC를 지원하였음.

<세아창원특수강 작성, CTC 이슈사항(2016. 1. 27.)>

씨티씨 이슈사항	추진계획
○가격지원 방법 모색 中 - QD 제도를 씨티씨에만 공개 및 진행하는 가격지원 방법 추진 中 → QD물량을 채우기 위해 연간물량(약 200~300톤) 계약 필요함 으로 씨티씨 내부 검토 필요	씨티씨 연간물량 검토 요청

공정위 판단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주)CTC는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 92억 원 대비 지원기간 동안인 2016년 153억 원, 2017년 263억 원 등으로 크게 상승.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행위를 하였다고 보았다.

조치 내용

1. 시정명령: (주)세아창원특수강, (주)HPP, 이태성
2. 과징금: 총 32.7억 원 (잠정)
3. 고발: (주)세아창원특수강

3.2.2 사업기회의 제공

- 사업기회의 제공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허용되는 대상 행위 [안전지대] (Do)

-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①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법률적 불능 또는 경제적 불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사업기회가 회사에게는 법적으로 진출이 금지된 사업인 경우에는 '법률적 불능'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며, 사업기회 검토 당시에 회사의 재정적 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인 경우에는 '경제적 불능'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 ②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기회가 지니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사업기회의 시장가치는 사업기회 제공이 이루어지는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기회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가의 지급에는 현금 내지 현금대용증권 외에도, 해당 사업에 관한 부채를 인수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당한 대가가 지급 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기회 제공 내지 대가 지급에 앞서 해당 사업기회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③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는 사업기회의 가치와 사업기회를 수행함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사업기회 거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업기회를 제공한 회사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공주체가 해당 사업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전체적인 기업집단 차원에서 볼 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평가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제공주체가 이사회 승인을 통해 사업기회를 거부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에의 의사결정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 위법성 판단기준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란, 구체적으로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의미한다. 이때,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인 회사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공객체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공객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더 잘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이익의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요소가 아니다.
- 사업기회 제공 당시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영업권이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해당할 수 있다.
- 회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기회'에는 ①사업기회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하여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②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설비 투자 등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된다.
 - ① '수행할 사업'이라 함은 사업수행 여부에 대해 외부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부적 검토 내지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한다.
 - ②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본래 사업과의 유사성, 본래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인지 여부, 본래 사업과 전·후방으로 연관관계에 있는 사업인지 여부, 회사재산의 공동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때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회사의 사업과의 관련성은 원칙적으로 그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도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에 해당한다.
- 사업기회 제공은 회사가 사업양도, 사업위탁,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자회사의 주식을 제공객체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을 통해 제공객체에 사업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외에도, 자회사의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제공객체에게 실권주를 인수시키는 행위, 회사가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제공객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공객체의 사업기회 취득을 묵인하는 소극적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3.2.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 함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허용되는 대상 행위 [안전지대] (Do)

- 원칙적으로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해당 거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입찰절차를 거쳤지만 애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낙찰자 선정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전에 시장참여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비교하거나(복수의 계열회사로부터만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한 뒤 통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쳐서 합리적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 당사자가 선정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는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거래 당시 제공객체의 경제적 상황, 제공객체가 얻은 경제적 이익,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거래총액 및 거래비중에 다른 적용제외 : 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 이 200 억원 미만이고(거래총액 요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거래비중 요건)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효율성·보안성·긴급성에 따른 적용제외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 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적용이 제외된다.

①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거래
-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거래

-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 회사가 전담하는 경우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래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 이와 동시에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이어야 한다. 이 때 효율성 증대효과는 해당 이익 제공행위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하다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거나 여러 사업자로부터 제안을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제조 공정에서 상품의 특성상 계열회사의 부품·소재 등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거나, 계열 회사로부터 부품·소재 등을 조달 받아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 이미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거나, 현저한 비용·시간·노력이 소요되어 사실상 호환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 해당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설계, 구현, 운영 등 단계에서 계열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 ㉣ 회사의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분할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설하고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통해 부품·소재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 ㉤ 계열회사 별로 직접 운영하던 기능 또는 조직을 분사 및 통합하여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해당 전문화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 회사의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계열회사가 일정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 ㉦ 업무 절차 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 계열회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나 표준화되고 유사한 구조로 구축되어 있어 상호 거래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발한 계열회사와 관련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발함에 있어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재개발 또는 증설을 통해 고도화함에 있어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에 대해 부분적으로 기능의 개선 또는 변경, 추가, 하자보수함에 있어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㉓ 사용자가 많거나 사용 빈도가 높아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상품·서비스 관련 사업으로 계열회사 외에 신뢰성이 검증된 다른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 ㉔ 상품·서비스 생산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 ㉕ 장치산업에 있어 기존 공정에 연계되거나, 기존 공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용역 수행자인 계열회사와 계속 거래하는 경우
- ㉖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와 이미 거래한 건으로서 해당 계열회사와 계속 거래를 하여야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㉗ 계열회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나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업체와 거래할 경우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②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 이와 동시에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의미한다.
-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과 관련된 거래라고 하여 모두 법 적용제외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리적 보안장치 구축, 보안서약서 체결 등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외부 업체와 거래하더라도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㉙ 새롭게 개발되어 아직 관련 보안기술이 시장에 보급되지 아니한 필수시설·핵심기술의 관리·보관이 필요한 경우
- ㉚ 핵심적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기밀보호구역 등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㉛ 방위산업체로서 군수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함에 따라 국가안보에 관한 비밀정보 취급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비계열회사인 시스템통합업체와 거래할 경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비밀정보가 외국 등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㉔ 신상품 개발 및 출시와 관련하여 비계열사를 통한 운송 시 해당 상품의 기술 또는 디자인 등 공개되기 전까지 극비에 붙여야 할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㉕ 인재채용을 위한 시험지의 보관·운송 등 거래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정책이 요구되는 경우

③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긴급성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이어야 한다.
- '회사 외적 요인'이라 함은 불가항력적 요인을 일컫는 것으로서, ① 예견할 수 없거나(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② 예견할 수 있어도 회피할 수 없는(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외부의 힘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사 스스로 긴급한 상황을 자초하거나 회사 내부적으로 긴급한 사업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긴급성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라 함은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단기간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상품의 성격이나 시장상황에 비추어볼 때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는 사회통념상 대체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㉑ 상품 생산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 설비 등을 외국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국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그 외국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㉒ 물류회사들의 연대적이고 전면적인 운송거부 내지 파업 상황에서 긴급하게 물량수송이 필요한 경우
- ㉓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품수거 또는 리콜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상품을 시장에서 수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㉔ 랜섬웨어, 디도스해킹 등 긴급 전산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다수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피해 확산 등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계열회사인 시스템통합업체와 거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㉕ 외부업체의 지급불능, 법정관리, 기업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사업자를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대체사업자가 없거나 대체사업자를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㉖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3.3 사익편취 제재 사례(심화)

기업집단「태광」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엄중 제재

법 위반내용

[김치구매]

휘슬링락CC는 2011년 개장 이후 계속된 영업 부진에 따라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으며, 2013년 5월 휘슬링락CC가 총수일가 100% 소유회사인 티시스에 합병되어 사업부로 편입되면서 티시스 전체의 실적까지 악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함.

이에 다수의 총수일가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김기유는 동일인 이호진의 지시, 관여 아래 티시스의 실적 개선을 위해 2013년 112월 휘슬링락CC로 하여금 김치를 제조하여 계열사에 고가로 판매하기로 계획함.

김기유는 2014년 5월 그룹 경영기획실이 설치되자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계열사에 김치 단가(19만 원/10kg)를 결정하고 구매 수량까지 할당하여 구매를 지시함.

한편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 김치를 회사 비용(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으로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들은 김치구매 비용이 회사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와인구매]

메르뱅크는 2008년 총수일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와인 소매 유통 사업을 영위해왔음.

2014년 7월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소위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확대를 도모하면서 그 일환으로 계열사 선물 제공사안 발생 시 메르뱅크 와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고, 더 나아가 2014년 8월에는 메르뱅크 와인을 임직원 명절(설, 추석) 선물로 지급할 것을 각 계열사에 지시했다.

이에 각 계열사들은 일사불란하게 각 사별 임직원 선물 지급 기준을 개정해 복리후생비 등 회사 비용으로 메르뱅크 와인을 구매하여 임직원 등에게 지급했다.

세광패션과 같은 일부 계열사는 김치 구매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을 사용하여 와인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태광 전(全)계열사들은 와인 가격 등 거래 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각 계열사들은 경영기획실 지시라는 점 때문에 메르뱅크가 제시하는 가격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원효과

기업집단 '태광' 소속 전(全)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는 최소 33억 원에 달한다.

김치 고가 매입을 통해 휘슬링락CC(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된 이익은 최소 25.5억원이며 이는 대부분 이호진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되었다.

와인 대량 매입을 통해 메르뱅크(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된 이익은 7.5억원이며 동일인의 처 등에게 현금 배당, 급여 등으로 제공되었다.

기업집단 '태광' 소속 전(全)계열사들은 2016년 9월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구매 물량을 대폭 증가시켜오고 있었으며

거래 객체인 티시스(휘슬링락CC)와 메르뱅크 모두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후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우려가 상당했다.

조치내용

1. 시정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태광그룹 소속 19개 회사, 이호진]
2. 과징금: 총 21.8억 원 (잠정)
3. 고발: [법인] 태광그룹 소속 19개 회사, [개인] 이호진, 김기유

「한국타이어」부품사 수직계열화 과정의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

법 위반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이하 '한국타이어')가 (주)한국프리스티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80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함.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 방식(이하 '신단가정책')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프리스티전웍스(이하 'MKT')를 지원함.

한국타이어는 '12년부터 제작 난이도·인치별로 몰드 가격을 세분화하는 단가 정책 수립을 추진하였고, '14. 2월 MKT가 매년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신단가 정책을 수립·시행 우선,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하였는데(판매단가 기준 25% Mark-up 방식), 이는 동종업계는 물론 기존에 한국타이어 자신도 활용하지 않던 이례적인 방식이었음.

* 신단가표는 「제조원가+판관비(10%)+이윤(15%)=단가」로 구성되며, 금호·넥센 등 다른 제조사는 몰드 제조사에 판관비나 이윤 등을 보장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상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신단가표를 설계함, 아울러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 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발주정책도 함께 마련함. 이러한 신단가표 하의 거래조건은 한국타이어 스스로 조사한 경쟁사의 가격보다 약 15% 높았고, 구단가 적용 대비 매출액이 16.3% 증가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음.

적용법조 조치내용

1. 적용 법조 :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제1호(지원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3항(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총 80억 3백만 원
(고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임.

특히, 이 사건은 한국타이어의 부품 계열회사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을 면밀히 조사하여 부품 가격 인상 및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였음을 입증하였음.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SK(주)의 사업기회 제공 사례

법 위반내용

SK(주)는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SK(주)의 대표이사이자 SK의 동일인인 최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인수 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했다. 나아가 최 회장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SK(주)가 앞선 주식 취득 과정에서 잔여주식 29.4% 인수는 '추후 결정' 하기로 내부 검토했는데, 이후 최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이사회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장동현 SK(주) 대표이사 부회장이 SK(주)의 입찰 참여를 포기토록 하였다.

공정위 판단

자신이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계열회사 잔여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함(법인 8억원, 특수관계인 8억원)

법 위반내용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 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 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 원

고객 접대 등의 일반 거래 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용 원칙에 따라 타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이 제한

행사·연수 시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는 것을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해당 시설에서 행사·연수를 진행

골프장 광고는 2013년 7월 경 골프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기획된 이래 2015년 이후에도 블루마운틴cc 수익 증대 목적으로 광고 매체가 추가되고 주요 3사 간에 안분

그룹 차원의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에 소속된 구매 전담팀(T/F)는 블루마운틴cc 개장 직후인 2013년 추석 즈음부터 임직원 및 고객용 선물을 그룹 통합 구매로 변경하면서, 일부 고가 제품(한우, 수산물 등)을 블루마운틴cc가 공급하도록 했고 2016년 추석부터는 포시즌스호텔도 공급처로 추가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위와 같은 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

적용법조 조치내용

1. 적용 법조 : 행위 주체 11개 사(행위 주체) - 법 제23조의2 제1항(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행위)제4호(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행위)
미래에셋컨설팅(행위 객체) - 법 제23조의2 제3항
박현주(관여자) - 법 제23조의2 제4항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과징금 총 43억 9,100만 원 부과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의 일감나뉘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내부거래관련 고법 판결

법 위반내용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①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거래와 ②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 인수가 결합된 '일괄 거래'를 진행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30년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 원 상당의 BW를 발행하여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음('16.12.~)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부속 계약, 부속 합의 등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기내식·BW 일괄 거래를 진행

일괄 거래의 본질은 아시아나항공이 독점 기내식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보증·담보한 것

금호고속 BW 금리(0%)는 정상 금리(3.77, 3.8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총 162억 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받음

일괄 거래 지연으로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급박해짐에 따라 금호아시아나 9개 계열사들은 금호고속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16.8.~'17.4.)

금호고속은 정상 금리(3.49~5.75%)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총 7.2억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 받음

적용법조 조치내용

1. 적용 법조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지원 주체에 대한 규정), 제3항(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 및 4항(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
[부당한 지원 행위] 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 주체 및 교사자에 대한 규정) 및 2항(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총 320억 원 과징금 부과
(법인)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개인) 박삼구, 박홍석, 윤병철 고발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조치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3의 기업·그룹을 매개로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

기업집단 '오씨아이' 부당 내부거래 제재

법 위반내용

- 군장에너지는 자신의 발전소에 사용될 유연탄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삼광글라스 등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유연탄 구매입찰을 총 15회 실시함.

(삼광글라스는 이 사건 15회 입찰에서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의 권고·지시 또는 직접적인 개입에 따라 2가지 변칙적인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

- (발열량 상향 입찰참가) 삼광글라스는 5차례 입찰에서 해외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하는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20~300kcal 높여* 최저가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여 4번 낙찰.

* 이러한 입찰참가 방식은 다른 경쟁업체는 적발시 입찰시행사로부터 입찰참가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전략이나, 이 건의 경우 입찰시행사인 계열사 이테크건설이 삼광글라스에게 발열량 상향 투찰을 지시하였으므로 삼광글라스는 다른 경쟁사와는 달리 안심하고 이러한 투찰전략을 사용할 수 있었음

- (입찰실시자료 제공) 삼광글라스는 10차례 입찰에서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로부터 입찰 전략 수립에 중요한 입찰운영단가비교표, 타사 견적서, 입찰계획 등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활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작성·제출하여 9번 낙찰.(이들 자료는 비공개 영업비밀 자료로 다른 입찰참가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삼광글라스에게만 제공)

- 이 건 지원행위로 삼광글라스는 유연탄 소싱사업 신규업체임에도 2017.6월부터 2021.3월까지 군장에너지 향(向) 입찰물량의 46%인 180만 톤,금액으로는 1,778억 원 상당의 유연탄을 군장에너지에 공급하여 약 64억 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삼광글라스의 이복영, 이우성 등 특수관계인들도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법조 조치내용

1. 적용 법조 :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주체 및 교사자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제4호(합리적인 고려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동조 제3항(제공객체에 대한 규정)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잠정금액, 총 110.2억 원)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

IV

경쟁사 관련 공정거래

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이해

구분	내용
부당 공동행위	◆ 2이상의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등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또는 합의하게 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①가격 결정·유지·변경 ②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③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④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⑤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⑥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⑦영업의 주요 부분 공동관리 ⑧입찰담합 ⑨경쟁상 민감한 정보교환 (신설)
법률상 합의추정	◆ 다음 경우 법률상 합의로 추정 (법 제40조 제5항) ①거래분야, 상품·용역 특성,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②40조 제1항 제1호~8호의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은 때
입찰담합	◆ 공정위 입찰담합 심사지침 (공정위 예규 제392호) ①입찰가격담합: 최저/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결정 ②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낙찰예정자, 선정방법 결정 ③수의계약 : 특정사업자의 수의계약 결정, 유도 ④수주물량결정 : 입찰수주물량과 입찰참가자간 배분결정 ⑤경영간섭 : 입찰지도 시 입찰가격, 수주예정자 결정 영향
정보교환 담합	◆ 가격, 생산량, 상품·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정보교환 담합 추정	◆ 제40조 제1호부터 제9호(제9호 후단 제외)까지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격 등이 유사 또는 동일 해지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음 ◆ 추정 복명: 합의 추정 시, 그 합의 추정의 전제 사실에 반하는 정황을 입증하여 추정된 합의를 복명 가능
위반 시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20% 이내 (40억 이내)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과거 5년간 벌점누계 5점 초과 ◆ 검찰고발, 입찰방해죄(형법), 손해배상청구 등
면책 및 보상	◆ 리니언시: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 시 시정조치, 과징금 감면 ◆ 검찰리니언시: 카르텔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 엠네스티플러스: 다른 담합 관련 정보제공 시 감면 ◆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1.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01 가격 결정·유지·변경

02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0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0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05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06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07 영업의 주요 부분 공동관리

08 입찰담합

09 경쟁상 민감한 정보교환 (신설)

2인 이상
사업자

+

공동행위
합의

1.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1.2.1.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40조 제1항)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①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②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③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④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 2인 이상의 사업자.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는 제외
* 100% 모회사 관계 (단, 자회사가 실질적 독립 경영 또는 제3자를 포함한 입찰담합 제외)

②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성)

당연 위법의 원칙 (per se illegal)	합리의 원칙 (rule of reason)
• 합의의 존재만 입증되면 추가적인 <u>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분석 없이</u> 곧바로 위법성 인정	• 합의의 존재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u>합의의 효과가 경쟁제한적이라는 추가적인 입증</u>이 있는 경우만 위법성 인정
• 경쟁제한적 효과만 발생 (경성 공동행위)	•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 (연성 공동행위)
• 가격고정 (인상/인하/유지) • 입찰담합 / 산출량의 결정, 제한 • 거래상대방, 지역 분할	• 공동생산 / 공동마케팅 • 공동연구·개발 • 공동 구매 등

③ 공동행위의 합의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든 사업자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명시적 합의	• 계약, 협정, 협약, 결의, 양해각서, 동의서 • 현실적으로 실행하지 않아도 합의의 존재만으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 (대판 2001.5.8. 선고 200두 10212, 서울고법 2000.11.16선고 99누6226 포스틸 등 4개 강판제주업체의 운송비 공동행위 결정 건)
묵시적 합의	• 암묵적 양해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자의적 의사표시) 합의도 포함 예) 입찰에서 100억원 이상 가격제출 합의 후 80억원으로 입찰 후 낙찰
합의의 추정	• 합의의 직접적 증거가 없어도 직/간접적 의사연락 또는 정보교환 증거, 시장상황의 결과나 산업구조상 합의 없이 행위의 일치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는 합의 추정됨 *21.12.30.자 법 개정으로 기존 사실상 추정에서 법률상 추정으로 변경

④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행위

- 교사행위 성격을 포함 / 단순 방조 행위는 불포함
- 수직적 공동행위 인정여부

성격	• 일정한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하는 수직적 합의를 규제하는 것
현행법	• 수직적 합의 유형은 불공정거래행위 (배타 조건부 거래, 거래지역/상대방의 제한, 끼워팔기) 및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로 규제 * 현행 공정거래법은 수평적 행위만 규제
미국	• 수직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 합의도 Sherman Act 1조 적용, 수직적 공동행위인정
EU	• EU 기능조약(TFEU*) 제 101조에 수직적 담합행위에도 적용 *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1.2.2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 추정 제도 (법 제40조 제5항)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형상 일치)①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 해당 거래분야,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정황사실)②이 있을 때
 - ✓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필요성)③ 정보를 주고받은 때 (정보교환)④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간의 합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암묵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법 제40조 제5항에 추정제도를 두고 있다.
-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들 사업자간의 합의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없을 지라도 위 제40조 제5항 제1,2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 외형상 일치

-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 시점 : 가격 등 경쟁 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 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구매 대체의 정도 : 가격 등 경쟁 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 간 구매 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합의의 방향성이 같은 경우 :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

② 정황사실(상당한 개연성)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직·간접 의사연락 (예시)

- ㉠ 해당 사업자 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 ㉡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일 통일된 경우

-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수행 시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 (예시)

- ㉠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시)

- ㉠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 ㉡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 ㉢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산업구조상 합의없이 행위 일치가 어려운 경우 (예시)

- ㉠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 ㉡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③ 공동행위의 합의

- 정보교환의 방식이나 범위, 정보의 성격이나 내용 등으로 판단
- 교환 방식 : 폐쇄·개방적인지 여부
- 정보의 내용 : 개별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인지, 산업 전체의 통계적인 것인지 여부, 미래·과거에 대한 것인지 여부

④ 정보교환

- 종류 및 성격 : 가격, 생산량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 교환
- (단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 경쟁에 큰 경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 교환 미적용)
- 교환시점 :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 교환
-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 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경쟁사 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 품질이 대체로 동일하고 상호대체성이 큰 시멘트를 제조하는 7개 사업자들이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대체로 14%에 근접하나 회사별로 최대 1.4%p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13.4% ~ 14.8%)
- ㉢ 7개 사업자만 존재하는 카드 서비스 시장에서, 4개사가 2개월의 기간 동안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28.99% ~ 30% 수준으로 최대 1.1%p차이를 두고 인상하였고, 연체이자율은 34% ~ 35% 수준으로 최대 1%p 차이를 두고 인상하였는데, 비록 요율이나 인상 시기의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고객들의 카드사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종래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견인, 비상급유 서비스를 4개월에 걸쳐,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 장치 해제 서비스를 6개월 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
- ㉤ 강판 제조업자 3개사가 5년간 10여 회에 걸쳐 강판 가격 변동 결정을 하였는데, 결정된 가격이 거의 유사하였고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최대 2.3%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가격 인상 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 ㉥ 산업 기계용 베어링 제조·판매업자 3개사가 4년에 걸쳐 수회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약간의(0.3%p ~ 8%p 수준)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유사하였고, 가격 인상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 합의추정 복멸

- 사업자는 외형상 일치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설령 외형상 일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그 일치와 교환된 정보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즉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합의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 (예시)

- ㉠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의식적 병행행위)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위법성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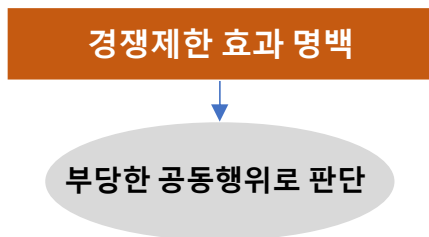
① 공동행위 위법성 심사기준

- ✓ 경쟁제한성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 별도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나, 효율성증대 효과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는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②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분석

㉓ 경성공동행위

- ✓ 경쟁제한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공동행위로 직접적으로 관련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산출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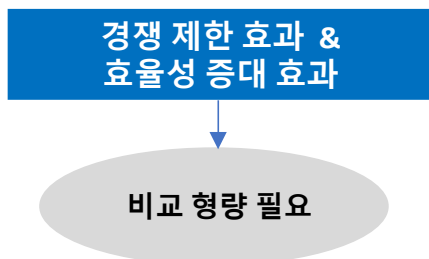


직접적인 가격 인상 및 산출량 감소

- 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가격을 결정 혹은 변경
- ㉕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산출량을 결정 혹은 조정
- ㉖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 · 할당
- ㉗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입찰가격 또는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

㉔ 연성공동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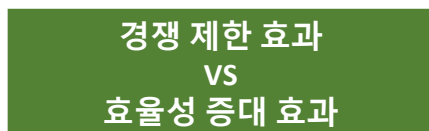
- ✓ 경쟁제한적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함께 발생시키는 행위



경쟁제한과 효율성증대 효과 동시 발생

- ㉘ 유형: 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 · 개발, 공동표준개발
- ㉙ 효율성 증대효과: 자산 · 지식 · 경험의 결합 또는 위험의 배분, 중복비용의 감소 등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때로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사업을 수행 가능
- ㉚ 경쟁제한효과: 시장지배력을 유지 · 창출 · 증가시켜서 가격상승, 품질 · 산출량 · 혁신노력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

③ 비교 형량



- ㉛ 효율성 증대 효과가 당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 ㉜ 공동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에서 경쟁 제한에 따른 피해가 클수록 이를 상쇄하기 위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커야 함

1.3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및 위반사례

1.3.1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

공동판매가격 결정 및 유지 (사례)

4개 소형 베어링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결정 건
(2014 국가1530, 의결 제2015-057호)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1998. 1. 1.부터 2011. 8. 25.까지 영업책임자 등 간에 수십 회의 의사연락을 통해 국내 주요 철강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수주물량을 배분하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기본적인 합의 내용은 기존 점유율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① 오리지널 베어링을 수주한 피심인이 보수용 베어링을 우선 수주하고, ② 피심인들이 납품하고 있지 않은 신규 입찰에 대하여는 각각 50%씩 수주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갑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非眞意意思表示)로 합의를 한 후 실제 입찰에서 이 합의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기본 합의 내용을 전제로 실제 철강용 베어링 입찰 건이 나오면 엔에스케이 코리아와 제이텍트 코리아는 다시 건 별로 수주 형편을 나누어 납품할 물량비율을 배분하고 제출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 후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행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은 공동으로 철강용 베어링의 가격을 결정하고 수요처를 분할하거나 수요처별 물량을 배분을 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심인들이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약 14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철강용 베어링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발급수수료 공동결정 (사례)

25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결정 건

(2014 카조 1980, 의결 제2015-028호)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면서 선하증권 등 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컨테이너 소량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시장은 국내의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으로 피심인들이 LCL화물의 서류발급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발급비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수요자인 수출업자에게 피해만 초래할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2013년 기준으로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피심인들은 약 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와 같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피심인들이 서류발급비를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국내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면서 선하증권 등 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컨테이너 소량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2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조건 결정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 '거래조건'이란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 방식, 운송 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
-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이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과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

상품·용역 또는 대금·대가의 거래조건(사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사실관계

원고(사단법인 대한손해보험협회 외 10개사 (동양화재해상보험, 신동아화재해상보험, 대한화재해상보험, 그린화재해상보험, 쌍용화재해상보험, 제일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엘지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손해보험회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를 2000. 11. 1.부터 2001. 3. 1. 사이에, 나머지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2001. 4. 1.부터 2001. 10. 1. 사이에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이후 긴급출동 서비스를 특약상품화하여 유료화 하였다.

대법원 판단

법 제1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2001년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이 97.9%에 이르는 점,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1.1%에 이르는 점,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 및 유료화 한 이후에도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등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 1개의 손해보험회사가 단독으로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의 무료 제공을 폐지할 경우 영업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점, 긴급출동 서비스를 특약상품으로 유료화 한 후 종전 보험계약자의 80%가 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특약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행위는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며,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주장하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이나 서비스 이용 상황의 고객별 점검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행위는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3.3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 별로 할당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판매가격, 거래량 및 거래상대방 공동결정 (사례)

4개 반응개시제 제조 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4국카3037, 의결 제2015-015호)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기본합의에 따라서 2013년 1월까지 수시로 영업담당자 간의 회합,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수요처 입찰이 있을 때마다 수요처 별 낙찰자 또는 납품업체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물량을 침범하지 않기 위한 합의를 지속하였다. 또한 견적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상호 교환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야쿠 악조는 피엠씨와 세기, 동성 간의 수요처 및 물량 분할, 가격인상 합의 진행 상황을 피엠씨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으며, 피엠씨가 경쟁사와 합의하여 작성한 견적을 큰 변동 없이 제출하도록 승인하여 공동행위 지속에 대한 의사를 암묵적으로 표시하였다.

공정위 판단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내용이 가격의 공동결정, 거래수요처 분할, 수요처 별 물량 분할이고,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들이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6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반응개시제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1.3.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결정 (사례)

5개 석유제품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1시감0341, 의결 제2011-161호)

사실관계

2000년 3월 초 경 피심인 SK, GS, 현대, SO의 본사 소매영업담당임직원은 여의도 소재 일식당에서 개최된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모임에서 정유사가 다른 정유사를 원적으로 하는 주유소(이하에서는 이 경우의 정유사, 주유소를 각각 '원적사', '원적주유소'라 한다)를 자기의 거래상대방으로 유치함에 있어 원적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적' 관리를 통하여 주유소 유치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정유사가 원적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적주유소를 유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유치(Counterattack)를 수용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2000년 3월 초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모임에서 주유소 확보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적 관리 원칙(정유사의 원적주유소에 대한 기득권 인정 원칙)을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쟁사의 원적주유소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피심인들 간 자기의 원적주유소를 서로 맞 교환하였으며, 맞교환이 어려운 경우 동일 또는 유사수준의 다른 주유소를 교환하는 등 '원적관리 합의'를 실행하였다.

피심인들은 한국석유통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공식적 모임이나 임직원들 간의 비공식적 모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였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석유제품 유통구조가 정유사 주도로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점, 피심인들 이외에 다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고 피심인들의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의 시장집중도도 미미한 점, 상품 품질의 동질성이 높은 점 등은 공동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 판단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에 대한 유치경쟁을 자제함으로써 피심인별 계열 주유소의 점유율을 고착화시키고, 정유사 간 주유소 유치경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주유소의 거래 조건 개선을 차단함으로써 경질유 석유제품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의도나 목적을 보아도 경쟁제한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피심인 SK에너지 주식회사, GS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S-Oil 주식회사는 기존 주유소와 거래를 함에 있어 경쟁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영업하고 있거나 종전에 경쟁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영업하였던 주유소와는 서로 거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주유소를 통하여 공급되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국내 경질유 석유제품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을 통한 정상적인 정보 수집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직접 혹은 한국석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상호 간에 주유소의 상표표시 변동과 관련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1.3.5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 도입 제한(법 제40조 제1항 제5호)

-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증설 규모를 정하는 행위,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1.3.6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법 제40조 제1항 제6호)

-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할당하는 행위,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상품의 종류·규격제한협정 (사례)

(주)무학 및 대선주조(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911부사1658, 의결(약) 제2000-43호)

사실관계

피심인 주식회사 무학은 경영상 비용절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플라스틱박스형 소주에 비하여 제조원가가 많이 드는 종이박스형 소주의 계속 생산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경쟁사의 행동을 의식하여 이를 독자적으로 결정·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1999.2.9. 무학의 대표이사 최재호와 대선주조의 대표이사 천용주는 부산주류도매업협회가 주관한 영남 제주지역 소재 소주제조회사 대표자들과 동 지역 소재 주류도매업협회 회장들의 모임에서 부산주류도매업협회 회장 박석준으로부터 종이박스형소주의 출고(공급)중단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1999.3. 하순경 부산주류도매업협회 사무실에서 위 박석준이 무학의 전무이사 박인목과 대선주조의 이사 정일(鄭逸)에게 재차 종이박스형소주의 공급중단을 요구하므로, 이에 박인목이 정 일에게 1999.4.1.부터 종이박스형소주 공급을 중단하자 는 제의에 대하여 정일은 긍정적인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 무학은 1999.4.1.자로 종이박스형 소주의 생 산 출고를 중단하였으며, 피심인 대선주조는 1999.4.2.에 있는 임원회의에서 1999.4.7.부터 공급을 중단기로 결정하여 1999.4.7.부터 종이박스형소주의 생산 출고를 중단하고 플라스틱박스형소주만을 생산하였다.

공정위 판단

원칙적으로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은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여건이나 시장수급상황, 고객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제공되고 있던 종이박스형 소주 라는 특정 종류의 제품을 피심인들이 상호 의견교환과 의사연락을 통하여 그 생산 출고를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플라스틱박스형소주」만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실행한 행위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로 인정된다.

피심인들은 종이박스형소주의 생산을 공동으로 중단하여 소주상 품의 종류를 제한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 남도지역 소주제조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7 영업의 주요부분 공동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7호)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이를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결정 (사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7개 액화석유가스 통합판매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2독관1053, 의결 제2002-226호)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LPG 판매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고 이 지역 주택과 식당 등에 대하여 LPG를 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정부가 판매공동화시책에 의해 영세판매업자의 통합을 추진하자, 1997. 4월 부터 공동관리기구형태의 '강서가스산업상사'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있다.

1997. 3월경에 강서구의 기존 판매점(총 27개) 중 22개 판매점이 지분소유자로서 7개로 통합하면서 각자 균등지분을 유지한 채 영구히 동업을 하기로 하고, 이익금은 월말 결산하여 균등배당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삼표가스 공동대표 김진설과 공항가스 공동대표 김양현 등의 주도하에 7개 통합판매점 대표 등이 통합판매점 들을 공동관리하기로 합의하고, 본사(강서가스산업상사)는 총괄업무를, 통합판매점은 각기 판매활동을 하는 등의 운영방침을 결정하였다(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분소유자 1인당 5백만원씩을 균등 각출).

공정위 판단

피심인 7개 통합판매점 대표들이 통합 판매점들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하고, 7개 통합판매점을 공동관리하는 본부로서 강서가스산업상사를 설립 및 운영한 행위는, 사업자들이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의 설립,운영행위로 인정된다.

다음의 점들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LPG 판매업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LPG 판매업자 27명 중 22명이 통합됨으로써 이 지역 판매업자의 80%가 참여한 점

나. 2002. 3월 기준 피심인들의 판매량(9,274개 용기) 중 공동관리기구에서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한 비율이 60% 이상에 달하는 점[더 나아가 지정가격보다 용기당(20kg) 500원을 할인판매한 물량 포함시는 (50kg 제외) 약 90%가 지정가격대로 판매한 것으로 분석됨]

다. 7개 통합판매점에서 적용한 지정가격 수준이 종전 정부 고시가격체제하에서의 소매점 유통마진 적용시보다 높게 결정된 점

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PG 안전공급계약 제도에 의거 체결된 피심인들의 계약체결 건수 비율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에서 48% 이상을 차지한 점 등.

피심인들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업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8. 입찰담합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 낙찰 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 또는 경락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여부나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낙찰가격 또는 경락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 여부나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들이 낙찰 또는 경락 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3.9 사업활동제한 또는 정보교환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① 위 1.3.1~1.3.8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법 제40조제1항 제9호 전단)

-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 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같이 위 ① ~ ⑧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사례)

속초지역 18개 주유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2공동0741, 의결 제2002-106호)

사실관계

강원도 속초지역에 소재하는 18개 주유소의 대표(또는 소장)들은 2001.12월 중순경에 모임 또는 의사연락 등을 통해 휘발유 판매가격을 2001.12.14. ~ 12.17. 사이에 공동으로 인상한 사실이 있다. 즉, 장원주유소 등 11개 주유소의 대표(또는 소장)들은 2001.12.10.경 속초시청 근처의 음식점에서 휘발유 가격 인상 등을 논의하고 이에 따라 휘발유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있으며, 뉴설악주유소 등 7개 주유소의 대표(또는 소장)들은 위 모임에 참석한 동해유업주유소 대표 등으로부터 휘발유 가격 인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권유 받고 이에 동조하여 휘발유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판단

1. 합의의 존재

피심인들이 사전에 모임 또는 의사연락 등을 통해 휘발유 판매가 격인상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이에 따라 휘발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휘발유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경쟁체제를 통해 형성되어야 할 휘발유 판매가격을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직접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로서 하여금 경쟁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함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 또한, 피심인들은 강원도 속초지역의 28개 주유소 중 64%에 해당하는 18개 주유소로서 속초지역 휘발유판매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심인들이 **휘발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강원도 속초지역 휘발유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들은 휘발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함으로써 강원도 속초지역 휘발유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교환 담합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9호 후단)

-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 받는, 정보교환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재고량 또는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관련 정보(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한다.
-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자의 정보가 중간 매개자를 거쳐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하는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개적인 공표 또는 공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또는 공개매체의 성격 및 이용자의 범위, 접근 비용의 유무·수준 및 경제주체 별 차등 여부, 공표 또는 공개의 양태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위의 항목에 불구하고, 사업자 간 비공개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한 후 그 정보를 사후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한 경우는 정보교환 행위로 본다.

1.4 입찰담합 유형과 법 위반행위 및 위반사례

-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을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경쟁사업자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사업자단체 또는 제3의 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법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경쟁사업자와의 모임에서 입찰담합의 내용이 결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의 **반대 또는 불참여의 의사가 의사록에 기재되는 등의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큼.** 따라서 **내용을 공표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경쟁사업자간의 모임에는 가급적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모임에서 가격 등에 관한 협의 등이 이루어져 위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퇴석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거나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4.1 입찰가격담합

- 사업자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또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등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행위를 말함.

1.4.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1.4.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 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1.4.4 수주물량 등의 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1.4.5 경영간섭 등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낙찰 예정자 사전결정 (사례)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 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5카총3753, 의결 제2016-161호)

사실관계

건설사는 2005 년 ~ 2006 년(1 차-5 건), 2007 년(2 차-3 건), 2009 년(3 차-4 건) 등 총 3 차에 걸쳐 총 12 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를 합의함**. 이들은 2012 년 말까지 각 공사 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도록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 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각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 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찰 내역을 작성하고 그 보다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 내역을 대신 작성하여 들러리사들에게 전자 파일 형태로 전달함**. 들러리사들은 전달받은 입찰 내역서 그대로 투찰하여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되었다.

13 개 건설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시공 실적을 가진 업체들 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출혈 경쟁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을 하게 되었다.

3 개의 합의는 건설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시장에서 출혈 경쟁없이 물량을 고르게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중도에 단절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합의이고, 각 합의는 긴밀하게 연결됨. 발주처의 입찰 참가 자격 완화로 입찰 참가 가능 업체가 계속 증가하였음에도 입찰 참가 자격을 신규로 얻은 업체를 포함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12 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 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 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한다.

1.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 제 3 호(물량 배분) 및 제 8 호(입찰 담합)
2.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및 검찰 고발
 - 시정명령 :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13 개 업체)
 - 과징금 : 총 3,516 억 원(10 개 업체)

설계의 방법 사전결정 (사례)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관련 2개 건설사 및 2개 설계용역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실관계

A건설사와 B건설사는 수자원공사가 2009. 7. 10. 발주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9. 9월 말경부터 같은 해 10. 8일경까지 기본설계 준비 상황 등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기본설계에 대한 양사 합의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양사는 2009. 7. 10.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9. 9월말 경부터 같은 해 10. 8일경까지 기본설계 준비 상황 등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 중 구체적으로 특정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 등에 대하여 두 차례의 모임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합의하였다.

설계의 방법 사전결정 (사례)

양사가 구체적으로 특정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 등에 대하여 두 차례의 모임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합의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은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및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판단

A건설사와 B건설사는 각 사가 대표로 구성된 수급공동체만이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되어 본 입찰에서 두 회사의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등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를 크게 야기하였으므로 과징금 총 95억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단, 설계사인 삼안과 도화는 삼성물산, 대우건설에 대하여 각각 종속적 지위에 있어 시정명령만 부과한다.

□ 공정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 제 8호(입찰담합) 및 시행령 제33조 제 2호, 제3호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 시정명령 :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13 개 업체)

- 과징금 : 총 95 억 원 (2개 업체)

▶ 허용되는 행위(Do) & 금지/법 위반 가능성 높은 행위(Don't)

유형	허용되는 행위	금지 또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입찰가격 담합	- 입찰공사 관련 독자적인 동종업계 영업정보수집 - 발주처 요청 하 설계공사금액 공동조사 - 안전시공 및 건설원가 인하목적 신공법, 신기술 정보교환, 사례수집 - 중소기업단체의 공사금액 계산항상목적 표준계산방법, 작업량 지도	- 공동 최저입찰가격 결정 - 입찰가격 협의, 관련정보 교환,제공으로 입찰가격 결정 - 경쟁업체의 산출내역서 복사, 대리작성 입찰 참여 - 예정금액보다 높은 입찰가 제출로 고의 유찰

유형	허용되는 행위	금지 또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 수주 지명 받은 사업자의 자진 입찰 불참 • 발주처 저예산 등 수익성 사유로 자진 입찰불참 • 수행능력부족 또는 기술경쟁력 부재로 입찰불참	• 낙찰 예정자 사전 결정 후 협조 • 입찰 연고권 주장 • 업체간 특정범위 공사 교대수주, 입찰서 대리작성 등 특정업체 낙찰 협조 • 전문업체에 타 업체의 입찰서 작성 의뢰 후 경쟁사에 배분 • 낙찰예정자 결정 후, 관련 경쟁사에게 통지 및 협조 요구 • 낙찰배제자의 낙찰자에게 사례금, 특별회비, 부과금 징수행위
수의계약 유도	• 원가상승으로 발주처 예산범위 입찰 불가로 불참결정 • 재입찰 시, 당사 수주여건 불가로 불참 결정	• 수의계약 유도합의 목적 높은 가격 제출로 유찰, 의도적 입찰거부 • 들러리 입찰로 수의계약 유도 (경쟁업체 참여배제 목적) • 입찰관련 부당/불량업자로 특정 업체를 발주처에 통보/대외공표로 입찰방해 후 수의계약유도
수주물량 결정	• 해건협 등 발주처 전반동향 (실적 및 전망 등) 파악 후 정리, 공포 • 법근거, 발주처 요구, 기술적 필요로 공동 수주 (사업주 승인 하 J/V 또는 Consortium 등 입찰 경쟁력 강화 목적 공동협력 및 역무 배분)	• 공동으로 수주물량 또는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 결정 • 수주물량 배분에 비협조업체 입찰참가 방해 및 불이익 제공 • 단독 수행 불가 시, 일부물량에 응찰해 타 사업자와 공동수주 유도
경영간섭	• 중소 입찰참여자에 대한 입찰제도 운영관련 단순요망, 의견표명 • 부실공사방지위한 공동 품질보증 및 안전시공 목적으로 회합 • 의견.자료교환 (기술분야의 경쟁 촉진 · 확산) • 입찰업체에 발주자 기술관계 등 입찰 관련 일반사항 설명지원	• 원재료 공동 판매 시 저가입찰자 또는 임의 참여자에 판매물량 제한, 불리한 조건판매 • 입찰가격 목표부여 또는 수주예정자 결정 위한 입찰여부 사전통지 요청 • 입찰자의 수주물량 일부를 특정업체에 하도분할조건 또는 특정업체 자재구입 조건 제한 • 낙찰예정자의 계약금 일부 기부금, 특별회비 납부로 공동사용, 배분행위

1.5 정보교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1.5.1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합의 금지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는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시키거나 기술·제품 개발을 촉진하며 성공사례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격결정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은 사실상 가격의 공동인상 등을 초래하거나, 경쟁사 간 경쟁 압력의 약화를 야기하는 등의 **경쟁제한적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규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그 합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 제40조 제5항 제2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았음’을 근거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법성 판단기준

- 법 제40조 제1항 제9호(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합의 금지)의 위법성 성립요건은 ① 정보교환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그 합의의 실행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③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한다.

① 정보교환 합의

- ✓ 정보교환 합의란 사업자 간 법 제40조제1항 제9호 본문 및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정보, 즉 **가격, 생산량, 상품·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을 교환하기로 하는 상호 간의 의사 합의(meeting of mind)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합의는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도 포함**한다.
- ✓ 묵시·암묵적 합의는 정보교환이 해당 정보와 관련된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주체 간,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중요한 의사결정 전 이루어지거나, 교환된 정보를 각자 활용하는 행태로 나타난다.

명시적 합의 (예시)

- ㉠ 경쟁사들이 자신이 대리점들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출고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 ㉡ 경쟁사들이 사업자단체를 결성하고, 이 단체를 통해 상호 간의 시장점유율, 제품별 판매량 및 판매시기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공동 작성한 경우
- ㉢ 경쟁사들이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구두 합의한 경우

묵시적·암묵적 합의 (예시)

- ㉠ 경쟁사들이 6년간 가격, 판매량, 출고량, 재고량 등을 대표자급 회의, 임원급 회의, 실무자급 회의 등 다양한 직급이 각각 참여한 회의(총 회의 수는 약 270회)를 통해 교환하고 이를 각자의 가격 결정에 반영해 온 경우
- ㉡ 경쟁사들이 10년간 300회 가량 가격 인상안 등을 교환해왔는데, 특히 가격인상 내부 품의 시점 직전에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그 품의에 경쟁사들의 가격인상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 시장점유율 상위 기업들이 매월 말 가격정보를 경쟁사들에게 통지하면, 이를 통보 받은 경쟁사들이 해당 가격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관행이 5년 가량 지속되어 온 경우
- ㉣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별 원가, 재고량을 정리하여 각 구성사업자에게 공유하는 관행이 개별 사업자들의 반대 없이 7여 년간 지속되어온 경우

묵시적·암묵적 합의가 없는 것 (예시)

- ㉠ 경쟁사 간 정보교환이 있긴 하였으나, 단발성이고 불규칙 하였고, 그러한 정보가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별도의 정황증거가 없는 경우
- ㉡ 교환대상 정보와 관련된 경영상의 의사결정 권한 없는 직원 간 정보교환 행위가 있었으나, 해당 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 ㉢ 경쟁사가 보내온 가격 정보 관련 메일을 수신하자마자 더 이상 관련 메일을 보내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실제로도 이후 그러한 메일이 오지 아니한 경우
- ㉣ 사업자단체의 판매량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타 구성사업자에게는 공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정보 제공에 응하였으나, 사업자단체가 해당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판매량 정보를 타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유하는 한편, 타 사업자들의 정보를 임의로 해당 사업자에게도 송부한 경우

② 정보교환 합의 중지

- ✓ 정보 수신 거부의를사를 표명하였거나 경쟁사업자의 정보 제공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사업자는 당해 행위의 시점부터는 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수신 거부의를사를 표면적으로만 표명하고 여전히 계속 정보를 제공받는 등 수신 거부의사 표명과 다른 행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한편, 정보교환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는 애초에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정보교환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의 평가 (경쟁제한성)

- ✓ 정보교환의 경쟁제한효과는 시장상황, 시장의 구조 및 상품의 특성, 행위자들의 시장 점유율, 교환된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 행위의 양태, 정보교환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시장상황

- ① 정보교환 이후 가격 등 경쟁변수가 유사하게 움직이거나, 경쟁 압력의 감소 등이 나타난 경우
- ② 정보교환 이후 그 하락 폭이 둔화되거나, 시장점유율의 변동폭이 작아지는 등의 경우
- ③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 등 다른 경제 변수의 변동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다.

시장구조 및 상품의 특성

- ① 시장의 집중도, 안정성, 상품의 동질성 등을 종합적 고려
- ② 시장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즉 독과점 정도가 높을수록, 시장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즉 수요·공급의 변동이 적거나 사업자들의 진입·퇴장이 어려울수록, 관련 상품의 동질성이 높아 경쟁에 필요한 정보의 복잡성이 낮을수록

행위자들의 시장점유율

- ① 합의한 사업자의 점유율의 합계가 높을수록, (20% 이하인 경우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 제외)

교환된 정보의 특성

- ① 정보의 시제, 공개성, 개별성 등을 종합적 고려.
- ② 교환되는 정보가 현재 또는 미래의 정보일 경우, 시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공개 정보 또는 비밀정보가 교환될 경우, 상품가격, 생산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개별 사업자 별로 교환될 경우
- ※ 공개 정보 여부를 판단기준: 정보가 공개된 매체의 성격 및 이용자의 범위, 접근 비용의 유무·수준 및 경제주체 별 차등 여부, 공표 또는 공개의 양태 및 의도 등을 종합적 고려

정보교환 행위의 양태

- ① 정보교환의 기간, 교환 빈도, 교환 주체, 교환 시점 등을 종합적 고려
- ② 정보교환의 기간이 길수록, 교환 빈도가 높을수록, 주체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직원 이거나, 실무자-중간관리자-고위급 등 다양한 직급에서 각각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 교환의 시점이 가격 등의 의사결정 직전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 높다.
- ※ 빈도 판단기준: 관련 시장에서의 거래 주기, 가격 변동의 주기 등 함께 고려. 계약갱신 이나 가격 변동이 빈번한 시장이라면 정보교환의 절대적 횟수도 많아야 빈번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교환의 횟수가 적더라도 빈번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정보교환의 목적

- ① 가격 인상, 생산량 축소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합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예시)

- ㉠ 대체로 균질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도시의 모든 호텔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가격 인상계획, 객실 판매량 추이 등의 정보를 취합한 후 이를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회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고, 공유시점으로부터 호텔 간 투숙객 점유율이 안정화 되기 시작한 경우
- ㉡ 시장 내 총 사업자가 10개사에 불과한 과점시장에서 9개 사업자가 공급처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원자재를 구매하는 가격을 공동으로 하향 안정화 시킬 목적으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구매가격 관련 정보들을 6년간 160회 가량 교환한 후,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애초에 공개된 정보를 교환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행태를 보인 반면, 실제로 각 사들의 원자재 구매가격이 유사한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된 경우
- ㉢ 소수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수요 비탄력적인 농기계시장에서 합계 점유율 72%에 달하는 5개 사업자가 9년간 110회 가량 담당본부장급 회의를 통해 판매량, 재고량, 출고량, 향후 생산계획을 공유해왔고, 특히 분기별 가격결정 시점 전에는 가격 인상계획을 집중 교환해 왔는데, 그 결과 매년 농기계 가격이 2~9% 씩 인상되어 온 경우

경쟁제한성이 낮은 경우 (예시)

- ㉠ A정유사 직원이 B정유사 직원에게 최근 1주일 간 특정지역의 B정유사 소속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 평균치를 전화로 문의하고 B정유사가 이를 제공한 경우
- ㉡ 일일 수급 변동, 가격변동이 매우 크고 지역 간 수급여건 편차가 큰 농산물 시장에서, A사업자가 타 지역의 B사업자에게 지난 한달 간 야채의 판매가격을 문의하고 B사업자가 이에 답한 경우
- ㉢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과거 1년간의 가격, 판매량을 취합하고 이를 집계화하여 대국민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개별 회원사들이 이를 통해 공식적인 업계 동향을 인지하게 된 경우
- ㉣ 제조위탁을 하려는 사업자가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해 복수의 사업자들로부터 연간 가능 생산량, 생산원가, 원자재 재고량 등을 제출 받는 경우

④ 정보교환 합의의 효율성 증대 효과

- ✓ 부당한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정보교환 합의라 하더라도, ㉠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율성 증대효과 창출에 정보교환 합의가 필수적이며,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큰 경우 해당 정보교환 합의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예시)

- ㉠ 사업자단체가 주기적으로 회원사들의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집계한 보고서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발간하여, 회원사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일반 소비자들도 업계 동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 경쟁사들이 경쟁제한 가능성이 적은 공동 제품개발, 기술개발, 제품 표준규격 개발을 하면서 그 개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가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 ㉢ 사업자들이 판촉 목적으로 사은품 제공, 가격 인하 등의 공동마케팅을 하면서, 판촉 성과 분석을 위해 판매량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 ㉣ 중소기업들이 원가정보 등의 교환이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효과가 명백한 경우
- ㉤ 관련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가 공동대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가 교환되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증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1.5.2 정보교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 추정 (법 제40조 제5항 제2호)

- 입찰담합 등 개정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 일정요건* 하에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정요건 :** ①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9호(제9호 후단 제외)까지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격 등이 유사 또는 동일 해지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어야 하고, ②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 단, ③ 합의가 추정되더라도 사업자는 그 합의 추정의 전제 사실에 반하는 정황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정된 합의를 복멸**할 수 있다.

법개정 배경	정보교환의 순기능(경쟁촉진, 사업효율성 증대, 소비자 후생기여 등)을 인정하면서도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역시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공정위). 우리나라 법원은 법문의 해석상 '정보교환'만으로는 담합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담합 '합의'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 이에 외국 법집행 동향 등을 고려하여 법개정에 이룸
미국	정보교환을 포함해 경쟁을 해치는 모든 합의 금지(Sherman Act 제1조), 합의의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담합 조장행위를 했다는 등의 추가요인이 있다면 담합 인정됨 (2001년 엑손 등 14개 정유사들이 관리/전문/기술직 직원의 임금정보를 교환해 임금을 적게 준 사건 등)
EU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나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협력하는 수준의 "동조적 행위"까지 담합 인정 (바나나 수입업체가 가격공표 전날 전화로 각 사에 가격정보를 나눈 것 자체가 "경쟁을 해칠 목적"이 있다며 위법성 인정함)

- "정보교환"이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 사업자 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 다만,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하는 경우,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 아님

▶ 위법성 판단기준

① 외형상 일치 판단기준: 다음을 종합적 고려 판단

- ✓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 구매대체의 정도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 간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예: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 인상하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

※ 가격 등 경쟁 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인정

외형상 일치로 볼 수 있는 것 (예시)

- ㉠ 경쟁사 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 품질이 대체로 동일하고 상호대체성이 큰 시멘트를 제조하는 7개 사업자들이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대체로 14%에 근접하거나 회사별로 최대 1.4%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 (13.4% ~ 14.8%)
- ㉢ 7개 사업자만 존재하는 카드 서비스 시장에서, 4개사가 2개월의 기간 동안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28.99% ~ 30% 수준으로 최대 1.1% 차이를 두고 인상하였고, 연체이자율은 34% ~ 35% 수준으로 최대 1% 차이를 두고 인상하였는데, 비록 요율이나 인상 시기의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고객들의 카드사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종래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 견인, 비상급유 서비스를 4개월에 걸쳐,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6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
- ㉤ 강판 제조업자 3개사가 5년간 10여 회에 걸쳐 강판 가격 변동 결정을 하였는데, 결정된 가격이 거의 유사하였고,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최대 2.3%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가격 인상 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 ㉥ 산업 기계용 베어링 제조 · 판매업자가 3개사가 4년에 걸쳐 수회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약간의 (0.3% ~ 8% 수준)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유사하였고, 가격 인상 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②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여부 판단기준

- ✓ 정보의 종류 및 성격 : 가격, 생산량 등 교환되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교환된 경우
 - ※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 경쟁에 큰 경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가 교환된 경우 (X)
- ✓ 정보가 교환된 시점 :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가 교환된 경우
- ✓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필요한 정보의 교환 (예시)

- ㉠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 · 재고 · 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배타적으로 교환된 경우
- ㉡ 가격인상 결정 시점에 임박하여 인상일자, 인상계획 내역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 가격인상계획 관련 정보가 상호 교환이 되었고, 각 회사들이 제시한 가격인상안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인상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아닌 것 (예시)

- ㉠ 경쟁변수가 아닌 일상적 정보(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최신 상품 트렌드 분석자료 등). 단순 경영목표치(목표 성장률, 목표 매출액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 외형일치가 나타난 경쟁변수와 교환된 경쟁변수 정보 간 상관관계가 약한 경우 (예: 가격의 외형상 일치가 있었는데, 실제로 교환된 정보는 대금지급정보인 경우)

③ 합의 추정의 복명 사유

- ✓ 사업자는 외형상 일치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설령 외형상 일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그 일치와 교환된 정보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즉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합의의 추정을 복명할 수 있다.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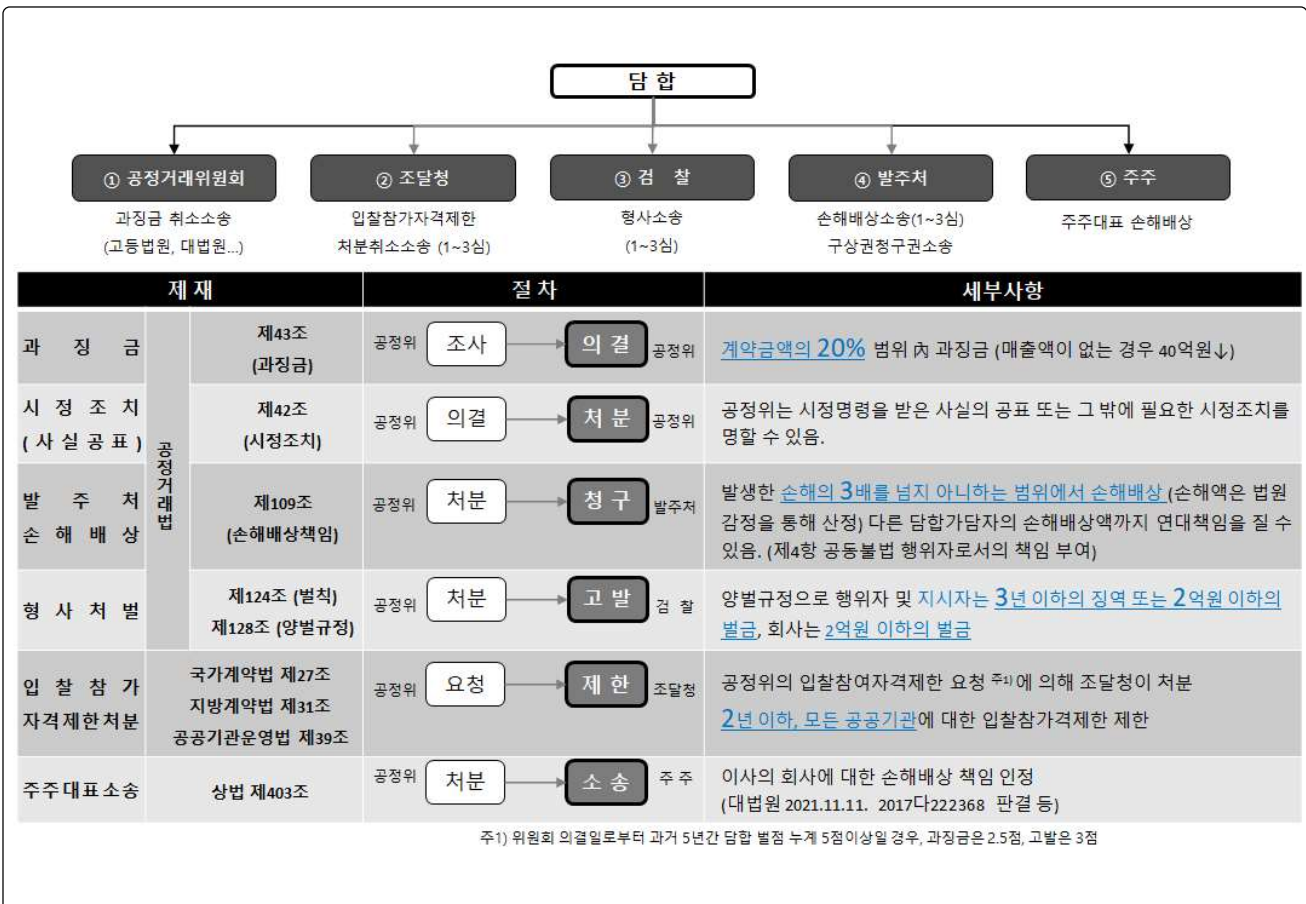
- ㉠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나는 경우
- ㉡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의식적 병행행위)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1.6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법 제40조 제2항)

-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 연구·기술개발
 - 거래조건의 합리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 실제, 공정위에서 공동행위를 인가한 예는 많지 않다. 레미콘업체가 신청한 원재료 공동구매, 영업의 공동수행,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중에서 공동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에 관한 공동행위를 인가한 사례가 있다.

1.7 위반 시 제재

1.7.1 담합 관련 법 제재 체계



1.7.2 시정조치 (법 제42조, 제52조)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담합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7.3 과징금 (법 제43조, 제53조)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하다.
- 관련매출액이란 법 위반사업자가 위반 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13조)
-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시행령 50조). 구체적으로는, ①낙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②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③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금액(또는 응찰금액)으로 본다.

1.7.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담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 공정위는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법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함.
- 과거 5년간의 기간산정은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5년으로 역산하되 초일을 산입.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 벌점

구분	경고(서면)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벌점점수	0.25	0.5	1.0	2.0	2.5	3.0

※ 1개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최상위 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

1.7.5 검찰고발 (법 129조)

- 공정위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 고발할 수 있다.

1.7.6 입찰 방해죄 (형법 제315조) *입찰담합

-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입찰담합은 입찰담합에 대한 합의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반면, 형법상의 경매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경매 또는 입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1.7.7 건설법 입찰방해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입찰담합

-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공정을 해치는 건설업자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형법 제315조의 특별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8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법 109조, 민법 760조)

- 발주기관은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반한 경우 민법 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1.8 면책 및 보상제도 (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

1.8.1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

▶ 리니언시 제도(Leniency)

-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 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분		필요적 감면	내용
공정위 조사 시작 전	최초 신고자	과징금 : 면제 시정조치 : 면제	•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 의 자 •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
	두 번째 신고자	과징금 : 50% 감경 시정조치 : 감경	• 입증 증거를 제공한 두 번째 자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초 조사협조자	과징금 : 면제 시정조치 : 면제	•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 의 자 •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
	두 번째 조사협조자	과징금 : 50% 감경 시정조치 : 감경가능	• 입증 증거를 제공한 두 번째 자

▶ 검찰 리니언시

-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적용 대상 범죄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기소가 가능하나, 검찰은 담합을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관련자들 간에 은밀히 공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고발 이전이라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12월에 형벌감면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카르텔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150호]

구분	내용
근거 법령	• 형법 제3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15조, 대검찰정 예규 제1150호
대상 행위	• 경성담합(Hardcore Cartel), 형법 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담합
신청 자격	• 사업자 또는 개인(전현직 임원)
신청 절차	• 대검 반부패강력부 접수
판단 기준	• 담합 입증자료 제출 • 성실험조 : 검찰수사, 형사재판(법정출석 포함) • 담합중단, 강요여부, 반복여부 등 판단
감면 효과	• 1순위: 기소면제 (대검예규 제10조 1항) • 2순위: 1/2감경구형 (동조 2항)
비밀 유지	• 형사재판확정 이전에 검찰 동의없이 제3자에 누설할 경우 성실험조의무 위반으로 간주

-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경우 검찰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으나, 다른 경쟁업체가 검찰리니언시를 신청할 경우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고,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감사원 등 제3기관의검찰고발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검찰고발의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담합 사실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회사 및 관련 임직원은 검찰 리니언시를 신청해야 검찰 강제수사 및 기소면제(또는1/2감경구형)의 형사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암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

- Amnesty Plus제도는 진행중인 담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면 현재 조사 중인 담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감면을 받는 제도이다.

1.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공동행위의 규모(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 범위 내 감경
2.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크고 2배 미만인 경우 : 30% 감경
3.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 50% 감경
4.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4배 이상인 경우 : 면제

1.8.2 신고 포상금 제도 (법 제80조 제2~3항)

-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 8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신고 건이 있는 경우 증거 관련 서류,파일, 녹취록 (담합 합의서,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1조~제 25조 2항에 의해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으로 보호된다.

1.8.3 신고제보 제도

- DL그룹은 소속회사 홈페이지에 신고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및 외부자의 담합 익명제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내 ·외부 고발자 보호규정에 따라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제보내용은 자율준수관리자에 보고 후 조사 및 시정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후 보완하고 있습니다.
- 제보처 : DL(주)
 - 전화 02-2011-7399
 - 이메일 ethics@dlholdings.co.kr
 - 우편 (0318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디타워 돈의문 24층. DL(주) 윤리경영담당자
- DL그룹 계열회사 제보처
 - 편람 'IX. 제보시스템' 참조

2. 담합 금지 가이드라인

2.1 담합 금지 가이드라인

2.1.1 담합에 대한 이사의 책임 확대 및 담합 규제 강화

- 대표이사, 이사의 감시 의무 책임인정 판결 및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행위의 담합 규제 강화로 담합 금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 및 실효적 운영은 기업생존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음. 이와 더불어 '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담합 위반 시 과징금이 2배로 상향 되었고, 담합유형으로 정보교환행위가 신설되었으며, 법률상 추정 요건이 구체화되어 담합에 대한 법적 의무 및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현업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수행 시 담합 발생에 대해 원천적으로 금지 및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① 대표이사/이사 감시 의무 책임 확대 (상법)

- 담합행위 직접 지시 및 보고 없이 감시 의무 위반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확대 인정 (대판 2021. 11. 11. 판결 2017다222368 판결, 상법 399조 1항)
 - 실질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적극적 감시활동 이행 필요
- 담합행위 인지 및 의심 가능여부 관계없이 일반 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 손해배상책임 확대 인정 (서울고법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상법 393조 2, 4항)
 - 정보보고, 내부통제시스템 작동에 대한 감시 의무는 이사 뿐만 아니라 일반이사까지 확장 인정

②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제 강화 (2021년 개정 공정거래법)

- 과징금 강화 (2배 상향) : 법 위반 매출액의 20% (계약금액 이내)
- 담합유형으로 정보교환행위 추가 : 가격, 생산량, 원가, 거래조건 등 정보 교환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 법률상 추정 요건 구체화 (법 제40조 제5항 제2호) : 외형상 일치, 정보교환
 - * 경쟁사 정보교환 통제 필요 (민감정보 교환 금지, 정보 자료출처 명기, 기록 보존 등)
- 영업비밀 자료 제출 명령 등 :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업에 자료제출의무 부과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거부 불가)
 - * 영업비밀문서의 생성부터 리스크 관리 철저

③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2023년 공정위 정책방향 中)

-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 근절 :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 담합행위 중점조사
* 중간재 : 건설분야 원부자재, 산업용 부품·소재·장비 등
-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발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담합 관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하고 공정위가 입찰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

<담합행위 주요 감시대상 분야>

민 생 ▶ 에너지, 가정용품, 통신장비, APT 유지보수 등
중간재 ▶ 건설분야 원부자재, 산업용 부품·소재·장비 등
플랫폼 ▶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사업활동 방해 등

[참조]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2.1.2 업계모임, 경쟁사 면담 및 정보교환 원칙

① 업계모임, 경쟁사 면담 및 정보교환 원칙

- 비즈니스 수행 시 동종업계, 경쟁사 모임, 면담 및 경쟁상 민감한 정보교환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 즉, 가격, 입찰가, 입찰수량, 원가, 거래 및 입찰 조건 등의 정보를 제외한 통상적인 영업활동 관련 일반적인 영업정보 교환은 가능하다. (영업활동 중 정보교환 행위는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어 가능하지만,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 모임, 면담 참석 시 성격과 내용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P담당 부서에 사전질의 및 자문**을 받아 확인 후에 참석여부를 결정하고 참석한다.
- 모임, 면담 참석 시 담합관련 정보교환 및 의사의 합치 등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그 즉시 자리에서 반대의를 명확히 표시 하고 그 장소를 이탈하여야 하며, 즉시 CP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
- 정보교환 또한 경쟁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관련 정보교환 중지 의사를 표시하는 메일, SNS 메시지 등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정보교환을 중지하고 본부 CP담당부서와 협의한다.

② 건설협회 등 제3자를 매개체로 하는 정보교환

- 건설협회 등 당사가 소속한 사업자단체가 통계자료 또는 일반적인 정보 취합 및 공유를 목적으로 한 정보제공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이러한 사업자 단체 또는 제3자를 매개체로 하여 다른 사업자와 정보를 교환하여 담합 관련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협회에 자료제공 시는 당사의 세부적인 전사 전략 등, 예를 들어 수주목표액 및 각 본부 별 금액과 사업지 등 상세정보의 제공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는 향후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위한 자료로 악용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현업팀에서 자료제공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전담팀에 자문을 구하여 확인 후 제공한다.

③ 경쟁사와 Partnering 협력 시 유의사항

- 경쟁입찰 시 사업주의 입찰참여 요구사항 및 입찰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 경쟁사와의 Partnering 협력을 하여 입찰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경쟁사와 Partnering 시 이러한 협력을 통해 입찰경쟁구도에서 경쟁제한적인 목적 및 의도로 Partnering을 통한 제3의 사업자의 입찰 참여 배제, 입찰패키지 분할 합의, 입찰불참 후 타 사업 시 Partnering을 통한 보상 등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한다면 담합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1.3 문서작성 및 자료보존 원칙

① 담합오인 문구 및 문서 작성금지

- 현업에서 업무문서 작성 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의 오인을 할 수 있는 문구 및 문서작성을 일체 하지 않는다.
 - (예시) 시장지배력 강화, 경쟁사 사전배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 경쟁구도 완화를 통한 입찰 성공을 향상 도모, 경쟁사가 수행실적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입찰대응 등
- 경쟁사업자의 가격 또는 계획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추후 이 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② 담합오인 문구 및 문서 사전 모니터링

- 각팀 CP담당자 및 보직자, 담당, 임원은 현업에서 작성된 문서 중 담합 오인문구가 있는지 자료 공유 및 배포 전 사전 리뷰하고, 오인문구 발견 시 작성자에게 작성사유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을 요청한다. 판단이 어려운 문서인 경우에는 CP담당부서에 문의한다.

③ 독자적 의사결정 자료 보존

- 현업에서 업무수행 시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판단하고 입찰참여를 결정한 의사 결정자료를 보존하여 향후 담합의 추정 시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1.4 담합 금지 가이드라인 10

- “DL그룹은 경쟁사 및 협력사 등과 입찰, 모임, 면담, 정보교환행위 시 **담합금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구분	키워드	가이드라인 10	
경쟁사 모임 및 정보교환 금지	모임참가 금지	1	- 경쟁사와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단, 경쟁상 민감하지 않은 일반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는 가능하다.
	담합논의 불참	2	업무협의 중 담합 제안 등이 있는 경우, 협의 중단/불참/탈퇴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 CP담당부서에 보고한다.
	정보교환 금지	3	- 경쟁상 민감한 정보 또는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ex. 가격, 관심공구, 기타 입찰관련 정보, 협회 등 제3자를 통한 교환도 금지)
입찰담합 금지	입찰가격 결정 금지	4	입찰 최저가, 최고가, 수주 예정가, 이와 비슷한 가격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수주수량/비율 등 결정 금지	5	경쟁사 등과 입찰에 관한 발주 수량, 비율 등을 협의 또는 결정하지 않는다.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금지	6	특정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지정하여 협력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지 않는다.
	수의계약 협조 금지	7	수의계약 유도 위한 높은 가격으로 입찰 유찰, 들러리 입찰, 입찰 방해에 협조하지 않는다.
문서작성 및 자료보존	담합오인자료 생성 금지 및 독자적 의사결정 자료 보존	8	- 담합오인/문구 자료를 일체 작성하지 않는다. - “업계자율조정”, “비경쟁”, “B설계” 등 담합오인 문구 표현 금지 - 입찰 예측, 참여공구 등 불가피하게 작성시 정보 출처를 반드시 밝힐 것 -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 및 입찰참여 결정한 내용의 문서 보존
내부점검	담당임원/팀장의 책임	9	해당부서 임원/팀장은 실질적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담합의 오인이 없도록 관리한다.
	신고의무	10	회사는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담합 사실을 아록 있는 임직원은 CP담당자에게 신고한다.

2.1.5 정보교환 담합예방 가이드라인 7

- “DL그룹은 경쟁사 및 협력사 등과 정보교환행위 시 정보교환 담합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1. 교환 금지	<u>경쟁사와의 민감한 정보의 교환은 금지한다.</u>
2. 최소한의 정보 교환	민감한 정보 이외의 정보도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교환한다.
3. 거부의사 표시	정보교환 요구에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4. 제3자를 통한 교환금지	제3자(사업자단체, 협력사, 설계사, 유통업자, 시장조사기관, 언론사 등)를 통한 교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정보분류 표기	<u>정보출처, 공개 정보임을 표기한다.</u>
6. 보직자 현황 확인	수주·영업관련 조직의 보직자는 정보교환 현황(입증자료 보존 포함)을 매월 확인한다.
7. 전문가 자문	<u>자체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CP담당부서에 문의한다.</u>

2.1.6 동종사 협력 가이드라인 10

- “DL그룹은 동종사와 교류 및 협력 시 동종사 교류협력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구분	가능	주의	금지
교류 협력 행위 유형	▪ 시장에 OPEN된 정보 교환 - 발주자 제공정보, PQ조건, ITB 발급시기, 입찰초청업체 등 ▪ 발주처 협의사항 논의 - 입찰조건 오류 시정 위한 협의 등 ▪ 입찰과 관련 없는 논의 ① 수주잔고/실적, 수주목표액 등 ② 영업인원, Target 국가 등 일반정보 ③ 안전시공(부실/하자방지) 협의 ④ 신공법/신기술 등의 협의	▪ 발주처 or 정부기관 포함된 협의시 발주처가 동조한 담합 or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	▪ <u>입찰조건에 대한 (경쟁제한적) 협의*</u> ① 입찰가격 협의 ② 입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는 협의 (산출내역서 교환 등) ③ 저가 투찰 방지 협의 (예정가에 근접한 투찰 등) ④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협조 ⑤ 경쟁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협의 ⑥ 수주 물량을 나누는 협의 ⑦ 참여공구 논의 ⑧ 협의에 의한 입찰/물량 포기 ⑨ 특정 또는 일정 경쟁사 배제 협의
공동도급 구성 (Consortium or J/V)	▪ 『공동도급 구성원간 협의』는 가능 ① 발주처가 공동도급을 요구 (입찰공고/지침 등) ② 지역업체,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③ 실적보완, 중소기업 기술이전 ④ 위험 분산, 시공의 확실성 담보	▪ <u>공구별 공동수급체 결성 정보 등의 교환은 담합오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u> ▪ 입찰 예정 건 전반 논의시 <u>희망공구/ 불참정보 등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u>	▪ <u>담합을 전제한 공동도급</u> - 담합의 수단 또는 대가관계로서 주고 받는 공동도급

2.1.7 부당한 공동행위 Check-List

- Risk 평가결과 부당공동행위 관련 법 위반 가능성 있는 팀으로 지정된 경우,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체크리스트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합니다.
- 자율점검 후 문의 사항 있는 경우 CP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Check -Point	공정위 시각/해석
	 입찰전 독자적으로 사전에 결정한 관련 서류가 있는가? 설계사와 독자적으로 검토한 자료 등	사업적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과정과 절차상 근거 (경쟁근거)
	 입찰전 작성된 참여사 현황 자료에는 정보출처가 표시되어 있는가?	명확한 정보출처 표기 필요 (경쟁근거)
	 상시 정보공유 체계구축 등 경쟁사 조직도, 담당현황, 동종사 모임 현황, 업체 모임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담합과 직접 관련 없는 정보라도 지속적인 의사연락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공동행위를 위한 상시 정보공유 체계 구축으로 판단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보고서에 경쟁회피, 경쟁해소 등 오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① 경쟁/비경쟁, 완화/심화. B설계(들러리설계), S (sidekick 들러리) ② 공구 중 고딕체로 진하게 표시 (입찰전) ③ 원안/대안 강제 차등 ④ 자율조정, 빅6* 전략적 제휴/전략적 참여 ⑤ 업계간 협의 강화, 협력관계 구축 ⑥ 비경쟁 수주로 전년 대비 4배 실적 상승 등	보고서에 경쟁회피, 경쟁해소 했던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한 경우 법인 차원의 조직적인 공동행위 실행 및 결재자에 따라 고위임원 가담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입찰 진행중 참여사의 현황을 작성하거나 정리하였는가? 입찰일 가까울수록 낙찰사 일치 / 낙찰 예정자에 굵은 글씨, 색깔, 동그라미 등 표시	공구 분할 및 공구내 담합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구 분	Check -Point	공정위 시각 /해석
입찰중 입찰후	 수첩, 달력, 트위터, 메신저, 회계 데이터 등에 공동행위(담합) 오인 혐의내용 등을 기재 하였는가? ① 업무수첩에 (낙찰사/들러리 등) 오인 혐의내용 기재 ② 입찰 전 경쟁사 모임 내역 기재 (출장비 전표, 출장보고 등)	담합을 위한 모임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입찰 진행중 모임 참여 등 오인 행위를 하였는가? 모임에 참석하여 각 사가 원하는 공구 정보 교환을 하였는가? ① 정보교환을 통해 각 사별 참여 공구가 겹치지 않도록 협의 ② 전화로 들러리 부탁/들러리 대가로 공동수급사업참여 조건을 논의 ③ 관심 공구를 의도적으로 업계에 공유(협회, 신문 등) 하였는가?	합의 등 명시적 직접증거 뿐 아니라 묵시적/암묵적인 양해 등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하는 정황증거도 증거가 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품질, 기술특화 등 차별화된 경쟁력 요소가 기술된 자료, 투찰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경쟁 용어를 사용하여야 오해가 없음 (경쟁근거) 특화, 경쟁력, 기술, 품질, 자체 등
	 수주 성공/실패 요인 분석서가 있는가? (투찰가 분석 포함)	소송 시 중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 (경쟁근거)
정보교환 담합 (전화,이메일,SNS 포함)	 당사는 경쟁사의 가격, 원가 및 입찰 조건 등 입찰 중 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의 민감한 정보를 경쟁사 등과 교환하였는가? 만약, 교환한 경우 중단후, 상대방에 정보교환 중단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근거 남겼는가? ① 경쟁사로부터 오픈된 정보 접수 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 ② 정보교환 중단 시, email, SNS, 통화보고 등 중단의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 후 CP담당과 협의한다.	외형상의 일치, 일치에 필요한정보교환이 있는 경우 담합으로 추정됨
협의 금지	 승인 받은 경쟁사와의 모임 또는 면담 중 담합오인 이슈 논의 시, 참석이탈 선언 후 자리에서 나와 CP담당자에게 보고하였는가? - 예) 입찰가 협의, 공구배분 등	담합을 의도하는 정보 교환과 외형상 일치만으로도 담합추정 가능. 실행하지 않아도 법 위 반성립 묵시적, 암묵적 양해도 담합으로 간주 될 수 있음)

Q1. 법 개정 전에는 정보교환이 문제되지 않았는지?

A1. 개정 전에도 "정보교환"은 담합의 유력한 정황증거로 인정되었음.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법원은 정보교환이 있다는 것만으로 담합을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간 담합 " 합의 " 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함. 현행 법제 하였다면(합의추정이 되었다면), 대법원의 2014년 생명보험사 예정이율 담합사건1)과 2015년 라면 담합사건2)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1) 16개 생명보험사가 2001~2006년 미래의 예정이율 등 정보를 교환한 이후 예정이율을 낮춘 사건으로 대법원은 "정보교환이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담합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도 "정보교환만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약3653억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

2) 농심·삼양·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4개 라면업체가 2001년부터 10년간 여섯 차례 가격인상을 했는데, 가격 인상률은 매년 업체들 간 소폭 달랐지만, 인상 결과 각사 주력 상품(신라면·삼양라면·진라면·왕라면) 출고가격이 같아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정보교환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자체를 합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처분을 취소한 바 있음.

Q2. 건설업종에서는 특별히 어떤 정보교환에 주의해야 하는지?

A2.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법 제40조 제1항 제9호)이 성립하기 위한 "정보"는 법령에 열거한 "경쟁상 민감정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임.(예시조항이 아닌 열거조항) 따라서, 입찰시 원가, 거래조건 등의 정보가 교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공정위는 심사지침에서도 건설공사와 관련된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당사는 독자적 담합을 구성하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건설업종에서 주로 문제되는 입찰담합(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정보교환 행위로 담합이 추정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외형상 일치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교환에 주의해야 함.

※ 당사 또는 입찰참여 예정사 어느 하나의 입찰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즉 입찰가를 높이거나 입찰 비용 절감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 입찰가격을 더 낮게 설정할 여력이 있음에도 경쟁사업자와 유사하거나 약간만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할 유인이 생기게 하는 정보(심사지침 IV. 3), 입찰자 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저가출혈을 방지하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다른 합의에 관한 정보의 교환(심사지침 V. 2. 다)까지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실무상 어떤 정보교환이 문제되는지는 교환된 정보가 시장(입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임.

Q3. 사업자단체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괜찮은지?

A3. 사업자단체를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심사지침 Ⅲ)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협회 소속회사들 간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 미래의 정보 보다는 과거의 정보, 특정 프로젝트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하여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Q4. 정보교환 합의 추정에 대한 반증(복명) 자료는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

A4. 오인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문서를 만들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업자가 합의 추정을 깨기 위한 반대입증(복명)자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는 외형상 일치가 우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자적 의사결정 자료, 주어진 시장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다른 강력한 외부요인에 의해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자료 등이 있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



소비자 관련 공정거래

1. 표시·광고법의 이해

▶ 부당한 표시·광고란?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 함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0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02 기만적인 표시·광고

0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04 비방적인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성

+

공정거래 저해

▶ 표시·광고법의 목적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용어의 정의

01 표시·광고

- 표시 : 소비자에게 상품의 특성을 알리기 위한 문자, 도형
- 광고 : 상품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

02 사업자(단체)

- 사업자 :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
- 사업자단체 :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

03 소비자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생산 또는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1.1 부당한 표시·광고의 개념

1.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

-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정 거래법 :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등)과 표시광고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써, 표시 광고법이 우선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법(광고에 의하여 원산지나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과 표시 광고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 소비자 보호법 : 소비자보호법(제10조, 제11조의 표시, 광고의 기준)과 표시 광고법은 각각 입법 목적을 달리하므로 경합하여 적용된다.

③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법 제3조)

-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④ 중요정보공개 (법 제4조)

- 소비자가 합리적 구매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과 그
방법을 업종별로 고시하고,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중요정보공개대상은 ①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② 소비자
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하도록 한 사항은 제
외한다.

⑤ 표시·광고 실증 (법 제5조)

- 사업자등은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
업자등에게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은 15일 이내이다.
- 실증자료 제출 요청의 주요 대상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내용, 안전이나 환
경과 관련된 내용, 상품의 성능·효능·품질 등에 관한 내용 등 소비자가 구매선택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표시·광고 내용이다.

⑥ 임시중지명령 (법 제8조)

-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 등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조치의 필요성
이 시급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임시중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임시중지명령 요청은 소비자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그 밖의 표시·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

⑦ 행정적 제재 및 벌칙 (법 제7조, 제9조)

- 시정조치 :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 시정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부과 (법 제7조)
- 과징금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
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부과 (법 제9조 제1항)

1.2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구분	내용
①거짓·과장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②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사용 상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누락하는 경우
③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 등이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 ◆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④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 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광고상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 상품과 경쟁 사업자 상품을 비교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관련 사례

사실관계

(주)엘지하우시스, (주)케이씨씨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연간 약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 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창호 제품의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

사업자명	광고내용
(주)엘지하우시스	틈새없는 단열구조로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냉방/단열 약 64%~70% 개선
(주)케이씨씨	에너지 절감률 30%~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 원 KCC 로이유리 적용 시 냉난방 에너지 최대 40% 절감
(주)현대엘앤씨	창호 교체만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 냉난방비 절약 1등급 창호로 교체 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 연간 30만 원 이상 냉난방비, 평균 에너지 40% 절약

공정위 판단

(과장성)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사들이 특정 조건을 설정하여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 절약 결과가 마치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장성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❶ 난방비 절감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냉난방비 모두 절감된다고 광고하거나 ❷ 한여름(7~8월) 냉방비와 한겨울(12월)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 모의실험 결과, ❸ 창호의 기밀(氣密)이 50% 향상됨을 근거로 건물 전체 기밀도 50%로 향상되었다고 하는 가정의 타당성, ❹ 가스비 절감을 전기비 절감으로 광고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실증 자료의 시험 결과를 부풀려서 광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실제 창호를 교체한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률은, 2등급 이상의 창호로 교체 기준, 14.5% 수준이었다.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 건물을 대상으로 실제 에너지 절감률을 조사한 결과, 모의실험 결과와 같이 절감된 건물은 전체의 14%에 불과함.

*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였다.

조치내용

1. (시정조치)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부과

2. (과징금) 5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12억 8,300만 원 부과

- (주)엘지하우시스 7억 1,000만 원, (주)케이씨씨 2억 2,800만 원, (주)현대엘앤씨 2억 500만 원, (주)이건 창호 1억 800만 원, (주)원체 3,200만 원(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광고(예시)


www.windowplus.co.kr

단열효과, 냉·난방비 절감
우리집 에너지세이빙 솔루션 - Z:IN windowPlus



난방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수퍼세이브창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창호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나가는 에너지는 지켜주고,
들어오는 냉기는 막아줍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들어오는
찬공기는 막고



잠안 열기는
지켜주고



두가지 모두 1등급

단열성능 창을 통해 나가는 에너지 차단 성능
밀폐성능 창 틈을 통해 들어오는 공기 차단 성능

밖으로 새어나가는 열의
70%를 줄여줍니다.

1등급창호 교체로
열손실을 최소화하세요.



70% 감소

※ 열손실을 1도만 낮추어도 난방비는 10%가량 줄어듭니다.

연간 냉난방비가
40% 절감됩니다.

창만 바꿔도 매년 40만원의
냉난방비가 절감됩니다.



연간 40만원 절감

※ 30만원의 창호비를 제외하고, 사용기간이 길수록 절감액이 커집니다.

1등급 창호를 위한 유리 Matching! **국내 최고 단열성 수퍼로이**

Z:IN 수퍼로이유리는 로이유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은(E) 코팅을 50% 두껍게 하여 로이유리 중 국내 최고의 단열성을 자랑하는 LG하우시스만의 초고단열 로이유리입니다.

로이유리란?

Low-emissivity의 약자로, 유리표면을 은으로 코팅해 실내온도변화의 열의 외부유출을 막아주어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에너지절약형 유리를 말합니다.

Z:IN 수퍼로이 한창만으로 1등급 창호 구현이 가능합니다.



두창 효과 그대로
가격은

20% 절감

로이유리 + 로이유리

수퍼로이유리 + 일반유리

사실관계

2015.9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차에 배출가스 조작을 하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을 말함. 국내에서도 아우디·폭스바겐은 2009 ~ 2015년 기간 동안 유로-5 기준 경유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2015.11월 환경부, 2017.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자사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거짓·과장·기만 광고) 벤츠는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공정위 판단

□ 공정위는 벤츠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벤츠의 차량이 뛰어난 배출가스 저감 성능으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법에도 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소비자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배출가스 저감 성능에 대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

○ 특히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이 사실과 다를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점,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여진다.

□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 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특정 차량이 임의 설정 행위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여 제작되어 결함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와 함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였다.

The New E 220 BlueTEC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한층 더 강화된 안전·편의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The New E 220 BlueTEC Avantgarde를 새롭게 선보였다. 메르세데스-벤츠 프리미엄 중형 세단 E-Class의 디젤 모델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여 **획기적인 연비 개선과 배출가스 감소를 실현시켰다.** 동일한 주행 속도에서 더 낮은 엔진 회전수로 주행이 가능해 연료 효율성을 향상시킨 것도 장점 중 하나다.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조경관화를 실현해 이전의 변속기보다 1킬로그램 더 가벼워졌으며, 익스테리어 스포츠 패키지(Exterior Sports Package)와 나이트 패키지(Night Package)를 적용해 한층 더 다이내믹하고 스포티한 외관을 완성했다.



12 Mercedes-Benz magazine

에너지 사용에 대한 신선한 접근.

The C-Class의 모든 엔진에는 이미 한 가지 이상의 재생 가능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BlueEFFICIENCY¹는 배출가스 없는 주행을 향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비전을 뜻합니다. C 300 h에 사용된 BlueTEC HYBRID 기술은 자능적이고 효율적인 구동 조합을 선보입니다. 그 심장에는 4기통 디젤 엔진, 컴팩트한 전기 모터, 자동 변속기 7G-TRONIC PLUS와 파워풀한 리튬 이온 고압 배터리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모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동 시 발생하는 차량의 운동에너지 일부를 다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회생 제동 시스템을 적용한 덕분에 파워풀한 가속, 높은 연료 효율, 배출가스 저감까지 이뤄냈습니다.

진보는 계속됩니다. C 350 e는 PLUG-IN HYBRID 기술 적용으로 더욱 효율적인 복합 엔진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전기 모터와 4기통 가솔린 엔진을 구동 시스템에 연결해 에너지 회생 외에도 자동차의 배터리를 전기 콘센트에 꽂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용량이 커질수록 배출가스 재료의 순수 전기 모드로 더 오랜 시간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전용 모델 또한 경제적이고 선구적입니다. 가솔린 엔진의 경우, 배기가스 터보 차징, 직분사, 연소 과정 개선을 통해 연료 소비와 배출가스를 모두 감소시켰습니다. 디젤 엔진 탑재 모델의 경우, 최첨단 BlueTEC 배기가스 후처리 기술을 이용해 질소 산화물을 최소화한 90%까지 줄였습니다. 물론, 모든 C-Class 모델은 유로 6 배출가스 규제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합니다.

엔진 기술, 위대한 자동차를 탄생시켰다.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한 메르세데스-벤츠는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C-Class에는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ECO 스타트/스톱 기능과 기어 변속 안내 기능이 기본 적용되며, 특수 주행 모드와 ECO 경로 추천 기능도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별 선택 품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해커스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와 관련된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은·폐누락한 채 직원들이 작성한 해커스 강의·교재와 관련된 추천·글댓글 등을 게시하고 경쟁사에 대한 추천 글들은 삭제하였다.

해커스는 관리자 아이디 혹은 개인 아이디로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커스 교재·강의 강사 등에 대한 홍보글, 해커스 수강생의 합격수기 등을 게시하거나 해커스 추천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카페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상품이 1위로 선정되도록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쟁사 강사 등 항목에는 투표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댓글로 해커스 강사 등을 추천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재하였다.

해커스는 해당 카페를 운·영관리하면서 경쟁 온라인 교육업체, 출판사 등을 추천하는 게시글, 댓글 등을 삭제하고 그와 같은 글을 작성한 유저의 아이디를 활동정지 등 조치를 취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해커스가 16개 온라인 카페를 통해 자신의 강의·교재를 추천·홍보하면서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은·폐누락한 행위가 기만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기만성) 해커스는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게시글 등을 통해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하였음에도, 카페 메인 화면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

(소비자 오인성) 해커스와의 관련성 등이 기재되지 않은 추천 글 등을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 사건 카페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해커스 추천글 등도 일반 수험생 등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저해성) 소비자가 이 사건 카페에 게시된 추천 글 등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 강의·교재 등 관련 상품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받음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조치내용

공정위는 (주)해커스어학원, (주)챔프스터디, (주)교암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8억원 (3개사 각 2.6억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광고(예시)

<해커스 교재 홍보 댓글 작성 지시>

제목: 공무원 영어 **해커스 패스 교재만 봐도 충분하다**로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작성자: ○○○ (HomeP > 교육기획1팀 > 공)

작성일: 2013. 4. 8.

<http://cafe.naver.com/m2school/173194>

[댓글]

- [○○○] 네, 팀장님. **해커스 교재만 봐도** 공무원 영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홍보 진행하겠습니다.
- [○○○] 네, 팀장님. 해당 글에 댓글 작성하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 네, 팀장님~! 해커스 교재 홍보댓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험생을 가장하여 작성한 댓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수험생 모임
경수모

주요소식
12월22일
필기시험

선정

자유게시판 경수모 > 면접장.. 전영역 기출해설 경찰면접 기출문제 경찰 합격수기

이전글 다음글

민감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별공러자(#ago***)

어디 인강이 최고 가성비 좋을까요?
초시생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등록순 > 조회순 > 좋아요 > 0

별공러자 11월 11일
가성비는 해커스 아닌가요? ㅋㅋㅋ 할 1만원대... 1년 19만원에 무제한 수강이 가능한데요? 500개강 김태환쌤도 계시고... 영어 김한나쌤도 계시고. 기본+심화+분류순으로 커리큘럼을 추천드립니다.

태극기라이쉬 11월 11일
가성비는 해커스일... 추천하러다려구요~

22의 해방가자 11월 11일
가성비도 좋지만 자신에게 맞는 교수님을 찾아 공부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하게 고르시면 좋은거 같아요~

공수합격가즈아 11월 11일
예유칠? 해커스? 이쪽인 것 같아요 다른 학원들 홈페이지 보면... 하지만 더 중요한건 무료 강의들 올려 있는 것을 꼼꼼히 보면서 내게 맞는 강사님을 따라 선택하는거라는 사실! 많이 애가 들으실거예요~ 한 번 선택하면 1년 가야 되니까 한번 하 시간들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사례

사실관계

부킹닷컴은 무료공항택시 프로모션 초기(2022. 4. 12.~6. 26.)에는 국내 소비자에게 이 사건 광고대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2022. 6. 27.~2023. 9. 20. 기간동안 광고는 노출하면서도 '무료공항택시 이용 페이지'로의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광고와 달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미제공 (세부기간별 행위사실은 아래와 같음)

- '무료공항택시 이용 페이지'접속을 차단하여 광고만 노출

- 부킹닷컴은 국내 소비자가 접속하는 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내 소비자에 대한 무료공항택시 프로모션을 중단 결정하고, 2022. 6. 27. 국내 소비자의 무료공항택시 이용 페이지 접속을 차단*

-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광고는 차단하지 않아 2022. 6. 27.~ 11. 28. 기간동안 이 사건 광고가 국내 소비자에게 계속 노출됨

→ 이 사건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는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관련 숙박상품을 예약했더라도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이용 불가

다만, 기술적 오류로 '무료공항택시 이용 페이지' 접속이 완전히 차단하지 못해 일부 국내 소비자는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음

(단, 2022. 11. 28.부터 해당 페이지 접속을 완전히 차단)

공정위 판단

□ 부킹닷컴은 국내 소비자에게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마치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함

- 이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광고에 해당

-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등이 있어야 하고 ②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③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

조치내용

□ (조치 내용) 공정위는 부킹닷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19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광고(예시)

<검색결과 화면의 무료공항택시 배지 광고(베트남 호찌민 소재 호텔, 예시)>

호찌민: 검색된 숙소 1,887개

보이는 순서: 장기 투숙에 추천 > 모든 유형의 숙소 >

파트너가 지불하는 수수료와 그 외 다른 요소에 따라 숙소의 검색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Garden View Court Suites Ho Chi Minh City 매우 좋음 8.4 (108개 이용 후기) 편안함 8.8

1지구, 호찌민 지도에서 표시 중심부에서 450m

무료 공항 택시 2023 새해맞이 특가

수퍼리어 아파트
 단독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1개 • 침실 1개 • 거실 1개 • 욕실 1개
 • 주방 1개 • 62m²
 대형 더블침대 1개

조식 포함
 무료취소 • 선결제 필요 없음
 나중에 취소 가능한 최저가를 지금 잡아놓으세요.
 우리 사이트에 이 요금으로 남은 옵션 단 7개

₩1,172,584 **₩703,550** (세금 및 기타 요금 포함)

예약 가능 옵션 보기 >

<상품 상세페이지 배너광고의 '더 알아보기' 링크 및 팝업창 화면(순차)>

약 ₩20,172 상당의 공항 택시를 무료로 이용해보세요

이제 예약한 경우, 이는 상응으로 귀소 처리됩니다. 최소 이용액 기준은 검색 결과 페이지와 숙소 페이지의 프로모션 배너 및 메시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승차 시간까지 24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료 교통편 예약을 취소한 경우, 해당 혜택을 다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혜택은 Booking.com B.V.에서 제공하며, 현지의 지상 교통편 파트너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Booking.com Transport Ltd에서 서비스를 이행합니다. 본 혜택은 숙소 제공업체와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객은 본 혜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혜택은 아래 명시된 도시 및 해당 도시의 공항(IATA 코드)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코루냐(IATA: LCG), 애버던(IATA: ABZ), 아부다비(IATA: AUH), 아데헤(IATA: TFS), 엑상프로방스(IATA: MRS), 알부페이라(IATA: FAO), 알게로(IATA: AHO), 알리칸테(IATA: ALC), 알메리아(IATA: LEI), 안시(IATA: GVA), 아레시페(IATA: ACE), 바쿠(IATA: GYD), 방갈로르(IATA: BLR), 바리(IATA: BRI), 바스(IATA: BRS), 바투미(IATA: BUS), 베이징(IATA: NAY, PEK, PKX), 벨루오리존치(IATA: CNF, PLU), 베날마데나(IATA: AGP), 베니도름(IATA: ALC), 베오그라드(IATA: BEG), 베를린(IATA: BER), 비아리츠(IATA: BIQ), 비비오네(IATA: TRS), 빌바오(IATA: BIO), 버밍엄(IATA: BHX), 볼레드(IATA: LUJ), 볼로냐(IATA: BLQ), 본(IATA: CGN), 보르도(IATA: BOD), 본머스(IATA: BOH), 브라티슬라바(IATA: BTS), 브레멘(IATA: BRE), 브린디시(IATA: BDS), 브리즈번(IATA: BNE), 브리스틀(IATA: BRS), 브롱크

확인

1.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주요 고시·지침

1.3.1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한다.

▶ 상가 등의 명칭

- 상가·호텔 등을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명칭을 사실과 달리 백화점, 특급호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설립·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 것처럼 명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일반상가를 분양하면서 □□백화점, ○○쇼핑, 대형마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 (다만 안경백화점, 가구백화점 등 유통발전법에 따른 백화점 등이 아님을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지 않음.)
- ㉡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급 등의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마치 특급호텔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

▶ 분양업종, 분양방법, 분양현황, 공사현황

- 상가 등을 분양 광고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입점을 허용할 것으로 표시·광고한 뒤,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분양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피분양자의 자격 또는 수, 피분양자를 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분양 표시·광고시 점포의 분양 현황에 대한 표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사실과 달리 은행, 극장, 볼링장 등의 체육시설 등, 상가 등에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큰 대중이용시설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 건물의 공사진행상황이나 입점예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지정업종은 분양실적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의 단서없이 볼링장, 실내수영장, 극장 등을 지정업종으로 표시광고하고 사후에 다른 업종으로 분양하여 입점시킨 경우 사실과 다르게 특정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
- ㉣ 선착순분양이라고 표시광고하고 다른방법으로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점포수 명시시 제외)
- ㉤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 ㉔ 사실과 다르게 1차분 20개점포 100% 분양 평균 경쟁률 15:1, 최고 경쟁률 18:1 전국 지하상가 최고 분양율
- ㉕ 입점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우리은행 입점확정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

-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마치 시행자, 시공자 등 다른 자가 분양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시공자의 상호나 상징마크 등을 상가 등의 명칭에 포함하여 마치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①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 건축물의 건축·시공 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
 - ② 분양자가 시공자와 분양 표시·광고에 시공자의 상호 등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분양 표시·광고에 분양자보다 시공자의 명칭을 크기, 색상 등의 면에서 현저히 눈에 더 잘 띄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달리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㉑ 분양표시광고에 분양자의 표기하지 않고 ① 시행자나 시공사만을 표기하거나 ② 분양자가 속한 계열그룹만 표기하거나 ③ 분양자나 분양대행자 또는 모델하우스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는 경우
- ㉒ 원래 분양자인 A사로부터 상가를 매수한 실제 분양자가 마치 원래 분양자가 분양하는 것처럼 A상가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입지조건, 생활여건, 접근성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주소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실제 입지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상권에 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또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 기준지점이나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 「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닌 「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주택소재지가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나 도로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교통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계획단계 비전이나 막연한 추측상의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학교, 공원, 백화점, 수영장 등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의 일부가 접도되지 않음에도 접도된 지번만 표기하는 경우
- ㉡ 실제 상가 교차로와 접하는 곳에 위치하지 않음에도 분양광고 상 교차 객관적인 자료에 위치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 객관적인 근거없이 어떤 업종이라도 성공이 보장된 천연상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 LH 등의 사업결정 등 근거없이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예정 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재산가치 수익성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확정·확인 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워 토지의 개발이나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객관적인 근거없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급상승할 전망, 절대우위의 가치입증, 입점과 동시에 엄청난 투자증식 효과가 보장되는 상가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 〇〇원 투자시 2년내 수익율 200% 보장.
- ㉢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도로개통, 지방산업단지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 분양업체가 수분양자에게 수익보장 기간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평생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기간 수익을 확정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은 분양금액의 4.6%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수익율로 표현하는 경우.

▶ 부동산의 가격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나 권리금 등을 막연하게 표기하거나, 사실과 달리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분양가격, 권리금, 임대차가액 등의 지불조건 또는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분양가 3,000만원, 부가가치세 300만원인 상가를 분양가만 표현하는 경우.
- ㉡ 주변 상가 권리금 대비 높은 권리금이 보장됨을 광고하는 경우.
- ㉢ 타 상가 대비 2배 이상 높은 임대료 보장.
- ㉣ 유지자 분할납부를 무이자 분할납부로 표현하는 경우.
- ㉤ 일부 세대만 평당 900만원에 공급됨에도 전세대가 동일조건으로 공급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부동산의 면적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확정·확인 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워 토지의 개발이나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점포별 공용면적 5평, 전용면적 5평인 점포를 분양하면서 단순히 점포당 10평의 넓은 매장이라고 기재하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 (○) 전용면적 = 등기면적

▶ 부동산의 특징(재료·제품, 품질, 부대시설, 별도계약품목 등)

- 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 또는 점포의 구조, 재료, 부속,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급·배수, 가스, 전기, 무인경비 등의 부대시설이나 별도 계약품목의 품질에 대해, 혹은 그 설비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부담조건 등에 대해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분양 카타로그에 점포 바닥마감재를 대리석으로 나타내고 실제로는 일반타일로 쓰는 경우.
- ㉡ 창호 유리를 차음, 방음성능이 뛰어난 페어글라스 사용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 유리 사용.
- ㉢ 분양가 외에 별도 비용이 필요한 무인경비시설에 대하여 완벽한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 상가 입점자만 사용가능한 주차장을 설치하고 고객을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 인근 아파트 단지보다 녹지율이 높지 않음에도 지역 최고의 녹지율 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 용자·전세금 등

- 용자금액에 대하여 용자기관 또는 용자금액, 이자율, 용자기간, 상환기간 등 용자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가액을 인근 동일조건의 것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최고 3,000만원 용자, 연 11% 확정으로 표현하였으나 용자신청시 대출금액 축소 또는 금리 인상되는 경우.
- ㉡ 용자관련 제반비용 부담없음 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부대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 인·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분할허가를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관계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토지분할 허가를 받지 않아 공유지분임에도 분할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 공유지분 등기방식 상가분양시 구분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평면도, 조감도 등을 통하여 분양상가의 층별 분양업종을 지정 표시하여 분양광고하는 경우.

▶ 조감도 등

-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의 유무, 위치, 거리, 교통편 등을 조감도, 카탈로그, 팸플렛, 약도 등에 표시할 때, 일반 소비자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장래에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예정시기를 명시하거나 “계획” 또는 “예정” 등의 단서를 명기하여 표현하는 것은 무방하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건립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을 ○○기관 건립계획 확정 단서를 붙여 조감도에 표현하는 경우.
- ㉡ 건설계획만 확정된 지하철노선의 역위치를 완공시기를 표기하지 않거나 계획, 예정 등의 단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건물인증

-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표현과 관련하여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상위등급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 표현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등 인증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건축물인증(본인증, 예비인증 포함)을 받았음에도 1등급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 ㉡ 인증절차 없이 에너지효율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건본주택(모델하우스)

- 건본주택을 설치하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에 실제 사용될 재료나 제품보다 우량한 것을 사용하거나 우량한 구조로 설치하여 당해 주택이나 상가 등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건본주택에 사용된 재료 또는 구조가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설치한 경우에도 실제의 것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건본주택 인테리어 자재를 실물보다 더 고급으로 적용하는 경우.
- ㉣ 건본주택에 세라믹 욕조를 설치하고 " 시공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고 표기한 후 품질 또는 입주자 동의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아크릴 욕조를 사용한 경우

▶ 콘도미니엄

- 일정기간 동안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모집에 불과함에도 공유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객실의 공유와 이용지분에 따라 연간이용가능일수 및 성수기이용가능성이 제한됨에도 성수기 예약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연계 체인망 콘도 등을 직영콘도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콘도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콘도이용 회원모집임에도 "소유하십시오" 등 소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 ㉥ 성수기 100% 예약이 불가능함에도 성수기 예약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1.3.2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 가이드 라인

- 최근의 소비자행동 과학 분야의 발전에 따라 널리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표시·광고를 통해 제시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표시·광고의 표제만을 개략적으로 보거나, 표시·광고의 전반적인 문맥, 이미지, 음향 등을 통해 두드러지게 전달된 사항만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광고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 소비자가 표시 또는 광고를 접할 때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것이다.
- 대법원은 어떤 표시 또는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해당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종합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사회과학의 발전을 판례에서 수용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 결과적으로 최근의 법적·과학적 발전을 수용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상의 부분적인 맥락이나 강조되지 않은 지엽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소비자 오인성을 판단하기 보다는(소비자는 핵심적이지 않거나 지엽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를 통해 전달하였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주장이나 내용을 기초로 소비자의 주관적인 인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 어떤 표시·광고가 특정한 정보 없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때, 사업자는 최우선적으로는 표제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없도록 표시·광고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정보를 표제에 담을 수 없는 피치 못할 경우라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대략적으로만 확인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제한사항)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 그간에는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의 맨 하단에 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거나 별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와 같은 제한사항의 형식적인 전달은 앞서 언급한 대로 소비자가 광고를 접할 때의 행동을 감안할 때 소비자 오인성을 제거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제한사항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해당 제한사항은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통해 전달받은 종합적인 인상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제한사항이 주된 표시·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제거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한사항의 내용과 형식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소비자에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회사는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제한사항이 필요한 표시·광고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광고는 그 양태가 실로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 방안에 대해 일률적인 세부기준을 상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사업자 스스로 구체적인 표시·광고의 내용, 매체, 관련 제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자가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 표시·광고를 행하는 데 지침이 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

- 표시.광고가 특정한 정보 없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제한사항)는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한사항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소비자의 눈에 잘 띄어야 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

제한 3요소	세부사항
두드러짐	① 신문 지면 광고를 하면서 제한사항을 표기한 부분의 배경 색을 어둡게 처리함으로써 제한사항이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지 못하게 한 경우. ②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달 만에 7Kg 감량'이라고 눈에 띄게 광고하면서, 체중감량 전후 대비 사진에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쓴 경우. ③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격증 취득시 취업보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의 무급 인턴ships을 거쳐야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	① 결혼정보업체가 자신이 '랭키닷컴' 기준 업계 1위라고 광고하면서, 동 기준은 회원수, 성혼률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단순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②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광고에 적시하지 않고 '자세한 사항은 응모권이나 홈페이지 참고'라고만 제한사항을 표기한 경우.
표현의 명확성. 구체성 및 평이성	①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관행적인 문구만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실제 생활공간과는 동 떨어진 실험조건 및 그 의미를 은폐한 경우 ②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99.95%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동 수치는 'EN1822' 실험실 검사 결과임을 제한사항으로 표기하였으나 'EN1822'의 의미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경우

1.3.3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해당 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수상·인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한다.

▶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 자사 제품이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국립보건원의 검정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 인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 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세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하이서울브랜드) 로고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참가상 또는 순변상 수상을 품질이 우수해서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일부분을 전체에 대해 수상·인증·선정·특허를 받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정부문에 한정되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을 받았음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을 받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 자사 제품이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국립보건원의 검정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 인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 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세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하이서울브랜드) 로고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높여서 표시·광고하는 행위

- 수상·인증·선정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표시·광고 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우수상 수상을 상의 훈격을 높여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 수상기관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또는 수상기관의 권위를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여 자사의 수상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 민간단체의 인증사실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 외국정부기관이 자사 제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사 제품이 세계정상급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1.3.4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해당 고시는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되는지를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일반국민에게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 소비자 오인성

-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또는 주의력이 낮은 소비자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업자가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표시·광고의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표시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게 되는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기만당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광고적 표현인 경우 (예: '최적의 전원요지', '최고의 강사진' 등)에는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문제되는 표시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인 경우에도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공정거래저해성

- 표시·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또는 주의력이 낮은 소비자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표시광고의 목적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닌 경우'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익캠페인, 대회 참가 유도 광고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소비자의 구매 결정과 관계없는 광고의 경우가 해당된다.
- 표시·광고의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표시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게 되는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1.3.5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해당 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소비자의 추천·보증 등

-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 소비자가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광고상에 표현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주름살이 펴지는 얼굴미용기구를 광고하면서 동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감사편지를 게재하여 광고하였으나, 소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 ㉡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화장품을 추천하면서 당해 상품을 실제로 구입해 사용해본 사실이 없음에도 이용후기 또는 사진을 올려 마치 실제 사용한 것처럼 게재하는 경우
- ㉢ 다이어트식품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 성공사례를 소비자의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보다 과장된 경우
- ㉣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실제 건강증진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다는 전문가의 추천·보증내용을 광고한 후 주요 성분변경 또는 새로운 부작용의 발견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전문가가 당초 추천·보증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초 추천·보증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 유명인의 추천·보증 등

- 유명인이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서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광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 유명인이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광고상에 표현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유명인이 자신의 직업 등과 관련된 제품광고에 출연하여 전문가적 입장에서 제품평 등의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자신과 실제 관련된 분야의 제품이어야 한다
- 제품명 또는 업소명에 유명인의 이름이 사용될 경우 유명인이 동 제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유명인이 SNS 등을 통하여 특정 상품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특정 브랜드 또는 상품명을 언급하거나 해당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은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다이어트식품 광고를 하면서 유명인이 동 제품을 복용하여 감량에 성공한 것처럼 광고를 하였으나, 광고주가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거나 제품복용에 대한 약정없이 광고 모델 계약만을 한 경우
- ㉡ 의료기기 광고에 출연한 유명인이 자신이 직접 사용한 경험이 없음에도 사용경험 등을 언급하면서 제품의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 ㉢ 최근에 체중감량에 성공하여 화제가 된 유명인이 다이어트식품 광고에 출연하여 동 제품을 복용하여 몇 킬로그램의 감량에 성공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제품복용 외에 지방제거, 식이요법, 운동 등을 통한 감량이 포함되었을 경우
- ㉣ 의사이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인사가 소화제 광고에 출연하여 제품의 효능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언급하였으나, 실제로는 내과 의사가 아니라 치과 의사였을 경우
- ㉤ 유명인으로부터 단순히 이름만을 빌려 "000의 슬림"이란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 해당 연예인이 동 제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경우

▶ 전문가의 추천·보증 등

- 표시·광고내용의 전체 의미상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판단이 추천·보증 등의 형식으로 표시·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한 내용에 대해 실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표시·광고상 표현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해당 추천·보증인의 판단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대학명과 여러 교수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떤 상품이 이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소개된 교수들이 동 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의 교수들인 경우
- ㉡ 광고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전문가의 추천서를 소개하고 있으나, 당해 상품과 관련성이 없는 다른 분야 전문가의 추천서인 경우
- ㉢ 어린이 아토피 제품 광고에 내과 의사가 '아토피 전문가'로 등장하여 제품의 효과를 광고하였으나 전공분야, 논문, 경력 등의 측면에서 '아토피 전문가'로 볼 수 없는 경우
- ㉣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동 상품에 대해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 등을 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명의의 시험·조사·검사결과를 광고주 임의로 광고에 담아 표현하는 경우
- ㉤ 전문가가 추천·보증 등을 한 내용을 광고주가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표시·광고된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단체·기관의 추천·보증 등

- 단체·기관명의를 권장·권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천·보증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기관이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성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단체·기관의 공식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당한 내부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실제 단체·기관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특정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연구소가 동 건강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건강식품과는 무관한 분야의 연구소인 경우
- ㉡ 해외에 소재한 연구소의 추천·보증서를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연구소는 수수료만 지급하면 품질·성능에 대한 평가 없이 추천·보증서를 바로 발급하는 곳인 경우
- ㉢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동 추천이 당해 협회의 내부의사결정에 따른 추천이 아니라 당해 협회에 소속된 개인이나 일부의 의견인 경우
- ㉣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관련 단체·기관이 추천보증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보증 등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거나, 관련 단체·기관의 추천내용을 광고주 임의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표시·광고된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SNS 상에서 해당 상품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
- ㉡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인터넷 카페에 해당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경우
- ㉢ 의사인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공동개발한 특정 상품에 대하여 홈쇼핑TV의 해당 광고에 출연하여 추천하는 경우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 대규모 행사(마라톤 등)에 참가하여 참가인 전원에게 지급된 기념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가후기를 게재한 경우
- ㉤ 업계전문가 A가 일반인 대상 신제품(향수) 공개행사의 주최측으로부터 참가 기념품(소형 샘플)을 지급받아 사용해본 후 자발적으로 그 후기를 게재한 경우

▶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 표시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이때,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표시문구를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 표시문구를 댓글로 작성한 경우
- ㉢ '더보기'를 눌러야만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문자 형태의 경우,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 형태의 경우, 소비자가 소리 크기나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 ㉡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 ㉢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표시문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한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체험 후기,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서 보내주셨어요.' 등
- ㉡ '[브랜드명]×[계정명]'과 같이 ×자를 통하여 협업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 ㉢ '기타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

-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다만, 동일하지 않은 언어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Advertisement', 'AD',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Sponsor', 'spon', 'sp', 'Collabo', '땡스 투(Thanks to) ~', '앰버서더(Ambassador)'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다만, 동일하지 않은 언어를 일부 포함 하더라도,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Advertisement', 'AD', 'PR', '컬래 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Sponsor', 'spon', 'sp', 'Collabo', '땡스 투 (Thanks to) ~', '앰버서더(Ambassador)' 등 을 사용하는 경우

▶ 매체별 구체적인 표시 방법

매체	공개 형식
문자를 통한 추천·보증 등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사진을 통한 추천·보증 등	① 표시문구를 사진 내에 게재한다. ②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문구를 사진 내에 게재하지 않으며, 이 경우, 표시문구를 글의 첫 부분에 게재한다. ③ 해시태그의 형태로 입력할 경우,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입력한다. 다만,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해시태그가 아닌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④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동영상을 통한 추천·보증 등	①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한다. ②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③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단,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한 추천·보증	① 원칙적으로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며, 이때 구체적인 공개형식은 (3) 동영상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와 같다. ② 다만, 실시간으로 송출함에 따라 제목 또는 자막 등의 형태로 표시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 형태의 표시문구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하며,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단,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⑥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원재료, 성분, 품질, 성능, 제조방법, 가격, 보증, 기타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행하는 표시·광고에 적용

▶ 사업자 자신에 관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 구체적 사실 제시

- 사업자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표시·광고 당시에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호와 관련된 캠페인 등 환경보전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사업자가 자신에 관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자신의 사업상 또는 사업 외에 환경관련 단체를 지원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사실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사실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러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상쇄할 만큼 환경에 유해한 사업상 또는 사업 외의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브랜드로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일부 돈육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브랜드 전체 돈육에 대해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 無항생제" 등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특정 용어 및 표현의 사용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아래 각 호에 예시된 특정 용어 및 표현이 사용되었을 경우 각 호 본문상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허위·과장성 또는 기만성을 판단한다. 그 밖의 유사한 용어 및 표현에 대해서는 각 호에 비추어 적절한 사항을 적용한다. 만약, 방송광고 등과 같이 시간적 또는 공간적인 제약으로 환경 관련 주장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 관련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 공간적 제약이 덜한 곳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접근 경로나 방법을 알려야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유해성 물질의 저감 관련 용어 및 표현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함유량 또는 배출량이 적다고 표시·광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기능·효능을 발휘하는 주성분과 그 함량을 나타내지 않거나 막연히 표현하는 경우에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EX > "천연 소재", "저~", "재활용물질함유", "재생자원 사용", "에코 소재", "오존층 보호" 등

㉡ 무함유 관련 용어 및 표현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없다는 것을 표시·광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경우, 무함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막연히 표현하는 경우에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EX> "무독성 원료", "무해성", "무~", "유기농~" 등

㉢ 에너지 절약·저감 관련 용어 및 표현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에너지 투입이 적거나 절약한 상품임을 표시·광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경우, 그 절감량 또는 비율을 나타내지 않거나 나타내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상품 또는 포장인지 혹은 그 중 일부분인지를 구별하여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EX> "재생에너지 사용", "고효율", "에너지 절약", "연비 효율적" 등

▶ 환경마크 등의 사용

- 환경마크는 “법정인증마크”, “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로 구분한다. 사용 기간이 만료된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받은 범위·사유와 다르게 환경마크를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각 유형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법정인증마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하는 환경마크를 의미하며, 표시 방식은 관련 인증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을 따른다.

- 환경부의 “환경표지”는 도안 하단에 환경표지 인증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사유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안 상단에는 “친환경000”의 형태로 친환경 상품임을 표시해야 함
- 환경부의 “환경표지” 도안 우측 등에 인증 받은 범위나 사유(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감소, 소음진동감소 등)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도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일 수 있음

㉡ 업계자율마크

법적 근거없이 업계 자체적으로 평가절차와 인증과정을 거쳐 성능, 품질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품에 붙는 마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마크 사용시 국가인증 마크 등과 유사하게 도안 또는 표기하면서 인증기관 등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한국표준협회의 로하스인증을 받아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업계자율마크”라는 용어 또는 인증 단체명을 같이 명기하지 않을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 기업자가마크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상품의 품질, 성능 등 자사상품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자체 디자인한 도안이나 마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마크 사용시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와 유사하게 도안 또는 표기하면서 “기업자가마크”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기업이 자체 고안한 도안이나 마크 사용시 “기업자가마크”라는 용어를 같이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기업자가마크임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를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 등 제3자 인증마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수상, 인증, 언론보도 등의 인용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나 국제환경표준규격(ISO14000) 인증기관, 기타 환경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허가, 인증 기타 수상 경력이나, 여론 또는 통계 등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신문 · 방송 · 잡지 등 언론의 보도, 기타 사업자 자신 또는 제3자가 보증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한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인증 등의 주체, 성격, 효력, 범위 등의 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표시 ·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경 관련 수상 등에 관한 표시 · 광고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수상 · 인증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른다.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환경경영체제 국제규격(ISO 14001)초안에 근거하여 시범인증을 받은 사실을 가지고 이를 마치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 · 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미국 FDA는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 간접 식품첨가물로 분류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이나 인증을 하지 아니함에도 FDA에서 승인 또는 인증받아 인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품용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 · 과장에 해당할 수

㉡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인용

상품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시험결과를 표시 · 광고에 사용할 때에는 그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표시 · 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에서 규정한 시험기관, 시험절차와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를 인용하여야 하며, 위의 기관 외의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는 신뢰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시 · 광고에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준하는 기관이 수행하거나 인정한 것에 한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해당 표시 · 광고에 당해 외국 시험기관의 성격, 규모, 신뢰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소비자가 그 시험기관에 관하여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원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상품에 대한 시험결과인 것처럼 표시 · 광고하거나 시험결과를 마치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인증서인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경우, 거짓 · 과장 또는 기만적일 수 있음

㉢ 증언식 광고

환경 관련 표시 · 광고에 상품 등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증언 또는 설명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증언 또는 설명 등은 표시 · 광고 내용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이어야 하며, 당해 상품 등을 실제로 이용해 본 사실이 없는 자의 이러한 증언 또는 설명 등을 표시 · 광고에 포함할 경우 거짓의 표시 · 광고가 될 수 있다. 환경 관련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판단이 추천 · 보증 등의 형식으로 표시 · 광고에 포함된 경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에 따른다.

1.4 표시·광고법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부과 (법 제7조)
- 과징금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부과 (법 제9조 제1항)
- 형벌 :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법 제17조)
- 과태료 : 조사방해의 경우 최대 2억 원, 그 외 위반유형에 대하여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법 제20조)

제재	법률	세부내용
시정조치	법 제7조	공정거래위원회는 ①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②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③정정광고 등 법위반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	법 제9조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법위반의 내용 및 정도, 법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법위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규모, 사업자 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벌칙	법 제17조, 제19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과금을 과한다 (양벌규정).

제재	법률	세부내용
과태료	법 제2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8. 6. 12.> 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물건을 제출한 경우 8. 삭제 <2018. 6. 1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와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서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정한다.
- 단,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 및 관련시장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산정기준)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3.0)	1.6~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2.4)	0.8~1.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1.6)	0.1~0.8% 미만

-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산정기준)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3.0)	4~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2.4)	2~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1.6)	5백만원~2억원 미만

② 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 과태료의 금액은 제2호의 위반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위반점수가 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위반점수 산정기준

위반등급(점수)	고려사항	가중치	1등급 (10점)	2등급 (7점)	3등급 (5점)	4등급 (3점)	5등급 (1점)
1) 해당 표시 광고의 규모	3		•총광고비(20억원 ~) •직전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1조원~)	•총광고비(15~20억원) •직전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1,000억원~1조원)	•총광고비(10~15억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100~1,000억원)	•총광고비(5~10억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10~100억원)	•총광고비(~5억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100억원)
2) 중요정보 항목의 누락 정도	3		•전 항목 누락(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누락된 경우)	•전 항목 누락(그 밖의 항목이 누락된 경우)	•50% 초과 누락(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누락된 경우)	•50% 초과 누락(그 밖의 항목이 누락된 경우) •50% 이하 누락(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누락된 경우)	•50% 이하 누락(그 밖의 항목이 누락된 경우)
3) 해당 표시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2		•전국적 TV광고(300회 초과) •전국적 신문광고 등(60회 초과) •해당 상품 포장·용기에 표시(180회 초과)	•전국적 TV광고(150회 초과 ~ 300회 이하) •전국적 신문광고 등(30회 초과 ~ 60회 이하) •해당 상품 포장·용기에 표시(90회 초과 ~ 180회 이하)	•전국적 TV광고(150회 이하) •전국적 신문광고 등(30회 이하) •인터넷(다른회사 사이트) •해당 상품 포장·용기에 표시(30회 초과 ~ 90회 이하)	•지역적 TV·신문 광고 •전국적 배포되거나 부착된 전단, 팸플릿, 스티커 등 •인터넷(자기회사 사이트), 잡지 •해당 상품 포장·용기에 표시(30회 이하)	•일부 지역에만 배포되거나 부착된 전단, 팸플릿, 스티커 등 •사업장 내에 게시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배포하는 설명서
4) 최근 1년간 위반 정도	2		•법 위반 누적점수(70점 초과)	•법 위반 누적점수(40점 초과 ~ 70점 이하)	•법 위반 누적점수(20점 초과 ~ 40점 이하)	•법 위반 누적점수(20점 이하)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점수	과태료 (만원)
10점 이하	50
10점 초과 ~ 15점 이하	100
15점 초과 ~ 20점 이하	150
20점 초과 ~ 25점 이하	200
25점 초과 ~ 30점 이하	300
30점 초과 ~ 35점 이하	400
35점 초과 ~ 40점 이하	500
40점 초과 ~ 45점 이하	650
45점 초과 ~ 50점 이하	800

위반점수	과태료 (만원)
50점 초과 ~ 55점 이하	1,000
55점 초과 ~ 60점 이하	1,500
60점 초과 ~ 65점 이하	2,000
65점 초과 ~ 70점 이하	2,500
70점 초과 ~ 75점 이하	3,500
75점 초과 ~ 80점 이하	4,500
80점 초과 ~ 85점 이하	5,500
85점 초과 ~ 90점 이하	7,000
90점 초과 ~ 95점 이하	8,500
95점 초과	10,000

Q1. 표시광고법상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피신고자를 괴롭힐 의도로 신고를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A1. 표시광고법에는 아래의 설명내용과 같이 신고와 관련된 규정은 있으나, 허위신고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에는 신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80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8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는 누구든지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Q2. 사업자가 자신의 유리한 부분만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광고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A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진실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합리적 소비생활과 건전한 경쟁촉진에 기여하는 비교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2001. 9.1.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의 유리한 부분만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교내용은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이어야 하고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고 비교내용 및 방법이 적정하여야 됩니다.

Q3. 갑이라는 사람이 tv, 신문, 전단지 등에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신고인이 신문에 게재된 광고만을 신고하였고 공정위도 신문광고의 사실만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 기타 광고매체에도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A3. 여러 매체에 동일한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었고 그중 한 매체만이 신고되어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이므로 그 효력은 동일한 내용의 광고 전체에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에서 위반되었다고 판단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동일한 사업자가 계속 한다면 이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해당되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4. 판매자가 상담 중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는 것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되는지?

A4.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는 광고를 ①'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업자에 관한 사항' 또는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②신문·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인터넷 또는 PC통신 등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된 매체를 통해, ③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상담 중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는 행위는 위 표시광고법상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5. 경쟁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자의 품질 등을 자사가 직접 조사, 평가하여 그 결과를 비교표시광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단, 관련 근거 등은 모두 공정하게 조사되었음)

A5. 자사가 직접 조사 평가한 결과치는 표시광고법상 실증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광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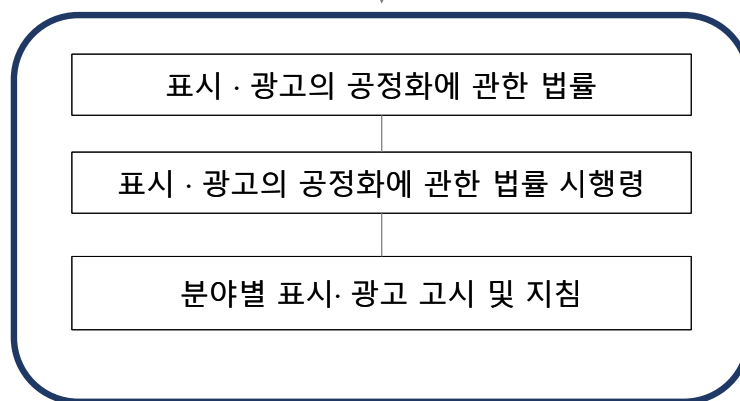
Q6. 제품 광고보다 일부 제품이 Spec. 미달이 발생한 경우 이것도 과장광고 행위 위반에 해당 되나?

A6.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경우로서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데 대한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로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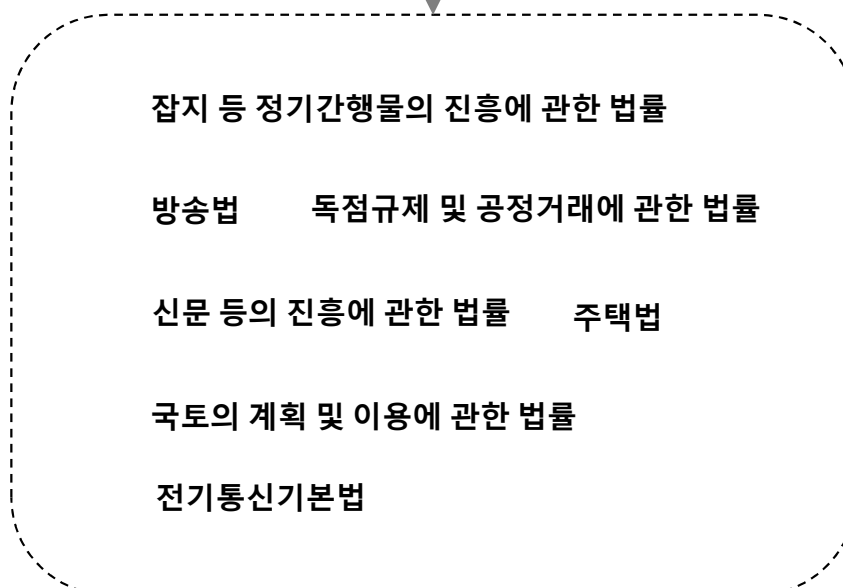
별첨1. 소비자 정책의 범위 및 추진체계

구 분		주요법령		주요 관련 기관
		공정위 소관	타부처 소관	
규제 행정	거래적정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산업표준화법 등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안정성 보장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등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 행정	소비자교육	소비자기본법	평생교육법	각 부처 공통
	피해규제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민법	공정위, 소비자원, 법원
	정보제공	표시광고법	각 부처 개별 법령	공정위, 소비자원

※ 정부부처들은 이들 영역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소비자정책을 수행하며, 공정위는 각 부처 소비자정책을 총괄·조정



표시광고법령은 표시광고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18개의 고시·지침으로 구성



별첨2. 부동산 표시광고 관련 Check-List

구분	점검항목	CHECK
상가 등의 명칭	일반 상가를 분양하면서 oo백화점, oo쇼핑, 대형카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특급 등의 등급이 법에 의해 부여될 수 없음에도 특급호텔인 것처럼 광고하지 않았는가?	
시행자, 시공사, 분양자	표시·광고에 분양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였는가?	
	원래 분양자인 A사로부터 상가를 매수한 실제 분양자가 마치 원래 분양자가 분양하는 것처럼 "A상가" 등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았는가?	
	A건설회사는 상가건물의 시공만 맡고 운영은 B회사가 하는 경우인데도, 상가명칭을 A쇼핑, A종합상가라고 하거나 그 명칭이 A회사의 로고를 넣어 분양 표시·광고하지 않았는가?	
분양업종, 분양방법, 분양현황, 공사현황 등	상가 등을 분양 광고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입점을 허용할 것으로 표시·광고한 뒤,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분양하고 있지 아니한가?	
	"선착순 분양"이라고 표시·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부 또는 모든 점포를 입찰 등 선착순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하고 있지 아니한가?	
	사실과 달리 은행, 극장, 볼링장 등의 체육시설 등 상가 등에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큰 대중이용시설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건물의 공사진행상황이나 입점 예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등으로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입지조건, 생활여건, 접근성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주소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실제 입지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한가?	
	상권에 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최상급 또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구분	점검항목	CHECK
입지조건, 생활여건, 접근성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 기준지점이나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 "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닌 "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소재지가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학교, 공원, 백화점, 수영장 등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계획단계의 비전이나 막연한 추측상의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재산가치, 수익성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확정·확인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워 토지 개발이나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부동산의 가격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권리금 등을 막연하게 표기하거나, 사실과 달리 표기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분양가격, 권리금, 임대차계약 등의 지불조건 또는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부동산의 면적	주택의登記면적에 해하여 전용면적 이외에 공용면적이나 서비스 면적 등을 포함하여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외에 서비스 면적이나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분양 면적", "공급면적", "총 면적", "〇〇평형" 등으로 실제보다 더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구분	점검항목	CHECK
부동산의 면적	단독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에 대하여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에 대하여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보다 더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부동산의 특징 (품질, 부대시설, 별도 계약 품목 등)	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 또는 점포의 구조, 재료, 부속,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급·배수, 가스, 전기, 무인경비 등의 부대시설이나 별도 계약품목의 품질에 대하여 혹은 그 설비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부담조건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용자, 전세금 등	용자금액에 대하여 용자기관 또는 용자금액, 이자율, 용자기간, 상환기간 등 용자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가액을 인근 동일조건의 것보다 현저하게 높게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인·허가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분할허가를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관계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조감도 등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의 유무, 위치, 거리, 교통편 등을 조감도, 카탈로그, 팸플렛, 약도 등에 표시할 때, 일반 소비자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건립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dd기관에서 건립계획” 등의 단서를 붙여 조감도에 그리지 아니한가?	
	표시·광고시점에서 건설계획만 확정된 지하철노선의 역위치를 완공시기를 표기하지 않거나 “계획” 또는 “예정” 등의 단서를 달지 않고 약도에 기재하지 아니한가?	

구분	점검항목	CHECK
건물인증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 표현과 관련하여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상위등급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 표현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등 인증을 받은 것처럼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건본주택 (모델하우스)	건본주택을 설치하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에 실제 사용될 재료나 제품보다 우량한 것을 사용하거나 우량한 구조로 설치하여 당해 주택이나 상가 등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건본주택에 사용된 재료 또는 구조가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고 병기하고 설치한 경우에도 실제의 것과의 차이가 현저하지 아니한가?	
기타 거래 조건	피분양자가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혜택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상가 등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등 분양절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별첨3.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관련 Check-List

구분	점검항목	CHECK
소비자의 추천·보증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후기를 게재하여 광고할 경우,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 하였는가?	
	상품에 대한 효과를 소비자의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는 경우, 그 내용이 사실보다 과장되진 않았는가?	
유명인의 추천·보증	유명인이 동 제품을 사용한 효과에 대해 광고를 하였으나, 광고주가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거나 제품사용에 대한 약정없이 광고 모델 계약만 하진 않았는가?	
	광고에 출연한 유명인이 자신이 직접 사용한 경험이 없음에도 사용경험 등을 언급하면서 제품의 효과를 광고하진 않았는가?	
	유명인으로부터 단순히 이름만을 빌려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해당 연예인이 동 제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있지 아니한가?	
전문가의 추천·보증	전문가(의사, 약사 등)이 제품 광고에 출연하여 제품의 효능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언급하였으나, 제품과 무관한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었는가?	
	대학명과 여러 교수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떤 상품이 이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소개된 교수들이 동 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의 교수들이진 아니한가?	
	전문가가 추천·보증 등을 한 내용을 광고주가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표시·광고된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진 아니한가?	
단체·기관의 추천·보증	특정 제품을 광고하면서 단체·기관이 동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단체·기관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해당 제품과는 무관한 분야의 단체·기관이진 아니한가?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동 추천이 당해 협회의 내부의사결정에 따른 추천이 아니라 당해 협회에 소속된 개인이나 일부의 의견이진 아니한가?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관련 단체·기관이 추천·보증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보증 등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거나, 관련 단체·기관의 추천내용을 광고주 임의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표시·광고된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진 아니한가?	

구분	점검항목	CHECK
문자를 통한 추천·보증 등	표시문구를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였는가?	
	표시문구의 글자 크기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글자색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하진 않았는가?	
사진을 통한 추천·보증 등	표시문구가 사진 내에 게재되어 있는가?	
	해시태그의 형태로 입력할 경우, 첫 번째 해시태그에 입력하였는가? (다만,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해시태그가 아닌 위치에 표시 가능)	
	표시문구 확인을 위해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고 있지 아니한가?	
동영상을 통한 추천·보증 등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였는가?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여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하였는가?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하였는가?	
실시간 방송을 통한 추천·보증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였는가?	
	실시간으로 송출함에 따라 제목 또는 자막 등의 형태로 표시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 형태의 표시문구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하였는가?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등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하며,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하였는가?	

2. 약관법의 이해

구분	내용
약관법의 개관	◆ 목적 :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법 제1조) ◆ 정의 : 명칭, 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체결을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사전에 준비한 계약내용 (제2조 제1항) ◆ 약관 해석의 원칙 ■ 약관의 작성 및 설명 의무 (제3조 제1항) ■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제4조)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제5조 제2항)
약관의 명시·설명	◆ 명시·설명 의무 ◆ 설명 의무의 대상 : 중요한 내용 ◆ 명시·설명 의무의 예외 : 되풀이/부연, 알고 있음, 예상 가능 ◆ 명시·설명 의무의 상대방 : 고객 (대리인 포함) ◆ 명시·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내용으로 주장 불가(제3조 제4항)
불공정 약관 유형	◆ 부당성 판정 기준 및 불공정 약관 유형 ◆ 신의성실 원칙 위반 (법 제6조) ■ 일반조항 : 공정성을 잃은 조항 (제6조 제1항) ■ 불공정 추정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 제2항 제1호) -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6조 제2항 제2호) -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6조 제2항 제3호) ◆ 개별금지 조항 (제7조 ~ 제14조) ■ 사업자의 면책조건 금지 (제7조): 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 손해배상의 예정 (제8조):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제한 (제9조):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 채무의 이행 (제10조): 채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 중지, 제3자로 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의 권익보호 (제11조): 고객의 권리/권익을 박탈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의사표시의 의제 (제12조): 고객의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조항 ■ 대리인의 책임 가중 (제13조):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대리인이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 ■ 소송권한의 제한 (제14조): 고객에게 소제기를 금지시키는 조항 또는 재판 관할의 합의조항이나 고객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및 심사청구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시정조치 (불공정약관 사용금지, 삭제·수정),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벌칙 : 징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5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 100만원 이하), 양벌규정 ◆ 약관의 심사청구, 표준약관의 심사청구, 심사절차

2.1 약관법의 개관

구분	내용
불공정 약관 규제 이유	◆ 거래를 신속·간편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경제사회 구조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법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약관의 사용이 보편화됨 ◆ 그러나 약관작성주체가 대부분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대부분의 고객이 약관을 알지 못하여 자기 의사에 의해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고객 등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불공정약관의 규제가 필요한 것임
약관법의 성격	◆ 약관을 사용하는 거래주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규 ◆ 당사자 사이에 약관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합의가 있어도 그 효력이 부인되는 상행법규 ◆ 행정관청에 의한 시정명령(권고) 및 과태료 부과되는 행정법규
공정위와 법원 약관 심사간 차이	◆ 공정위의 약관심사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오로지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여 그 효력 유무를 결정한 후 필요한 경우 특정 약관조항의 삭제 및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이에 비해 법원은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유무를 심사하며, 그 효과도 개별 사건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사후적으로 미침

▶ 약관법의 목적 (법 제1조)

-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약관법의 정의 (법 2조)

- 약관 :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일방당사자가 작성한 것 ②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에 사용하기 위한 것 ③ 특정한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한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사업자 :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
- 고객 :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는 자

▶ 약관의 작성 및 설명 의무 (법 제3조 제1항)

- 약관은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므로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법 제4조)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 (법 제5조 제1항)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법 제5조 제2항)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제한해석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10.23. 선고, 98다20753 판결】

2.2 약관의 명시·설명

2.2.1 주요 내용

①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1987년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된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면책조항·손해배상·계약해제·채무이행 등에서 불공정한 조항을 넣지 못하도록 하고 규제하고 있다.

② 설명 의무의 대상

- 설명의무의 대상은 '중요한 내용'에 한하므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약관 내용에 대하여는 설명 의무까지 발생하지 않으며, 특히 '중요한 내용'인가의 판단기준은 고객의 이해관계 자와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된다.

[중요한 내용의 판단기준]

- 법원은 '중요한 내용'의 판단기준으로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 내용상으로는 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에 대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 28808 판결; 대법원 1994. 10.25. 선고 93다39942 판결】

③ 명시·설명 의무의 예외

- 약관의 규정이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④ 명시·설명 의무의 상대방

-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고객이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⑤ 명시·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

-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3조 제4항)
- 즉, 명시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되지 않은 약관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 되지 아니한다.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해당 계약은 무효로 인정된다. -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명시·설명 의무 불인정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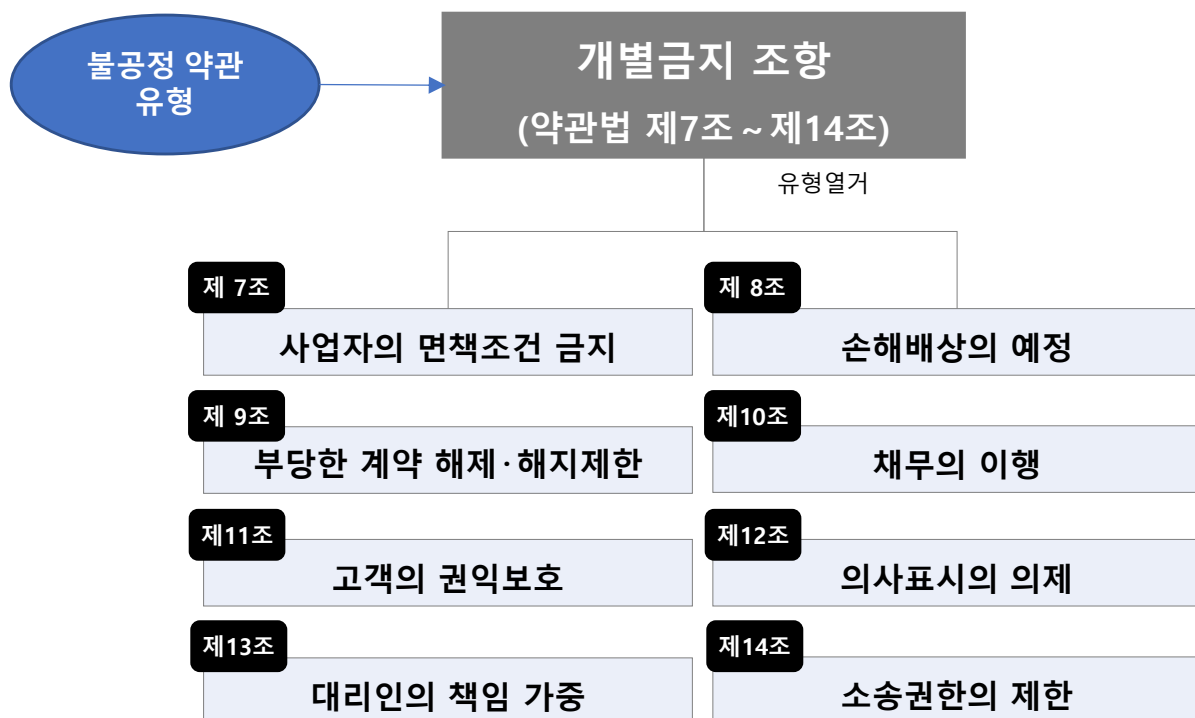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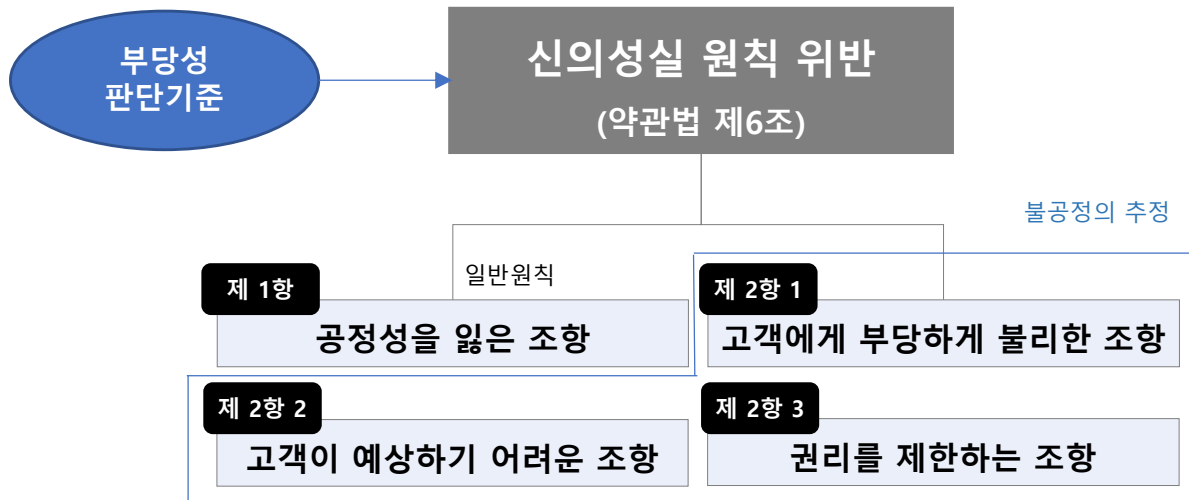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8044 판결)

2.3 불공정 약관의 유형

2.3.1 불공정 약관의 판정기준 및 유형, 효과

① 부당성 판정 기준 및 불공정 약관 유형



② 약관법의 부당성 판정 기준

- 약관법은 개별약관의 불공정조항을 가려내기 위해 크게 2가지의 판정기준(일반조항과 개별금지조항)을 두고 있음. 일반조항으로는 신의성실원칙이 있음
- 개별금지조항으로는 아래와 같이 8개의 유형으로 구분됨
 - ① 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
 - ③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 ④ 채무의 이행
 - ⑤ 고객의 권익보호
 - ⑥ 의사표시의 의제
 - ⑦ 대리인의 책임가중
 - ⑧ 소송상권리의 제한
- 공정위에서는 불공정 약관을 심사 시 개별금지조항을 위반여부에 대해 1차적으로 심사하고, 2차적으로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한다.

③ 불공정 약관의 효과

- 불공정한 약관은 당연 무효이다.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은 무효로 한다.

2.4 약관 조항 및 위반 사례

2.4.1 일반원칙 (법 제6조)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에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약관법상 신의성실원칙이란 사업자가 약관의 작성, 통용시 장래의 다수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당사자간 이익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사업자와 고객의 거래상 지위의 차이에 따른 불공정을 제거해 준다.
따라서 사업자가 경제적 약자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이 희생되도록 하는 약관을 고객에게 강요하는 경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 되어 무효로 한다.

명시·설명 의무 불인정 판례

공정위 판단

(OO건설㈜ 등 3개 사업자의 상가공급 계약서 건(의결 제 93-73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을(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갑(OO건설㈜)에 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손해액을 변상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조항에 대해 공정 위는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법 제 6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인정하였다.

2.4.2 면책 조항의 금지 (법 제7조)

-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 ①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면책조항 금지 관련 사례 (건설업)

공정위 판단

(주)OO의 월성청구코아 상가분양계약서 건(의결 제 93-168호)

“상가면적(대지지분 포함)은 건축 또는 공부정리과정에서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분양 가격의 정산 등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상가면적이 감소하였을 경우에도 고객이 이에 대하여 분양가격의 정산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고객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등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 7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인정하였다

면책조항 금지 관련 사례 (서비스업)

배달의 민족 사례 (2020. 6. 9. 공정위 보도자료)

- ‘배달의 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 특히 배달의 민족이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되며,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2.4.3 손해배상의 예정 (법 제8조)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 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는 것으로, 이는 실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실손해의 산정이나 입증이 복잡하고 당사자간의 다툼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손해배상 예정 관련 사례 (건설업)

공정위 판단

(주) OO주택의 임대차계약서 건(의결 제 94-82호)

“정당한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나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때에는 공급대금의 10%와 계약해제 시 점에서 기 발생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총 대금의 10%정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 인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공급대금의 10%외에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 8조에 위반 되어 무효로 인정하였다.**

손해배상 예정 관련 사례 (건설업)

공정위 판단

(한국토지공사 계약해제 물취급 약정 (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 3326판결))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분양하면서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수분양자가 지급한 매매 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 되도록 정한 경우, 그 계약금 물취급 규정은 고객인 분양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계약 해제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인정되었다.

손해배상 예정 관련 사례 (서비스업)

아고다 및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명령 (2018. 11. 22. 공정위 보도자료)

-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
- 그럼에도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

2.4.4 계약의 해제·해지 (법 제9조)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 하는 조항
 - ②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③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 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④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 하는 조항
 - ⑤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의 해지 관련 사례 (건설업)

공정위 판단

(주)00의 월성청구코아 상가분양계약서 건(의결 제 93-168호))

“상가면적(대지지분 포함)은 건축 또는 공부정리과정에서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분양 가격의 정산 등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상가면적이 감소하였을 경우에도 고객이 이에 대하여 분양가격의 정산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고객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등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 7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인정하였다.

계약의 해지 관련 사례 (건설업)

배달의 민족 사례 (2020. 6. 9. 공정위 보도자료)

-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 의사를 배달의 민족이 알리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했다.
- 계약 해지와 같이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하며, 민법에서 정한 의사표시 도달주의 원칙에 반해서는 안된다.

2.4.5 채무의 이행 (법 제10조)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①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채무의 이행 관련 사례 (건설업)

공정위 판단

(주)00의 상가분양계약서 건(의결 제 93-168호))

소유권의 이전 전에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갑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손해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를 한도로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 10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인정하였다.

채무의 이행 관련 사례 (서비스업)

배달의 민족 사례 (2020. 6. 9. 공정위 보도자료)

- 배달의 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의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때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 화면에 공지하기만 하면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
-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가 소비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리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용자의 거래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로 알리도록 함

2.4.6 고객의 권익 보호 (법 제11조)

-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 하는 조항
 - ②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③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④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고객 권익 보호 관련 사례

공정위 판단

(주) 00의 상가분양계약서 건(의결 제 93-168호)

"상가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제반 준비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연기에 대하여 요금정산 등 일체의 이익을 제가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개점이 연기 되는 사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또한 그 사정은 타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함에도 이에 대하여 막연히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규정하여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일정 기간 개점을 연기한 것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 6조 및 제 11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인정하였다

2.4.7 의사표시의 의제 (법 제12조)

-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①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 ②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 ③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과 그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하는 조항

2.4.8 대리인의 책임가중 (법 제13조)

- 고객의 대리인에게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2.4.9 소송 제기의 금지 등 (법 제14조)

- 소송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조항이나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
 - ②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소송제기 관련 사례

공정위 판단

(주) OO의 상가분양계약서 건(의결 제 93-168호)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주)OO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분쟁 발생시 당사자간 특약으로 소제기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나 약관의 내용을 사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고객의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이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으로서 약관법 제 14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인정되었다.

2.5 약관법 위반시 제재 및 심사 청구

2.5.1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재	법률	세부내용
시정조치	법 제17조의 2	사업자는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법 제17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과태료	법 제3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제19조의3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② 제20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0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④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경우 ⑤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9조의3 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	법 제32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2 심사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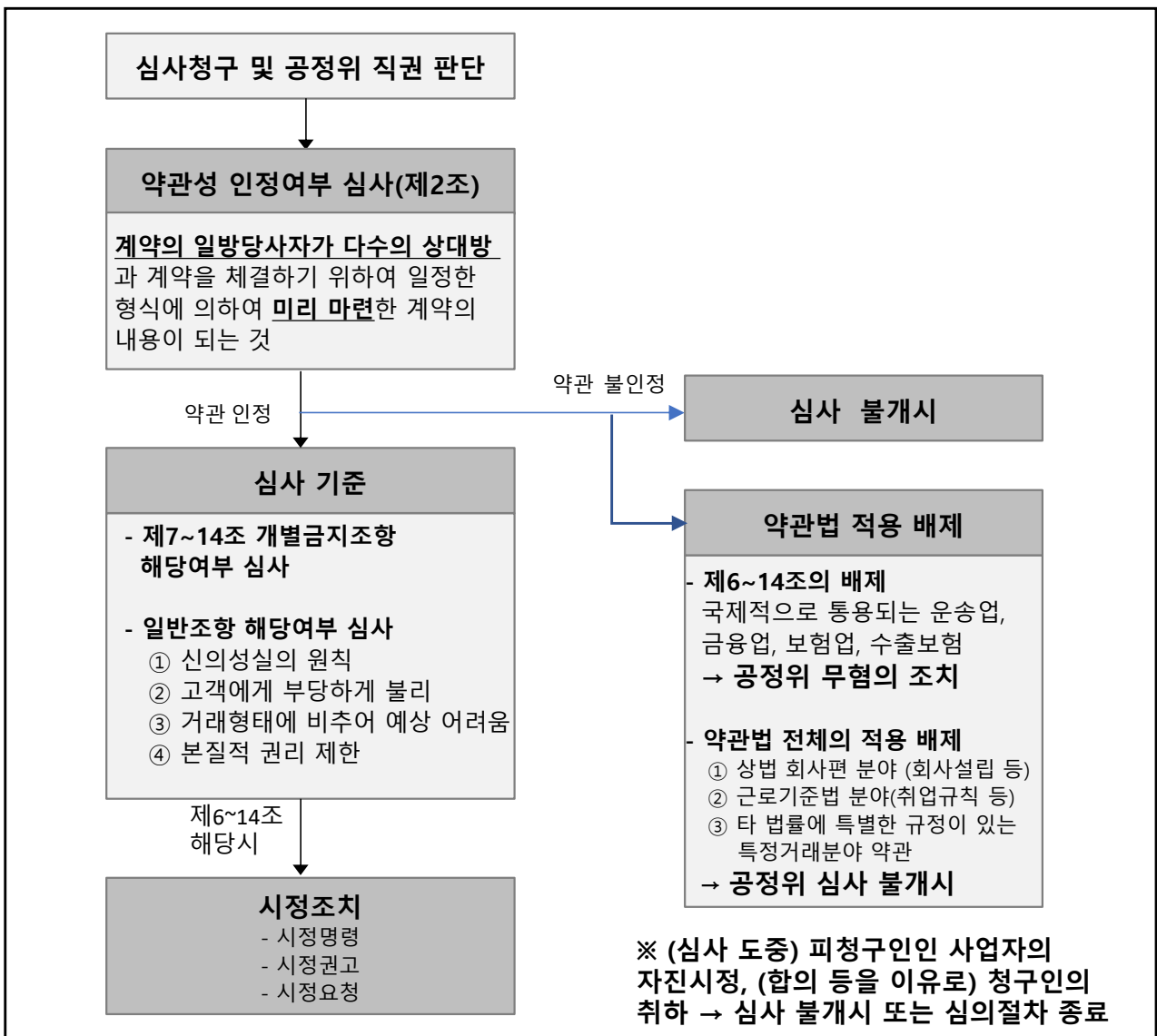
▶ 약관의 심사청구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약관 조항의 위반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할 수 있다.
 - ①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 단체 및 한국소비자원
 - ③ 사업자 단체

▶ 표준 약관의 심사청구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 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 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 심사절차



별첨. 약관법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항목	CHECK
1	일반원칙 (공정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가?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없는가?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	
4	면책 조항의 금지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없는가?	
5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없는가?	
6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없는가?	
7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	
8	손해 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없는가?	
9	계약의 해제/ 해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	
10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없는가?	
11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없는가?	
12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는가?	
1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없는가?	
14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없는가?	
15	채무의 이행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없는가?	
16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없는가?	
17	고객의 권익 보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	
18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없는가?	
19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	
20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없는가?	
21	의사표시의 의제	고객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고객의 의사표시로 보는 조항은 없는가? (단,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없는가?	
2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없는가?	
2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은 없는가?	

구분		점검항목	CHECK
25	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은 없는가?	
26	소송 제기의 금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은 없는가?	
27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없는가?	

※ 해당 시에만 점검

28	약관의 변경	약관 변경 사유 및 변경사항을 검토한 후 고객에게 약관 변경에 대해 고지하거나 안내하였는가?	
29	계별 약정의 체결	고객과 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을 개별약정보다 우선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행위는 없었는가?	
30		약관 중에서 “이와 다른 개별약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구두에 의한 합의는 모두 무효)”라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가?	

Q1. 입주예정자가 건설회사의 보증 하에 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 건설회사에서는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어 근저당설정 및 소유권이전의 정확성을 위하여 법무사를 지정하고 입주자는 지정법무사를 통하여 근저당설정 및 소유권이전을 하는 바, 건설회사에서 법무사를 지정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 되는지?

A1. 입주예정자가 제3의 사업자를 선택할 권리를 사업자가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 제11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2. 재건축조합이 시행자가 되고 건설회사가 시공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서에 "갑"(매도인)은 조합이 되고 "을"(매수인)은 일반분양자가 되며, 건설회사는 "병"(분양 대행 및 시공자)으로 명시하는데 건설회사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A2. 주택표시광고지침에서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상이하면 상호 또는 명칭과 주소지 등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은 과장광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3. . 아파트 분양 후 공사진행 중 입주자의 희망에 의하여 별도로 마감자재를 고급화하고 비용을 추가 계약 후 마감재 변경공사를 할 경우 추가 계약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A3. 질의의 경우 마감재 변경공사에 대한 변경계약체결의 당사자가 건설업체(발주자)와 입주자인지 건설업체(발주자)와 하도급업체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발주자가 입주자의 희망에 의하여 마감자재를 변경하고 입주자에게 동 비용을 추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발주처가 마감재 변경공사를 하도급하고 하도급업체와 추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변경계약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또는 최대한 신속히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

VI

협력사 관련 공정거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관

구분	내용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도급법의 특성	◆ 공법, 경제법 ▪ 국민경제의 민주화라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인(사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개입하는 공법이자 경제법 ◆ 민사특별법 ▪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간 사적 계약관계 중 특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민·상사 특별법 ◆ 강행규정 ▪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법 적용 배제 불가 ◆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 지위남용)의 특정한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특별법 ▪ 건설산업기본법, 상생협력법, 각종 공사업법 등과 중복 적용은 가능하나 다른 법률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 하도급법 우선 적용

1.1 하도급법 체계

1.1.1 구성 체계

- 하도급법은 크게 목적 및 적용대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이다.

1.1.2 적용 범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조사대상기간내의 법 위반행위만을 조사할 수 있다.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1.1.3 규제 내용

원사업자의 의무사항(10개)

- ① 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② 선급금의 지급 ③ 내국신용장의 개설 ④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⑤ 하도급대금의 지급 ⑥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⑦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⑧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⑨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⑩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사업자의 금지사항(13개)

- ① 부당특약 설정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③ 물품 등의 구매강제 ④ 부당한 위탁취소 ⑤ 부당반품 ⑥ 감액 ⑦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⑧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⑨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⑩ 부당한 대물변제 ⑪ 부당한 경영간섭 ⑫ 보복조치, ⑬ 탈법행위

발주자의 의무사항(1개)

- 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3개)

- ① 서류보존의무, ②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③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

1.1.4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① 행정적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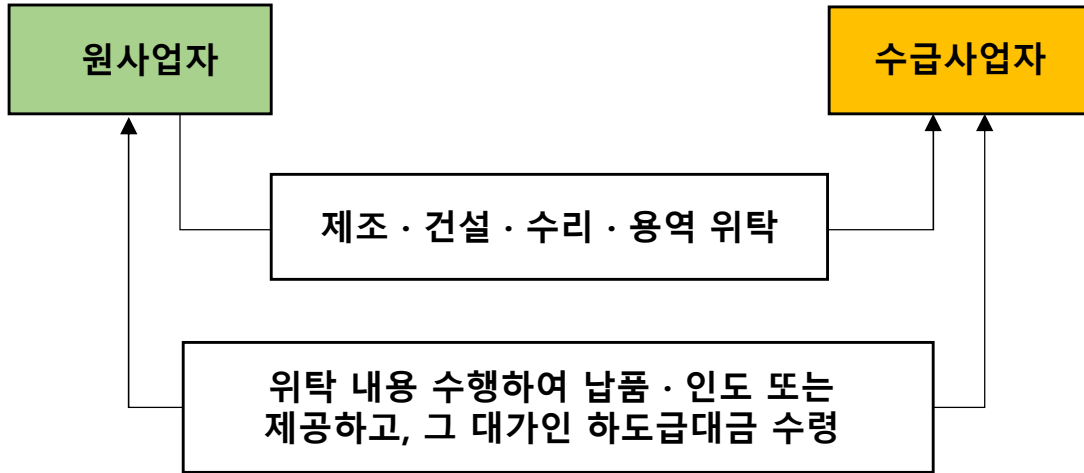
- ① 시정조치(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②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 ③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④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⑤ 영업정지 요청

② 사법적 제재

- ①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
 -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② 공정위의 시정명령 미이행,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탈법행위금지 위반
 -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보복조치 금지 위반
 - 3억 이하의 벌금
- ④ 전속고발권
 - 상기 ① ~ ③의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⑤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 ⑥ 손해배상책임
 -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⑦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부당 반품의 금지, 감액 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보복 조치의 금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1.2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1.2.1 '하도급거래' 의 정의



① 하도급거래의 의미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 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조 제1항]
- 건설공사에서 자체공사처럼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형식상 도급관계로 보이지만 도급인이 자신이 직접 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그 중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② 하도급거래 당사자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을 도급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기업자를 수급사업자라 한다.
-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 또는 시공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하도급이라고 한다.
-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가 된다.

1.2.2 법적용대상 요건



① 원사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포함)
-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원사업자로 본다.

② 수급사업자의 범위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을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및 연간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자를 말한다.

☑ 중소기업 해당여부

- ✓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법에서 정한 평균매출액 이하여야 한다.

제조위탁 : 800억 ~ 1,500억원 이하

건설위탁 : 1,000억원 이하

용역위탁 : 400억원이하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최대출자자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③ 하도급법 적용대상 요건

- 거래내용 : 양 당사자 거래관계 성격이 공정위에서 정한 제조, 건설, 용역위탁에 해당되어야 함

1.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
2. 제조위탁 : 물품의 제조(가공), 판매, 수리 또는 건설 중 하나의 행위를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Csae1. 화학제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제조위탁에 해당(ex. 포장백·용기, 금형 설비, 라벨, 카달로그 제조위탁 등)

Case2.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①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

- ②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 관행상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

※ 레미콘의 경우는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에 한하여 적용

③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3. 용역위탁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직무(役務)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

※ "역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위탁
-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업무 활동을 위탁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지도제작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등의 활동을 위탁

- 거래주체 : 거래관계의 양 당사자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함
- 적용기간 : 거래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하도급 거래에 한함

관련 사례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적 하도급관계 사례]

원사업자(A)가 사실상의 수급사업자(B)와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형식상으로는 A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다음에 예시하는 바와 같은 사실에 의해서 사실상의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사이에 하도급관계가 있다고 본다.

㉠B가 A에 대하여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사실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B가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부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

㉢형식상으로는 B가 해당 공사에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 되어 있으나 해당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일지, 장비가동일보, 출력일보 등에 B의 책임 하에 장비, 인부 등을 조달하여 해당 공사를 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형식상으로는 B가 A의 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B가 공사기간중 A로부터 봉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공사는 B로부터 등록증을 대여 받은 무등록 건설업자(C)가 시공했을 경우 C는 무등록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2.3 법 적용대상 기간

① 관련 규정

법 제23조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규정 취지

조사대상기간을 제한하는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분쟁발생시 증거 확보의 곤란에 따라 조사 및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③ 용어 정의

여기서의 “거래종료일”이란, 제조·수리·용역 위탁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의미하고, 건설위탁은 당해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1.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① 취지 및 개요

2006년도에 제정·시행된 중소기업벤처부 소관 법률로, 위수탁 거래 전체에 대해 하도급법과 유사한 행위유형(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 감액, 부당한 대금 결정,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규제하므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 적용되는 하도급법에 비해 적용범위가 넓다.

② 납품단가 연동제

2023년에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상생협력법에서 먼저 개정되고, 하도급법이 이를 따름으로써 상생협력법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제재규정이 없었던 상생협력법은 2021년 4월 이후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납품대금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며,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 요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정해진 규정(상생협력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 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상생협력법 제26조 제1항]

④ 하도급법과의 차이점

상생협력법의 수·탁위탁거래와 하도급법의 거래는 유형 및 방식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적용 대상 기업, 위탁의 종류 및 일부 금지 규정에서 차이가 있다.

구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소관기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적용 대상 기업	위탁기업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영위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을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하는 자 (법 제2조)	원사업자 : 대기업과 직전년도 매출액 또는 상시 고용 종업원수가 다른 중소기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법 제2조)
개념도		그 업에 따른 위탁
적용 거래범위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6유형)을 업으로 하는 자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업무(5유형)를 대상 각각에 대하여 모두 30유형의 거래	총 30개 유형 중에 제조, 판매, 수리, 건설업자의 제조위탁(4가지), 수리업자의 수리위탁,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용역업자의 용역위탁 등 총 7가지 거래 유형만을 대상
의무규정	부당 반품금지, 경제적 이익 관련 부당 요구 금지 규정 없음	부당 반품금지, 경제적 이익 관련 부당 요구 금지 규정 있음

1.2.5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관련 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특별법이므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대하여 하도급법이 원칙적으로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른다. [법 제34조]

② 기타 법률과의 관계

특히, 건설하도급과 관련하여서는 건설관련 법규인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하도급법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건설관련법규중,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국가계약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포함)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원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데 반해,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특별법이다.

2.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하도급법

2.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

2.1.1 규정 내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추가·변경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위탁행위 시작 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3조 제1항, 제2항]
- ※ 법정기재사항: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위탁일, 목적물(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의 내용,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지급 원재료의 품명 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기술자료 요구에 따른 서류는 7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3조 제9항, 시행령 제6조 제2항]

2.1.2 규정 취지

- 하도급거래관계에서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두계약을 강요하고, 추후 자신의 의도대로 거래관계를 이끌어 감으로써 계약내용을 자의로 해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계약관련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존재
- 즉, 하도급계약관련 서면은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내용 해석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따라서, 하도급법에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관련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1.3 하도급계약 서면의 교부 및 보존 의무

-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나아가 하도급거래 관련서류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 계약서면은 하도급계약시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소한 공사나 제조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나 제조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다.

- 하도급계약서면에는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도급 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서면미교부에 해당 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공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미발급로 본다.

2.1.4 서면의 교부 의무 예외

- 하도급거래 현실에 비추어 사실상 엄격하게 사전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법한 서면 교부로 볼 수 있다.

예외 사례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동일한 하도급거래에 대해 2개 이상의 서면이 존재할 때는 실제의 하도급거래에 입각한 서면을 적법한 것으로 보며, 다만, 실제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는 계약의 요건을 보다 충실하게 갖춘 서면(예: 발주처에 통보한 서면 등)을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2.1.5 서류의 보존 의무

관련조항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 서류
제8조 제2항	목적물 수령증명서(검사전이라도 납품 시 즉시 발급, 건설위탁 검사종료 즉시 인수)
제9조	목적물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통지 서면(목적물 수령 +10일이내)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제6조, 제13조 제6~8항, 제15조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

관련조항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 서류
-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7조의2	하도급대금 감액 시 감액사유, 기준, 내용, 공제방법 등 기재서면
제12조의3 제1항 시행령 제7조의3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서(※ 7년간 보존)
제16조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금액 및 사유
제16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사유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2.1.6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서면지연교부 사례

사실관계

A사가 2015.10.7~2017.12.27 기간 동안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및 건설 위탁 등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발급하지 아니하고 4일~388일이 지난 후 발급함

공정위 판단

법정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 및 지급 방법과 기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조정 요건, 방법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누락하고,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공정위 2018건하1299)

서면미교부 사례

사실관계

S사는 2017.11.28 수급사업자에게 00공사를 위탁한 후 2018. 6월경 물량을 추가하여 위탁하였음에도 추가물량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4.30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 물량 및 단가를 변경하였음에도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변경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음

공정위 판단

S사가 수급사업자에게 00공사 등을 위탁한 후,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물량을 위탁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공정위 2020부사1863)

묵시적 계약 갱신 사례

사실관계

S건설은 2004.5.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2005.2.1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따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법원 판단

법원은 거래기간 종료 후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연장된 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08누2554 판결)

2.1.7 관련 논점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으로 위탁내용(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을 통지하여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3조 제5항]
- 원사업자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조 제6항]

2.2 부당한 특약의 금지

2.2.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조의4 제1항]

2.2.2 규정 취지

- 하도급거래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리한 계약조건 등을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을 통하여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화하고있다.

2.2.3 부당특약 예시

- 서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철근, 흙관 등 지급자재의 하차비, 추가 장비 사용료, 야적장 임대료(보관·관리비) 등의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서면에는 기재되지 않고 현장설명서 등에만 기재된 경우
-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공사 또는 계약사항 이외 시공 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원사업자가 공급한 자재 등이 불량으로 판정되더라도 납기일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약정
- ㉣ 공급받은 자재 등의 수량이 부족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추가 공급을 요청하더라도 운반·보관비용, 지체상금 등은 별도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 ㉤ 납기지연일자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할 수 있는 기성부분 또는 목적물 수령거부·지연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액, 지체상금 등을 산정하도록 하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 ㉣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민·형사상의 요구 및 부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현장설명서 등에 명기된 사항이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수행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한다는 약정
- ㉡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공사 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
- ㉢ 주요 자재항목으로 구분되지 않은 소형강재 등의 자재비는 시공비에 반영되어 있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는 입찰전 현장 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므로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관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받아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진행중에 야기되는 관공서 및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대한 인·허가 수속, 각종 수검·협조업무를 수급사업자의 책임 하에 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약정
- ㉢ 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폐기물·소음·진동·먼지·오수·폐수 등)의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각종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약정
- ㉣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자재의 품질 및 시공검사를 위한 시험절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였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는 설계도면과 현장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경미한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지 못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사항 외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 원사업자의 지시로 사토장(흙을 버리기 위한 장소)까지의 거리가 증가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원사업자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재작업을 수행한 비용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
- ㉡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재료의 재질(색상 등)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재작업하여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총 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예, 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돌관공사·휴일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후부터 원도급공사 준공 시까지 당해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공사비 증액없이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약정
- ㉥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는 약정

-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증권 상의 보증기간은 하도급계약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몇 년(예, 1년)을 더 길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하자라고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
- ㉢ 원사업자가 제공한 재료로 수급사업자가 가공했을 경우 해당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수비용의 몇 배(ex. 3배)를 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약정

-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하도급계약기간 중에 수해·눈피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사기간연장은 없다는 약정
- ㉡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에 따른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연장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건물 부지를 파는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더라도 작업의 중지, 공사기간연장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수급사업자의 공과잡비(일반관리비, 이윤)는 직접공사비 대비 건적기준(예, 6%)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의 이윤은 별도 산정하지 않고, 직접공사비의 각 공종단가에 포함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계상하되, 각종 이행보증수수료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를 포함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는 일반관리비, 이윤, 안전관리비,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간접비로 별도 표기하지 않고 건적단가에 포함하여 건적하여야 한다는 약정

-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의 증액 등 조정을 일체 요구하지 못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는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된 하도급금액 이외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이유로 공사지연 및 공사거부행위를 일절하지 않겠다는 약정
- ㉢ 하도급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인상으로 납품단가의 변동이 발생시 하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품단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위탁내용의 확인을 일체 요청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의 위탁내용 확인 요청으로 인한 공기 또는 납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한다는 약정
- ㉡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한다는 약정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서 제출기한을 특정하여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의 소유권은 모두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약정 (단,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의 개발을 본래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위탁 등은 제외)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 설계를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비 등이 아닌 단순 노무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원사업자에게 설계도면 등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약정
- ㉢ 원사업자의 위탁사양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예, 승인도) 등에 대해 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의 결과물로 간주하여 원사업자에게도 소유권이 있다는 약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특정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을 요구하는 약정

-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검사항목, 검사기관 등 납품한 제품의 검사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원사업자의 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원사업자의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발주자의 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검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사업자의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정한다는 약정 (단, 원사업자의 특정 규정 및 지침이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이전에 교부된 경우는 제외)
- ㉡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그 분쟁의 발생 원인이나 내용을 불문하고 원사업자의 결정에 따른다는 약정
- ㉢ 계약의 조문해석에 쌍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의 유권해석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고, 발주처와 원사업자간 계약조건과 동일조건으로 한다는 약정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원사업자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표준하도급계약서상 손실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 전액이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약정
- ㉡ 계약이행보증 이외에 수급사업자의 채무불이행(예, 노무, 자재, 장비)에 대비하여 추가 지급(이행)보증 또는 현금예치를 요구하는 약정
- ㉢ 하자담보책임을 대한 기산점을 수급사업자의 위탁종료일이 아닌 원사업자의 위탁종료일로 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변상해야 한다는 약정
- ㉡ 천재지변 등 위탁시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자재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변상해야 한다는 약정

-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약정 기한보다 지연될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의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약정
- ㉡ 약정 기한보다 지연될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의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발주서, 작업지시서 등 서면을 전달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약정
- ㉣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발주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수급사업자의 권리 일체 또한 즉시 포기하여야 한다는 약정

2.3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2.3.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조 제1항]

2.3.2 규정 취지

-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단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가격결정에 관한 주도권이 주로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 원사업자는 이러한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는 수가 있는데, 동 규정은 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2.3.3 적용 요건

▶ 주관적 요건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 즉,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내용, 규격·품질, 수량, 재질, 용도, 공법, 운송, 대금결제조건 등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객관적 요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인 경우에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 바 여기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라 함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일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㉕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㉖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㉗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아닌 경우 (예시)

- ㉘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㉙ 종전 계약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㉚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결정이 개별적 단가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단, 원사업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 ㉛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시 정당한 사유
 -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계약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㉜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수급사업자가 핵심기술인력의 갑작스런 사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일부에 대해 제조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㉝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직후 미리 예상치 못한 발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단가를 최저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경우

2.3.4 공정위 심결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례

사실관계

H사는 13개 품목의 부품제조를 위탁하기 위하여 8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입찰을 실시하였고, 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입찰가보다 0.6%~10% 낮게 낙찰가를 결정함

공정위 판단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그 대가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를 별도로 따질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 (공정위 2012제하1077)

3. 계약 이행단계에서의 하도급법

3.1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3.1.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8조 제1항]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 등이 있을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검사 완료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법 제8조 제2항]
-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함.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법 제8조 제3항]

3.1.2 규정 취지

- 원사업자가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발주자 및 거래처의 발주취소, 경제상황 또는 원사업자의 경영상태 변화에 따른 생산계획변경, 납기나 공기의 지연 및 목적물의 하자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 이러한 발주취소 및 목적물 수령 거부행위 중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인수를 거부하게 되면, 수급사업자의 생산계획 차질, 재고부담으로 인한 자금난 발생 등으로 이어져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도급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3.1.3 적용기준(부당성 판단기준)

-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컨대, 발주서 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였거나,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발주취소 또는 목적물 수령거부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원사업자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 용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음에도 원사업자가 간접비 등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부담을 떠안을

것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등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탁을 취소 또는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개발을 제조위탁하면서 해당 금형으로부터 일정수량의 부품을 납품하도록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부품에 대한 약정수량 중 일부만을 수령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발생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 또는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공사진행 부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공사현장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등 협력업체의 현장 점거농성도 정상적인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단기간에 불과하여 납기 내에 공사를 수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원사업자가 납기 내에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동의·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형식적인 동의·합의를 받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단축을 통보한 후 납기에 목적물 등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또는 원사업자의 설계오류 등으로 인해 목적물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목적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목적물 등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예외 사례

㉠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발주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어겨 납품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수급사업자의 경영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회생절차 신청 이후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상당기간 공사를 중단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사재개 및 공정만회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전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공사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납기 내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어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급사업자 일방의 사정으로 공사현장 근로자 또는 협력업체에 대한 임금·자재·장비대금을 미지급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Q1. 발주시에 결정된 납기일 전에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A1.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의 약속된 납기일 이전에 납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더라도 부당한 수령거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이를 임시로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당초의 납기일이 기준이 된다 할 것이나, 임시수령이라는 취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Q2. 수차례에 걸친 선급금이행보증서의 제출요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A2. 수급사업자가 공사 등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선급금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3.1.4 공정위 심결례

부당한 위탁취소 사례

사실관계

C사는 수급사업자와 500톤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운송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자와의 용역 계약 해제를 이유로 임의로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취소함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의 계약 해제를 이유로 용역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이므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위탁취소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어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된다. (공정위 2014서제3288)

3.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3.2.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5조]

3.2.2 규정 취지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자재나 물품이 있는 경우,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비용의 법칙에 따라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물론, 어느 정도의 품질 유지나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불가피한 점 이 있을 수도 있으나, 원사업자가 자신이나 관계인 등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 발주자나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 의뢰 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물품의 구매강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 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
-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구매 요청
- 수급사업자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명하였거나, 의사표명이 없어도 명확히 구매 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 요청

3.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3.3.1 규정 내용

-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1항]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 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9조 제2항]

3.3.2 규정 취지

- 하도급거래에 있어 위탁내용에 따른 목적물의 완성 및 대금지급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 그러나,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검사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수급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검사기준을 객관화하는 동시에,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시기를 확정하도록 한 것이다.

3.3.3 적용 요건

▶ 검사기준의 결정방법

- 검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목적물 완성 및 납품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시점이 불명확해 짐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 하에 제3의 공인기관 등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 검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에 관한 판단은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 검사결과의 통지의무

- 통지기간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의무의 예외
 - ①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거대한 건설공사(댐, 교량공사, 플랜트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 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된다.
- 검사비용문제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3.4 공정위 심결례

검사결과 미통지 사례

사실관계

N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다운점퍼를 수령한 후 대리점 판매 과정에서 오리털 빠짐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반품 및 클레임이 제기됨에 따라 검사 기관에 다운점퍼에 대해 깃숨털 투과성 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음.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A/S를 요구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거부하여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음.

공정위 판단

물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N사가 목적물 수령 후 1개월 경과 시점에 물품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N사가 주장하는 물품의 하자는 별도의 민사절차로 다룰 부분이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공정위 2014서제2223).

3.4 부당 반품의 금지

3.4.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10조 제1항]

3.4.2 규정 취지

-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원사업자의 주문에 의하여 위탁 목적물을 생산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반품하게 되면 타사로의 전매가 곤란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
- 특히, 반품의 경우 납품된 후에 수급사업자의 예측에 반하여 반품하는 것이므로 수령거부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저해하게 된다.

부당반품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발주자·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발주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보관장소 부족 또는 소비위축·경제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타당하지 아니한 검사기준·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행위

- ㉔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것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 ㉕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3.5 감액의 금지

3.5.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법 제11조 제1항]
-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법 제11조 제2항]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5.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3년 기준)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㉑ 건설업자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교량신축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하자에 의한 부실공사로 인해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법정검사기간 경과 후 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하고 그 만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㉒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㉓ 단가 및 물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운송조건, 납품기한 등의 거래조건을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추가비용을 보전해주지 아니하는 행위
- 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당초 합의한 표준품셈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㉕ 수급사업자의 요청 또는 원·수급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잔여 공사분을 원사업자가 직영으로 시공한 후 지출한 비용에 대한 합당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에서 잔여 공사비용을 공제하는 행위
- ㉖ 하도급대금을 총액으로 확정하여 계약한 후 공정 또는 공종 등에 대한 구체적 산출내역 상 수급사업자의 이익률이 높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자신의 검수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불량제품이라는 이유로 반품되자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제조공정에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에게 그 비용을 분담시키는 행위
- ㉡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위탁 내용과 다른 목적물 또는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된 해당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수리가 가능한 불량품을 납품하였으나 반품을 하여 수리를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사업자가 스스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경우. 단,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리비용 산정기준이 필요하며, 감액은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장비관리 소홀로 인해 장비가 훼손되어 해당 장비에 대한 적정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Q&A

Q1.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한 후에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재료의 시장가격이 하락한 것을 이유로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A1. 수급사업자에게 특별히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원재료 가격의 하락만을 이유로 당초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할 수 있다.

3.5.2 공정위 심결례

단가인하 및 감액 사례

사실관계

P사는 2012년 4월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각각의 작업 내용, 거래 규모, 작업 단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음.

공정위 판단

P사는 발주자의 단가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였으므로 감액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및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부과함. (공정위 2014 부사0457)

3.6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3.6.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8조]

3.6.2 규정 취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각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이다.
-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판단과 영업활동의 보장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전제가 된다. 그러나,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높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고려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려는 경향이 있어왔다.
- 이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하도급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 부당성 판단기준

-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간섭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로서 그 행위가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경제 발전 도모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효율성 증진 효과 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여건이나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예시)

-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 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
- 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 (거래처 명부, 다른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가격에 관한 정보 등)
- 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PW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3.7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금지

3.7.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3 제1항]
-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 제12조의3 제2항]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의3 제3항]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2조의3 제4항]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7.2 규정 취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여 기업노하우를 가져감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성장을 후견하고 이를 통하여 하도급거래를 정상화하는데 있다.
- 특히, 제조위탁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어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제공 및 탈취 행위를 금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생을 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3.7.3 법적 성질 및 주요내용

- 기술자료의 정의 :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 및 완화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가능하다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하도급법에서 정한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이 담긴 기술자료요구서를 수급사업자와 합의 후 교부하여야 한다.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

- 또한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최초신설 2010.1.25)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개정 2018.7.17)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개정 2021. 8. 17)

3.7.4 기술자료 유용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의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3.7.5 손해배상 책임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제출을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강제로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하고 [법 제35조 제1항],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의 5배(중전 3배)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법 제35조 제2항][공포일 24.02.27, 시행일 24.08.28]
- 다만, 기술요구 또는 유용의 경우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법 제35조의6 신설_공포일 24.02.27, 시행일 24.08.28]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처 승인에 필요한 승인도 등 기술자료를 요청하여 제작 이전에 이를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발전소의 기술 및 품질요건에 맞는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처 또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히하고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부품 제작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 ㉡ 하지만, 첫째, 피심인이 요구한 총 4개의 부품 제작도면에는 수급사업자 회사명, 로고, 도면 번호, 설계일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각 자료는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이 확인되며
- ㉢ 둘째, 제작도면에 “이 도면은 ○○○의 소유이므로, ○○○와 협정을 맺은 곳을 제외하고 도면이나 장치를 제작하기 위한 정보를 재생산하거나 설치 등을 위해 사용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기하여 부품 제작도면에 저작권 및 소유권의 주체, 외부공개 금지 등을 명시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술자료로 인정된다.
- ㉣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총 4개의 부품 제작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사전 협의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하다.

3.7.6 공정위 심결례

금형 상세도면 요구 사례

사실관계

L사는 수급사업자에게 15개 금형의 제작을 위탁 시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도면만을 제공하고 금형은 수급사업자에게 스스로 설계하여 제작하도록 한 후 금형 수정 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상세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공정위 판단

L사는 시험생산 과정에서 금형을 수정 보완하거나 하자 발생 시 유지 보수를 위해 설계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L사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설계 도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 2013제하 3664)

기술자료 유용 사례

사실관계

C사는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자신의 해외 자회사에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라벨을 제조하는데 활용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다.

공정위 판단

C사는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취득한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라벨을 생산하도록 함에 따라 자회사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는 거래가 중단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공정위는 C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공정위 2013서제3358)

3.8 보복조치 또는 탈법행위의 금지

3.8.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관계 기관 등에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행위를 한 것 등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9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0조]

3.8.2 규정 취지

- 이들 규정은 하도급법 시행과 관련하여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원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명백히 한 것이다.
-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장하는 동시에 신고에 따른 보복행위를 제한하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지능적인 위법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보복조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원사업자가 기존의 생산계획 등에 따라 생산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발주자로부터 향후 확보할 수 있는 예상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하도급거래상의 물량과 비교하여 발주물량을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간 지급·제공하던 원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 기타 합리성·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통용되지 않는 수단·방법을 활용해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보복조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3.9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3.9.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2조의2]

3.9.2 규정 취지

-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원사업자를 위해 협찬금, 종업원 파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원사업자의 이익 악화를 이유로 협찬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 ㉡ 다른 수급사업자도 협찬금을 부담함을 이유로 협찬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 ㉢ 다량 거래를 조건으로 미리 협찬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예상 범위반 행위 유형

- ㉠ 협찬금 요청
 - 연말 결산 대책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협찬금을 요청하여 원사업자 지정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경우
- ㉡ 발주 내용에 없는 노무 제공
 - 소프트웨어 작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종업원을 원사업자의 사업장에 상주시켜 실제로는 발주와 관계없는 사무를 보게하는 행위
- ㉢ 발주 내용에 없는 설계도면 등의 제출 요구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이나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 경쟁사업자 또는 자기 계열사에게 저가로 제조 위탁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물품이나 금형의 도면, 기술자료 등을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제출하게 하는 경우

3.10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

3.10.1 규정 내용

-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로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3]

▶ 공시 의무사항

- 지급수단
 - ✓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금액을 기재
 - ✓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
- 지급기간
 - ✓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구간별 지급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 ✓ 지급기간은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 2에서 정한 대로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 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분쟁조정기구
 - ✓ 설치 여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소요 시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 공시 빈도 및 시기

-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대로 매년 2회 반기 말(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 공시해야 함

▶ 공시 절차 및 양식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하면 됨

3.10.2 규정취지

- 개정 하도급법('23.1.12. 시행)에 따라 '23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공시대상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
-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2차 이하 협력사에 알려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4. 하도급대금 지급단계에서의 하도급법

4.1 선급금의 지급 의무

4.1.1 규정 내용

-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6조 제1항]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5.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3년 기준)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1.2 규정 취지

- 선급금이란, 원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선급 공사대금이며,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을 의미한다.
- 따라서, 선급금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실제 제조나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

4.1.3 내용

관련 사례

㉠ A라는 공사에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석재공사, 승강기설치공사 등 4개의 전문건설 공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에만 사용하도록 공사부문을 지정하였다면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부문 수급사업자에게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철근자재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품목을 지정하였다면 철근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부문 수급사업자에게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지급대상 공사 또는 품목전체에서 해당 공사가 차지하는 금액비율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는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즉, 어음은 만기일에 결제되는 것을 전제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못하고 부도처리되었다면, 당연히 어음 교부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소멸 등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 법정지급기한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보증서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정당한 선급금 지급보증서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증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통보일로부터 제출일 까지)은 법정지급기한의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4.1.4 선급금의 현금결제비율 등의 유지의무

- 선급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어음만기일 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나아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부 받은 어음의 만기일(어음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Q&A

Q1.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추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려면 하도급계약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성대금 지급분을 공제한 잔여 기성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원사업자는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선급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미 선급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원사업자는 이미 지급한 기성비율만큼을 공제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기성금부분에 대하여는 선급금 지급의무가 없다.

4.2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4.2.1 규정 내용

-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제1항]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제2항]
-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제3항](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 2023년 기준 연 15.5%)

4.2.2 규정 취지

- 관세환급이란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에 제공한 때에는 수출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원칙적으로 관세는 원자재를 수입한 자가 최종 수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국신용장 거래의 경우 수출로 간주되어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원사업자의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절차는 원재료 수입자가 수입시 납부 한 관세를 수출자에게 전가하고 이를 전가받은 수출자로 하여금 환급받도록 하는 절차이다.
- 이와 같이 원재료수입자와 최종 수출자가 다른 경우 발급받은 기납증은 국내업체간 거래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관세 등 환급액의 지연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시)

- ㉠ 수급사업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
-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관세 등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의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지체없이 발급해 준 경우

4.3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4.3.1 규정 내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법 제13조 제2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3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3조 제4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3조 제5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7.5%)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6항]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수수료율)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7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연15.5%, 2023년기준)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8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원사업자이고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3,000억 미만인 경우는 이 법에서 정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 규정(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항, 제24조의4 제1항, 제25조의2, 제33조가 적용된다. [법 제13조 제11항]

4.3.2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 원칙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15일 이전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라는 기간이 먼저 도래할 수 있으므로, 먼저 도래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한편,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된다.

▶ 예외

-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약정을 허용하고 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을 폭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을 강행 규정화한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 시 기준시점

- 목적물 수령일
 - ✓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
 - ✓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
- 건설위탁에 있어 목적물 인수일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
- 예외적으로 일괄마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본다.
 - ✓ 목적물의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기간 산정의 초일이나 중간에 포함되는 공휴일은 기간계산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4.3.3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내에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어음(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또는 상환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또는 수수료)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할 수 없다.

4.3.4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 하도급법상 어음할인료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부도의 위험성을 전가시키는 한편, 만기까지의 금융이익을 부당하게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어음할인료율의 결정

- 하도급법상 어음할인율은 시중은행의 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하도급법상 어음할인료(연 7.5%)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4.3.5 지연이자 지급의무

▶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 일괄마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금 성격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현재의 지연이자율은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에 따라 연 15.5%이다.

Q1.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의 기성금 지급조건과 동일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도급법 위반여부?

A1. 하도급계약은 원도급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이며,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위 법정 지급기한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오히려,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의 부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A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공동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로 연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단독명의로 체결된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명날인한 공동도급사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4.3.6 공정위 심결례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

사실관계

[본계약의 미완성을 이유로 추가개발 용역대금을 미지급한 사례]

H사는 2건의 추가개발 용역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과 관련하여 '추가개발 용역은 본계약 시스템 구축 용역과 연계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용역수행을 중단하여 본 계약 용역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연계된 추가개발 용역 건도 용역 수행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고 주장함.

공정위 판단

추가개발 용역 건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H사는 발주자로부터 추가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5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H사는 추가개발 용역 건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며 본 계약 구축 용역과는 별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물에 양측 담당자 협의를 통해 세금계산서가 발생된 사실이 있음. 또한, 본 계약 용역 개발일정 및 진척관리도를 보면 2012.5.1. 개발을 시작하여 2012.5.24.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었으며, 검사기록 내역에서 용역 완료 여부란에 'Y'라고 기재된 것을 고려하면 H사는 위탁 건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하고 검사까지 마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계약 시스템 구축용역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공정위 2013서제2966)

4.4 현금결제비율 등의 유지 의무

4.4.1 규정 내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3조 제4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3조 제5항]

4.4.2 규정 취지

- 동 규정들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이나 만기일이 짧은 어음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대금의 현금비율을 낮추어 지급하거나, 만기일이 장기인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인 중소하도급업자의 자금난을 가중하고 경영상의 애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결제방식을 정한 것이다.
- 즉, 어음결제비중의 증가 및 어음만기일의 장기화, 수취 어음의 부도에 따른 수급 사업자의 연쇄도산 위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4.4.3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

$$\text{현금결제비율} = \frac{\text{현금 지급액}}{\text{하도급대금 지급액}} \times 100$$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4.4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 안된다.
- 선급금의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현금결제비율이나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 하도급관계에 있어 원사업자(재하도급관계에서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급사업자(재하도급관계에서 원사업자)가 2차 하도급업체인 제2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법 제13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적용을 받는다.

4.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4.5.1 규정내용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법 제16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2항]
-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3항]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하며,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지급한 날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4항]

4.5.2 규정취지

- 동 규정의 취지는 공평의 원칙에 그 존재이유가 있다. 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특히 증액)받은 경우, 하도급거래관계에서도 조정받은 내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타당하다는 점에서 특별히 의무화하게 되었다.

4.5.3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 요건

- 제조 또는 건설위탁을 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조정기준

원사업자가 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즉, 개별품목별로 조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로 세부공사 내역에 따라 조정받은 내용과 비율을 맞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된다.
-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준 경우에는 적법하다.
-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고, 물가변동조정율이 3%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한다.

㉡ 물가변동분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지급된 선급금에 대하여는 이미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

즉, 원도급대비 하도급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의무를 부담한다.

4.5.4 조정 금액 지급의무

- 원사업자는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지연이자 연 15.5%).
- 또한,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1.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거실장, 신발장, 씽크대와 같은 시설물을 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의하여 제조 의뢰한 경우, 위 시설물을 제작 납품만 하고 설치하는 원사업자가 직접 설치한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ESC)의무가 있는지 여부?

A1. 하도급법 제16조상의 물가변동분 반영의무는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위탁물을 제조하는데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면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해 주어야 한다.

Q2.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예정금액이 당해 연도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금액임을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한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조정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A2.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계약하면서 당해 연도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하여 입증되고,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원사업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아도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수 있다.

Q3.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단가를 조정함에 있어 기존의 공종에 대한 추가시공한 부분과 신규공종 추가의 경우 조정기준은 어떠한가?

A3. 기존의 단가가 있는 공종에 대한 추가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당초의 하도급단가를 유사단가라고 보고 도급단가의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 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하면 된다. 다만, 설계변경부분이 기존의 공사내역과 상이한 신규공종의 경우에는 발주처로부터 적용받은 단가를 기초로 하여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4.6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4.6.1 규정 내용

-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6조의2 제1항]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법 제16조의2 제2항]
- 원사업자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6조의2 제10항]

4.6.2 규정 취지

-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 협의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였다.

4.6.3 적용 기준

-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원사업자는 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단, 수급사업자가 신청한 내용 대로 조정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4.7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4.7.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또는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7조]

4.7.2 규정 취지

- 개정 전의 규정은 “의사에 반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한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네거티브’의 규정이었는데, ‘17.4.18자로 모든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단서 규정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 본 개정으로 인하여 대물변제 자체의 위법성 추정과 아울러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물변제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하였다.

4.8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4.8.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 i) 해당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 ii)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2조]

4.8.2 규정 취지

- 본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재료, 장비 등 수급사업자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때 그 대금을 하도급대금과 상계하거나 지급 후에 수령하지 아니하고 선수령하는 부당한 계약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 물품 등의 구매나 사용 대가를 부당하게 결제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즉, 물품 구매대가 등의 부당결제는 수급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하도급 대금을 감소시켜 수급사업자의 자금유통을 어렵게 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큰 불이익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8.3 적용기준

-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당해 하도급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에 사용하거나 전매한 경우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5.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장을 위한 하도급법상 제도

5.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5.1.1 규정 내용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2 제1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법 제13조의2 제5항]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때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법 제13조의2 제7항]

5.1.2 규정 취지

-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미래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워지며, 통제 불가능한 위험(예: 천재지변에 의한 공기지연 등) 외에 통제 가능한 위험(예: 유동성부족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 건설업체의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건설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증제도가 필요하다.
- 건설공사는 장기계속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항상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안심하고 시공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하여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5.1.3 지급보증의무에 대한 예외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급보증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공사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함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③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5.1.4 보증의 내용 및 방법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보증서의 경우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원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 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았어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있으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이다.
2. 지급보증의 방법으로서 현금 또는 보증서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3. 하도급대금의 보증채무자인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은 보증서를 교부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는 계약이행보증서 대신 반드시 현금을 납부토록 하거나 기성금에서 보증금 형태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다.

▶ 보증서의 교부시기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비로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미 보증한 사업자와 합병을 하거나 상속,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동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정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 보증내용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를 지급보증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백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도급법에서는 공사기간에 따라 보증범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공제한 금액,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text{계약금액} - \text{선급금} / \text{공사기간(개월 수)}] \times 4,$$
4. 기성금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text{계약금액} - \text{선급금} / \text{공사기간(개월 수)}] \times \text{기성금지급주기(개월 수)} \times 2 \text{ 이다.}$$

▶ 동시이행관계

1. 수급사업자도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는 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양 당사자의 채무가 상호 의존 관계가 인정되므로, 양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 지급 보증 조항은 강행 규정으로서 원사업자의 재무상황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제외할 수도 없다.

5.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5.2.1 규정 내용

-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제1항]
 -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 ✓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법 제14조 제2항]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4조 제3항]
-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법 제14조 제4항]
-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제5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4조 제6항]

5.2.2 규정 취지

-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이므로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직접적인 의무의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을 완전히 분리하여 별개로 취급하는 것은 수급사업자가 실제시공을 하고 이에 따른 완성물을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현재의 건설시장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고, 원사업자의 경영사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에 직면할 수도 있다.
- 즉, 발주자로서는 공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공기지연이나 부실 시공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 또한,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시공에 따른 공사비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어 연쇄 도산할 우려가 매우 높다.
-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하여 후견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 도산의 방지 및 중소하도급자의 신용경색의 완화를 위하여, 현행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규정하게 되었다.

5.2.3 관련문제((가)압류 및 전부 명령(추심명령) 등과 직접지급제도)

▶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됨
- 이에 동 가압류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에 해당되어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도 무효임
-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발주자는 (가)압류 등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

▶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 (가)압류의 효력에 의해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해 보전되었으므로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하도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려움

5.3 하도급대금 연동제

5.3.1 제도의 내용

-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7항]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법 제2조 제16항]
- (주요 원재료)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 ✓ 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 ✓ 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 ✓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 (연동 대상 원재료)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법 제2조 제16항에서 정의한 주요 원재료(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한다. 다만,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지표가 없거나 고시된 지표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가격 협상력 등으로 인해 고시된 지표와 실거래가격 간 괴리가 큰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실거래가격,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시점이다. 비교시점의 원재료 가격이 기준시점의 원재료 가격과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률을 산정한다.
-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 $\pm 3\%$ 이상 변동 시
- (조정주기)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예) 1개월, 분기
- (조정일)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예) 매월 1일, 매 분기 말일
- (조정대금 반영일) 목적물 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 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 매월 1일, 연동일로부터 7일 이내, 매 분기 말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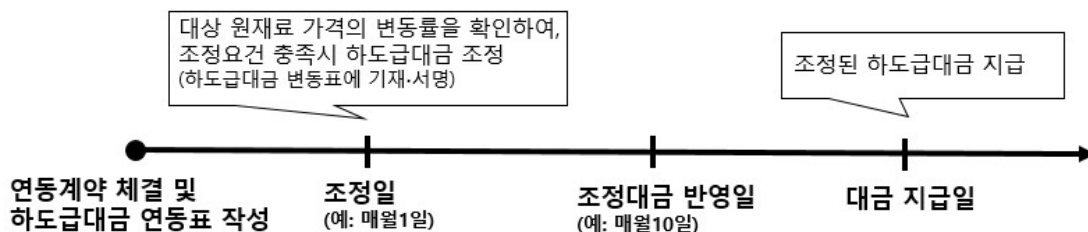
-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예) 변경단가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x 원재료 중량(2kg) + 5,000원
- (반영 비율)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개별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다. 예) 100%

5.3.2 제도의 취지 및 예외

-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원칙)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추가, 변경 위탁 포함)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법 제3조 제2항 제3호]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3조 제3항]
- (예외)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는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3조 제4항]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3조 제5항, 제30조의2 제4항]

5.3.3 하도급대금 연동의 절차

<연동 절차 도식>



1. 표준 연동계약서의 작성 및 하도급대금 연동표 작성 : 당사자간 협의하여 연동계약 체결하기로 한 경우, 양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함, 연동 계약은 하도급거래 최초 계약 시 또는 변경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체결하여야 함.
2. 조정일에 변동율 확인 하도급대금 산출·조정 후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 적용
3. 하도급대금 등 변동표 작성 : 하도급대금이 조정된 경우 작성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4. 조정된 하도급대금의 지급
5. 서류의 비치 :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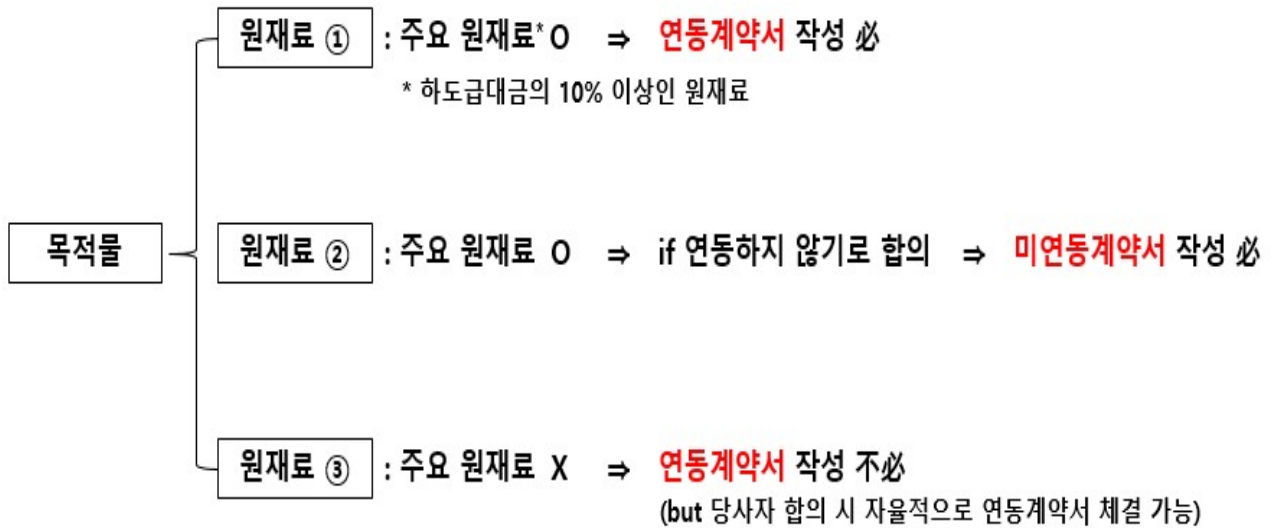
5.3.4 원사업자 체크리스트

시기	주요 체크리스트	상세 내용
계약 체결 전	(성실 협의 의무) 원사업자는 연동계약 체결시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수급사업자 합의에 따라 연동제 적용을 할 수 있음 • ①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③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음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	• ①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조정요건, ④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⑥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⑦조정일, ⑧조정주기 및 ⑨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함 (하도급법 제3조,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 표준 연동계약서에 첨부된 하도급대금 연동표를 참고하여 작성
	(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 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됨(하도급법 제3조 제5항) • (예) 쪼개기 계약, 미연동합의 강요·유도 등
계약 체결 후 조정시	(원사업자의 조정 의무) 조정요건 충족시 조정된 하도급대금 지급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에 정한 조정일마다 변동률을 확인하고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 등의 하도급대금을 산출 • 원사업자는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 등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 • 원사업자는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 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 하도급대금이 조정되는 경우 원·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변동표에 해당 사항을 기재
조정 종료 후	(연동 협의 서면 보존) 가급적 연동계약 체결 시작부터 종료까지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보존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하도급대금 연동표·변동표를 3년 동안 보관해야함(하도급법 제3조) • 성실히 협의에 응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이메일, 공문 등도 같이 보존

(연동지원본부 활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①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②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③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음

5.3.5 시나리오별 (미)연동 계약서 작성요령



5.3.6 연동제와 조정협의제도(법 제16조의2) 비교

구분	연동제	조정협의제도
대상	주요 원재료의 비용	공급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납품대금 조정 협의시점	사전 (계약체결 시)	사후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시)
강제성	의무	자율 (다만,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시 원사업자가 협의에 응할 의무 존재)
제재	서면 미기재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1천만원)	조정협의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 등

6.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6.1 사건처리 절차 개요

6.1.1 사건의 단서

- 사건의 단서(사건의 조사에 착수하는 원인)가 되는 것은 신고 및 직권인지가 있다.
☞ 사건의 단서라 함은 사건의 조사에 착수하는 원인을 말한다.

6.1.2 사전심사제도

- 신고사건의 경우 먼저 당해 거래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및 검토가 있어야 한다.
- 여기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즉, 사건으로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게 된다.

6.1.3 사건의 조사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인 경우에는 사건의 단서에 따라 담당자는 심사관에게 사건 심사착수보고를 하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여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밝혀낸다.
- 다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거나, 적용대상이 아님이 밝혀지는 등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6.1.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경고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 법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 수급사업자의 청산, 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자진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시정권고**

-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반행위 내용이 경미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과징금**

-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범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범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속고발제)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시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복조치 금지 위반 시 3억원 이하, 경영간섭 및 탈법행위 위반 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의무고발 요청제도)

6.1.5 구제절차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피심인은 공정위의 확정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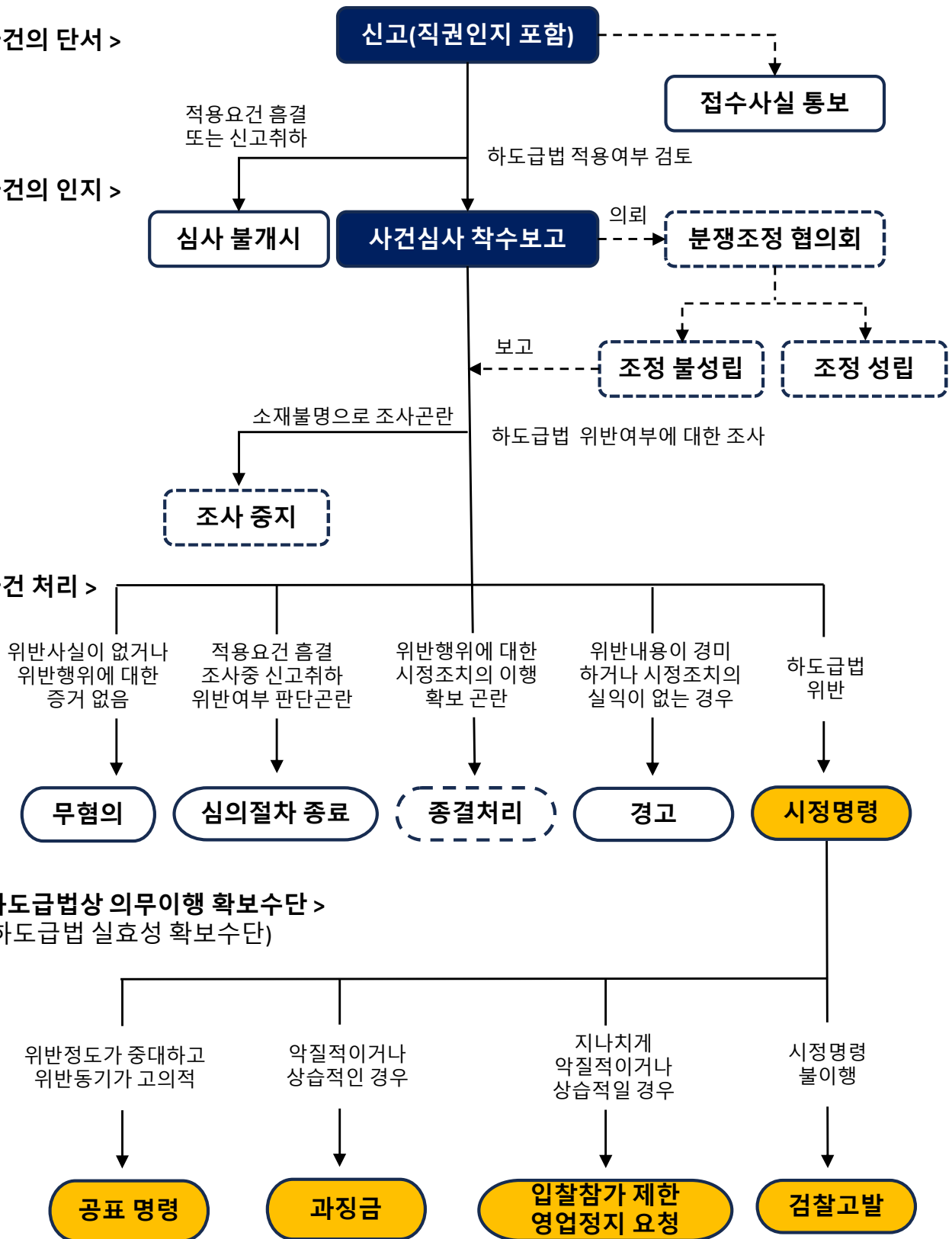
하도급법 위반 처리절차 흐름도

① 사건의 단서 >

② 사건의 인지 >

③ 사건 처리 >

④ 하도급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하도급법 실효성 확보수단)



6.2 사건의 단서

- 사건의 단서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의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의미한다.

6.2.1 위반행위의 신고

- ① 누구든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2조 제1항].
- ②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한 최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2조 제3항].

- 원사업자로부터 직접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당한 수급사업자를 비롯하여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 다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경우 특정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불개시(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함)하게 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6.2.2 직권인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직권으로 인지하여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6.2.3 사전심사

- 법위반 혐의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 ✓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의 충족여부
 - ✓ 법 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의 경과 여부
 - ✓ 하도급법 적용대상 여부
-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분명치 아니한 사건 등은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심사불개시)

6.3 사건의 조사

6.3.1 규정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22조 제2항]

6.3.2 규정 취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조사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수반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사에 관한 근거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바, 위 규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을 부여한 근거조항이다.
- 『사건의 조사』라 함은 하도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정보 등을 수집하여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권력적 조사 활동을 말한다.

6.3.3 조사방법

-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관련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 상황,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법 제27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1조]
- 제출이 요구되는 관계서류의 종류가 일정하게 정하여진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6.3.4 조사권의 침해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법 제30조의2]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1억원 이하, 임직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 1천만원 이하
 - ✓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공시한 자
 - ✓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등
- 원사업자 → 5천만원 이하, 원사업자의 임직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 5백만원 이하
 -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 원사업자 → 5천만원 이하
 - ✓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자
- 원사업자 → 1천만원 이하
 -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사업자

▶ 제재의 필요성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위반행위를 억제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하게 되므로 법위반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는 최소한 조사대상업체의 출석과 내부자료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절실하다.
- 즉, 공정위 조사는 원칙적으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내부자료의 진실성 및 최소한의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을 조사대상 업체에게 부과한 것이다. 이는 피조사자의 협조없이 필요한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자료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6.4 분쟁 조정

6.4.1 규정 내용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제1항]
-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24조 제2항]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법 제24조의5 제1항]

6.4.2 하도급분쟁조정협회의의 설치목적

-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대부분 당사자들간의 사적분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법 위반사실 여부보다는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에서는 부분적인 분쟁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6.4.3 조정절차

▶ 조정성립의 경우

- 협의회에서 양당사자가 조정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때 조정이 성립된다.
-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 제24조의6].

▶ 조정불성립의 경우

-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6.5 위원회 상정

6.5.1 회의상정 안건

▶ 소회의 안건

- 하도급법 위반에 의한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 및 고발하는 경우

▶ 전원회의 안건

- 이의신청사건 및 소회의 등에서 전원회의 상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6.5.2 피심인의 의견 제출기회의 부여

-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기 전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사건의 단서, 심사 경위, 심사관의 조치의견 및 첨부자료)를 송부하여 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문서로 심판관 리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5.3 의결 등의 조치 및 통지

- 심판관리관은 의결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과징금 부과금 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5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의결서의 경우는 심사관이 피심인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6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6.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하도급법의 취지에 비추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법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시정조치의 유형에는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등이 있고, 법 위반 횟수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 과징금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다.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별점을 부과하여 위 조치유형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감안하고 있다.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 벌점

구분	경고(서면)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벌점점수	0.25	0.5	1.0	2.0	2.5	3.0

※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한다.

6.6.2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제25조 제1항]
- 시정에 필요한 조치는 위반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나 작위를 명하는 것과 부작위를 명하는 것이 있다.
- 하도급법에 작위명령(...를 지급하여야 한다.)형식으로 규정된 경우,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작위명령을 하는 것이 곧 시정에 필요한 조치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금지명령(...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 단순히 부작위를 명하는 것만으로는 당해 하도급 법위반행위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예를 들면, “부당하게 목적물 수령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는 수령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고, “부당하게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형식의 재발방지명령을 발하게 된다.

6.6.3 공표명령

▶ 공표명령제도의 의의

- 공표명령이라 함은 피심인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 공표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되어 법 위반 억제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소비자나 국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는 측면에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도 한다.
- 다만, 공표명령제도는 헌법상 보장되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 금지 원칙이나 양심의 자유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사죄 광고가 아니라 단순히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이므로, 헌법상 기본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 공표명령의 요건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 제25조 제3항]
- 공표명령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면서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시정조치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공표를 명할 수는 없다.

6.6.4 과징금

▶ 근거규정 [법 제25조의3]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과징금제도의 의의

-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 즉, 경제법상의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

▶ 과징금 부과기준

-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 ①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 ② 큰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 ③ ① 및 ②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등이 미지급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원사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6.7 처분 불복

6.7.1 규정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업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96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98조]

6.7.2 규정 취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업자에게 그 처분에 대한 방어권 및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
- 즉, 피심인의 이의신청권은 피심인에게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공정위로 하여금 시정조치 등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공정위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행정소송의 폭주를 피하여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6.7.3 불복방법

▶ 이의신청권

-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 권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공정거래위원회)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 이의신청을 위하여는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기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하여야 한다.
- 공정위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 청구권

-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이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6.8 벌칙

6.8.1 벌칙의 내용

- 하도급법상 벌칙에는 형벌인 벌금형이 있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이 있다.
- 형벌은 하도급법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 과태료는 조사의 거부·방해 등 하도급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절차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다만, 벌금부과에 관한 권한은 사법부에 있는 것이므로 검찰(약식기소의 경우) 또는 법원에서 벌금액을 확정하여 부과한다.

6.8.2 벌금

-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서면 발급 및 보존규정을 위반한 자
 - ② 부당한 특약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 ③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감액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 ④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 ⑤ 선급금의 지급규정을 위반한 자
 - ⑥ 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 ⑦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 ⑧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 ⑨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⑩ 하도급대금의 지급규정을 위반한 자
 - ⑪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규정을 위반한 자
 - ⑫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을 위반한 자
 - ⑬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 ⑭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규정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 ② 보복조치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③ 탈법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6.8.3 양벌규정

▶ 규정 내용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법 제31조]

▶ 규정 취지

- 양벌규정이란, 법 위반행위를 직접 행한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처벌 하는 것을 말한다.
-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므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 범죄능력이나 수형 능력이 부인된다.
- 따라서, 법인이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은 부과할 수 있다.

6.8.4 고발

▶ 근거 규정 [법 제32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규정 취지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관한 규정으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된다.

- 즉,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관한 조사를 할 수는 있으나,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 고발권 행사의 재량성 여부

-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
-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형벌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법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안에 있어 공정위로서는 당연히 고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도 같은 입장).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의무고발요청제도)

6.9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6.9.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10점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제2항]

6.9.2 용어의 정의

▶ 벌점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 경감점수

-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 가중점수

-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 누산점수

- 의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 ①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의 경우: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 ②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6.9.3 별점의 부과기준

- 별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 (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별점을 0점으로 한다.
 - ①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미지급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 ②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합의내용을 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경우

6.9.4 가중점수 기준

-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 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별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별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별점에 가중한다.

6.9.5 경감점수 기준

-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항목마다 1회만 별점을 경감할 수 있다.

연번	경감사유		경감점수
1	표준계약서 사용 우수	90% 이상	2
		70% 이상 90% 미만	1
2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우수	100%	1
		80% 이상 100% 미만	0.5
3	건설하도급 입찰 시 입찰정보공개 우수	80% 이상	1
		50% 이상 80% 미만	0.5
4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업체	최우수	3
		우수	2
		양호	1
5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중소기업 대상)	-	3

연번	경감사유		경감점수
6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 우수업체	최우수(AAA)	2
		우수(AA)	1
7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사업자간 합의를 통한 직불	발주자 직불처리 비중 50% 이상	1
		발주자 직불처리 비중 50% 미만	0.5
8	원사업자가 자신의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 피해를 자발적 구제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해당사건 별점의 50% 이내
		피해를 50% 이상 구제한 경우	해당사건 별점의 25% 이내

※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 별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참조

6.9.6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점을 부과하고, 그 별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조달청,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10점이 초과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요청이 있는 자에게는 「국가계약법」 제2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대법원 판례

별점

하도급법상 별점 부과행위의 행정처분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함

하도급법상 별점 부과행위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2020두50683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관계 행정기관 장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함

사업자로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이 있으면 장차 후속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2.2. 선고 2020두48260판결)

VII

기업집단 규제정책 지주회사 제도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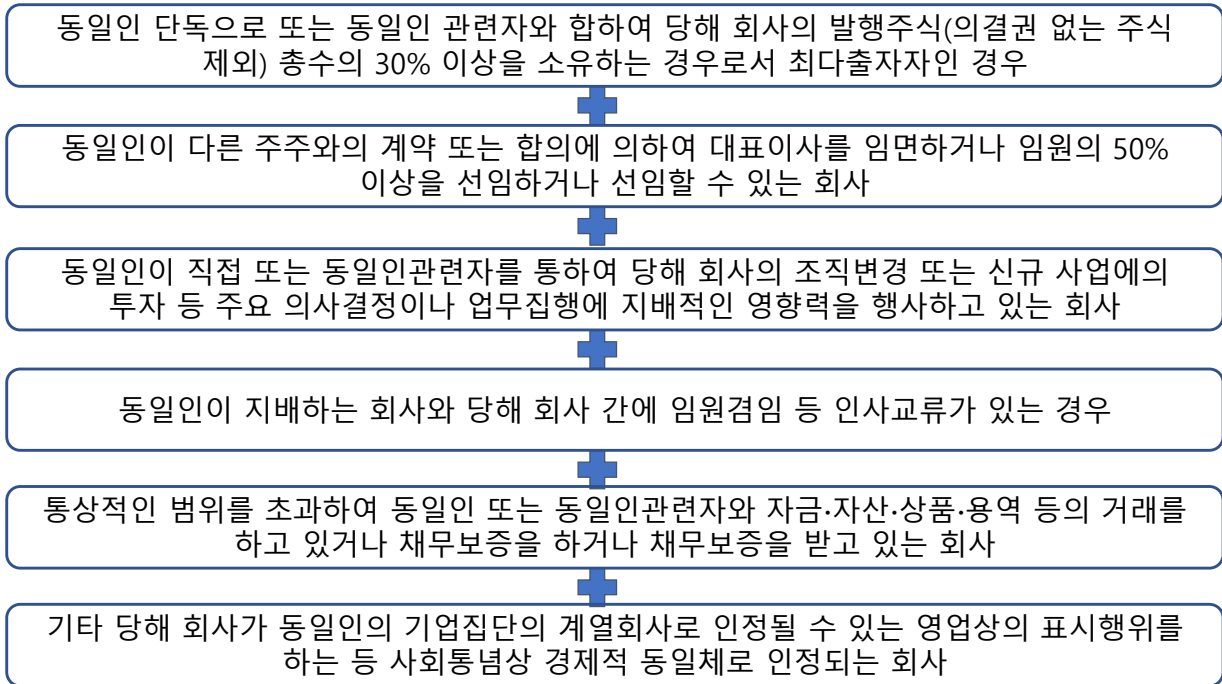
1.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요

1.1 기업집단 지정제도

① 기업집단

- 동일인(사람 또는 회사)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② 기업집단 범위



※ 동일인 관련자 :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및 단체, 임원 등

③ 기업집단 규제정책의 적용

-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및 시장경쟁 저해 방지 등 공정 시장경쟁 조성을 위해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지정하여 의무 및 규제를 적용

④ 기업집단 신고 등 의무사항

구분	내용
기업집단 지정 등 자료제출 (법 제31조)	•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적용대상 확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에 관련자료 (일반현황, 재무 등) 제출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 신고 (법 제32조)	• 기업집단 지정 이후 계열회사 편입/제외 변동 발생시, 기업집단 시책 적용대상 변동을 위한 신고

구분	내용
기업결합 신고 (법 제11조)	• M&A 등의 기업결합은 사전에 신고하여 공정위가 시장경쟁 제한성을 심사하며 승인시에만 기업결합 가능
공시제도 (법 제26~29조)	• 기업의 이해관계자(주주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주요사항을 공시

⑤ 기업집단 신고 등 규제사항

구분	내용
상호출자 금지 (법 제21조)	• 실질적인 출자없이 계열회사 확대 방지를 위해 2개의 계열회사가 상호간 주식을 보유하는 출자행위 금지
순환출자 금지 (법 제22조)	• 계열회사 부실에 따른 연쇄적인 악순환 방지를 위해 3개 이상의 계열회사가 상호 연결된 출자고리 형성 금지
채무보증 금지 (법 제24조)	•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채무보증 금지
부당지원행위 금지 (법 제45조)	• 계열회사 및 공익법인 등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 되도록 자금, 자산, 상품·용역 등을 거래하는 행위 금지

1.2 기업집단 지정 등 자료 제출

구분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자료 제출
작성 대상	• 기업집단 내 소속회사 및 비영리법인	
제출 시기	• 1차 : 3월 (주총 전 중간결산 자료 기준) • 2차 : 4월 (결산 주총 완료 후, 최종자료 기준)	• 정기 : 5월 • 비정기 : 계열편입 시 편입 통지 이후 (편입회사)
제출 자료	• [대표회사] 동일인 및 친족 현황, 비영리 법인 현황 • [소속회사] 회사 현황(재무, 임원, 주주 등), 내부지분율, 비계열사 주식보유 현황 (15% 이상) 등	• [대표회사] 지배구조 현황(지분도) • [소속회사]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현황, 확인서 등
공정위 활동	•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적용대상 확정 (5월) • 계열편입 위반사항 점검	• 주식 및 채무보증 현황 발표 • 기업집단내 출자규제 및 채무보증 현황 점검
위반시 제재	•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에 따라 경고~고발 (동일인) •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벌칙 : 1억원 이하 벌금

1.3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 신고

지분율 또는 지배력 요건 충족 시 계열회사로 편입하고, 계열제외 요건 해당 시 계열제외 신고 (공정위 심사 후 결과 접수)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대상 변동 적용

구분	계열편입	계열제외
지분율 요건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30% 이상(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이며, 최다 출자자	• 계열편입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회사 •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① 출자자간 합의/계약 등에 따라 동일인관련자* 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②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친족독립경영) ③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임원독립경영) ④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써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다고 인정되는 회사 i.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현물출자 또는 합병 등에 의한 방법으로 설립된 회사 ii. 민투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인 ⑤ 파산 또는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 등
지배력 요건	• 동일인이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① 임원 선임 : 대표이사 임면 또는 등기임원 50% 이상 (선임권 보유 포함) ②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③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는 회사와 임원겸임 •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래 또는 채무보증 관계 •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 인정되는 회사	
공정위 활동	• 위장 계열사 등 계열편입/제외 수시 조사	
위반시 제재	• 과태료 : 사업자 - 1억원 이하 / 임직원 등 개인 - 1천만원 이하 •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편입 허위 또는 누락으로 추가 제재 Risk 존재함	

※ 동일인 관련자* :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및 단체, 임원 등

1.4 기업결합 규제 및 신고

기업결합이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합을 통하여 공통의 지배력 하에 통합되는 것을 말하며, 공정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결합으로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다만,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크거나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구분	내용
신고 기준	• 기준1 :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 신고회사 : 3,000억원 이상 - 상대회사 : 300억원 이상 -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일 경우, 기업집단 전체의 자산 또는 매출액 합계하여 산정 - 외국회사의 경우, 국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기준2 : 거래금액 - 거래금액(인수 채무합계 포함) ≥ 6,000억원

구분	내용				
신고 예외	•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회사의 설립 or 주식 20% 이상 (상장사 15%) 취득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②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회사 ③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신고 유형	구분	내용	계열사간 결합 시	신고시기	
	주식 취득	① 발행주식 20%(상장사 15%) 이상 취득 ② 추가 주식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X	사전	계약 또는 주총 의결일 등 이후, 기업결합일 이전
	합병	타사와 신설·흡수·분할합병 하는 경우	O (간이신고)		
	영업 양수	① 타사의 영업 양수/임차 ② 경영의 수임 ③ 타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양수	O (간이신고)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 는 경우	X (특수관계인외 참여시 신고)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	X	사후	선임의결일 30일 이내
공정위 활동	• 기업결합 신고위반 또는 미심사 기업결합 수시 조사				
위반시 제재	• 과태료 : 사업자 - 1억원 이하 / 임직원 등 개인 - 1천만원 이하				

Q&A

Q1. 계열회사 판단에 대한 공정위 실무 기준

A1.

- ① 지분율 관련 요건 : i)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자의 계열회사로 판단 (예외적으로 지배력 요건이 지분율 요건을 충분히 상쇄할 경우에만 계열회사로 미판단), ii) 50% 최다출자자가 2인(A,B)일 경우, A와 B의 공동의 지배 인정 가능(나머지 지배력 크기도 동일할 경우)
- ② 지배력 관련 요건 : i) 임원 선임 권한, 임원 구성, 정관이나 협약서 상 주주간 의사결정 절차·방법, 권리·의무 관계 등에 비추어 누가 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검토, ii) 기타 인사이동, 자금대차, 채무보증, 거래현황 등도 부가적인 기준으로 삼음
- ③ 기타 고려 요소 : i) 기타 해당 회사의 법인격, 설립 목적 및 경위, 타법령 적용대상 여부, 주무관청 존재 여부, 주주간 구성 및 분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 ii) 현재 시점의 지배력 뿐 아니라 향후 장래의 지배력까지 살펴보아야 하므로 종합적, 다각도로 검토

Q2. 공동투자 법인 관련 계열회사 판단 기준

A2.

- ① 동일인 측이 최대출자자인 경우
 - i) 원칙 : 계열회사로 편입
 - ii) 예외 : 출자자간 합의.계약에 의해 비동일인 측이 경영을 지배함이 명백할 경우 제외 인정 (편입 후 제외)
- ② 동일인 측과 비동일인 측이 공동 최대 출자자인 경우
 - i) 원칙 : 양 측이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 계열편입
 - ii) 예외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인 측으로 미편입
 - ① 정관 또는 합작계약서 등에 의해 비동일인 측이 이사의 과반수와 대표이사 (공동 대표 포함)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및 이사를 선임 하였을 것
 - ② 최소한 감사 1인을 비동일인 측이 선임 하였을 것
 - ③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자금 대차나 채무 보증 등이 없을 것
- ③ 비동일인 측이 최대 출자자인 경우
 - i) 원칙 :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미편입 또는 제외
 - ii) 예외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열편입 또는 제외 불인정
 - ① 동일인 측이 임원(감사 포함)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
 - ② 동일인 측이 가장 많은 이사를 선임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
 - ③ 양 측이 동일한 수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 측이 대표이사(공동대표포함)를 선임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
 - ④ 기타 정관.합작계약서, 임원구성 현황,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 등을 종합 감안 할 때, 동일인 측이 당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Q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관련 계열판단 기준

A3.

-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인 경우
 - i) 원칙 : 무한책임사원(GP) 측 계열회사로 판단
 - ii) 예외 : 특정 유한책임사원(LP) 측이 GP와 함께 공동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LP 측 계열회사로 공동 편입 (예를 들어 LP 1인이 거의 100% 지분을 갖고 단독으로 정관 변경, GP 해임 등 주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출자한 회사
 - i) PEF가 투자한 피투자회사의 경우, 일반적인 계열판단 기준 (지분율 요건 및 지배력 요건)에 따라 판단
 - ii) 자본시장법 개정('21.4.20)으로 변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체계 중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기준 적용 가능

Q4. 계열회사에서 “회사”는 상법상 회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A4. 원칙적으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를 의미하지만, 실질상 영리행위를 하는 법인인 경우 회사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이 핵심개념)

- i)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ii)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 iii) 민법 제39조(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Q5. 계열회사 요건 충족 시, 투자신탁(펀드)의 경우에도 계열회사에 해당하나요?

A5. 투자신탁(펀드)은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추상적인 자산 집합체로서, 법인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6. 동일인관련자와 특수관계인이 동일한 개념인가요?

A6. 동일인관련자와 특수관계인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긴 하나, 공정거래법상 정의 규정에 따르면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란 ①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 ②동일인관련자, ③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7. 친족독립경영 또는 임원독립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친족 또는 임원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나요?

A7.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측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는 한편, 해당 친족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임원독립경영의 경우 해당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측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나 해당 임원은 임원 지위를 유지하는 한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Q8. 지분율 요건을 불충족하면 계열회사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A8. 기업집단의 범위(계열회사 여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혹은 제2호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분율 요건 (시행령 제4조 제1호)을 불충족하더라도 지배력 요건(시행령 제4조 제2호)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에 해당합니다.

한편,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 해당되며 지배력 요건이 지분율 요건을 충분히 상쇄할 경우에만 계열회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Q9. 각각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여 있는 A사와 B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공동GP로 출자하고 있는 아래의 상황에서 해당 PEF는 A사의 계열회사로 볼 수 있나요?

- 출자비율: A사의 출자비율은 25%, B사의 출자비율은 30%
- 임원현황: 투자심의위원회 총 5인 중 A사가 2인 선임, B사가 3인 선임
- 정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은 구성위원 5인 중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투자에 대한 최종의사결정, GP가 부의하는 안건, 1억원 이상 계약체결 승인 등 수행

A9. PEF의 경우 업무집행사원(GP)를 PEF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자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정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PEF는 A사가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A사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A사는 최종·핵심의사결정 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 5인 중 2인만 선임하고 3인은 B사가 선임하는 점, 투자심의위원회 모든 결정은 위원 5명 중 3명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져 A사는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다만, 이 경우에도 이후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정관 내용 변경 등에 따라 A사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해당 PEF는 계열회사 편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2.1 상호출자의 개념

- 2개 이상의 독립된 회사가 서로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2.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 10조원, 2024년 : 10.401조원 적용) 이상인 기업집단 [법 제31조 제1항]

2.3 상호출자의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됨 [법 제21조 제1항(본문)]
-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탈법행위는 금지됨 [법 제36조, 시행령 제42조]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3호)
-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시행령 제42조 제4호)

▶ 예외

-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하는 경우 A가 B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으나,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단, B가 A의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21조 제1항(단서)·제2항]
※ 처분: 회사의 합병 등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312 판결)

2.4 순환출자의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계열 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22조 제1항(본문 전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는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22조 제1항(본문 후단)]
-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탈법행위는 금지됨 [법 제36조, 시행령 제42조]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자기가 취득·소유하면 계열출자 또는 추가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시행령 제42조 제5호)
- 자기가 취득·소유하면 계열출자 또는 추가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시행령 제42조 제6호)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 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법 제2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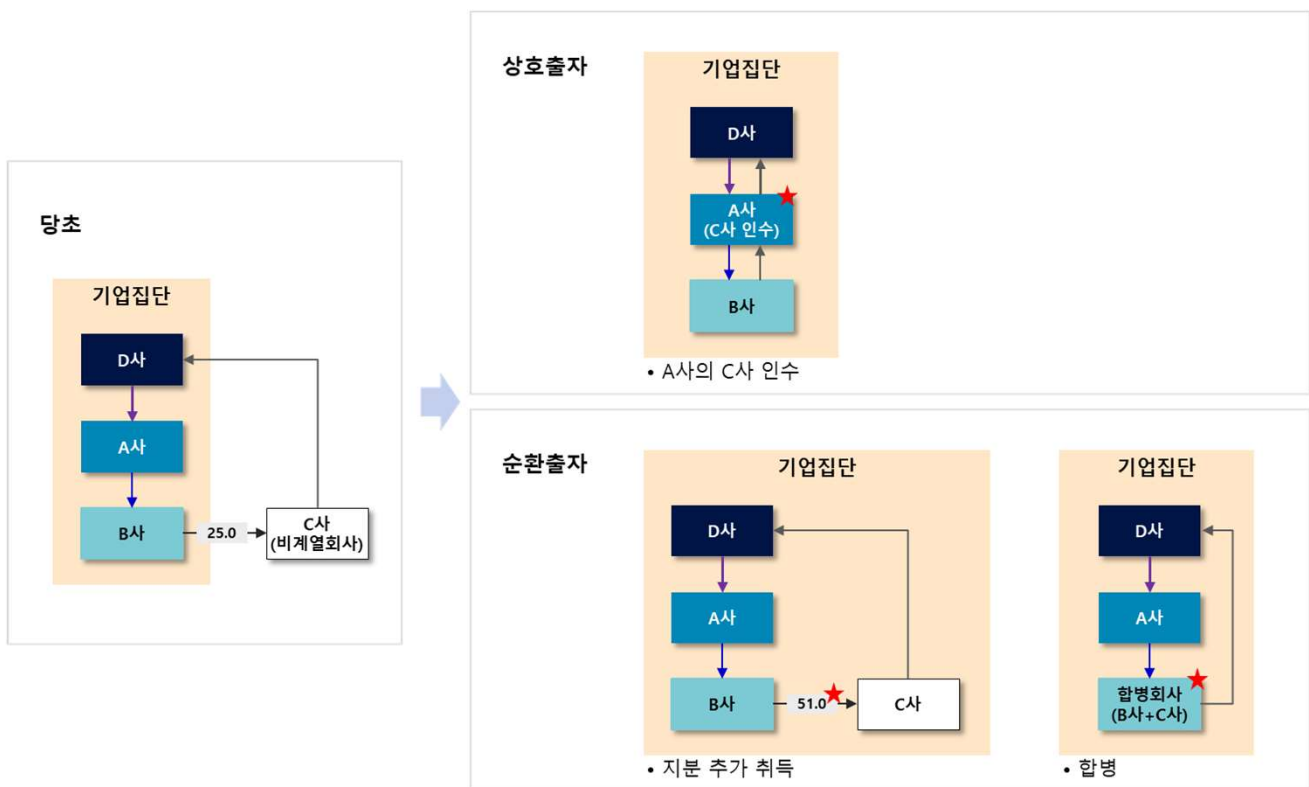
▶ 예외

- 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 (이하 “신주배정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 간 합병에 따른 계열출자는 제외 [법 제22조 제1항(본문 괄호)]
 - ㉠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 등에 따라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 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 ㉣ ㉠, ㉡의 경우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의 경우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야 함. 단,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열출자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법 제22조 제1항(단서)·제2항]

2.5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법 제37조 제1항):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제2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제6호) 등
- 시정조치의 이행 확보(법 제39조)
 - ① 시정조치 부과받은 날부터 법 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불가(제1항)
 - ②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불가(제2항)
- 과징금(법 제38조 제1항) : 주식 취득가액의 20% 이내에서 부과 가능
- 벌칙(법 제124조 제1항 제7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6 상호/순환출자 유의사례



3.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3.1 채무보증의 개념

- 채무보증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 [법 제2조 제18호]
※ 여신 :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법 제2조 제19호]

3.2 채무보증의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24조(본문)]
- 채무보증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탈법행위는 금지됨 [법 제36조, 시행령 제42조]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병존적 채무인수)
-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교차 채무보증)

▶ 예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24조 (본문 괄호)]
- [법 제24조(단서) 제1·호제2호,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채무보증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 ㉡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 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 :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 ㉢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 인수하는 회사의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 ㉣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본재나 그 밖의 상품의 생산과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 ㉞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사업, 수출선박의 건조 사업, 용역수출 사업, 그 밖에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수금환급보증·유보금환급보증·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 ㉟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 ㊱ 인수인도조건수출 어음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 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 ㊲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㊳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 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에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계열회사에 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㊵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한 보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해 하는 재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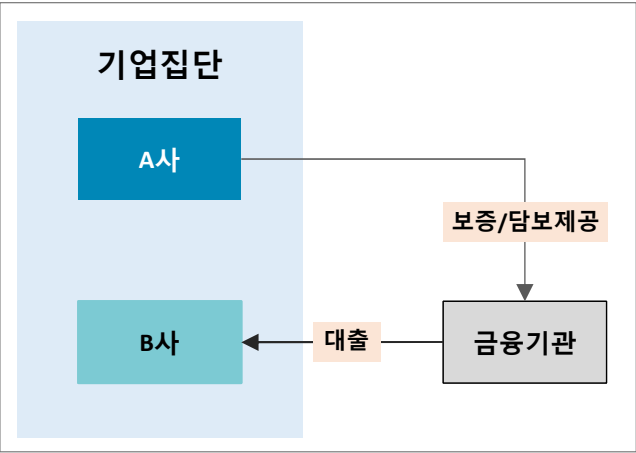
3.3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법 제37조 제1항]: 채무보증의 취소(제5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제6호) 등
- 과징금 [법 제38조 제2항]: 채무보증액의 20% 과징금 부과 가능
- 벌칙 [법 제124조 제1항 제8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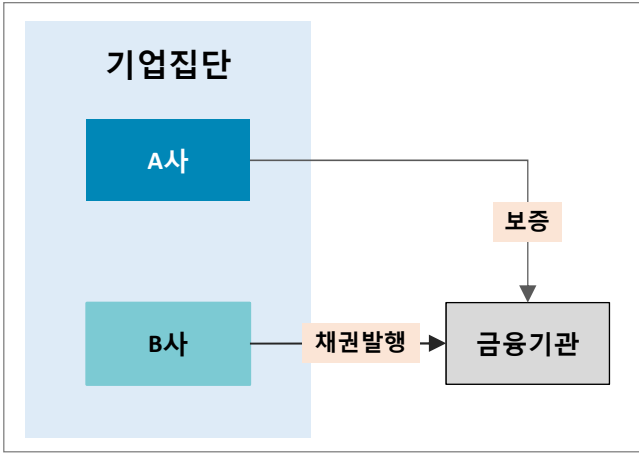
3.4 채무보증 유의사례

▶ 채무보증 금지

1. 직접 보증 (또는 연대 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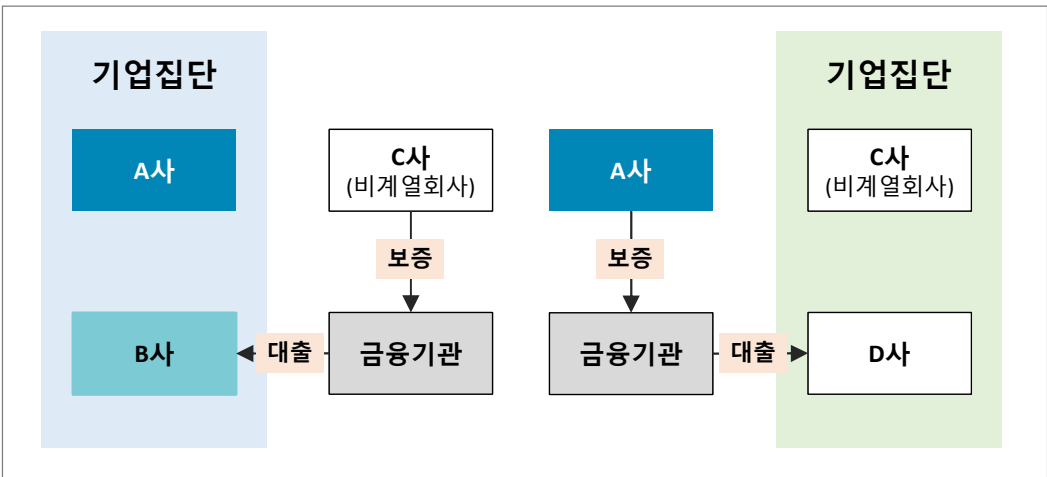


2. 사모사채 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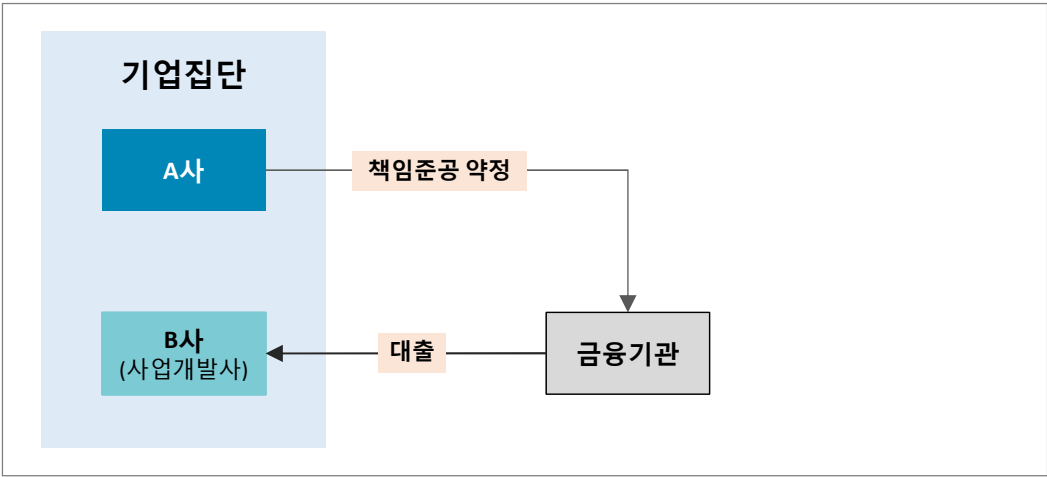


▶ 유사 채무보증 우려

• 교차 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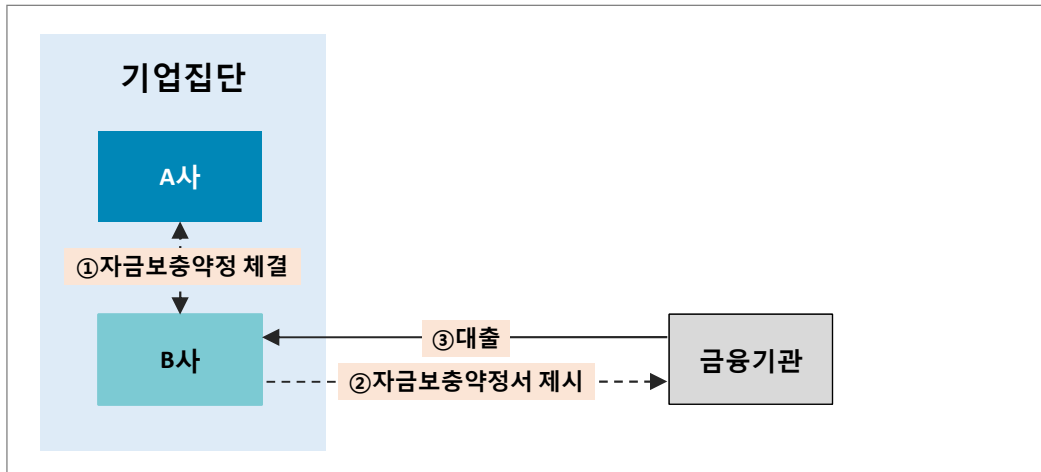


•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한 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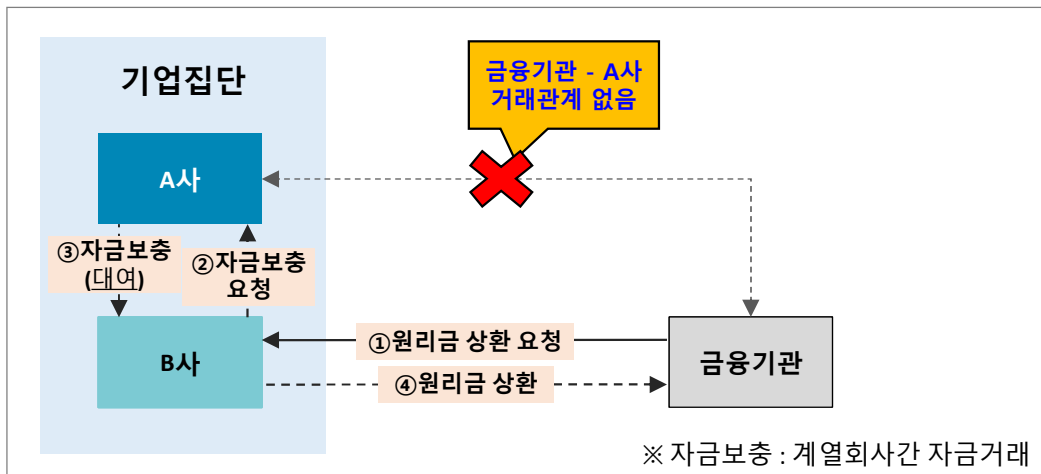


▶ 자금보충 약정

• 약정 체결



• 약정 실행 : B사 자금 부족 시



▶ 채무보증 vs 자금보충약정 비교

구분	채무보증	자금보충약정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책임	A사	B사
A사-금융기관 거래	O	X (내부거래)
A사의 대가수취	X	O (대여이자)

☞ 참고.

공정위 의결서 2014집단0171

(2014.11.13)

대한시스템즈(주)의 채무보증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주)티이씨앤알이 4개 상호저축은행(한국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 영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8. 6. 10.부터 2008. 6. 29.까지 제공받은 대출금 140억원, 2008. 6. 30.부터 2011. 6. 30.까지 제공받은 대출금 280억원, 2011. 7. 1.부터 2012. 4. 17.까지 제공받은 대출금 266억원

1) 설립시 회사명은 '삼양금융 주식회사'이었으나, 2010. 7. 9.에 '주식회사 티이씨리딩스'로, 2012. 6. 7.에 '대한시스템즈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2) 피심인은 2012. 4. 18. 한국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 영남상호저축은행과 채무보증 대신 자금보충약정(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차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 주는 약정으로 채무보증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체결함으로써 채무보증을 종료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및 소갑 제12호증)

4. 기업결합

4.1 기업결합의 제한

- 회사는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9조 제1항 본문]

▶ 제한되는 대상 행위 (Caution)

※ 아래의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행위를 통해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것임.

따라서 당사와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법에서 정한 기준(상대방 회사의 자산총액·매출액, 거래발생 금액 등)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공정위에 신고를 통해 심사를 요청하고 승인 이후 기업결합을 진행하여야 함.

-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통한 경쟁 제한
-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을 통한 경쟁 제한
-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경쟁 제한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를 통한 경쟁 제한
-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를 통한 경쟁 제한
- 제외대상 : 특수관계인*외의 자는 참여하지 않거나, 「상법」 제530조의2제1항의 분할에 따른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 [시행령 제14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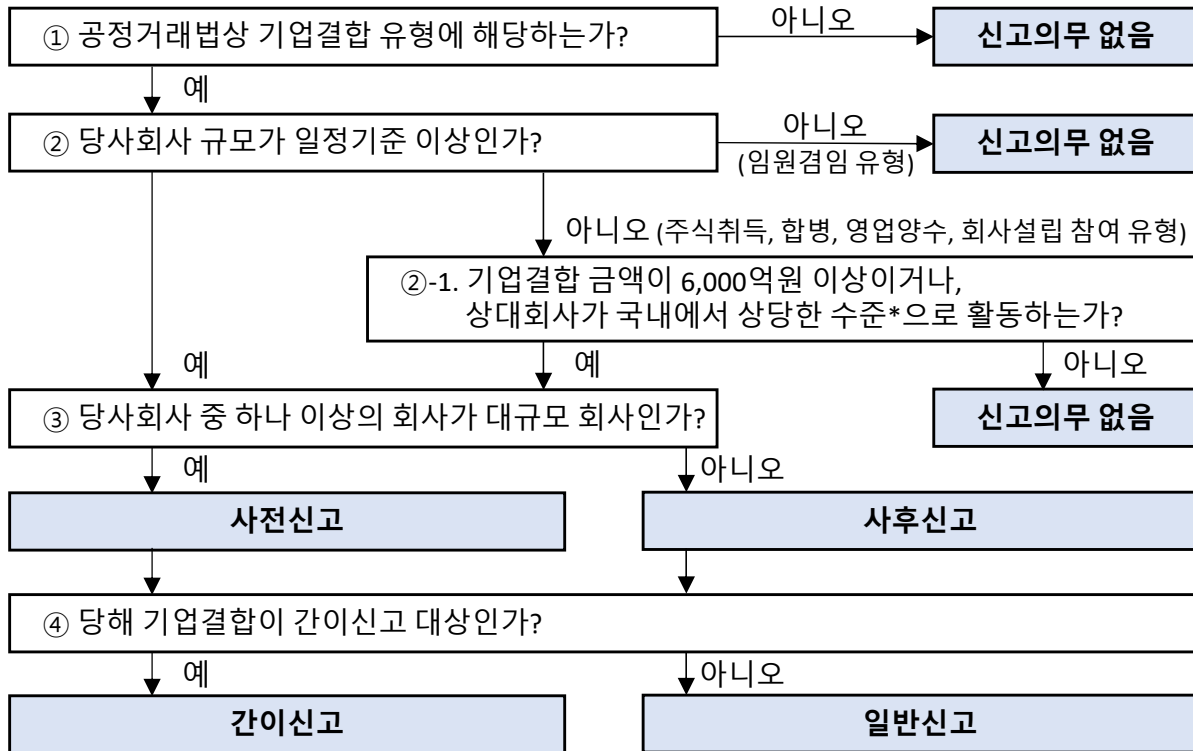
- ①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② 동일인관련자
- ③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 예외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이하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임원겸임에 의한 기업결합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9조 제1항 단서]
 - ㉠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큰 경우
 - ㉡ 상당한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 ㉢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 해당 사업자가 입증 [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4.2 기업결합 신고의무

❖ 기업결합 신고 절차 흐름도



※ 상당한 수준* : '4.2.3 신고대상행위' 참고

4.2.1 기업결합 유형

① 주식취득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의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 임원겸임

- 대규모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 또는 다른 회사 임원 총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

③ 합병 (단, 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병은 제외)

- 다른 회사와 신설·흡수·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④ **영업양수** (단, 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병은 제외)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임차
- 경영의 수입
-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⑤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4.2.2 회사 규모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
- 상대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다른 회사
- 대규모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 소규모피취득회사: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4.2.3 신고대상 행위

▶ **[법 제11조 제1항]**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에 대하여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의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의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법 제11조 제2항]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하여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의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의 기업결합을 할 때로서,
-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 인수채무 포함)이 6천억 원 이상이고,
-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 하는 경우
※ 상당한 수준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거나,
㉡i)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활용해 왔고, ii)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

4.2.4 예외

▶ [법 제11조 제3항]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의 주식을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을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ii)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또는 그러한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 iii)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그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 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법 제11조 제4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4.2.5 신고절차

- 신고시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한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필요한 경우 90일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구분	당사 회사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 신고	대규모 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등 이후 기업결합일 이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주식대금납입기일 까지
사후 신고	대규모 회사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합병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영업양수	영업양수대금 지불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사신설 참여	주식대금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임의적 사전심사

-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필요한 경우 90일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간이신고

- 기업결합 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다만,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이미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등

4.3 위반 시 제재

① 시정조치 [법 제14조 제1항,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제한대상 기업결합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유형	내용
구조적 조치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시정조치 ① 금지조치: 해당 기업결합 전체를 발생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기업결합을 원상회복시키는 조치 ② 자산매각조치: 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을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 ③ 지식재산권 조치: 결합당사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 또는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
형태적 조치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 영업방식, 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

② 이행강제금 [법 제16조]

- 시정조치를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가능

기업결합 유형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	
주식취득 회사설립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강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각 금액의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
합병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영업양수	영업양수금액	
임원겸임	1일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	

③ 기업결합 완료행위의 금지 [법 제11조 제8항]

-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후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기업 결합 완료행위(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주식인수행위) 금지

④ 설립무효의 소 제기 [법 제14조 제2항]

- 제한대상 기업결합행위 또는 심사결과 통지 전 기업결합 완료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⑤ 과태료 [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의 신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4 임원 겸임에 따른 유의사항

4.4.1 계열편입

- 원칙적으로 임원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열편입 신고하지 않음 (단,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을 통해 현황 점검)

타사	당사 (그룹)	신고대상
30% 이상 최대출자자	등기임원(이사/감사)	O
대표이사	등기임원(이사/감사)	O
등기임원 (이사/감사)	등기임원(이사/감사)	X
	임원측 겸임 인원 합하여 과반 이상	O

4.4.2 계열제외

임원독립경영 요건 모두 충족 시, 자동 계열제외 (미충족시 계열편입 신고)

- 임원 선임 이전부터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일 것
- 기업집단내 계열회사와 상호간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 기업집단내 계열회사와 독립경영임원 외에 상호 겸임이 없을 것
- 기업집단내 계열회사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가 없을 것
- 기업집단내 계열회사와 총매출/매입 거래액이 50% 미만일 것 (직전 사업연도)

4.4.3 기업결합 (타사 임원이 당사 등기임원 선임 시)

- 신고내용 : 매출(or 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or 그룹) 임원이 당사 임원 겸임
- 신고의무 : 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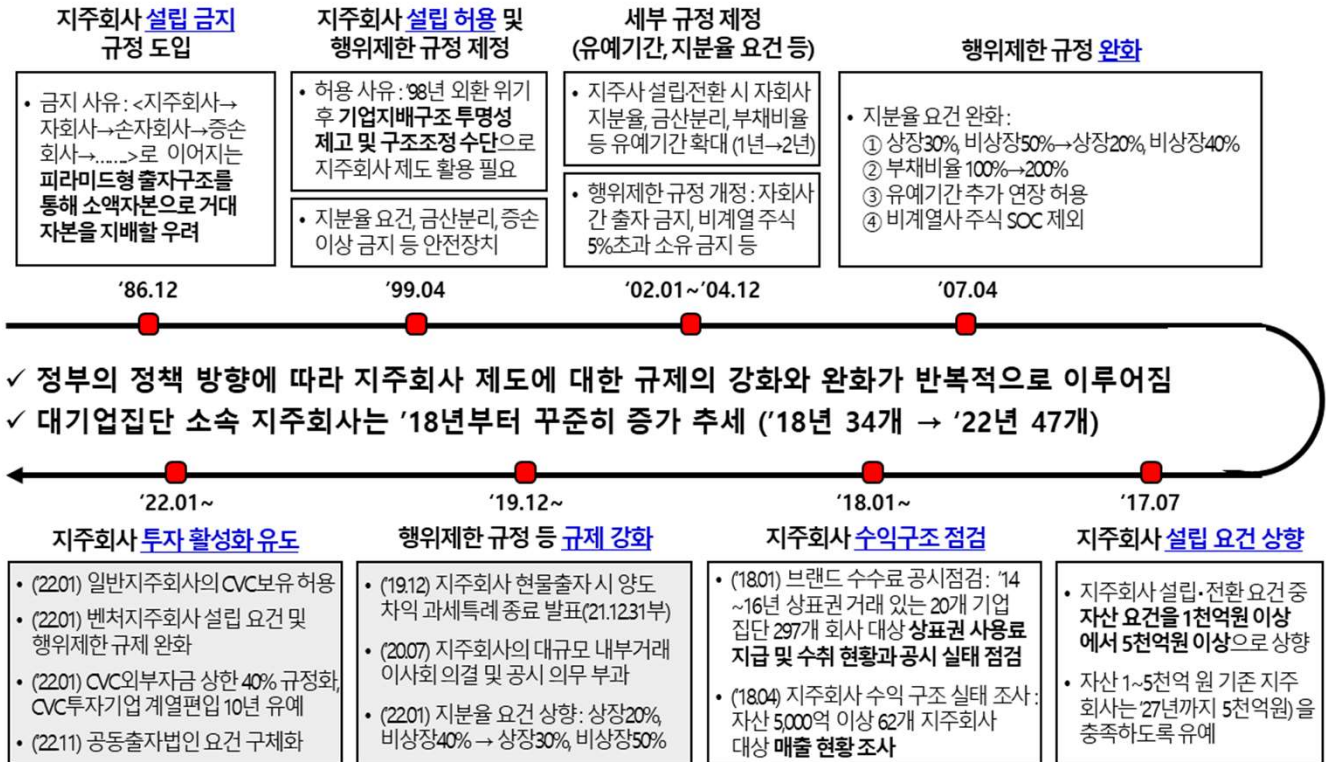
타사	당사 (그룹)	신고대상
사내/기타비상무이사, 감사	사내/사외/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
사외이사	사내/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
	사외이사	X

4.4.4 기업결합 (당사 임원이 타사 등기임원에 선임될 시)

- 신고내용 : 당사 임원이 매출(or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회사(or 그룹) 임원 겸임
- 신고의무 : 당사

당사 (그룹)	타사	신고대상
사내/기타비상무이사, 감사	사내/사외/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
사외이사	사내/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
	사외이사	X

5. 지주회사 제도



5.1 요건 및 정의

5.1.1 지주회사

-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주된 사업이란? :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 [법 제2조 제7호]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 [시행령 제3조, 제1~2항]

5.1.2 자회사

- 지주회사에 의해 그 사업내용을 지배 받는 국내회사로써 [법 제2조 제8호]
 - i)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며,
 - ii)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지주회사가 소유한 주식의 다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보다 같거나 많을 것 [시행령 제3조 제3항]

5.1.3 손자회사

- 자회사에 의해 그 사업내용을 지배 받는 국내회사로써 [법 제2조 제9호]
 - i) 자회사의 계열회사이며,
 - ii) 해당 손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가 소유한 주식의 다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보다 같거나 많을 것 [시행령 제3조 제4항]

5.1.4 증손회사

- 손자회사에 의해 그 사업내용을 지배 받는 국내회사로써
 - i) 손자회사의 계열회사이며,
 - ii) 해당 증손회사에 대하여 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시행령 제3조 제5항]

5.2 지주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의무

5.2.1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구분	내용 (법 제17조, 시행령 제26조)
의무사항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일정한 기한 내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의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
신고기한	① 지주회사의 설립·분할·합병등기일로부터 <u>30일 이내</u> 또는 ②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 산정기준일로부터 <u>4개월 이내</u>
신고내용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 등

5.2.2 지주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구분	내용 (법 제18조 제7항, 시행령 제29조)
의무사항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주식소유현황·재무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
제출기한	4월말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 3월말 결산법인은 7월말까지
보고내용	지주회사 등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기타	사업내용 보고서를 기초로 매년 지주회사 현황을 공개 (10~11월)

5.2.3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

구분	내용 (시행령 제26조 제4~5항)
의무사항	소유주식 감소, 자산증감 등의 사유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될 경우 공정위에 신고
신고기한	신고기한 없음 - 지주회사 적용제외 시점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며 공정위는 신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적용제외 여부 통지

5.3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5.3.1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구분	내용
부채비율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 ☞ 타인자본 조달을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 방지 목적
비계열사	비계열사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 금지 ☞ 비계열사로의 지배력 확장 방지, 자회사 관리 집중 목적 ☞ 단, '비계열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 투자 활성화 목적
자회사	자회사 지분을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 자회사는 30%) 미만으로 소유 금지 ☞ 과도한 지배력 확장 방지 목적
다른 계열사	자회사 이외의 다른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 유지 목적
금산분리	일반지주회사(비금융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소유 금지 ☞ 금산분리 목적

5.3.2 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구분	내용
손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을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 자회사는 30%) 미만으로 소유 금지
다른 계열사	손자회사 이외의 다른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금산분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 금지

5.3.3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구분	내용
계열사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단, 손자회사가 100% 주식 소유하는 증손회사 예외)

5.3.4 증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구분	내용
계열사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예외 없음)

5.3.5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유예기간

구분	행위제한 요건	유예기간 (아래 Case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내 해소해야 함)
지주회사	1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지주회사 전환 시 요건 미충족 2년
	2 「자회사 주식 50% 이상 소유」 • (예외) 상장, 공동출자법인 : 30% 이상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시행되는 '22.1월 이후 신규 편입하는 자회사 50%이상 소유 (상장/공동출자법인 30% 이상) - '21.12월까지 보유한 자회사는 40%이상 소유 가능	•지주회사 전환 시 요건 미충족 2년 •상장 폐지 또는 공동출자법인 이었다가 아니게 된 경우 •타 주주의 전환사채 전환 청구 or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주식 보유 기준 미달 •자회사 아닌 회사(비계열사, 체계외계열사, 손자/증손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미달 [최종적으로 자회사로 반드시 편입한 경우로 한정] •자회사를 자회사가 아닌 회사(비계열사, 체계외계열사, 손자/증손회사)로 제외하는 과정에서 미달 [최종적으로 자회사에서 반드시 제외한 경우로 한정]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으로 인해 미달 등 1년
	3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소유 금지」 • (예외1)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예외2) 지주회사가 보유한 비계열사 주식이액 합계가 자회사 주식이액 합계 대비 15% 미만인 경우	•지주회사 전환 시 요건 미충족 2년 •계열사 또는 비계열사(5% 초과소유)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자회사로 반드시 편입한 경우에만 한정] •자회사를 자회사가 아닌 회사(비계열사, 체계외 계열사, 손자/증손회사 등)로 제외하는 과정에서 미달 1년
	4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5 「금융/보험업종 국내회사 주식 소유 금지」	•지주회사 전환 시 요건 미충족 2년
자회사	1 「손자회사 주식 50% 이상 소유」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시행되는 '22.1월 이후 신규 편입하는 손자회사 50%이상 소유 (상장/공동출자법인 30% 이상) - '21.12월까지 보유한 자회사는 40%이상 소유 가능	•자회사가 될 당시 요건 미충족 2년 •상장 폐지 또는 공동출자법인 이었다가 아니게 된 경우 •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 청구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주식 보유 기준 미달 •손자회사 아닌 회사(비계열사, 체계외계열사, he자/he손자/증손회사)를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미달 [최종적으로 손자회사로 반드시 편입한 경우 한정]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서 제외(비계열사, 체계외계열사, he자/he손자/증손회사)하는 과정에서 미달 [최종적으로 손자회사에서 반드시 제외한 경우 한정]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으로 인해 미달 1년
	2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자회사가 될 당시 요건 미충족 2년
	3 「비계열사 주식 소유 가능」	•계열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손자회사로 반드시 편입한 경우에만 한정] •손자회사를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로 제외하는 과정에서 미달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다른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자기주식 보유한 자회사가 분할로 인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1년
	4 「금융/보험업종 손자회사 소유 금지」	•자회사가 될 당시 요건 미충족 2년
손자회사	1 「증손회사 주식 100% 소유」	•손자회사가 될 당시 요건 미충족 2년
	2 「증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3 「비계열사 주식 소유 가능」	•손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한 비계열사가 계열사로 편입된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손자회사가 분할로 인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1년
	4 「금융/보험업종 증손회사 소유 금지」	
증손회사	1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증손회사가 될 당시 요건 미충족 2년
	2 「비계열사 주식 소유 가능」	•증손회사가 주식 보유한 비계열사가 계열사로 편입된 경우 1년

5.4 위반시 제재

5.4.1 지주회사 신고 및 보고 의무 위반 [법 제126조]

- 벌칙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양벌가능)

5.4.2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법 제37, 38, 124조]

- 시정조치 : 행위 중지, 주식 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법 위반상태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과징금 : 위반행위별로 산정되는 위반금액에 대하여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 벌칙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양벌가능)

5.4.3 과징금 부과 기준

구분	위반사항	과징금 산정 위한 위반금액 (A)	과징금 산정 절차
지주회사	• 부채비율 200% 초과	•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① 1차 조정금액 - 위반금액, 기간 등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산정 - 위반금액 x 20% (max)
	• 자회사 주식 50% (상장 30%) 미만 소유	• (대차대조표 상 자회사 장부가액 x 기준 미달 비율) / 현재 보유 비율	
	•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소유	•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비계열사 주식 초과 보유액, 자회사 외 계열사/금융보험사 주식 보유액)	
	•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 •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		
자회사	• 손자회사 주식 50% (상장 30%) 미만 소유	• (대차대조표 상 자회사 장부가액 x 기준 미달 비율) / 현재 보유 비율	② 2차 조정금액 (가중/감경) - 위반 횟수 가중 80% (max) - 조사협력, 자진시정 감경 30% (max)
	•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	•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		
손자회사	• 증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	•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증손회사	• 계열사 주식 소유	•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5.4.4 법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A사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 위반 유형 :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

㉡ 위반 내용

1. A사는 '18.11. B사의 지분 30%를 취득 → 당시에는 B사의 대표이사인 허○○ 및 이○○이 각각 B사의 지분 35%를 보유한 최다출자자였기에 계열회사가 아니었음.
2. A사는 '19.05. C사의 지분 70%를 인수하여 C사는 A사의 계열회사 및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C사의 사내이사였던 허○○, 이○○은 A사의 동일인관련자가 되어, 같은 날 허○○과 이○○이 최다출자자인 B사도 A사의 계열회사가 됨.
3. 즉, B사의 최다출자자인 허○○과 이○○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C사가 A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19.05. 부터 B사는 A사의 계열회사에 해당되어, **A사는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 유의사항 : 외부 주주(회사)가 최다출자자인 비계열사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외부 주주(회사)가 DL 그룹의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행위제한 위반에 해당됨.

D사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 위반 유형 :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

㉡ 위반 내용

1. D사가 소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비계열회사 E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다출자자였던 윤○○가 '14.03. 부터 D사의 자회사인 F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지배력에 의한 계열회사 편입으로 F사는 D사의 계열회사가 되어, **D사는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 유의사항 : 외부 주주(개인)가 최다출자자인 비계열사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외부 주주가 DL 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비계열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행위제한 위반에 해당됨.

H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 위반 유형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

㉡ 위반 내용

1. H사는 지주회사 체계 내 손자회사로 편입된 '13.12 이후, '17.12. 부터 '19.06. 까지 특수목적법인인 I사의 주식을 80% 소유하여, H사는 **증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 유의사항 : 손자회사가 된 이후, 신규설립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지 않는 경우 즉시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됨.

J사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 위반 유형 : 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

㉡ 위반 내용

1. J사는 '16.08. 지주회사 전환 이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K사의 주식을 '19.06. 취득하여 '20.02. 까지 약 8개월간 소유하여, K사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 회사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 유의사항 : 지주회사 전환 이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1주라도 소유하는 경우 즉시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됨.

J사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 위반 유형 :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

㉡ 위반 내용

1. L사는 '15.12. 지주회사 전환 이후, '15.07. 증손단계 계열회사였던 M사를 합병하게 되어 기존에 M사가 소유하고 있던 지주체계 외 계열사인 N사의 주식을 3.2% 소유하여,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 유의사항 : 계열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 지분을 소수 보유하고 있던 경우 →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행위제한 위반에 해당됨.

㉣ 비고 :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인한 합병/분할 시 행위제한 규정 위반 발생에 대한 주의 필요

S사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 위반 유형 : 자회사의 손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

㉡ 위반 내용

1. S와 같은 기업집단이면서 지주회사 체계 밖 계열사인 U사는 '21.04. T사의 GP가 되었고, 이에 따라 T사는 S사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였음. 이로 인해 S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T사의 주식을 25% 소유하여 '23.03. T사의 계열제외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 유의사항 : PEF는 GP의 계열회사로 편입됨. LP로써 투자한 PEF의 단독 GP가 계열회사이거나, 공동GP인 계열회사가 PEF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과반 이상의 지명권을 가진 PEF는 계열회사로 편입 → LP로 사모펀드 투자하더라도 GP,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됨.

Q1.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도 계열회사에 해당되나요?

A1. 네.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 회사의 계열회사이므로 출자구조의 형태(수직, 혹은 수평 등)와 관련없이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도 모두 서로의 계열회사에 해당됩니다.

계열회사 개념이 가장 포괄적이고 지주회사 체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Q2. 다른 계열회사와 투자하여 신규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할 수 있지만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고려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신규 법인이 비계열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하며,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체계 내 회사와 공동 투자는 불가하고, 지주회사 체계 외 (대림 등) 회사와는 공동투자가 가능하나 반드시 최다출자자가 되어 신규 법인을 자회사로 두어야 합니다.

Q3. 신규 법인에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꼭 50%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하나요?

A3.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면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당사는 자회사 설립 시 지분을 40%에서 50%로 상향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출자법인이나 상장회사의 경우 30%이상 소유가 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50% 이상 취득이 어려울 경우 1년 이내 유예기간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CP담당부서와 세부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시 제도

6.1 공시제도 개관

구분	내용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계열회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책임 강화, 사외이사들의 견제 유도, 공시를 통한 이해관계인 감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 • 대규모 내부거래의 유형(공정거래법 제26조) ①자금 ②유가증권 ③자산 ④상품,용역
기업집단현황 공시	•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감시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 기업은 스스로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한 경영을 실천함 • 기업집단현황 공시 세부 내용(공정거래법 제27조) ①회사현황 ②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③주식소유현황 ④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⑤순환출자현황 ⑥지주회사현황 ⑦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하는 제도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적용대상 회사 ①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 ②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이 단독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50%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는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시 대상 해당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유형 ①소유지배구조 ②재무구조 ③경영활동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토록 하여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 내용 ①지급수단 ②지급금액 ③지급기간 ④분쟁조정기구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 시기 ☞ 반기(상반기,하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기간 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매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 공시

구분	내용
공정위 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	• 공정거래법 제 130조(과태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4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9에 따라 위반 유형별 과태료 차등 부과 • 공시 유형별 과태료 부과 범위 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500만원 ~ 7,000만원 ② 기업집단현황 공시 : 100만원 ~ 1,000만원 ③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의 공시 : 100만원 ~ 1,000만원 ④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 100만원 ~ 500만원

Q&A

Q1. 공시와 공정위 자료 제출의 차이점

A1. 공시는 회사의 경영 결정사항 및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그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정사항 또는 분기별 회사의 현황을 일정 기한내 전자공시 시스템에 등재해야 함.

반면, 공정위 자료제출은 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 규제정책 준수 여부 점검을 목적으로 하고, 공정위가 해당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임.

Q2. 정해진 내용 없이 추진사항(타법인 주식 취득, 자산 처분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받은 경우 공시방법

A2. 이사회 결의한 내용을 기한 내 공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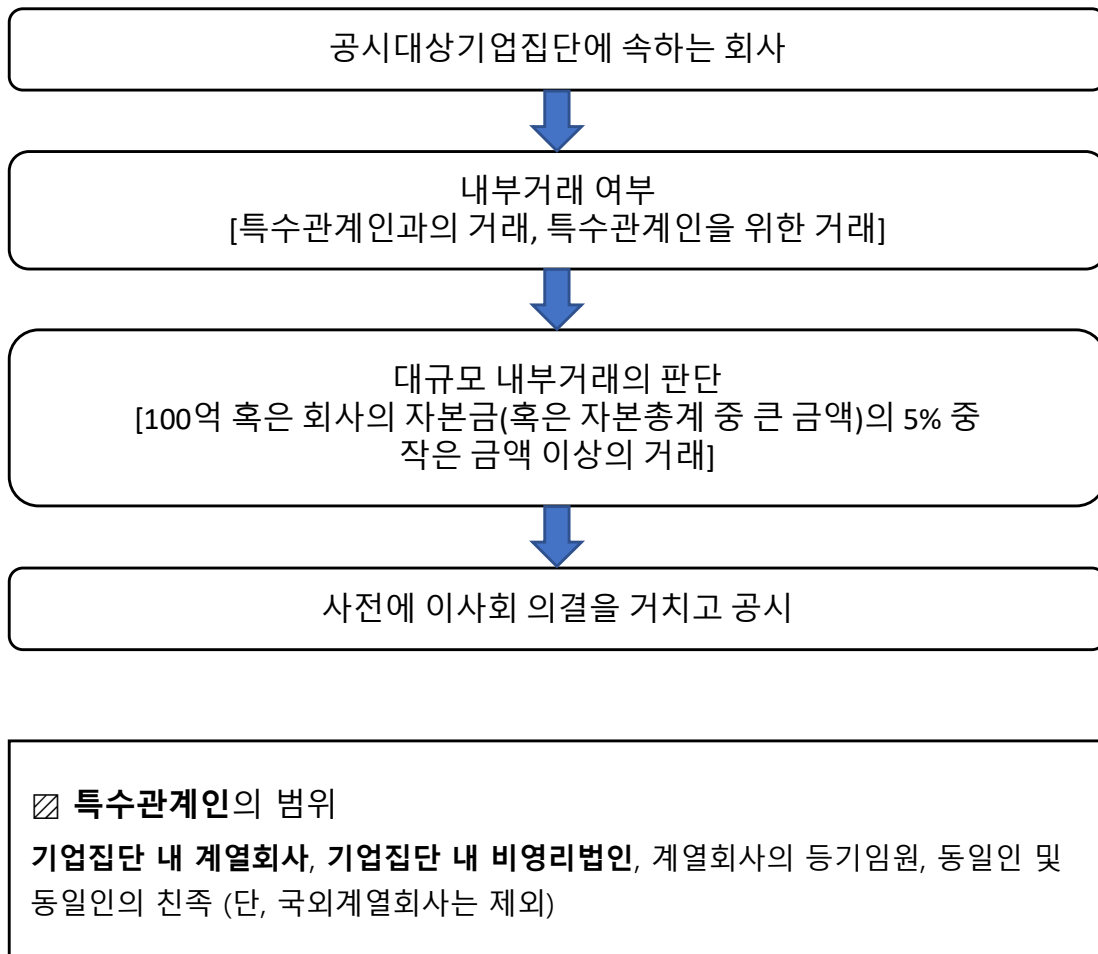
단, 공시양식 중 '미정 또는 현 시점 확인불가'한 내용은 추후 확정/결정 시 정정공시 예정임을 기재하고, 이후 그 확정/결정사항을 정정공시해야 함.

6.2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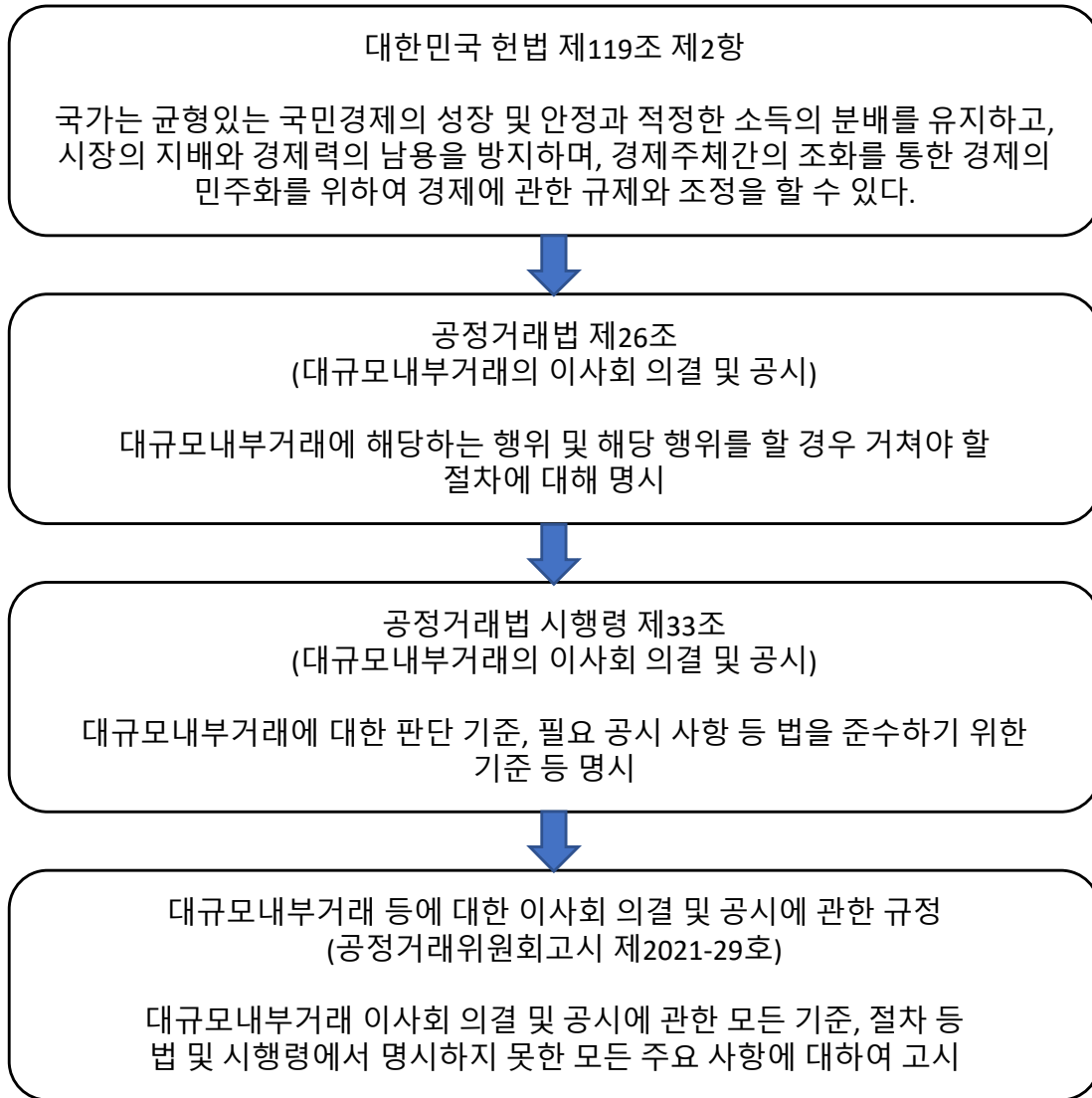
6.2.1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 정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외이사들의 견제를 유도하는 한편, 공시를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시장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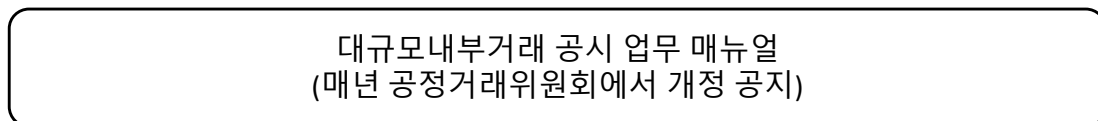
① 제도의 개요



② 근거법령



③ 추가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업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 해당 공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주의할 점/FAQ 등 포함

6.2.2 공시 주체 및 대규모내부거래 판단 기준

▶ 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 주체

-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속하는 모든 회사
- 공시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는 공시의무가 없고, 회사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모두 포함한다.

6.2.3 주요 거래 유형

-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한 내부거래의 유형은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자금거래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자금거래(예시)

자금보충약약에 따른 계열회사에서 추가로 발행한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 자금의 대여 등 계열회사에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직접 자금을 대여해주는 행위

▶ 유가증권거래

-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유가증권 거래(예시)

계열회사에서 추가로 발행한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 등

▶ 자산거래

-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유동자산,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자산거래(예시)

부동산 임대차거래, 브랜드 사용거래 등

▶ 상품 및 용역 거래

-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계된 경상적 거래
-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만 상품 또는 용역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양 당사자 모두 상품 또는 용역거래로 공시하여야 함

상품 및 용역 거래(예시)

계열회사로부터의 공사도급계약, 제품의 물류업무, 계열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 계열회사의 상품 등에 대한 광고 제작 등

6.2.4 대규모내부거래 판단 기준

▶ 공시대상 거래 규모

-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회사의 자본총계(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거래
- 자본총계(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해당금액이 100억보다 큰 경우 100억을 기준으로 함.
※ 자본총계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에 기재된 자본총계
※ 자본금 : 이사회 의결일 직전의 자본금

▶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 행위 판단기준

①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 ㉡ 수익증권의 경우 동일 운용사의 동일 성격 수익증권을 동일한 판매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로써 단기금융상품 등의 경우에는 1일 입금액, 기타수익증권은 1회 입금액이 100억 이상일
경우 공시대상 1건의 거래행위에 해당함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분기별 합산 거래액(매출, 매입 포함)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③ 거래유형별 거래금액의 산정 기준

- ㉤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함**
 - ㉦ 부동산 임대차 거래금액 : 연간 임대료 + 환산 연간임대료(보증금 x 이자율)
 - ㉧ 담보제공 : 담보한도액
 - ㉨ 퇴직연금보험의 거래금액 :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의 회계연도 동안의 보험료
납입금액의 누적액을 거래금액으로 산정
-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 ㉩ 분기에 이루어질 매출과 매입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부가
가치세는 제외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예시)

- ㉦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 채권, 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상품 또는 용역 및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 금융이나 카드결제
- ㉧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 주식을 계열증권사를 통해 장내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단, 장 종료 후 거래는 공시대상)
 - 자산운용사와 계열증권사간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2.5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간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의결일 기준으로 3영업일 이내(비상장사는 7영업일 이내)에 공시 하여야 함

▶ 이사회 의결에 관한 기준

-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 이전 이사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상법 제391조(이사의 결의방법)

1. 이사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2.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통해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공정거래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사외이사 세명 이상 포함, 그 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한정)에서 의결한 경우 이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 공시 방법(시기, 절차, 주요내용 등)

① 공시의 기한

- ㉠ 이사회 의결 후 3영업일 이내(비상장사는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 ㉡ 공시해야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② 공시의 절차

- ㉢ DART(대한민국 전자공시시스템) 시스템에 등록된 양식에 따라 DART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③ 공시의 주요내용

- ㉣ 공시 대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거래조건, 거래방식 등 아래 각 중요사항에 대하여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함
 - ㉤ 거래의 목적
 - ㉥ 거래 대상
 - ㉦ 거래 상대방
 - ㉧ 계약체결 방식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
 - ㉨ 거래의 금액 및 조건
 - ㉩ 거래 기간
 - ㉪ 거래 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 거래잔액 등
 - ㉫ 기타 거래에 관한 주요내용 등

④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공시여부

㉓ 계약서 상 자동 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 계약 연장이 되기 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필요

※사유 : 계약서 상 자동연장 조항은 조건일 뿐, 거래기간의 계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㉔ 계약서 상 자동 연장조항이 없는 경우

㉓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 없음. (단,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지극히 제한적이므로 적절한 검토 필요)

㉔ 위에서 명시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기간 방치하여 사실상 계약연장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필요

6.2.6 이미 공시한 주요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주요내용 변경

- 기 공시된 대규모내부거래의 경우, 거래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변경 공시를 하여야 함
- 일방의 이사회 의결에 의한 자금, 자산 거래의 취소의 경우 거래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을 면제하고 거래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공시 필요
※ 자금, 자산 거래의 취소 : 100% 금액의 변경

▶ 변경사유에 따른 절차

① 거래 금액 및 조건의 변경

㉓ 거래금액, 거래단가, 약정이자율 등이 당초보다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변경 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변경공시 하여야 함

②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

㉓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변경 공시를 진행하여야 함

㉔ 거래상대방 변경의 경우, 상호변경, 영업양수도, 합병 등으로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공시만 필요

③ 기타 중요사항의 변경

㉓ 계약기간 등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변경공시를 진행하여야 함

6.2.7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특례

▶ 특례의 도입 배경

-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거래 및 제공하는 상품·용역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 시켜주기 위함

▶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시기에 대한 특례

① 1년 거래 기간 일괄 의결

- ㉮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해 1년 이내의 거래 기간을 정해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할 수 있음

② 분기 전 사전 미예측 거래 발생 시

- ㉮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할 수 있음

③ 분기 중 신규 계열편입이 된 회사와의 대규모내부거래

- ㉮ 계열편입일로부터 분기 종료일까지 상품·용역의 거래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분기 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함

▶ 이미 공시한 주요내용의 변경에 대한 특례

① 거래금액이 20% 이상 감소된 경우

- ㉮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금액보다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할 수 있음

※ 단,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 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에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공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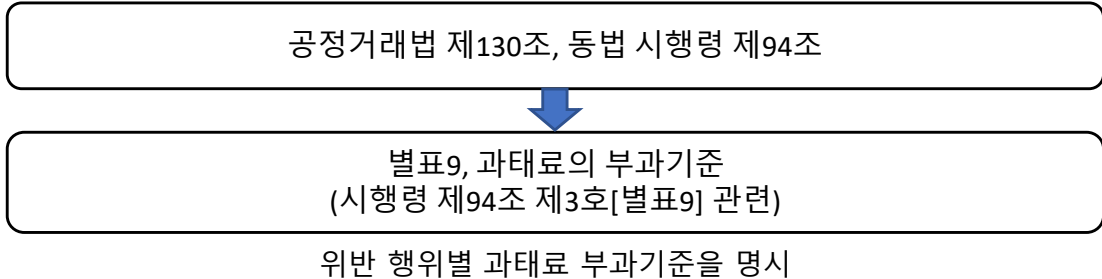
▶ 계약체결방식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의 경우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 (분기 중 거래가 예상되는 계약건별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승인이 필요한 것)
-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기 중 거래가 예상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거래대상, 금액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면 됨

6.2.8 위반시 제재

-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시행령 별표9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

▶ 근거법령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이사회 의결 여부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5,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 난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5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날부터 보완을 마 친 날까지 1일마다 10 만원씩 가산하되, 2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2,0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 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 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5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날부터 보완을 마 친 날까지 1일마다 10 만원씩 가산하되, 5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5,000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7,000
	공시한 경우	-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0
		-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공시한 경우	7,000

Q1.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계약(거래)시점 및 공시 기한의 상관관계

A1.

- ▶ 이사회 의결 – 공시 :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3영업일(비상장사 7영업일)이내 공시해야 함
- ▶ 이사회 의결 – 계약(거래) : 거래 전 이사회 의결받아야 함. 단, 계약(거래) 사후 이사회 의결은 이사회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됨.
- ▶ 공시 – 계약(거래) : 상기와 같이 이사회 의결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지며, 공시와 계약(거래)의 상관관계는 없음.

Q2. 계열편입 이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여부

A2. 공정위 공시 의무는 계열편입 통지시점부터 발생하며, 계열편입 이전 대규모내부 거래는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거래시점 이미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시 의무가 있음.

예시) '23.03.17 계열회사 A 설립 → '23.04.14 계열편입(계열회사 A)신고
 → '23.04.17 계열회사 A 유상증자(계열회사 B의 기준금액 이상 출자)
 → '23.05.02 계열회사 A의 계열편입 통지

√ 계열회사 A : A사는 '23.05.02부터 공시의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 없음

√ 계열회사 B : B사는 유상증자 참여시 이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있음
 ➡ '23.04월 A사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공시 필요

Q3.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공시 여부

A3.

- ▶ 기업집단 내 비영리법인(대림문화재단,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대림학원)은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있음
- ▶ 비영리법인에 기준금액 이상 기부하는 경우, 자금거래에 해당하므로 공시 필요

6.3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6.3.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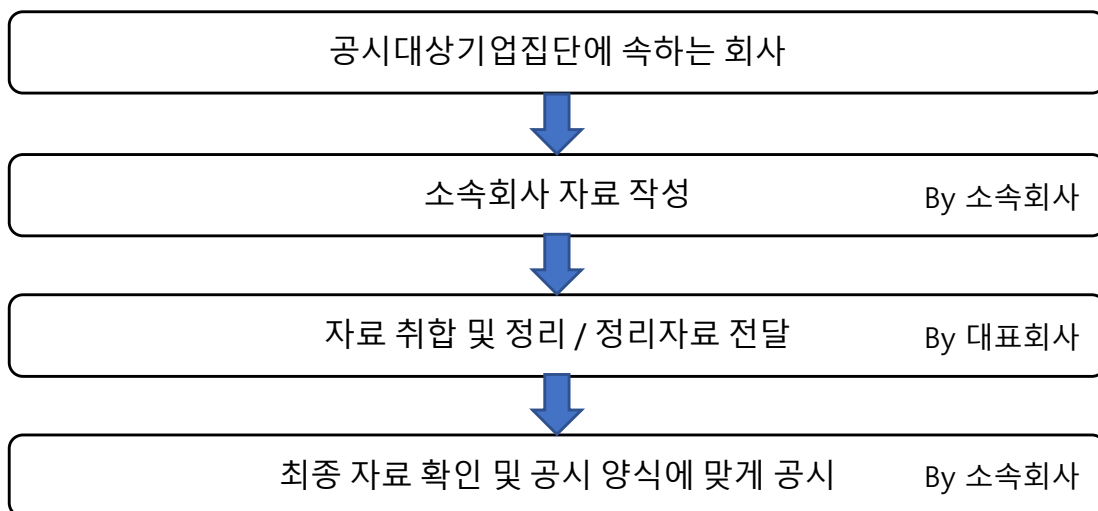
▶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란?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등 분기별, 연1회 각각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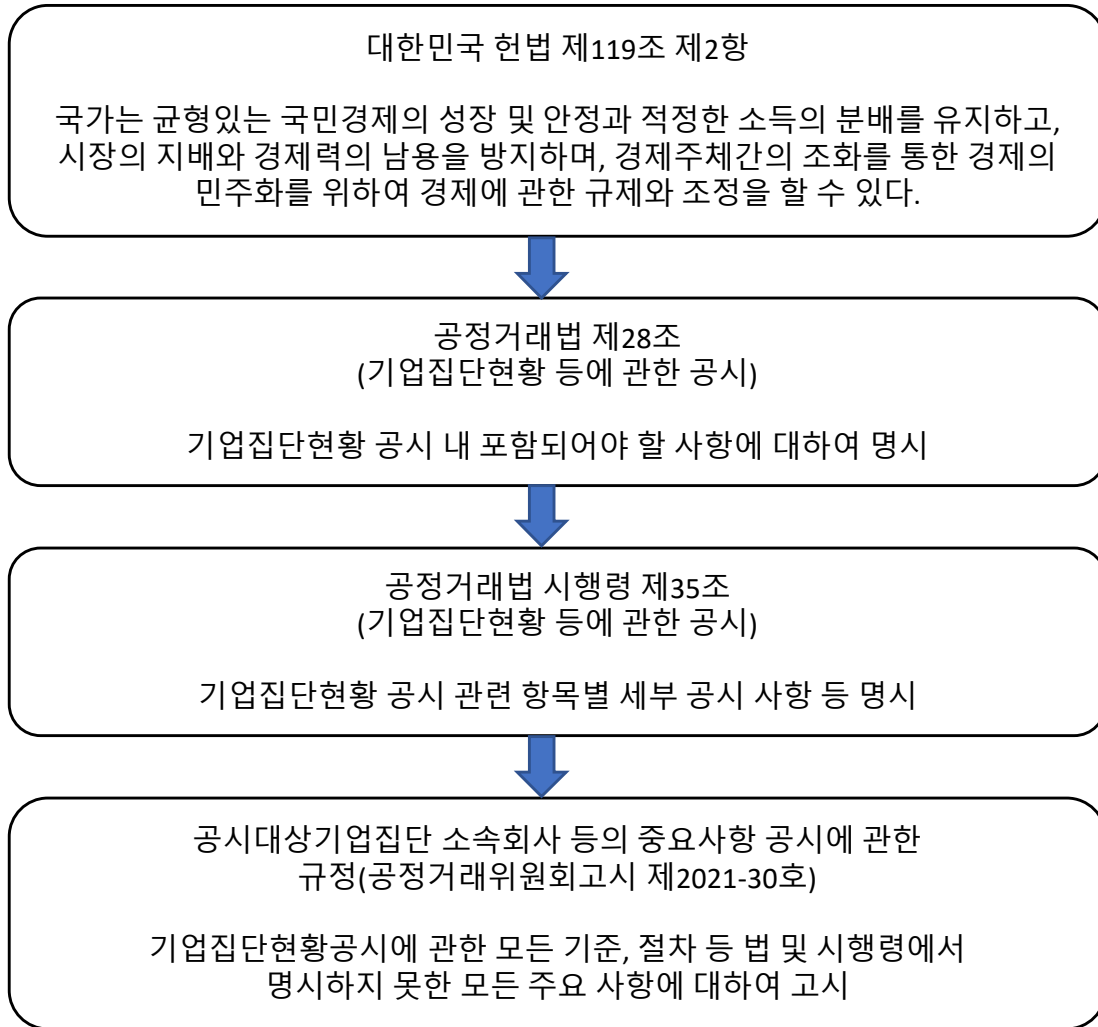
▶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 감시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기업 스스로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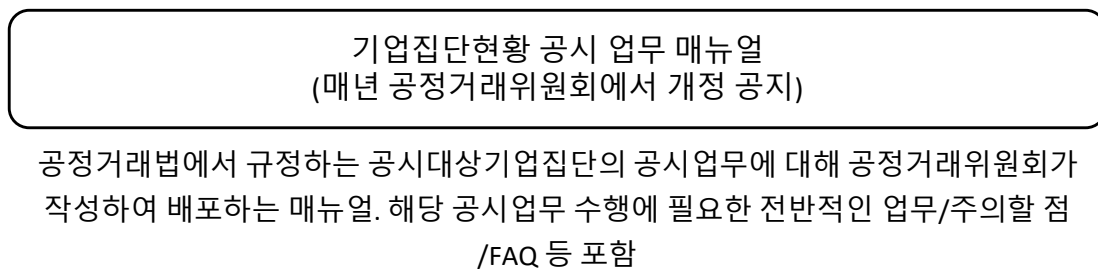
① 제도의 개요



② 근거법령



③ 추가 참고 자료



6.3.2 공시 주체

▶ 기업집단현황공시의 공시 주체

-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속하는 모든 회사
-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6.3.3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내용

▶ 일반현황 (연1회)

- 회사의 개요 등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작성
 - ① 회사 개요
 - ② 회사 재무현황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 ③ 회사 손익현황(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 ④ 국외 계열회사 현황
 - ⑤ 계열회사 변동 현황

▶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연1회)

- 임원,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대하여 작성
 - ① 임원현황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등)
 - ②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주주총회 관련제도, 소수주주권 등의 운영현황※ 임원 :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있는 임원, 즉 등기임원만을 말함

▶ 주식소유현황 (연1회)

- 소유지분, 계열회사간 주식소유 등 당해회사의 지분구성과 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작성 (단, 보유중인 국외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은 제외)
 - ① 소유지분현황
 - ②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 현황

▶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항목별 시기 참조)

- 당해회사와 계열회사, 계열회사 이외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현황에 대하여 작성
 - ①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연1회)
 - ②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연1회)
 - ③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연1회)
 - ④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연1회)
 - ⑤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연1회) 및 거래내역 (분기별)
 - ⑥ 계열회사간 물류 IT서비스 거래 현황 (연1회)
 - ⑦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거래 현황 (연1회)
 - ⑧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현황 (연1회)
 - ⑨ 계열회사간 기타자산 거래 현황 (연1회)
 - ⑩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연1회)
 - ⑪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기타자산 거래 현황 (연1회)
 - ⑫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 잔액 현황 (연1회)
 - ⑬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분기별)
 - ⑭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연1회)
 - ⑮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연1회)
 - ⑯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연1회)

▶ 순환출자 현황 (항목별 시기 참조)

- 순환출자 변동내역 등 국내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현황에 대하여 작성. 단,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명시
 - ①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현황 (연1회)
 - ②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분기별)

▶ 지주회사 현황 (연1회)

-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국내계열회사 및 그 주주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
 -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 계열회사 현황

▶ 금융, 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분기별)

-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
 - 금융, 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현황

6.3.3 공시 방법 및 절차

▶ 공시 방법

- DART(대한민국 전자공시시스템) 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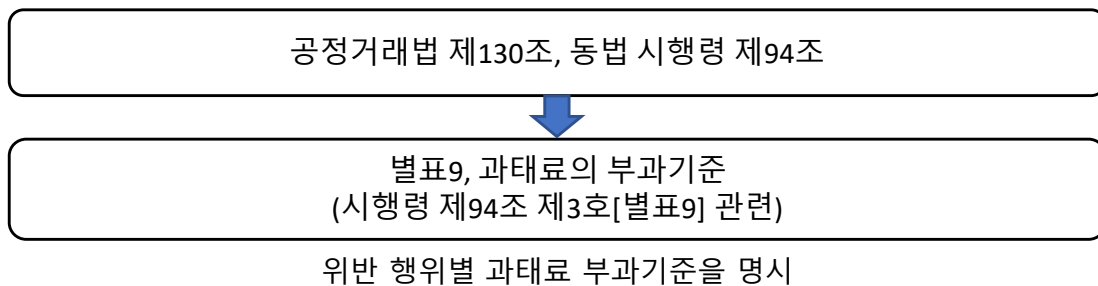
▶ 공시 절차 (당사 기준)

- ① 공시시기 도래 전 공시 초안 자료 작성
- ② 공시 기한 도래 10일전 작성 내용 검토
- ③ 검토 완료 후 최종 공시자료 작성
- ④ 기한 내 DART 내 공시

6.3.4 위반시 제재

-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별표9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

① 근거법령



② 기업집단현황공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 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500
	공시 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 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1,000

Q&A

Q1.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중 당사가 거래한 모든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A1. 각 항목별 공시주체가 상이하므로, 공시 매뉴얼을 항목별 확인 필요함
예시) 공시대상 기간 중 계열회사 A가 계열회사 B에게 100억원 자금대여한 경우
계열회사 B에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공시의무 있음.

Q2. 계열제외된 회사와의 거래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A2. 공시대상 기간 중 계열제외된 회사와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사항 공시 필요함
예시) '23.01월 계열회사 A가 계열회사 B에게 타법인 주식을 100억원 매도하였고
'23.03월 B사가 계열제외된 경우, 계열회사 A에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공시의무 있음.

6.4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6.4.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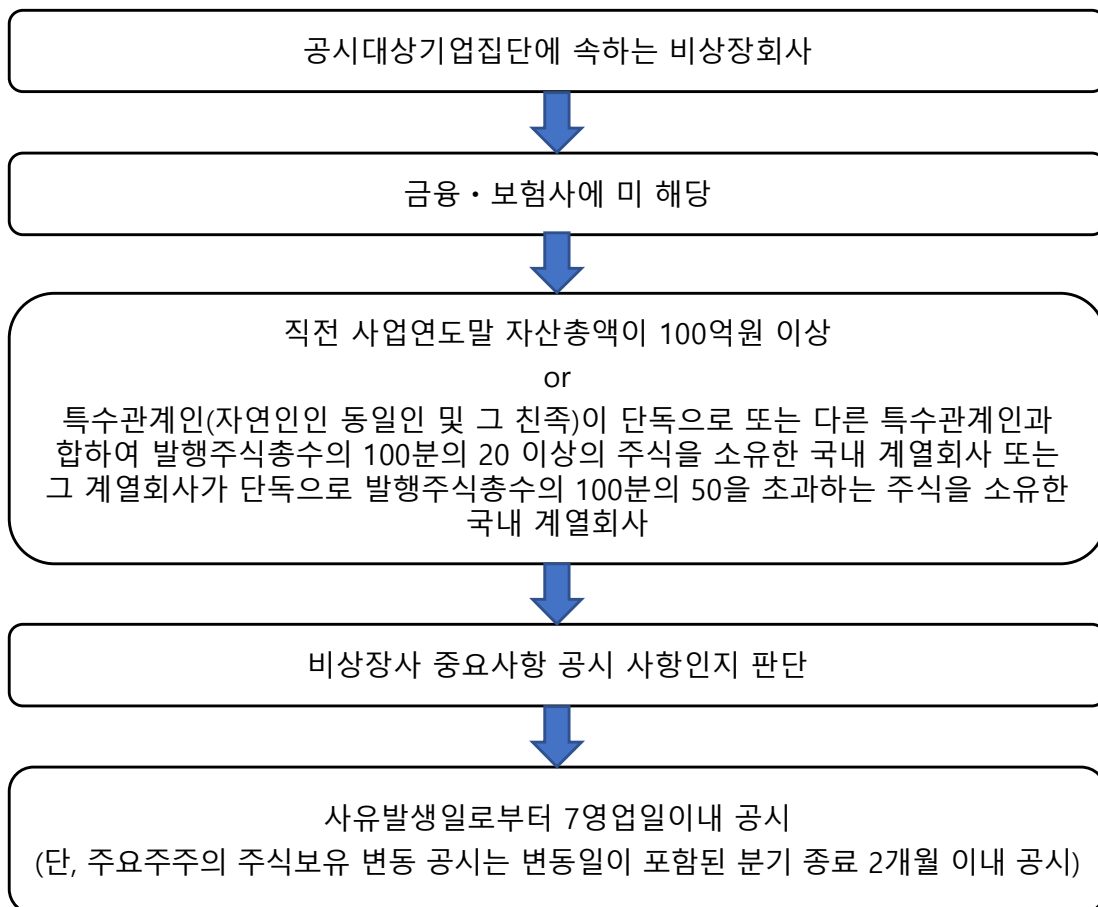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란?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에 대해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 비상장회사는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주주고지의무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음
-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상장회사는 일반 독립 비상장회사와는 달리 기업집단 내 다른 상장 회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있어 비상장회사의 불투명한 경영행태가 동일집단 상장회사의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들로 하여금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시장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① 제도의 개요



② 근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의 범위, 공시사항 및 공시시기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함
-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공시대상 회사, 공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시시기 등 세부사항을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③ 추가 참고 자료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업무 매뉴얼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 공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업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 해당 공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주의할 점/FAQ 등 포함

6.4.2 공시 주체

-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속하는 비상장회사
-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①일반 소속회사 또는 ②특수관계인 회사(50% 초과 자회사 포함) 중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6.4.3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내용

▶ 소유지배구조

- ①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 ② 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변동

▶ 재무구조

- ①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 ② 비유동자산 처분 결정
- ③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 ④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 ⑤ 증여결정
- ⑥ 수증
- ⑦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결정
- ⑧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 ⑨ 타인에 대한 채무면제 결정
- ⑩ 채무인수 결정
- ⑪ 타인에 의한 당사의 채무면제
- ⑫ 유상증자 결정
- ⑬ 무상증자 결정
- ⑭ 유무상증자 결정
- ⑮ 감자결정
- ⑯ 전환사채 발행 결정
- 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 경영활동

- ① 영업양도 결정
- ② 영업양수 결정
- ③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 결정
- ④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의 계약 변경·해지 결정
- ⑤ 회사합병 결정
- ⑥ 회사분할 결정
- ⑦ 회사분할합병 결정
- ⑧ 주식교환·이전 결정
- ⑨ 해산사유 발생
- ⑩ 회생절차 개시결정
- ⑪ 회생절차 종결결정
- ⑫ 회생절차 폐지결정
- ⑬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⑭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중단
- ⑮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종료

6.4.4 공시의 방법 및 절차

▶ 공시 방법

- DART(대한민국 전자공시시스템) 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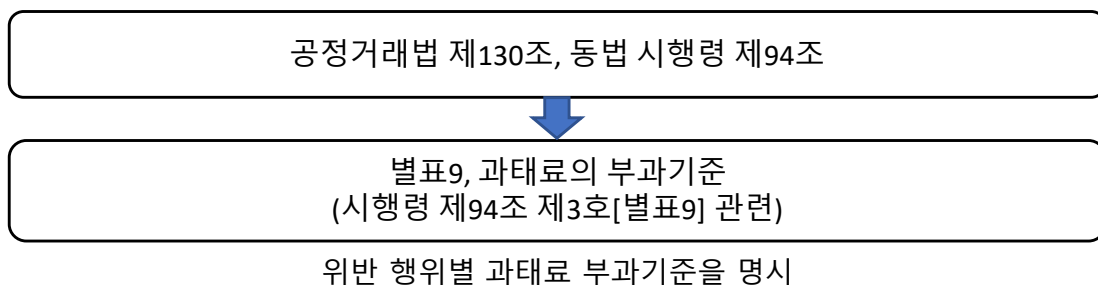
▶ 공시 절차

- 공시 사유 발생 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검토
- 공시 사유 발생 시 공시(안) 자료 작성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DART 내 공시

6.4.5 위반시 절차

-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시행령 별표9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

① 근거법령



②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 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 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 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 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500
	공시 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 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1,000

Q&A

Q1. 연도 중 비상장사 공시 면제 대상 변동 여부

A1. 비상장사 공시면제 기준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이므로 연도 중 자본금 변동에 따라 면제대상 변동 없음
예시)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80억원으로 비상장사 공시 면제이나, 당해 연도 30억원 유상증자 하더라도 공시면제대상 유지

Q2. 당초 공시 내용 20%이상 변동 시, 정정공시여부

A2. 공정위는 당초 공시내용 중 변동이 큰 경우, 정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정공시 하도록 권고함. 만약 변동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재의결 했다면 정정공시 필요함.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정정공시 의무 없지만, 공시 당시 확인되는 객관 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사회 의결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6.5 하도급 결제조건 공시

6.5.1 개요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란?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시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 (제조·건설 등 위탁) 제조·수리·건설·용역 관련, 원사업자가 자기 업에 따른*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예) 자동차 제조업체가 건설공사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경우는 하도급거래가 아님

▶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원사업자에 비해 취약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2차 이하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조건이 대체로 더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6.5.2 공시 의무사항

-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함.

▶ 지급수단에 관한 사항

- (지급수단) ①현금(수표) ②상생결제 ③어음대체결제수단 ④어음 등 하도급 대금 지급수단 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금액을 기재
-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도 공시
- 매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

- ① 상생결제 :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
 -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에게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 ㉡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 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 ㉢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 ㉣ 외상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용예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할 것

- ② 현금결제비율 :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
- ③ 현금성결제비율 : 전체 하도급대금 현금·수표·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 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
- ④ 어음대체결제수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지급기간에 관한 사항

제조 등의 위탁의 경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건설 위탁의 경우	인수일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용역 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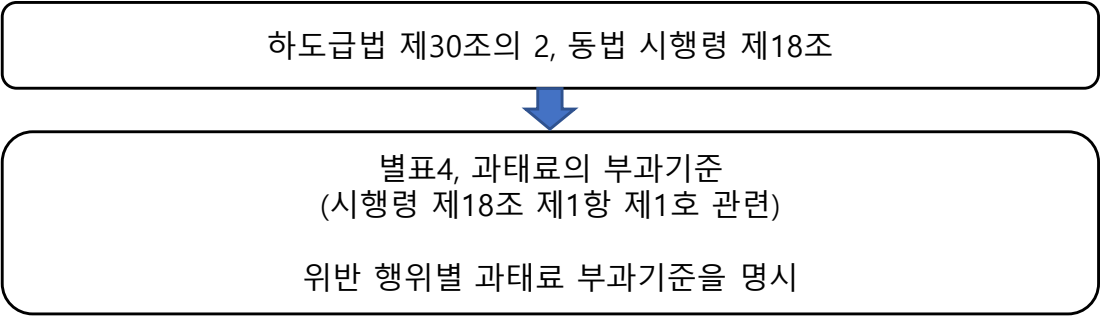
-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제기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①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여부 ②담당부서 및 연락처 ③분쟁조정 절차 ④예상 소요기간 등을 공시
- 단, 실질적 분쟁예방·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매부서 등 계약담당 부서 내에 설치한 경우 의견청취·조정 조직 등은 명칭을 불문하고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음

6.5.3 공시 빈도 및 시기

- 매년 2회 반기 말 (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 공시

6.5.4 위반 시 제재

① 근거법령



②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5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 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 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 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200
	공시 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250

VIII

공정거래법 위반 시 사건처리 절차

한 페이지로 보는 공정거래 제도

구분	내용
공정위 심판절차	[관련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공정위는 전원회의 (위원9명, 위원장이 의장) 또는 소회의 (위원3명, 상임위원이 의장)를 구성하여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 전원회의는 계약금액 500억 이상의 입찰담합 사건, 50억 이상의 부당지원 사건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을 심의한다. ◆ 소회의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등 전원회의 심의 이외의 사건을 심의한다. ◆ 심사관이 <u>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면 심의절차 개시된다.</u> ◆ 심의절차 개시되면 공정거래위원장은 <u>상임위원 1인을 주심위원</u>으로 지정한다. ◆ <u>주심위원 등은 피심인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u> ◆ 의견청취절차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 심사관, 피심인, 심의·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 의장은 피심인에게 <u>심의 개최</u> 일시, 장소 등을 서면 통지한다. ◆ 위원회의 <u>심리와 의결은 공개</u>한다. (다만, 사업자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u>비공개 할 수 있다.</u>) ◆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해당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한다. ◆ 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의 종류 및 내용, 과징금 부과, 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의결 합의 있는 날부터 35일 내에 의결서를 작성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한다.
공정위 현장조사 (행동요령)	[관련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 조사공무원의 <u>공무원증과 조사공문을 확인</u>한다. ◆ 조사가 개시되면 가장 먼저 관련 직원들에게 서류 및 이메일을 파기 또는 삭제하지 않도록 그룹웨어 게시판, 사내공문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린다. ◆ 조사는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조사목적 범위 및 당사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 지도록 한다. (근무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 ◆ 조사관이 PC자료 열람 및 복사, 책상, 서랍, 캐비닛, 업무수첩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 <u>피조사자 또는 팀장 등이 입회하여 협조</u>한다. ◆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u>변호사 등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u>한다. ◆ 조사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복사를 요구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마지막 날 조사 교부할 수 있다.) ◆ 현장조사 <u>이후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문의</u>한다.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접촉은 CP주관부서에서 주도한다.

사건처리 관련 주요 제도

공정거래 조정제도	◆ 공정거래 위반 사건의 조정을 위해 <u>한국공정거래조정원</u>을 설립한다. (법 제72조) ◆ 조정원에는 '<u>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u>(7인 이하 위원)', '<u>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u>(9인 이하 위원)' 등의 협의회를 둔다. (법 제73조) ◆ 조정은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 공정위는 신고 접수 받은 사건을 협의회에 분쟁조정 의뢰할 수 있다. (법 제76조) ◆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74조) ◆ 사업자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 제74조) ◆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법 제76조) ◆ 조정은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양당사자가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는 90일) 이내 종결한다. (법 제77조)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 제78조)
의무고발 요청제도	◆ 공정위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u>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u>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위 고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법 제129조 제5항)
소비자 분쟁조정	< 피해 구제 > ◆ <u>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u> (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사건 처리 중 <u>법 위반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u>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한다. (법 제56조)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법 제57조) ◆ 한국소비자원은 사건이 <u>30일 내에 합의되지 않으면</u>(피해 원인규명 등 필요 시 60일 이내) <u>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u>한다. (법 제58조) ◆ 피해구제 사건에 관해 소제기 된 경우 피해구제절차는 중지된다. (법 제59조) < 피해 조정 >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u>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u>(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60조) ◆ 분쟁의 당사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해결기구의 장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기타의 내용은 위 '공정거래 조정제도'와 동일함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1.1 심판 기능으로서의 공정위

구분	전원회의	소회의
의장	위원장	상임위원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법 제64조 제1항)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법 제64조 제2항)
소관사항	• 법규 등의 제·개정 • 이의신청의 재결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 (법 제59조 제1항) • 입찰담합 : 계약금액 500억원 이상 • 부당지원 : 50억원 이상 또는 지원성 규모 500억원 이상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규칙)	• 일반사건 • 승인·인정·인가사항 • 집행정지의 결정 • 과태료 • 관계기관에 협조 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 정지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 심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 심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련의 심판과정을 일컫는다.

☑ 심사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지된 내용에 대해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에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인지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러한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4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되고, 일반적으로 국장과 지방사무소장이 심사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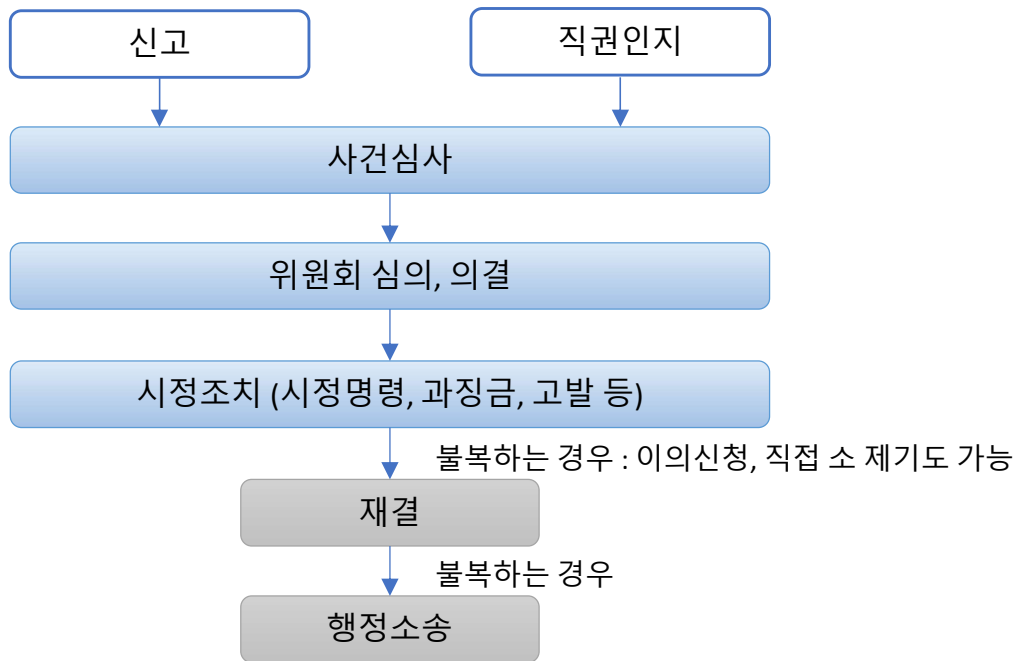
☑ 피심인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이의신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피심인이 당해 처분에 불복하고 당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1.2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1.2.1 인지단계

- 법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한 조사 가능 (법 제80조)
- 위반혐의는 직권인지가 원칙이고, 신고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
- 신고 접수 시 예비조사 실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

1.2.2 조사 심사 단계

- 사건심사 착수보고(사건번호, 사건명부여)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
- 조사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조치의견을 제시
-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

1.2.3 심의 의결 단계

- 심의는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대심 구조하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피심인 등에 대한 본인확인, 심사관의 심사보고, 피심인의 의견진술 진행
- 심사관의 의견진술, 위원들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참고인 등의 심의참가, 심사관의 조치의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
- 합의는 심의가 종료된 후 위원들만 참석하여 비공개로 위법여부, 조치내용 등에 대해 논의·합의하는 과정 (법 제65조)

1.2.4 의결 결과 통지

- 합의 결과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심사관이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로 이로써 피심인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 (법 제68조)

1.2.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음

1.3 공정한 심결을 위한 주요 제도

1.3.1 사전 의견청취 절차 제도

-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안건의 경우 등을 대상으로 정식심의에 앞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진행 하에 주요 쟁점에 대한 피심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1.3.2 심의속개제

- 심의를 신중하게 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를 한번에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에 심의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3.3 심의분리제

- 공동행위와 같은 위반행위 건에 대한 심의시 특정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과 별도로 심의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경쟁사에 공개될 우려가 있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제도

1.3.4 출석 시차제

- 해당 안건의 심의시작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의시작 시간까지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 등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당 안건의 심의 시간을 예측하여 그 시간에 맞도록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의 편의를 보장하려는 제도
- 기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공개, 프리젠테이션 시설의 설치·운영, 외국인들의 심의 참가시 편의제공을 위한 통역부스 설치 허용 등 다양한 심결절차 응용

1.3.5 기타

-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공개, 프리젠테이션 시설의 설치·운영, 외국인들의 심의 참가시 편의제공을 위한 통역부스 설치 허용 등의 절차 운영

1.4 불복절차

1.4.1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 공정위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30일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 (법 제96조)
- 시정조치 명령을 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가능 (법 제97조)

1.4.2 행정소송

-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 (법 제99조, 제100조)
-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1.5 사전 심사 청구 제도

-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거래관계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여 그 적법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답해 주는 제도
-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의견이므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확약의 효력이 발생
- 다만, 구체성이 없는 경우 자료부족으로 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확정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심사가 가능

1.6 동의의결 제도

-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법 위반 판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불공정기업 판정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공정위 역시 법 집행의 효과를 통상적인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구현하면서도 피규제자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법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 소비자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조차 사안에 따라서는 통상의 시정조치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가격 인하, 손해보상 등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시정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관계

- N사, D사 동의의결(최초 사례)

- √ 2013. 05. 공정위의 국내 포털분야 현장조사
- √ 2013. 10.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보고서 발송
- √ 2013. 11. N사와 D사의 동의의결 신청
- √ 2014. 03. 동의의결 시행 결정, 이행안 확정

동의의결 시정안

대상 행위	시정안	
자사 유료서비스 제공 (책, 뮤직, 영화, 가격비교, 부동산)	① 서비스명칭에 “회사명” 표기(예 : N부동산) ②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 문구 명확히 표기 ③ 경쟁사업자 외부 링크 우측상단에 상시 노출	동의의결에 따라 표기방법 변경함을 메인화면 “공지사항”에 공고 (1개월)
키워드 광고의 불명확한 구분	① 광고영역에 ‘~관련된 광고’ 문구 상시 표시 ② 광고노출 기준에 관한 안내문 제시 ③ 광고영역에 음영처리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	이관제한 정책 폐지 ※시행은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 1년 유예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우선협상권 조항 즉시 삭제 (N사만 해당)	
계열사 인력파견	파견상태 해소 또는 인력지원계약 체결 (N사만 해당)	

⇒ 구제안 : [N사] 공익법인 신설, 직접적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 1,000억원 규모 지원사업 시
[D사] 피해구제 기금 출연 등 40억원 규모 지원사업 실시

관련 사례

회사명	위반사항	시기	동의의결 내용
S사	거래상 지위남용	'22.10	[거래질서 개선]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 [피해구제] ①50% 현금 환급(총 5억원 한도) or ②75%에 상응하는 광고지원(신청인 광고 판매가격 기준, 총 5억원 한도) 취사 선택 [신청 외] 임차인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지원(총 3억원 내외) → 기념일 선물 제공, 심리상담 및 어린이집 돌봄 비용 지원 등
S사 등 4개사	부당지원	'22.06	[거래질서 개선] 사내식당 개방(중소·중견기업 우선 고려) [상생지원] ①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②상생펀드 조성 및 급식/식자재 중소기업 투자자금 대출 지원, ③위생안전 교육/메뉴개발 컨설팅 등 비용 지원, ④취약계층 관련시설 식품 안전 지원, ⑤푸드뱅크 기부 통한 급식업체 지원
A사	거래상 지위남용	'21.01	[거래질서 개선] 이동통신사 계약 개선 → ①광고 기금 적용 대상 일부 제외 및 광고기금 협의/집행 절차 개선, ②보증 수리 촉진비용 및 임의적인 계약 해지조항 삭제, ③특허 분쟁 방지를 위한 상호적인 상호적인 체제 도입 등 [상생지원] 상생지원기금 마련(1,000억원) → ①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사용자 유상 수리 비용 할인, ③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④교육사각지대 및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 지원 등 [신청 외] ①디지털교육 지원사업중 기기파손시 2년 무상 수리, ②수리시 일반 서비스센터에서도 할인 혜택 지원, ③제조업 R&D 지원센터 및 디벨로퍼 아카데미중 과기부 의견 반영, 인공지능 프로그램 추가 및 이행기간 이후 지속 운영 등
N사	거래상 지위남용	'20.04	[거래질서 개선] 대리점 상생 협약서 체결 → ①대리점의 대리점협의회 자유로운 가입/활동 보장, ②대리점 계약 중요조건 변경시, 상생위원회(협의회 대표, 대표이사) 협의, ③5년간 협의회 활동비 2백만/월 지급 [피해구제] ①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 유지, ②농협 위탁 납품거래 영업이익 5%를 농협 위탁 납품 대리점과 공유, ③대리점주 장해 발생시 지원 → 긴급 생계 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등

2. 공정위 조사 절차

▶ 조사 주체

- 조사관리관, 조사총괄담당관 이하 사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4국 20팀(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기업집단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과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한다.

▶ 조사 단서

- 사건의 조사는 '신고' 또는 조사관의 '직권발동'에 의해 개시되며, 직권발동은 주로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조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과 같이 연초에 조사계획을 세우는 경우에 이뤄진다.

▶ 배당과 사전 심사

- 신고 또는 직권발동에 의해 개시된 개별사건은 담당과정에 의해 개별 조사공무원 (통상 사무관)에게 배당되며, 배당 받은 조사공무원은 당해 사건이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지를 사전 심사한다. 사전심사결과 ① '피조사인이 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②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③ '5년의 조치시효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불개시결정" 을 내리며 사전심사 결과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착수보고"를 하게 된다.

▶ 사건번호/사건명 부여와 조사 실시

- 사건착수보고가 이뤄지면, 심판관리관실에서 '사건번호'와 '사건명'(예: 2008공동12 000에 대한 건)을 부여함으로써 정식으로 하나의 조사사건이 되며, 이후 조사공무원은 조사권을 발동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심사관의 조치

① 약식절차 회부

- 당해 조사사건이 소회의의 소관사항인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심인(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 피심인이 이를 수락하면 "약식절차"에 회부하며, 약식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위원들의 서면결의로 처분이 결정되나, ① '심사관조치의견에 고발이나 과징금납부명령이 포함된 경우' 또는 ② '피심인이 심사관조치의견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위원회 상정

- 시정조치 과징금납부명령 공표명령 등의 처분이나 형사고발조치 등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며, 이 때 중요한 사안은 '전원회의'에 경미한 사안은 '소회의'에서 각각 심의한다,
- 외국의 경쟁당국은 조사사건의 위원회 상정 여부에 관하여도 위원회가 결정(예: 일본의 심판개시결정)함에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일방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 심사보고서의 송부 및 의견서 제출 고지

- 조사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됨과 동시에, 심사관은 피심인(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원칙적으로 4주(소회의는 3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한다.
- 실무상으로는 심사관이 사전에 심판관리관과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일자를 잠정적으로 정한 후 그 일자의 약 3~4주 이전에 조사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함과 동시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있으며, 이 때, 피심인에게는 심사보고서 중 "심사관 조치의견"을 빼 나머지 자료(즉 ① 표지, ② 제안이유, ③ 행위사실, ④ 위법성 판단, ⑤ 적용법조, ⑥ 첨부자료)만이 송부된다.
- 피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공정위 심판 절차

▶ 심판주체

- 위원회이며, 안건에 따라 중요한 사안은 “전원회의”가 경미한 사안은 “소회의”가 담당하며, 전원회의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과 4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의 직은 위원장이 수행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수행한다.
- 소회의는 총 3개이며, 각 소회의는 1인의 상임위원과 2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의장의 직은 상임위원이 수행한다.

▶ 주심위원 지정과 심결보좌

- 주심위원은 법원의 주심법관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심결보좌기구의 보좌를 받고 전원회의 사건에서는 위원장이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 심결보좌는 심판관리관실이 담당하며, 심판관리관실의 3개 담당관(경쟁심판/협력심판/소비자거래심판)은 상임위원 3인과 일대일 대응관계로 심결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와 피심인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작성 보고한다.

▶ 심의기일의 지정 및 통지

- 의장은 심의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의 구성위원 및 피심인에게 각 회의 심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 심리 공개 여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통지된 각 회의의 심의지정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의장은 지체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또한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합의

- 합의는 비공개로 이뤄지며, 원칙적으로 심의가 종료된 당일에 마쳐지며, “위법성 인정”에 대한 합의 후,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형사고발’ 등의 “제재수단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합의를 하며,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회의는 3인의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 소회의의 경우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전원회의에 회부된다.

▶ 의결서 작성

- 의결서는 심판관리관실에서 작성하며, 원칙적으로 합의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작성한다.

4.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대응 절차

4.1 사전예방을 위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운영

- 당사는 2003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대한 이른 시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은 기업과 관련 임원 및 직원 개인의 형사상 면책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서는 자율적 법 준수 및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당사의 CP는 회사 내부 기준 및 정책수립 시 반영되고 있고, 교육, 모니터링, 점검, 제재, 평가의 요소들을 구비하여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법 위반 사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2 조사개시 전 단계 대응

4.2.1 내부 조사의 필요

① 내부 조사 시행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사가 자신이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경영진은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며 내부적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보다는 내부 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위의 내용과 가능한 파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더 권장할 만한 조치이다.

② 내부적인 조사절차 확정

- 회사 내부의 조사 절차는 매우 신중하게 정하되, 회사는 직원들에 대하여 꼭 필요한 조치만을 취하고, 과도한 조치로 직원이나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와 관련된 결재라인을 확정해 놓아야 한다.

③ 문제가 되는 행위의 확정

-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초기단계에서부터 그 후의 형사, 민사, 소송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한다.

④ 위법행위에 관련된 직원에 대한 태도 확정

- 조사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확실하지 않은 혐의나 증거 때문에 직원/임원과 회사간에 마찰을 초래할 이유는 없다. 이것이 공공연한 분열로 이어질 경우, 형사 및 민사 소송,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⑤ 자진신고자 감면정책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 자율점검 등에 의해 자진시정 하는 경우 면책하는 등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3 조사개시 후 대책_사건의 파악 및 적절한 대응조치

4.3.1 개요

- 조사가 개시된 경우 회사는 즉시 다양한 경로로 조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조사개시 전의 사실파악과 중복될 경우도 있으나, 조사개시 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는 회사는 다른 조사대상자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하면서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해서 그에 맞추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주로 정확한 정보수집 및 그에 기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4.3.2 사건의 파악 : 사실관계의 파악 및 변호사 선임

① 사내 자료 보존 및 수집

- 조사가 개시되면 가장 먼저 관련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에게 서류 및 이메일을 파기 또는 삭제하지 않도록 그룹웨어 공지문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린다. (자칫 조사 개시 후 관련 자료를 파기하다가 조사 방해 등으로 오인 받는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에게 조사의 성격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동시에 CP주관부서/자율준수관리자의 사전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과 이에 관하여 의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접촉

- CP주관부서는 조사 개시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접촉을 주도한다. 초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조사관 접촉을 통해 공정위가 어느 정도의 혐의 및 정보를 가지고 이 사건에 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사건의 심각성과 진전도에 따라 적극적 자료 제출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한다.

③ 직원 인터뷰

- CP주관부서는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조사 건의 인터뷰 대상을 파악하여 사전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있는지, 몇 명이나 관여 했는지, 아니면 혐의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경우, (i) 조사의 성격, (ii) 당국의 입장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 (iii) 연루된 다른 회사 및 개인에 대해 알려진 사실, (iv) 해당 회사에서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 등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들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④ 비슷한 위치에 있는 회사/개인 접촉

- 유사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당사자들의 대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경쟁 회사일 경우, 민감한 사항에 있어 쉽게 신뢰해서는 안 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및 회사의 입장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⑤ 사내 외 변호사 및 외부 전문가 조력

-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하여는 사내 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

⑥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EO의 의사결정 참여

- 사내외 변호사 및 전문가가 가장 신속히 내려야 할 결정 중 하나는 조사과정에서 내려야 하는 수많은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질 사내 인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조사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여 당국의 조사과정에서 회사측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조사개시 및 종료 등에 대해 1차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2차 대표이사 보고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 행동 요령 (적법 대응)

5.1 현장조사/자료제출 시

5.1.1 사전통지가 있는 경우

- 사전통지여부에 대하여 문서 수발을 철저히 할 것
- 조사할 내용을 미리 보내오는 경우 그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되 임의적인 가감이 없도록 주의한다.

5.1.2 사전통지가 없는 경우

- 현장 조사시 조사관 신분을 확인하고 증표 제시 및 조사공문 교부를 요구할 것 (법 제81조 제9항)
- 조사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연장 기간이 명시된 공문이 재교부되지 않는 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필요 있음
- 정상적인 근무/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 (법 제 82조)
- 조사에는 최대한 협조하되,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 있음
- 향후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빙을 남겨 놓는다는 취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서를 통한 이의제기도 고려할 수 있음

5.1.3 자료제출 요구 시

- 제출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예를 들면, 담합 조사의 경우 같은 업계에서도 사업자간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
- 공정위 자료요청 양식에 맞추어 작성
- 최종 자료제출 또는 영치를 위한 날인 시 사내 변호사 등 입회하여 최종 확인
- 요구된 자료만 최소한으로 제출하되, 반드시 사본을 남겨 놓을 것
- 회사의 입장 등에 대한 보충설명자료 제출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자료를 성급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금물
-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이 공정위에 처분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정위는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하고, 재판시 현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정위에 제출되는 자료에 특히 유의할 것

5.1.4 금지사항

-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 제124조)
- 조사 시 자료의 은닉, 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 제125조) → (위 4.3.2.① 참조 : 서류 및 이메일을 삭제 금지 통보)

5.2 출석·진술 요구 시

- 어떤 건에 대한 조사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사전준비(구체적 자료의 확인 등)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병상의 문제나 출장 등의 일정이 잡혀 있을 경우 출석일자 조정 가능성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진술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안된다. (조사 방해로 인정될 수 있음).
- 진술서, 확인서, 진술조서 작성 관련 실무 관행상 진술자가 자필로 작성하기 보다는 조사관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진술자의 의도와 다른 내용이 진술서와 확인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입회 하에 작성하고 문구의 의미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본 후 수정을 요구한다. 수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명날인 등을 거부한다. 특히 용어 사용에 유의할 것(담합, 협의 등)

▶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사항

구분	현장조사 시 권리사항	
조사 시작	「공무원 증표 확인 및 조사공문 제시 요청」	•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대상, 근거 등이 기재된 공문을 회사측에 제시하여야 함.
조사 진행	「조사권 남용에 대한 거부」	• 조사공무원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 남용은 금지되므로 조사범위 외 조사 진행이나 개인물품 열람 등 요구 시 조사응대 주관 조직 및 변호사 등과 협의 후 진행
	「조사기간의 한정」	• 조사공무원은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근무시간 종료 시 조사 종료 요청 (단,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정규시간 내 조사로는 조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외 조사 가능)
	「진술조서 작성시 확인」	• 진술조서 작성 후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조서 최종 작성 후 간인 또는 진술인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효력 발생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입회 하에 작성 후 질문과 답변을 상세히 검토하고 답변한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수정 요청해야 함.
	「영치 조서의 작성, 교부 요청」	• 조사과정에서 자료 또는 물건을 영치할 경우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영치목록 교부 요청 및 영치자료 사본을 확보해야 함.

▶ 공정위 조사 및 심의절차 개정사항

번호	항목	개정내용
1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	• 법 위반 혐의의 구체적인 명시 - 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관련하여 거래분야 기재 - 공시 위반행위 등과 같이 거래분야의 기재가 적절하지 않은 조사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기재하도록 규정 피조사자들이 조사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응 가능
2	준법부서에 대한 조사기준 마련	• 준법부서에 대한 우선적 조사행위 금지 • 아래 예외사유 해당하는 경우 조사 가능 ① 준법부서가 법 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② 준법부서가 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업무도 직접 수행하는 경우 ③ 현장진입 시 피조사인의 조사 거부·방해 혐의가 있는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향후 현장조사 시 준법부서 조사를 할 경우 공정위가 예외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야 하여 피조사자의 방어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3	현장조사 수집· 제출자료 반환· 폐기 요청 절차 신설	• 현장조사에서 제출된 자료가 조사공문상 조사목적을 벗어난 경우 공식적인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 신설 ① 피조사인은 자료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면 제출 ② 심사관 비동의 시 이의제기 서면 접수일의 30일 이내에 '제출자료 이의심사 위원회'에 심사 요청 가능 현장조사 시 충분한 검토 없이 제출된 자료의 반환 기회 확보 및 자료 조사 관련성에 이견이 있을 때 피조사자 의견을 공론화할 수 있는 절차 마련
4	조사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 확대	•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 국·과장이 공식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피조사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절차 마련 ① 법위반 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③ 주요쟁점에 대한 심결례·판례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④ 전원회의·소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경우 (약식의결 의안 제외) 중요 사건에 피조사자의 공식적 의견 개진 기회 마련되어 심사관과 피조사자의 의견 교환가능, 균형 있는 판단 기대
5	심의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 확대	• 아래의 경우와 같이 시장 영향력이 큰 사건에 대하여 보다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심인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 실시 ①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천억원 이상(부당공동행위 사건은 5천억원 이상) ②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 이상(부당공동행위 사건은 15명 이상)인 사건 ③ 피심인 이 다수인 사건 등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큰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효과 기대
6	심의과정에서의 공정성 강화	• 주심위원 등은 심결보좌를 통해 자료를 수령하고, 의견청취절차 외의 방법으로 심사관이나 피심인을 접촉할 수 없음 •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심위원의 재량에 따라 상대방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의견청취절차의 분리 운영을 도입 피심인들이 심사관 참석 부담 없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 마련

▶ 조사 대응 시 유의사항

구분	Do's	Don'ts
조사 시작	신분증과 조사협조 공문 확인 : 조사공무원을 미팅룸으로 안내하고 내부 보고를 거친 후 조사 개시할 것을 요청	자료는 지우지 말 것 : 현장조사 사실이 사내에 공지된 이후 자료를 폐기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 조사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
	변호사 조력을 위한 연락 : 사내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입회	
조사 진행	조사현황 파악 필요 :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조사공무원의 조사대상자 및 질의답변 등 현황 파악 필요	추측성 진술이나 근거 없는 진술 금지 : 모르는 일 또는 기억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대로 솔직하게 진술해야 함
	자료제출 시 보관조서 수령 및 사본 확보 : 영치목록 교부 요청 및 영치자료 사본 확보 필요	
	조사범위 조정 요청 등 적극적 의견개진 : 의견 청취절차 등 활용하여 포괄적인 자료 수집에 대응할 필요	

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6.1 조정절차 안내

6.1.1 신청서 접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조정신청을 접수한다.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시는 조정원 문의 후 (1588-1490) 진행한다.)
- 신청서 작성 시 양 당사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안이 다양할 경우 피해금액이 큰 주장 위주로 작성한다.

6.1.2 양 당사자 접수통지

- 사건 접수 후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등기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접수사실 및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통지한다..

6.1.3 자료제출

- 양당사자는 기한 내에 분쟁 관련 자료(보완서, 답변서, 일반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가 2회 이상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불성립 될 수 있다.

6.1.4 사실관계 조사

- 조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본격적인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 조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정원의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 조사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불성립 될 수 있다.

6.1.5 협의회 개최 및 의결

-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친 모든 분쟁사건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된다.
-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되면 심의절차가 진행된다.
- 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시 분쟁당사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 분쟁조정협의회는 심의를 통해 조정절차 종료 등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 분쟁조정협의회 의결 후 분쟁당사자에게 종료 여부 등이 통지된다.
- 분쟁 절차에 관한 사항은 조정원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6.2 분쟁조정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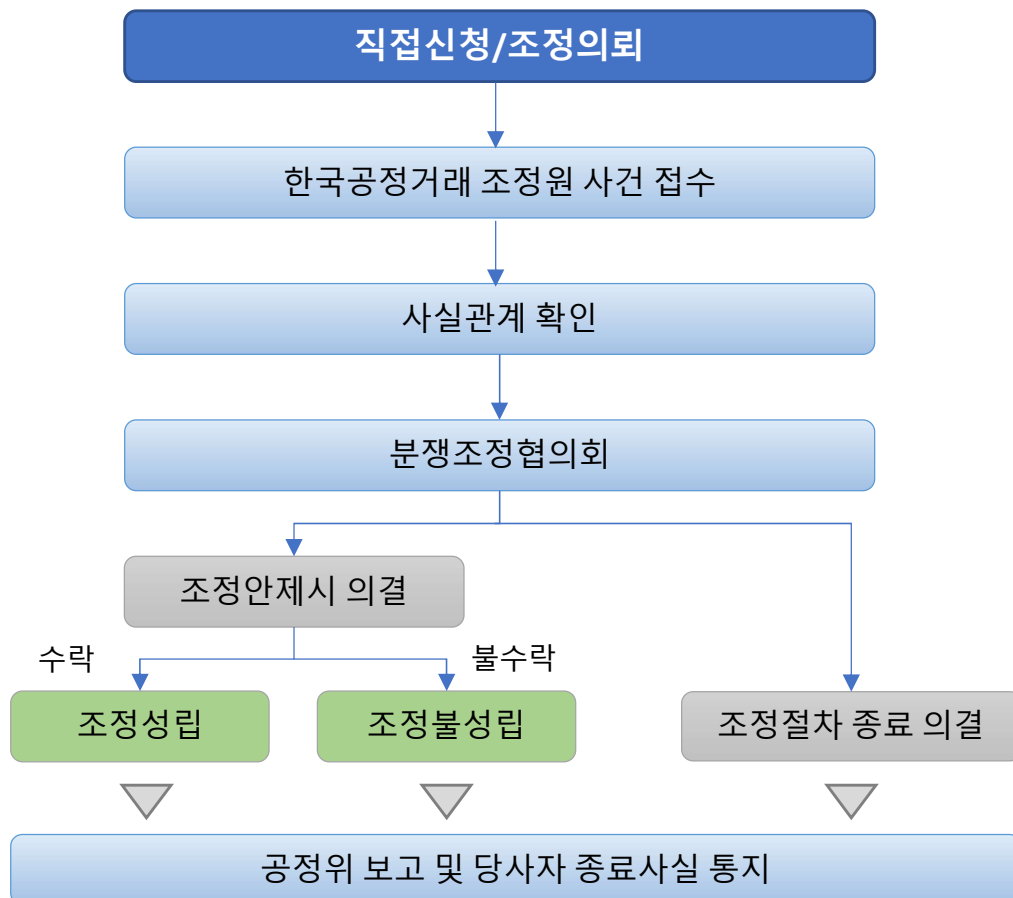
6.2.1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교수, 법조인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6.2.2 하도급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한다.

6.3 조정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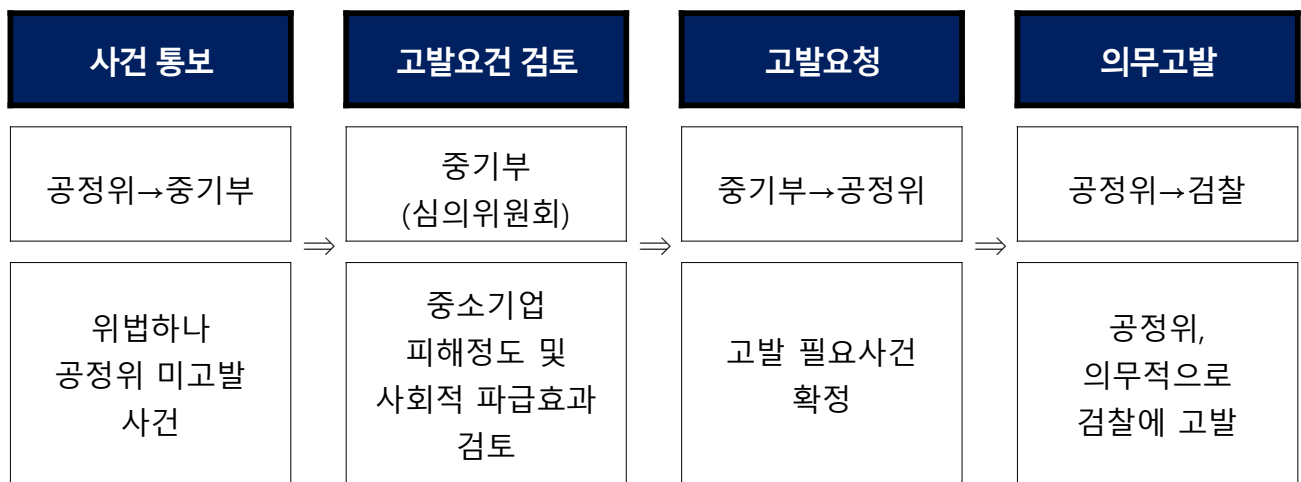


7.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도

7.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시 관련하여 고발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 (법 제129조 제4항, 제5항)

7.2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7.3 고발 대상

- 아래 법률 위반행위를 고발 대상으로 하고, 각 법률 위반행위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점수는 중소벤처기업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요청에 관한 운영 규정」 별표에 따라 산정함)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8. 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8.1 소비자원 피해구제

-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8.1.1 피해구제 절차 안내

① 신청서 접수

-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 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한다.

②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업자 통보

-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된다.

④ 사실조사

-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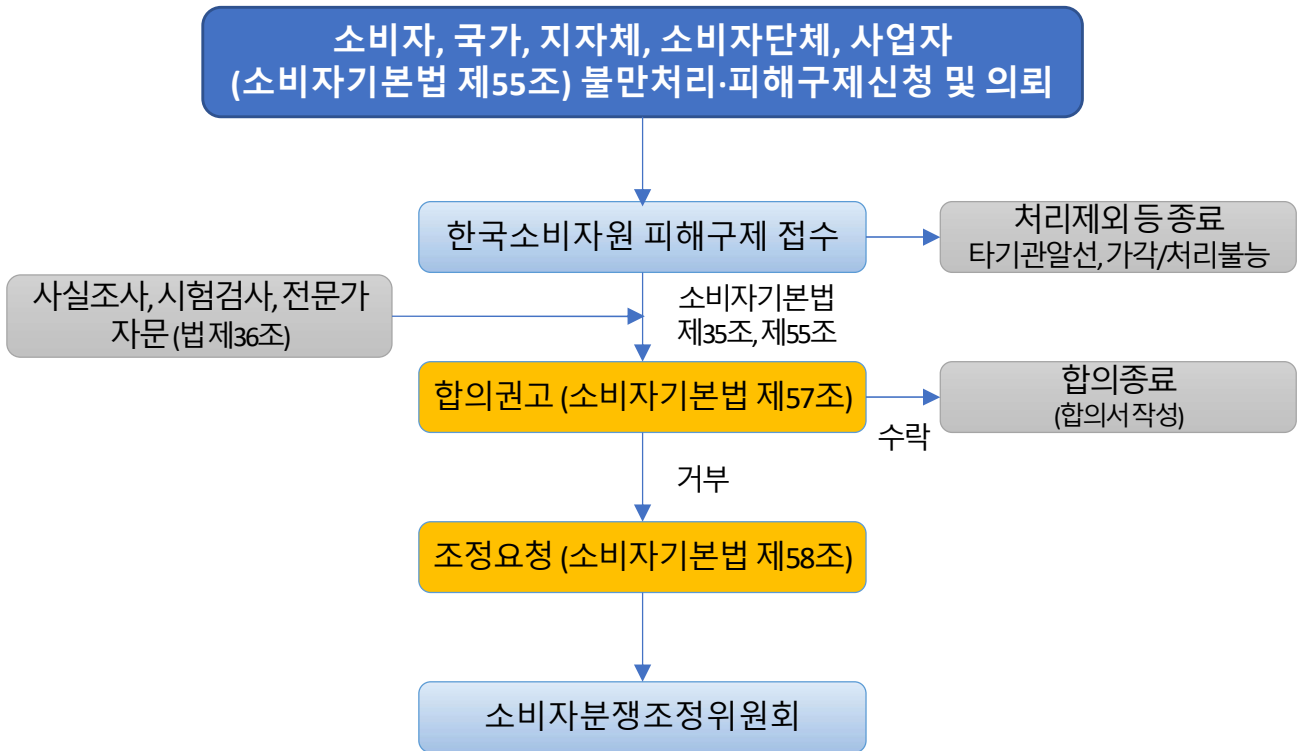
⑤ 합의권고

-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된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8.1.2 피해구제 절차도



8.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 소비자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건은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8.2.1 분쟁조정 절차 안내

① 조정요청

-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직접 조정을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1항)

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61조 제1항)

③ 사건검토

-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한다.

④ 분쟁조정회의 개최

-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3~11명의 위원이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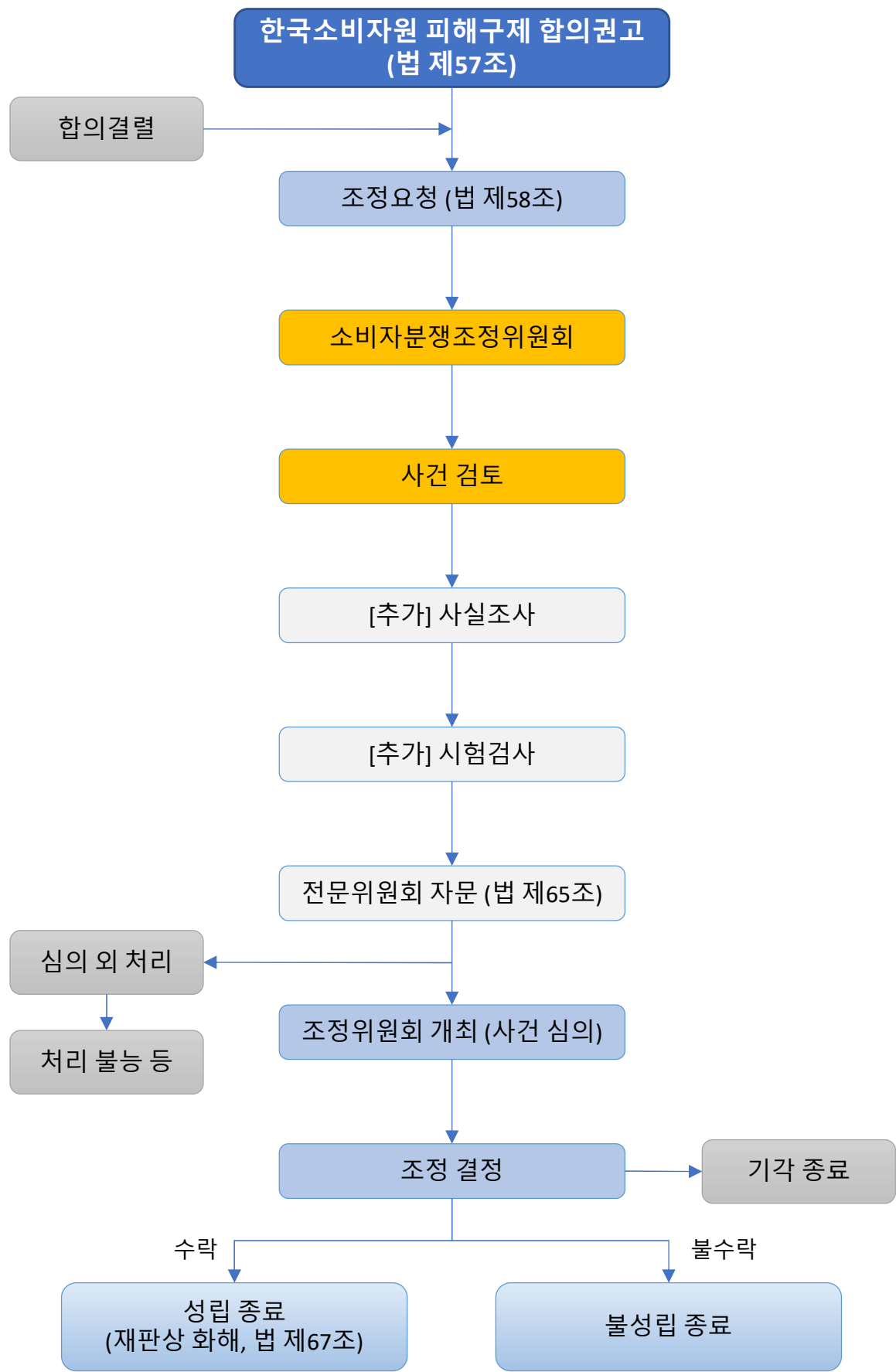
⑤ 조정결정

-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⑥ 종료

-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

8.2.2 분쟁조정 절차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

IX

제보 시스템

불공정거래 행위 등 위법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제보해주세요!

그룹웨어
D-클린 menu

이메일
ethics@dlholding
s.co.kr

유선
02-2011-7399

사내메신저 (Te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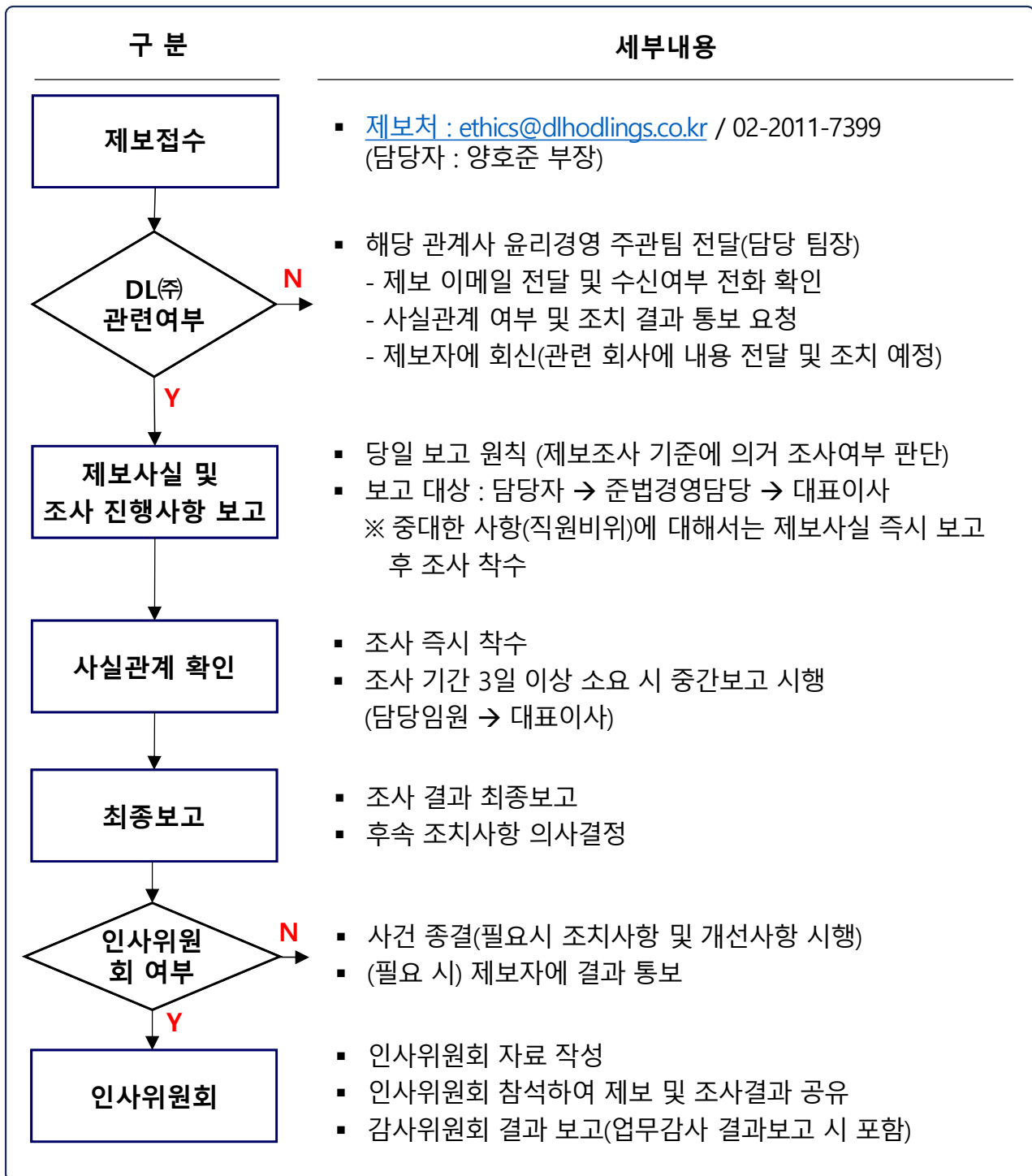
- ① 불공정행위, 담합,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금품 및 향응수수 등
- ② 성희롱 및 성차별, 직장내 괴롭힘
- ③ 기타 위법 및 부당행위 사항

- 제보자 신분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를 통한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383

2. 제보관리 프로세스

2.1 제보관리 프로세스



2.2 위반시, 임직원 준수사항

- ① 직·간접적으로 위반 확인 즉시 제보 (CP규정 제8조의2(내부고발))
- ② 점검 및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CP규정 제8조(임직원의 의무))

3. 제보조사 기준

3.1 조사여부 판단 기준

구분	실명제보	익명제보	제보접수 거부
기준	• 제보내용에 관계없이 사실관계 조사 • 실명 기준 : 이름, 전화번호 기재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 익명제보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조사여부 결정	• 기 접수된 제보를 반복하여 제보한 경우 • 기 조사되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안 (단, 구체적인 추가증빙, 제보로 조사착수 필요 판단 시, 재조사 진행)

3.2 익명제보 판단 기준

구분	내용	처리기준
1. 신빙성 있는 신고	• 대상자와 비위 행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제보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의 근거자료를 첨부한 경우 - 제보 내용과 관련 증거를 첨부한 경우 - 목격자나 참고인이 있는 경우 - 기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경우	조사 착수
2. 다소 신빙성 있는 신고	• 1번 기준은 미충족 하나 제보의 주요 취지와 비위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 • 제보 내용이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사실 관계를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조사 착수
3. 불명확 신고	•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 하지 않은 경우 - 제3자로부터 듣거나 기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근거한 경우 - 발생 시기, 부서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조사에 막대한 시간 및 자원이 요구되는 경우 • 추측, 풍문에 근거한 막연한 의혹 제기	조사 보류 (추가 정보 입수시까지)
4. 악의, 험담 목적	• 감정에 호소한 비방, 험담 등 •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특정인 비방 목적의 제보	미 접수

4. 주요 계열사 제보처 안내

- 계열사 관련 제보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제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담당부서	연락처	주소
DL(주)	재무담당	02-2011-7399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 D타워 돈의문 (24F)
DL이앤씨(주)	경영진단팀	02-2011-8295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 D타워 돈의문 (7F)
DL케미칼(주)	정도경영팀	02-3708-3275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 D타워 돈의문 (26F)
(주)대림	RMT/F팀	02-2136-8888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 D타워 돈의문 (23F)
DL건설(주)	경영진단팀	02-2170-5063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24. 전경련회관 (26F)
글래드호텔 앤리조트(주)	경영진단팀	02-2197-161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92. A동 (8F)
DL모터스(주)	경영관리팀	055-239-702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02.
DL에너지(주)	경영지원팀	02-6711-4952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 D타워 돈의문 (25F)

